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561-01

지식재산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

카밀 이드리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특 허 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지식재산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

카밀 이드리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특 허 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지식재산

경제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

서 문	5
-----	---

제1장	7
지식재산: 기본 전제 및 역사적 배경	

제2장	21
경제 성장의 과정	

제3장	47
지식재산, 지식 및 부의 창출	

제4장	67
특허, 연구 개발 및 신기술	

제5장	127
상표와 지리적 표시	

제6장	163
저작권과 문화정보 산업	

제7장	209
전통지식	

제8장	237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유지	

제9장	267
지식재산권의 집행	

제10장	301
WIPO의 역할	

약 어	309
-----	-----

감사의 글	316
-------	-----

저자 소개	317
-------	-----

『 서 문 』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그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에게 이 용어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즉 일상생활과 별 관련 없는 모호한 법적 개념인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신중하게 선택한 사례, 사실 및 통계를 사용해 지식재산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앞서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에 집중했던 책자들과는 달리 “왜”와 “어떻게”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책은 법률 서적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을 위한 도구로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실용적인 지침서이며, 정부와 민간 분야의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하여 관심있는 비전문가들을 주 독자층으로 하고 있다.

독자들은, 지식재산이 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서 특히 실시료 하나만으로 연간 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 기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음도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은 다른 형태의 부와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일견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식재산이 법률의 특수한 분야로서 기술 전문가들이나 기업 전문 변호사들만 관심을 갖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정보기술 혁명 및 발명과 혁신의 속도, 영향력, 중요성이 급속한 세계화와 맞물려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제 지식재산은 뒷전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입안이나 기업의 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이 책은 지식재산은 좋은 것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즉, 지식재산은 지금까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개발의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 지금껏 사용하지 않았던 “강력한 도구”라는 신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 잃는다는 “제로섬 게임” 이외의 방법으로 성장과 경제개발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지식재산 도구를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게 되면 더욱 많은 혁신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은 더욱 창조적인 변화와 문화,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임무는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지식재산제도의 혜택이 모든 회원국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목표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지식재산의 보호와 집행 없이는 지식재산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지식재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하면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영광스럽게도,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뛰어난 WIPO 직원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저술하는데 도움을 준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초고를 읽은 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유익한 비판을 제기하는 등 도움을 준 많은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 지식재산 시스템의 엄청난 잠재력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해 줄 지식재산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카밀 이드리스

사무총장

세계지식재산기구



제1장

지식재산

기본 전제 및 역사적 배경

“상상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앨버트 아인슈타인, 과학자 (1879-1955)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지식보다 상상을 선호했다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하려 한다. 그것은 지식재산이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지식을 폄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알려진 지식이라는 기존의 기반위에서 앞으로의 발견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적, 문화적, 경제적 진보의 원천이라고 이해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만일 지식으로서 전달된 물리학의 법칙을 배우는 데에만 만족했다면, 학생 으로서는 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대성이론을 생각해 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인류의 역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상 또는 혁신과 창의를 기존의 지식에 적용하는 과정이었다.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문서로부터 중국의 주판, 시리아의 천문관측기, 인도의 고대 망루,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내열엔진, 페니실린, 남아공의 약초 및 치료법, 트랜지스터, 반도체 나노기술, 재조합 DNA 약품을 비롯하여 수많은 발견 및 혁신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오늘날과 같은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창조가들의 상상력 덕택이었다.

상상력은 과학뿐 아니라 예술의 진보도 이루었다. 음악, 미술, 조각, 건축, 문학 및 여타 예술작품들은 옛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디어와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었다.

지식재산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무형이었지만 제품과 같이 유형의 형태로 가치를 갖게 된 아이디어, 발명품, 기술, 예술작품, 음악 및 문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형적인 형태의 지식재산 즉, 특허, 저작권, 상표 등에 관한 정의 및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개요만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식재산이 기술적 혹은 예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고를 상업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서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본다. 지식재산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말하며 아이디어가 표현되는 방법, 명명되고 서술되는 특별한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재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유권은 중요한 개념인데, 이는 경험상 잠재적인 경제적 이득이 혁신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재산이 기존의 지식에 기반을 둔 혁신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도 명심해두는 것이 좋다. 이는 과거에 잘 개발된 결과물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결과이거나 오래된 아이디어나 개념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표현한 결과이다.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는 최근 화제가 되었으며 때때로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최근의 행사나 사건을 설명한 기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지식재산을 부정적인 동력, 혹은 개도국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공격하기도 한다. 또 개도국의 일부 비평가들은 지식재산이 창의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지만 많은 인기를 얻었고 문화적인 추진력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지식재산이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특히 오늘날 중요성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루도록 하겠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재산에 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그저 미스터리한 용어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기술과 창조적인 예술은 현대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창출된 지식재산에 둘러싸여 있으며¹⁾ 지식재산에 대한 온갖 종류의 법적 권리가 발생되고 있음을 실제로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식재산의 역할을 대중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지식재산을 폭넓게 이해시키고 존중하게 만드는 열쇠이며 지식재산을 홍보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핵심이다.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을 진정으로 설득하려면 이들 모두가 스스로 건강하고 건전한 지식재산 시스템의 이해관계자라고 여기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이들을 포함시켜 이 시스템으로 자신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1) 특허 및 권리 존속 기간이 만료된 특허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있으며 전기불 (에디슨과 Swan이 특허 보유), 플라스틱 (Baekeland), 볼펜 (Biro), 반도체 (Intel) 등이 좋은 예이다.

WIPO에서는 지식재산의 전 세계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으며²⁾ 이것은 일부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문화와도 연관성을 가지며, 세계의 진화를 보여 주고, 역사적으로 사회의 진보에 기여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지식재산은 우리 모두의 유산인 것이다.

미국의 위대한 흑인 화학자이며 발명가인 조지 워싱턴 카버 (George Washington Carver)는, 발명은 경제적 조건,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가능하다고 가르친 것으로 유명하다. 카버는 토지의 영양분을 보존하는 윤작법을 발명하여 특허를 획득했으며³⁾ 땅콩과 같은 농작물의 새로운 이용법을 수 백가지 발견하여 미국의 농부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었다. 선진국과 후진국간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는 오늘날 그의 발명이 갖는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 무슨 차를 모느냐, 은행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성공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서비스일뿐이다.”⁴⁾

그의 메시지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상력을 적용하는 것이 일부 국가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지식재산은 아날로그 신호뿐 아니라 농업과도 연관이 있고, 미생물학뿐 아니라 약초와도 관련이 있고, 파일전송프로토콜(FTP)뿐 아니라 민요와도 관련이 있다.

이 책에서는 경제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동력으로서의 지식재산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기술적, 법적서적이라기 보다는 여러 형태의 지식재산 뒤에 숨은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실질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이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해 준 사례, 전 세계인들이 실제로 지식재산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실례를 책 전반에 걸쳐 싣고 있다. 지식재산을 잘 모르는 독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역사적 사실이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2) WIPO에서 2000년 9월에 WIPO 회원국 총회 때 세계지식재산선언 (WO/GA/26/4 Annex IV)을 발표. http://www.wipo.int/about-wipo/en/pac/ip_declaration.htm 참조

3) www.invent.org/index.asp; patent Nos. 1,522, 176; 1,541, 478.

4) www.ideafinder.com/history/inventors/carver.htm

● 발명과 지식재산의 역사

오늘날의 과학, 기술, 창조적 예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만들어 왔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기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봉건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표 1-1 참조) 지난 100여 년 동안 기술적 리더십은 부의 창출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고 각국의 성장을 촉진했다.⁵⁾

[표1-1] 인류의 역사를 바꾼 주요 발명

이름	국가	발명품	설명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독일	인쇄술	1440년경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활판 인쇄기를 개발. 각 문자별로 쇠조각을 만들어 여러 책을 인쇄하는데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콘라드 게스너	스위스	연필	1560년경, 게스너는 흑연을 나무로 감싸 필기구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냄. (흑연 (graphite)은 "쓰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graphein에서 유래)
마하라자 자이 싱	인도	천문관측기구	1782년 학자인 자이 싱은 델리, 자이푸르, 파라나시, 우자인, 마투라에 천문관측소를 세움. (싱은 아랍 수학자들의 저서뿐 아니라 프톨레마이오, 유클리드,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의 저서를 모두 탐독한 학자) 이 다섯 개의 관측소에서 사용한 관측기구는 아직도 사용가능한데 태양과 별의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
사무엘 모스	미국	전신, 모스 부호	모스는 전자알파벳뿐 아니라 전신도 개발. 1840년, 특허 출원.
알프레드 노벨	스웨덴	다이내마이트	1863년 첫 번째 주요 발명품인 다이내마이트를 개발. 다이내마이트는 강력한 충격을 이용하여 니트로글리세린의 폭발을 촉발.
알렉산더 G 벨	영국	전화	1876년 전기파동을 유발시켜 음성 및 다른 소리를 전송하는 방법 및 기기에 대해 특허 획득. 18건의 특허가 벨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동료 연구자들과는 12건을 공유.
G. 마르코니	이탈리아	라디오	이 발명은 전자기파가 특성을 보존하면서 공기 속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구성. 1886년 특허 출원.
오빌, 윌버 라이트	미국	비행기	1903년 라이트 형제는 노스캐롤라이나 키티호크에서 첫 번째 비행기계를 발명.
블라디미르 K. 즈보리킨	러시아연방	전자식 TV	1929년, 즈보리킨은 텔레비전 송출에 필요한 브라운관을 발명

5) 로버트 솔로우의 “기술적 변화와 총체적 생산 기능”에 나오는 성장 모형 참조.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9 (1957): 12-13. 폴 로머의 “내인성 기술 변화”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1990): 5, pt. 2, S74-S75.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이 름	국 가	발 명 품	설 명
라디슬라오 비로	아르헨티나/헝가리	볼펜	비로는 끝부분에 작은 볼 베어링을 장착한 펜으로 1938년 특허를 받음. 펜을 종위위에 움직이면 볼이 회전해 카트리지 안의 잉크를 종위위에 묻히게 됨.
콘라드 추제	독일	자유로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	추제는 1941년 Z1 모델을 완성함으로써 현대적인 컴퓨터의 발명가로 인정받음.
거트루드 엘리온	미국	암/에이즈치료용 면역계 약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계 이민자의 딸인 거트루드 엘리온은 화학자로서 인간의 면역계를 연구했으며 56년 글락소-웰컴사에서 실시한 연구로 “특정 타겟에만 작용하는” 약을 개발하여 암세포의 복제를 막을 수 있도록 함. 98년 노벨 화학상 수상.
제임스 러셀	미국	콤팩트디스크	65년, 접촉없이 빛을 이용해 음악을 녹음, 저장,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이 시스템으로 22건의 특허 보유.

원시음악과 춤, 매장의식, 동굴벽화, 문자, 공연 등 오래전의 의식에서부터 전화나 전보, 필름, 무선방송, 소프트웨어, 디지털 리코딩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예술적인 창조와 퍼포먼스의 형태로 문화적 창조성과 표현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고 정체성을 찾아왔다. 이러한 창조성의 상당부분은 오늘날에도 민속학 혹은 다른 형태의 전통 지식 속에 남아 번성하고 있다. 오늘날의 음악, 영화, 서적, 예술 및 기타 형태의 창조나 표현은 사회 진보와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것들은 창조자의 사적인 재산으로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역할을 포함하여) 여러 이유에서 사회로부터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특별한 가치는, 바로 인간이 기울인 노력의 유산이 그 표현속에 살아 숨쉬고 있음일 것이다.

지식재산은 역사가 오랜 개념이다. 1474년 베니스 특허법은, 처음으로 공공의 이익을 제한하는 개인의 독점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의 형태로 발명을 보호한 최초의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간주된다. 16세기 튜더 왕조가 지배했던 잉글랜드에는 이미 특허시스템이 있었고 1624년 독점조례는 일정 기간동안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최초의 성문법이었다.

18세기 중후반은 무역과 산업의 황금기였으며 예술적 창조성, 과학적 혁신, 정치적 혁명의 시대이기도 했다. 바로 이 계몽시대 때 일부 국가에서 처음으로 특허시스템을 수립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최초의 특허법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프랑

스 혁명과 프랑스 인권선언 이후 1791년에 제정되었다. 미국에서는 1788년, 헌법에서 발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특허를 내주고 발명을 보호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부추긴 것은 인쇄술의 보급이었다. 선사시대 이후 첫 1,000년간은 책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더딘 작업이었다. 대서인들이 손으로 책을 써서 베꼈으며 예술적 능력이 뛰어난 대서인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이도 있었다. 책은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다. 조직적인 종교활동은 책으로 지식을 남기고 여러 권의 책을 확산시키도록 하는 동인이었다. 1440년경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발명은 세계 최초로 저작권 시스템이 탄생하는데 기여한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⁶⁾ 발명의 보호에 있어서는, 1469년 베니스에서 최초의 인쇄업자인 스페이어의 존 (John of Speyer)에게 “문자를 인쇄할” 독점권을 허용했다.⁷⁾

15세기 중반 이후 서부 유럽 어디에서나 구텐베르크의 발명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종교개혁가들이 쓴 책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잉글랜드와 프랑스에서는 인쇄를 독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6세기에는 인쇄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인쇄에 대한 통제를 허용하기 위해 인쇄업자들에 의한 독점이 계속되었다. 1710년에는 영국 의회가 앤 여왕법을 제정하여 인쇄에 대한 발행인들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저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었으며 저자 또는 저자의 상속인에게 초판 발행 후 14년간 책의 재인쇄에 관한 독점권을 주었다.⁸⁾ “학습 장려를 위한 특별법”으로 불리는 앤 여왕법은 미 헌법의 지식재산 보호 부분에 영향을 준 문서 중 하나이다.⁹⁾

이렇게 초기단계에도 특허 및 저작권법의 발전은 경기변동을 반영하고 있었다. 1600년 이후 베니스 시대가 저물고 경제의 중심은 남부 유럽에서 북서부로 옮겨갔다.

6) 구텐베르크는 서방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서인 구텐베르크 성경을 인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경은 한 장에 42줄이 인쇄되어 있어서 42줄 성서 또는 마자린 성서로도 알려져 있다. 구텐베르크는 또한 300자가 넘는 폰트와, 지난 세기 필체 구조에 사용되었던 낱, 안티몬, 양철의 혼합물을 넣을 수 있는, 폭이 바뀌는 형틀도 만들었다.

7) 글자를 인쇄한다는 것은 인쇄술을 이용하여 한 문서를 여러 장 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페이어의 존 (John of Speyer)이 로마자를 처음 디자인했고 이에 대한 특허도 받았다. 이 특허는 1470년, 그가 사망하면서 만료되었다.

8) <http://artnetweb.com/iola/journal/history/1994/copyright.html#fn3>, <http://hutzley1.tripod.com/copyright/history.htm>, <http://www.platopress.co.uk/copyright/intro/history02.htm>, <http://arl.cni.org/info/frn/copy/timeline.html> 참조

9) <http://english.ttu.edu/kairos/3.1/coverweb/ty/anne.html>

1800년 이전에는 몇몇 유럽 국가에 산업이 집중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은 장인들이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급진적이며 새로운 방법과 조직을 통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1750년부터 1870년까지의 유럽은 도시가 성장하고 철도를 건설하고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며 대외 경제가 성장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¹⁰⁾ 19세기 말로 가면서 이러한 요인들은, 새로운 산업주의, 강력한 중앙집권 정보의 출현, 강력한 민족주의에 의해 뒷받침되는 대규모 산업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발전에 의해 여러 국가에서 최초의 근대적 특허법 및 저작권법을 수립하게 되었다.¹¹⁾

그러나 현대적인 지식재산 개념의 발전이 항상 수월하게 이루어져온 것만은 아니었다. 19세기에는 특허 시스템의 폐지를 요구하는 자유무역 운동이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¹²⁾ 하지만 그 시대를 특징짓는 민족주의라는 강력한 조류가 등장하면서 근대 산업 재산법의 도입 및 유지를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최초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 파리 및 베른 협약

19세기 중후반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과 근로자들이 산업의 힘에 세계화의 흐름을 가미했다. 이미 특허법을 제정한 나라가 많았지만 많은 이들은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실제로 1873년 비엔나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는 외국인들이 참가를 거부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까 두려워서였다. 이 사건은 1883년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협약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창조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최초의 주요 국제 협약이었다. 이러한 보호는 산업재산권, 특허 (발명), 상표, 산업 디자인의 형태를 띤다.

10) J. M. Roberts의 유럽의 역사 (A History of Europe (Oxford: Helicon Publishing, 1996)): 214, 217, 326.

11) 독일에서는 최초의 연방 특허법이 1877년에 제정되었다. 프랑스는 1844년에 1791년 법을 근대화했다. 여러 다른 국가에서도 19세기에 근대적 특허법을 도입했다. 이탈리아 1859년, 아르헨티나 1864년, 스페인 1878년, 브라질 1882년, 스웨덴 1884년, 캐나다 1886년, 인도와 일본 1888년, 멕시코 1890년, 독일 1891년, 포르투갈과 남아공 1896년.

12) 자유무역운동의 결과로 네덜란드에서는 1869년 특허법을 폐지했다. 그러나 새로운 특허법이 1910년에 다시 도입되었다.

1800년대 중반, 저명한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원고료도 받지 못한 채로 다른 나라에서 팔리고 있음을 목격했다.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레 미제라블과 노트담의 곱추를 쓴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저명한 작가들을 모아 국제 문학가 협회 (International Literary Association)를 조직했고 이 협회는 이후 국제 문학가 및 예술인 협회 (International Literary and Artistic Association)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협회의 목적은 작가 자신들의 작품을 국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1886년, 국가간 저작권 상호인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른 국제 지식재산 조약이 제정되었는데, 문학과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이 그것이다.

두 협약의 핵심은 내국인 대우의 원칙이다. 즉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등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파리 협약 원문, 제2조 내국인 대우에 관한 조항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각 계약 당사국의 시민들 또는 주체들은 특허, 산업 디자인, 상표 및 상호(商號; trade name)에 대하여 각국의 법이 이미 허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허용하게 될 이익을 누린다. 그러므로 이들은 각 국의 국내법이 내국인에게 부과하는 형식과 조건을 준수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되고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동일한 법적 구제를 받게 된다.”

파리 협약 및 베른 협약이 체결된 이래 첫 100년간 발명, 상표 및 여타 산업 재산물과 저작물의 국제적인 보호에 큰 진전이 있었다. 이 기간동안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도 진전을 보였다.¹³⁾ 지난 한 세기동안 지식재산 시스템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발전해왔다는 것은 많은 국가가 혁신과 기술/예술적 성과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인정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WIPO의 총재를 지낸 아파드 보그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3) 파리, 베른 조약의 이행을 위한 행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 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s)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의 전신이다.

“새로운 기술적 솔루션과 창조적인 문화적 활동을 모색하려면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국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적인 발전 외에도 발명과 문화적 창조가 인류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주된 동력이기 때문이다. 식량, 건강, 커뮤니케이션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다른 기본적인 요구는, 발명과 창조 덕택에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¹⁴⁾

지식재산의 역사는, 이 장에서 모두 다룰 수 없을 만큼 길다. 그러나 이 장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지식재산의 저변에 깔린 전제는, 발명과 창조적인 작품의 소유권을 인정함은 창조를 촉진하고, 이러한 창조는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문제 → 지식 → 상상 → 혁신 → 지식재산 → 제품이라는 형태의 솔루션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경제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겠지만, 지식재산이 국제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오늘날의 세계에서 지식재산과 경제 발전간의 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지식재산의 유형

지식재산의 두 기둥, 즉 산업재산과 저작권이 생겨나면서, 다른 형태의 지식재산들도 기존 지식재산 유형의 하부 유형으로서 혹은 새로운 종류로서 개발되고 자리잡았다.

1967년 WIPO 설립의 근거가 되는 협약¹⁵⁾에서는 지식재산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작품
2. 공연 예술가의 공연, 전화나 전보, 방송
3. 인류의 노력이 들어간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4. 과학적 발견

14) 당시 WIPO 총재였던 Arpad Bogsch, 1883년부터 1983년까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from 1883 to 1983, (Geneva, WIPO1983)) 서문

15)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67년 7월14일 스톡홀름에서 체결, 1979년 9월 28일 개정). <http://www.wipo.int/clea/docs/en/wo/wo029en.htm>

5. 디자인
6. 표장(Marks), 상품명(commercial name) 및 고안(designation)
7.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
8. 산업, 과학, 문학 및 예술 분야의 지식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기타 권리

1967년 이래 국제 조약 몇 가지가 체결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은 WIPO가 이뤄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집적회로의 설계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을 한층 명확히 하고 구체화했다. 이러한 흐름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통신, 인터넷, 유전공학 등과 관련한 기술적, 문화적 발전에 대응하여 지식재산의 역동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1에서 언급한 분야는 “저작권” 영역에 속하고 2는 지식재산의 “저작인접권”에 속한다. 3, 4, 5, 6, 7은 지식재산의 산업재산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지식재산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에서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¹⁶⁾

특허 (발명)

특허는 발명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새로운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이나 프로세스) 에 대해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이다. 특허는 발명자가 발명을 일반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일반적으로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특허가 부여된 국가에서 그 발명을 보호해 준다. 특허권자(patent owner)는 특허를 받은 발명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누가 사용해서는 안되는지를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되며 상호 합의된 조건 하에서 타인에게 그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나 실시허여를 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리를 매수한 자가 그 특허의 새로운 권리자가 된다.¹⁷⁾ 특허의 권리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보호가 끝나고, 그 발명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¹⁸⁾

16) WIPO 웹사이트 (<http://www.wipo.int>)에서 발췌

17) 특허권은 대개 법원에서 집행되는데 법원에서는 특허권 침해를 중지할 권한을 갖는다. 역으로, 피고나 제3자가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 법원은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다.

18) 발명에 대한 특허가 만기가 되면 (특허 기간 만기 이전이라도 발명자나 특허 보유자가 특허유지비의 지불을 중지하는 경우 특허가 만기가 될 수 있다) 특허 보유자는 발명의 사용에 대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즉 발명에 대한 특허 보유자의 독점권은 중지되며 그 발명은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상표

상표는 재화나 서비스의 원천을 밝혀주는, 구별이 가능한 이름, 로고 혹은 기호¹⁹⁾를 말한다. 소비자들은 상표를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가 생산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상표는 재화나 서비스가 유통될 때 또는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할 때 혼란을 막음으로써 상표의 소유자를 보호한다. 보호기간은 다양하지만 상업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록 및 갱신 과정을 통해 무기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허와 상표를 합쳐서 “산업재산”으로 통칭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 및 인접권

저작권은 문학적, 예술작 작품에 대해 창조자에게 주는 일련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창조자들과 이들의 상속인들은 합의된 조건하에서 그 작품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줄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작품의 창조자는 다음 사항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²⁰⁾

- 인쇄 간행물이나 음반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복제
- 연극이나 뮤지컬 등 공개적인 공연
-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등을 통한 방송
- 다른 언어로 번역, 혹은 소설을 극본으로 바꾸는 등 각색

저작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도, 기술 도면 등 일반적으로 비예술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작품은 물론이고 그림, 음악, 시, 연극, 책, 건축물, 안무 등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예술적 작품에 적용된다.

인접권은 지난 50여년간 저작권의 “주변에서” 발전해 온 권리로서 공연 속에서의 공연자의 권리, 녹음 시 사운드 레코딩 프로듀서의 권리, 방송에서 방송 담당자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19) 상표의 기원은 장인이 자신들의 서명이나 표장을 예술적, 혹은 실용적 제품에 복제했던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표장을 사용하는 관행은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의 상표 등록 시스템으로 변모했다.

20) 창작자 혹은 저작권의 소유자는 법원에서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소유자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사용 (종종 해적판이라고도 불림)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얻어낼 수 있고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창조적인 작품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유통, 커뮤니케이션, 전파를 위한 재정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출판, 녹음 및 영화 등) 그러므로 창작자들이 (일시불이건 로열티 형태이건) 대가를 받고 포장, 마케팅 또는 유통시킬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파는 경우가 종종 있다. WIPO의 관련 조약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권리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저자가 생존해 있는 기간에서부터 사후 50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한이 70년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는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작품을 변경하여 원작자의 명성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



제2장

경제 성장의 과정

왜 어떤 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은지, 다시 말해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수년간 노력해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에 관한 여러 이론 및 모형이 제시되어 왔다. 아마도 경제의 역사와 새로운 성장이론을 합치면, 이를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더욱 완성된 형태로 기술적 변화를 조망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²¹⁾

기술과 지식이 최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²²⁾ 이 장에서는, 지난 50년간 제시되고 논의되었던 경제성장이론 몇 가지를 소개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지식의 관계 (혹은 크게 봐서 경제성장과 기술의 관계)를 다루도록 한다. 그리고 지식의 창조를 용이하게 하고, 최근의 기술 혁명 및 점점 정교해지는 “하드”한 산업과 “소프트”한 산업이 주목을 받게 하는데 있어서 지식재산 (특히 특허)이 하는 역할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지식재산을 신경제의 신데렐라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기업 법무부서의 먼지 쌓이고 케케묵은 사무실에서 칙칙하지만 유용한 하녀로서 갇혀 있다가 세계화 및 기술혁신이라는 왕자가 등장해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밝히고 일약 스타로 만든 다음 유혹적인 매력을 부여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였으며,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다거나 주식시장에 파문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지식재산 문제가 주요 뉴스거리로 떠올랐고 기업의 전략에 있어서도 주요한 요소로 등장했으며 기업의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고전적 이론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마르크스 등 고전적인 경제학자들의 시대에는 자본이 성장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로 시각은 달랐지만 이들은 자본과 기술 발전

21) Paul M. Romer, "Why, Indeed, in America? Theory, History, and the Origins of Modern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W5443 (1996년 1월); American Economic Review 86, No. 2 (1996년 5월): 202-206

22) 경제성장은 “순수 국산 제품의 실질적 수준의 증가”로 정의될 수 있다. 그 측정치가 어떤 제품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또한 경제성장의 이론은 장기간의 이론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David W. Pearce, ed., The MIT Dictionary of Modern Economics, 제 4판. (Cambridge, MA: MIT Press, 1992)

이 경제 성장의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는 발달된 기술은 노동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분업은 발명을 촉진하여 그 결과 기술적인 진보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기술적 진보가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신념에도 불구하고 고전적인 경제학자들, 특히 리카르도와 맬서스같은 학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가 노동의 생산성을 앞지르게 되고 수확체감의 법칙²³⁾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즉, 수확체감의 법칙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논리적으로 무한한 성장은 없으며 성장은 일정 시점에는 감소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도넬라 메도우스는 “성장의 한계²⁴⁾”에서, 무한한 성장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무한한 성장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자원을 공급하는 지구를 고갈시키고 결국은 멸종시킴으로써 인류를 전멸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세계 인구 폭발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자원공급이 세계 인구 증가를 지탱시킬 수 있지만 자원은 줄어든다는 비관주의가 팽배하였다.

● 두 개의 학파

이러한 초기의 경제학자들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 기술의 역할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시한 통찰력은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지난 세기에 발달했던 성장 이론의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은 외생적 성장이론과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알려진 두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도표 2.1 참조) 두 이론 모두 기술이 성장의 동력임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성장의 요인으로서 기술진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 가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²⁵⁾

내생적 성장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기술적인 변화는 새로운 자본에 포함된다. 기술의 변화는 앞선 경제상황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은 시스

23)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변수의 양이 증가하고 다른 변수 (예를 들어 토지)는 고정되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변수의 한계량이, 나중에는 평균 수확량이 줄어든다.

24) Donella H. Meadows, Dennis L. Meadows, Jorgen Randers, The Limits to Growth: A Report for the Club of Rome's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New York: Universe Books, 1972).

25) 다른 성장 모형을 보려면 Gonçalo L. Fonseca와 Leanne J. Ussher의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참조. <http://cepa.newschool.edu/het/hom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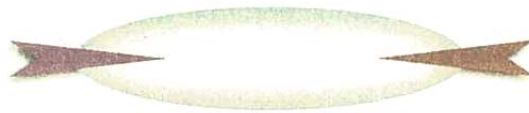
템, 즉 주로 국가 내에서 유래되며 기술진보는 내생적 요인으로 간주된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국가 성장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²⁶⁾ 교육, OJT, 세계시장을 겨냥한 신기술의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다.

외생적 성장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생산 과정에서 노동 및 자본의 투입을 그대로 두고 기술만 변화했을 때 생산량이 증대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과 자본은 똑같은 양을 사용한다고 해도 기술이 진보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기술 진보가 발생하는 특정 전송 메커니즘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진보는 “하늘의 은총(Manna from heaven)”처럼 뚝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기술은 외생적 요인이다.

[도표 2.1] 성장 이론의 두 모형



Endogenous: Internal Power
내생적 성장이론 : 내부적 힘



Exogenous: “Manna From Heaven”
외생적성장이론 : “하늘의 은총”

다음에 논의될 요세프 A. 슈페터의 저서에서는 내생적 성장 이론가들에게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저서는 슈페터가 기술적 진보를 내생적 과정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❶ 창조적 파괴를 위한 혁신

슈페터는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중점을 둔 성장 이론을 개발했다. 그는 역동적인 경제는 평형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혁신에 의해 끊임없이 혼란을 겪는 것으로

26) Gladys We, “What is Endogenous Growth Theory?” (1994) <http://cepa.newschool.edu/het/home.html>

보았다.²⁷⁾ 기업가들은, 그것이 새로운 제품이건 새로운 기술이건 간에 기본적인 혁신을 활용하여 경제 혁신으로 변모시켰다. 발명은, 기업가들이 관여하여 운영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마케팅을 하기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업가들은 이윤을 창출하는 가능성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새로운 혁신을 모방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들 때문에 기업가는 이윤이 줄어들게 되지만, 어쨌든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의 붐으로 이어지게 된다.²⁸⁾ 쉘페터가 경제 발전에는 몇 가지 요인이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윤을 향한 기업가적 열정이야말로 대부분의 혁신을 가져온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쉘페터는 어느 정도의 독점은 기업가가 계속해서 혁신을 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기업가들의 쇠락과 새로운 경제기구의 출현을 예언하면서 혁신과 연구개발이 대기업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보았다.²⁹⁾ 이러한 결론으로 인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 유형의 쉘페터를 생각했다. 쉘페터 I는 기업가가 기술적 진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었고, 쉘페터 II는 대기업이 과학적, 기술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었다.³⁰⁾ 쉘페터 II에 따르면 대규모의 독점적 기업들은 복잡한 기술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진보의 주된 동력이며 그와 동시에 창조적 파괴 (즉, 열등한 기술을 대체하는 혁신)라는 것에 의해 위협받기도 한다.

최근 윌리엄 바운몰 등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기업가의 역할을 성장 과정에 도입하려고 함으로써 쉘페터의 작업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들은, 발명가들을 격려하고, 혁신을 적용하고, 이를 경제에 도입하고, 제품을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27) Joseph A.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초판은 1911년 독일에서 발행.

28) 혼란을 겪는 기술과 창조적인 파괴의 예는 다양한 형태의 메모리 디스크 개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Clayton M. Christensen의 *The Innovator's Dilemma*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7): 제 2장 참조.

29)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2)

30) 어떤 경제학자들은 쉘페터를 이렇게 두 유형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Richard N. Langlois의 "Schumpeter and the Obsolescence of the Entrepreneur" (1987년 6월 21일 보스턴 경제학의 역사 학회 연차 총회에서 발표된 논문) 참조. <http://www.ucc.uconn.edu/~LANGLOIS/SCHUMPET.HTM,L>

마케팅하는데 있어서 기업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식재산 시스템을 꼽았다.³¹⁾

● 기술적인 진보 - 경제의 중요한 변수

1950년대 로버트 솔로우를 위시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변수로서 기술적 진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솔로우는, 자본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주된 요인으로 보았던 선배 신고전주의 학자들과는 달리 1909년부터 1949년까지 미국의 GDP 자료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 기반하여 자본축적량의 증가가 기여하는 정도는 고용인 한 사람당 GDP 성장의 20퍼센트 미만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과 자본의 증가는 전체 GDP 성장의 절반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솔로우 오차(residual)로 알려진 나머지 절반은 기술적인 진보의 결과라고 그는 결론지었다.³²⁾

솔로우는 외생적 변수로서 기술적인 발전을 자신의 성장 모형에 도입했으며 경제학자들이 한 국가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기술적 진보가 기여하는 바를 인식하는 방법을 바꾸었다. 그의 연구는 이후 에드워드 데니슨의 연구로 뒷받침되었는데, 데니슨은 1929년부터 1957년까지 미국 1인당 소득의 증가분 중 40퍼센트는 “지식의 발전” 덕택이라고 결론내렸다.³³⁾ 오늘날에는 이 수치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인 빠른 혁신 덕분에 미 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이 10년전만 해도 존재도 없던 업계에서 창출되고 있다.³⁴⁾

기본적으로 솔로우 모형 (도표 2.2 참조)은 생산, 자본, 노동, 지식이라는 네가지 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모형은 자본, 노동, 지식이 어떻게 합쳐져서 일정 기간동안 경제의 성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수준의 생산량을 산출해 내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모형은, 기술적인 진보는 지식의 양이 증가했을 때에 발생하며 생산 함수는 자본과 효과적인 노동에 관련하여 수확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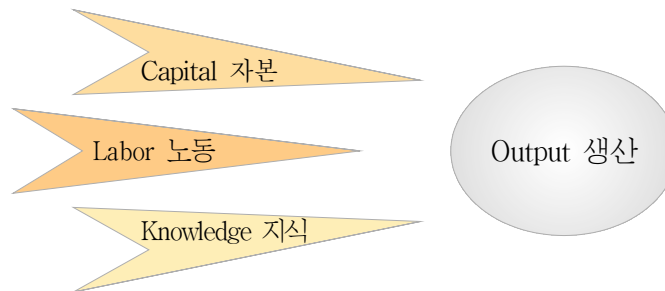
31) F.W. Rushing과 M.A. Thompson의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4 No. 3 (1996년 9월): 267-285

32) R.G. Lipsey와 K.A. Chrystal의 An Introduction to Positive Economics, 8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637

33) Edward Denison,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lternative Before Us (New York: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1962).

34) J. Bradford De Long, “A Short Review of Economic Growth: Theories and Policies” 사전 원고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와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6), http://econ161.berkeley.edu/Econ_Articles/ACCF_Growth/Growth_ACCF4.html

[도표 2.2] 솔로우 모형



솔로우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자본, 노동, 기술발전의 증가율에 달려 있다. 솔로우는, 경제 전체 산출량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거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 경제는 성장한다고 믿었고 이를 증명하려 애썼다. 기술발전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소였다. 성장은 내부 경제의 상황과는 별 관련이 없고 과학기술의 발전도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즉, 경제정책)과는 별 관련이 없었다.³⁵⁾ 다시 말하면 기술 발전을 외생적 변수로 취급한다는 것은, 경제정책의 시행이 기술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이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했다. 그런 이유로 솔로우 모델에서 기술이 어디에서 유래되는지 정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솔로우 모델에서는 단지 기술발전이 언제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뿐이었다.³⁶⁾ 솔로우 모델에 기술발전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기술발전 속도가 더 빠른 나라는 (그래서 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생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및 소비 증가 측면에서 생활수준 상승문제에 관련하여 자신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솔로우는 기술 발전이 외생적 변수이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가정을 도입했다. 이러한 가정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스러운 증가율은 생물학적인 인구증가율뿐 아니라 기술발전율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노동이라는 것이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 정책은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³⁷⁾ 게다가 신고전주의 접근방식에서는

35) J. Bradford De Long, "A Short Review of Economic Growth: Theories and Policies," 초고 (버클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와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6년) http://econ161.berkeley.edu/Econ_Articles/ACCF_Growth/Growth_ACCF4.html

36) Charles I. Jones, Introduction to Economic Growth (New York: W. W. Norton & Co. 1997년)

37) 하지만 로버트 솔로우는 기술발전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경제에 내생적이라고 설명했고 특히 시스템은 더 많은 자원을 신제품 및 새로운 프로세스를 위한 연구로 끌어 모으는데 사용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보았다. 로버트 솔로우 "Perspectives in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 (1994년 겨울호): 45-54.

경쟁적인 행동, 평형관계, 이윤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노동비와 자본의 축적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⁸⁾

❶ 1980년대의 새로운 내생적 성장 이론들

1980년대, 몇몇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³⁹⁾ 새로운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도 알려진 새로운 성장 이론이 등장하여 기술발전은 내생적 변수이며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장기적 성장률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의 보호, 세제, 법과 법령의 유지,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폴 로머는 지식의 축적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보는 모델을 도입했다.⁴⁰⁾ 로머의 논문은 기술발전이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에 관한 논쟁에 다시 불을 댕겼다. 그의 모델은 독점적인 경쟁 환경을 가정하고 있으며 R&D 활동 및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1인당 소득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솔로우와 마찬가지로 로머도 노동, 자본, 기술, 생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앞의 세 가지 변수가 일정기간동안 어떻게 합쳐져서 산출량을 내는가에 주목했다. 저개발국이 기존의 기술발전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솔로우 모델이 직면했던 역설을 피하기 위해 로머는 산업 기술 발전에는 통합된 이윤 위주의 활동이 필요하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산출한다고 보았다. 첫째, 제품에 들어가는 특정한 기술적 특징으로서 생산가능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어서 경쟁업체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둘째, 이러한 특징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⁴¹⁾ 지식 창출에 관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배타성의 원칙이 발동되어야 한다. 로머에 따르면 다른 이들을 배타하는데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지식을 비밀에 부치고 둘째 효과적인 지식재산법을 발효시키는 것이다.

38) Sinead Walsh, "Endogenous Growth Theory"
<http://www.economics.nuigalway.ie/students/walshsinead/page03.html>

39) Nicholas Klador (1957년), Kenneth Arrow (1962년), Richard Nelson과 Sidney Winter (1982년)

40) Paul M. Romer, "Increasing Returns and Long 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1986년 10월): 1002-1037, Gladys We, "What is Endogenous Growth Theory?"

41) F.M. Scherer, New Perspectives on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로머는 국가가 성장을 장려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을 써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물리적인 자본 축적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에의 투자를 장려한다.
- 총 인적 자본의 축적을 보조한다.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그로스만과 헬프만⁴²⁾은 기계, 비행기, 합성 화학, 금속학, 반도체 등 몇몇 산업에서 이루어진 연구자료를 참조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신기술에의 투자의 이면에는 이윤을 낼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었다. 그로스만과 헬프만은 이러한 투자의 수익성을 결정하여 기술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법적, 제도적, 경제적 환경이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내생적 성장의 여러 모델이 소개되었는데, 국가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을 외생적 성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1990년대 지식재산의 역할을 깨닫게 된 세계

1990년 일부 부유한 국가가 이룬 경제발전을 들여다보면 첫째, 빠른 지식 창출 및 신지식관리관행의 채택으로부터 정책의 변화가 생겨났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신기술 등장 때문에 생겨난 변화를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새로운 패턴의 세계무역의 결과 중 하나는, 일부 선진국에서 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무역 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무역법과 지식재산 정책간의 조심스러운 관계가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다.⁴³⁾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TRIPS 협정이 우루과이 라운드하의 다자간 무역 협상의 틀에서 협의사항의 하나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 협정은 집행 및 국경 정책을 포함하여 선진

42) G. M. Grossman과 E. Helpman "Endogenous Innovation in the Theory of Grow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 No. 1 (1994년 겨울호):27

43) Carsten Fink, Paper on General Trends (1998년 4월 27일), 지식재산권과 경제발전에 관한 전자 컨퍼런스, 1998년 4월 27일 - 5월 15일. 세계은행 TechNet, 세계은행 경제발전연구소, WTO에서 개최. <http://www.vita.org/technet/iprs> (이하 "지식재산권 및 경제발전"으로 통칭)

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효력을 갖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수립했다.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각국은 지식재산 체계에 적응하거나 때로는 이를 비판하게 되었다. 이러한 총체적인 기술 혁명은 많은 분야를 변화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 기술, 생명의학 연구 및 신약 개발, 디지털 기술, 고성능 재료, 인공지능, 사이버 세계에서 온라인 마케팅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지식재산 보호를 생명공학에 적용하고 사이버 상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하게 되면서 여러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생명공학 기술의 경우 유전자 공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면서 농업과 생명공학 연구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농업은 전통적으로 지식재산의 연관성이 제한적인 분야였는데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공공부문 연구소에 의해 수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은 점점 민간분야에서 주도하고 지식재산에의 의존도도 커지고 있다. 거기다 유전자가 풍부한 개도국에서 조달한 생명공학 또는 유전공학 연구 재료를 사용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⁴⁴⁾

인터넷에서 보는 것처럼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결합시켜 적용하면서 지식재산체계에 또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기만 하면 전세계 수많은 웹사이트로부터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익명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⁴⁵⁾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정보 제공자와 콘텐츠 권리 보유자간에 책임의 범위와 정도를 더욱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지식재산 시스템이 지식 경제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업계와 정부의 정책 입안자, 학자, 연구원들에게 어떠한 흥미로운 과제를 던져주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 경제 성장 및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통계

일부 통계자료를 보면 경제성장, 연구개발, 지식재산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위에서

44) Fred Abbot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45) 예를 들어 MP3 압축 소프트웨어와 파일 셰어링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논의한 대로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과정이 두가지 주요 원천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설명해왔다. 다시 말해 생산 요소, 즉 물리적인 자본과 노동 (혹은 인적자본), 그리고 기술이 그것이다. 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경제적 성과는 성장의 두 원천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노동과 물리적 자본 및 기술의 상대적인 비율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⁴⁶⁾

지식재산이 인적 자본량, 기술 변화의 속도와 방향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론해 왔다.⁴⁷⁾ 최근 연구자료를 보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특허 출원 건수의 증가가 지식활동 증가에 맞춰 발생하고 (표 2.3 참조)⁴⁸⁾ 심지어 특허 관련 통계가 국가경제의 강점 또는 취약점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표 2.3] 미국의 부문별 특허 증가 (1982년 - 1996년)⁴⁹⁾

부 분	연간 특허 수 (대략)		증가율
	1982	1996	
재료	250	1,200	333%
정보기술	4,000	16,000	305%
보건	2,000	4,700	189%
자동차	1,300	2,700	105%
총 미국 특허	58,000	110,000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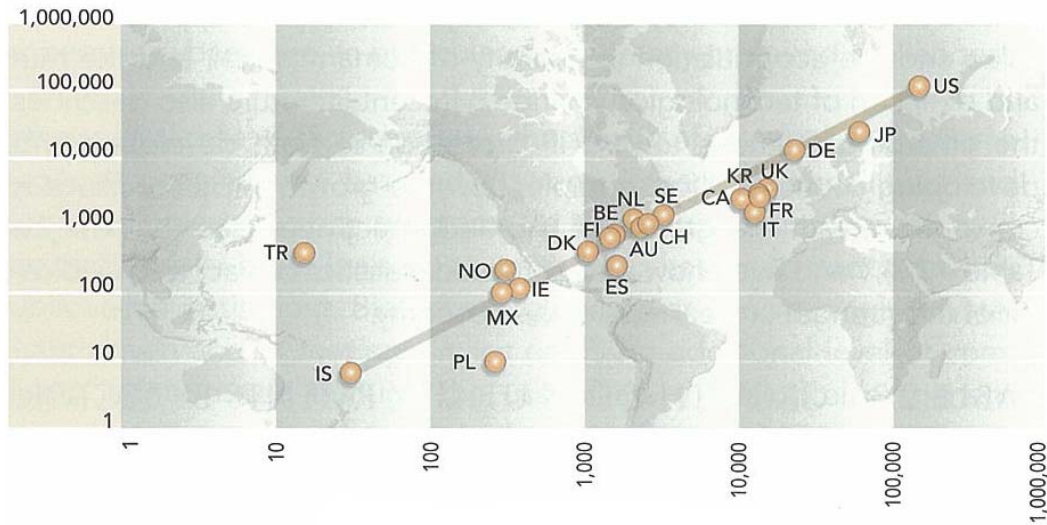
1990년대, 산업 및 과학 분야 연구개발의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적 인프라의 중요한 요소가 지식시스템임을 깨달은 신흥경제국의 정책 입안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는 OECD 국가의 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패턴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자료를 보면 연구개발 비용의 수준과 특허활동의 수준간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도표 2.4 참조)

46) 솔로우의 성장 모델 “Technical Change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s”와 로머의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참조

47) Fink,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48) 미국 상무부의 1998년 자료 Global Patenting Trends in Technological Sectors 참조

49) 출처: 1998년 미 상무부 자료. 생명재료, 초고온 전도체, 어드밴스드 세라믹, 합금, 화합물, 다이아몬드 박막 필름, 멤브레인, 셀렉티드 폴리머 등과 관련된 재료 부문 특허. 디지털, 광학 및 아날로그 컴퓨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 및 응용과 관련된 정보기술 부문 특허. 약물, 약품 및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보건부문 특허. 엔진,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핸들 및 타이어, 차체 및 샤시, 승차감 및 안정성, 오염물질 컨트롤 및 자동차 제조기술과 관련된 자동차 부문 특허.

[도표 2.4] 미국의 기업 연구개발 비용과 특허 출원의 관계 (1997년)⁵⁰⁾

Business R&D expenditures (US\$mill.) 기업 연구개발 비용 (단위: 미화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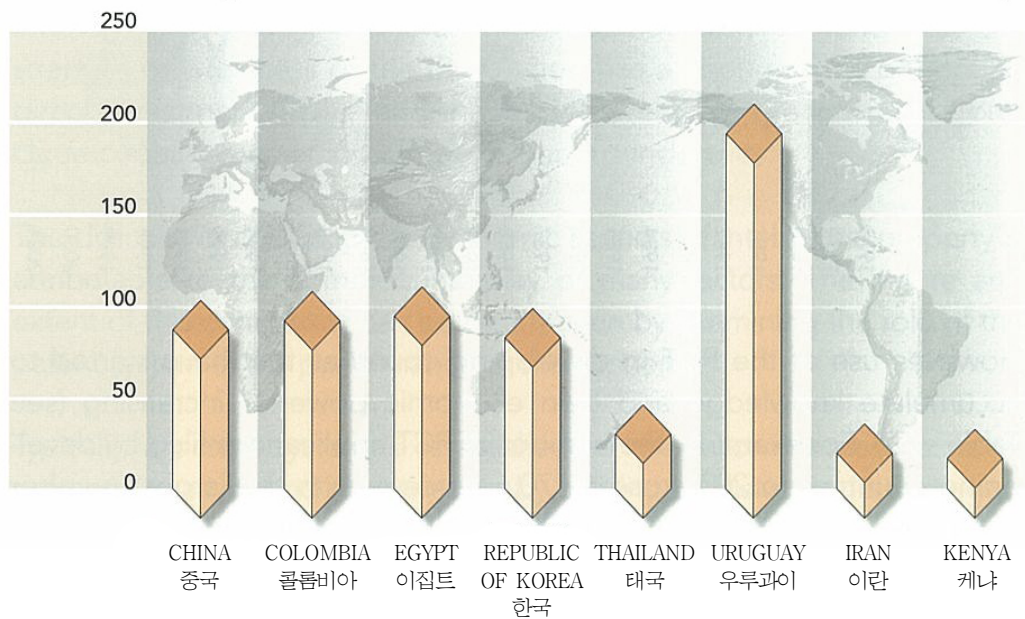
알려두기: AU (호주), BE (벨기에), CA (캐나다), CH (스위스), DE (독일), DK (덴마크), ES (스페인), FI (핀란드), IE (아일랜드), IS (아이슬란드), IT (이탈리아), JP (일본), KR (한국), MX (멕시코), NL (네덜란드), NO (노르웨이), PL (폴란드), SE (스웨덴), TR (터키), UK (영국), US (미국)

지식재산의 영향은 지식집약 산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GNP에서 지식집약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2년 21퍼센트에서 1995년 27퍼센트로 증가했다). 1990년대 WTO 설립 이후 새로운 세계 무역 체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특히 첨단 기술 및 지식 집약산업 부문에서 지식재산 보호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기업이 자사의 발명품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도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특허 출원율이 매우 낮았던 개도국에서도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도표 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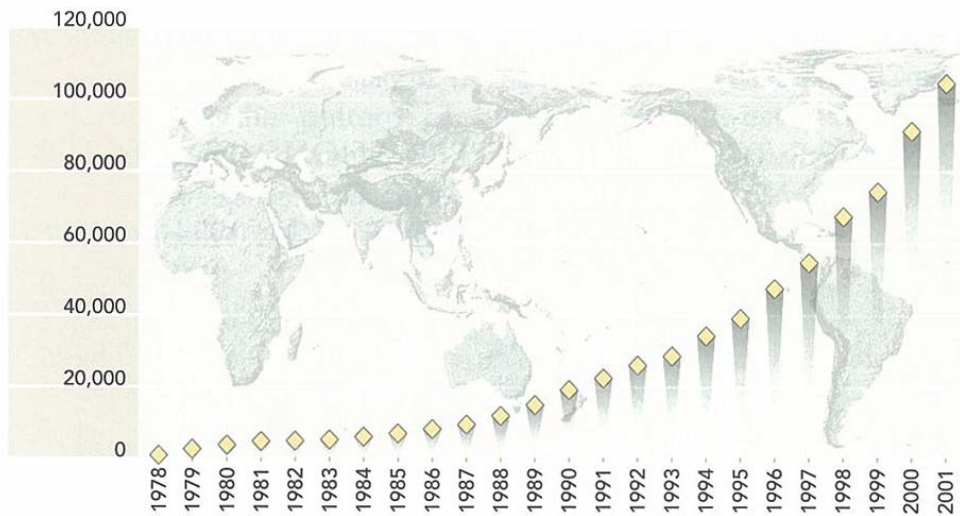
50) 출처: OECD 및 미국 특허 상표청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도표 2.5] 일부 개도국에서의 총 특허출원 증가율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증가율)



특허출원 증가가 특히 두드러지는 곳은 일본, 미국과 유럽이다. 일본의 경우 특허 등록 건수가 백만건에 도달하는데 95년이 걸렸는데 2백만건에 도달하는 데에는 불과 1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WIPO가 관리하는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하의 국제 출원도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표 2.6 참조) PCT는 2002년 8월 현재 117개국이 회원으로 있다. WIPO는 2001년 10만3천건 이상의 PCT 출원을 접수했는데 이는 2000년에 비해 14.3 퍼센트가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2001년 전체 출원의 38.5퍼센트), 독일 (13.1퍼센트), 일본 (11.4퍼센트), 영국 (6퍼센트), 프랑스 (4.4퍼센트)는 11년 연속 시스템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명단에 올라있다.

[도표 2.6] 1978년 이래 PCT 출원 건수 증가



그러나 지식을 축적하고 경제력을 획득하기 시작한 개도국에서의 PCT이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표 2.7 참조) 예를 들어 2001년 개발도상국의 PCT 출원 건수는 70.6 퍼센트 증가했고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다. 2000년 통계와 비교하여 특히 많이 증가한 나라는 중국 (188퍼센트), 인도 (103퍼센트), 한국 (53퍼센트)이다.

[표 2.7] 개발도상국의 PCT 출원 건수

국가	2000	2001	증가율
브라질	161	193	20%
중국	579	1670	188%
인도	156	316	103%
멕시코	71	107	51%
한국	1514	2318	53%
싱가폴	225	271	20%
남아공	386	418	8%

경제발전에 대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관해 나와 있는 자료는 아직 제한적이다. 현재 지식재산 보호의 경제적 대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다.⁵¹⁾ 지식재산 보호의 효과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분리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식재산이 하는 역할을 분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⁵²⁾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은, 업계별 국가별 변수를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⁵³⁾ 또 어떤 학자들은 지식재산 상황의 강점 혹은 약점이 해외 직접 투자⁵⁴⁾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지식보호 수준이 낮으면 다양한 산업에 대한 특정 유형의 투자를 막는다고 본다.⁵⁵⁾

지식재산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속성과 정도는 경제성과에서 특허 시스템이 수행하는 역할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다. 첫째, 발명에 들어간 연구개발비를 회수하도록 하기 위해 배타적인 소유권과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해 줌으로써 창의력을 장려하고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 둘째, 발명을 하고 이를 마케팅 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새로운 발명품을 상업화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셋째, 다른 연구개발과 사회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 특허를 출원하도록 하고 등록해 줌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해. 위의 세 가지 이유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보다는 선진국에 좀 더 적합한 것 같다. 이는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의 창의력 및 발명을 둘러싼 수많은 요인 때문인데, “시골 지역의 발명품”이나 전통적인 지식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지식재산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이다.⁵⁶⁾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원된 특허의 대부분이 선진국에

51) Keith E. Mask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국제경제연구소, 2000년 8월)

52) Abbot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53) 32)와 같은 책에서 Abbot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허가 제약 업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자동차 업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도 있다. 특허 보호가 이제 막 산업화된 국가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 개발국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다.

54) Mask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Global Economy*, 표 4.9. 126

55) 34)와 같은 책 표 4.10. 128.

56) Jayashree Wattal의 이메일 토론 회의록인 (1998년 4월 29일)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에서는 특허 보호와 저소득 국가의 연관성을 약화시키는 몇 가지 조건을 밝히고 있다. 첫째, “보호할만한” 새로운 혹은 독창적인 아이디어 부재. 둘째, 지식재산, 특히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정직한 또는 공정한 상거래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 혹은 요구 부재 셋째, 저소득 국가의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선진국의 전통적인 지식재산 체제에 맞지 않음.

있는 외국인들이 신청한 것이며⁵⁷⁾ 국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들은 여러 분야에서 자원부족 및 다른 요인 (연구자료나 시설, 원형화 가능성에의 접근 제한, 관련 기술 및 경영 스킬 부족, 조직화된 시장 부재 등)으로 인해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시스템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러한 요인 때문에 혁신을 위한 경제적 보상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본 투자도 외국인 소유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자본 투자가 외국인 소유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외국기업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⁵⁸⁾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러한 요소들은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편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 시스템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실용적이고 긍정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특허 정보의 활발한 사용을 통해 기술 이전 및 특허 라이선싱을 용이하게 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4장 참조) 게다가 제조회사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낮은 비용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⁵⁹⁾ 여러 측면에서 특허 시스템은 원천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도입 또는 이전하는데 있어서 보호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허 활동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에서 완전한 특허보호없이 특정 발명을 사용하는 위험을 대강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하기도 한다. 국내 특허법의 수준은 정부가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과 혁신 모두를 장려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특허 시스템이 수행하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 지식재산과 투자

지금까지 경제학과 지식재산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를 충분히 다룬 경제학자는 많지 않다. 그나마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학자들은 지식재산과 혁신, 발명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어떤 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⁶⁰⁾ 많은 학자들은

57) 개발도상국에 출원되는 특허의 95퍼센트 이상이 외국인에 의한 것이다. (1997년 WIPO 통계자료)

58) Fink,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59) Edwin Mansfiel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Direct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iscussion Paper No. 27,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95년)

60) Fritz Machlup의 "The Optimum Lag of Imitation Behind Innovation" (코펜하겐: Festschrift til Frederik Zeuthen, 1958년) 참조

강화된 지식재산 보호와 일부 국가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⁶¹⁾ 인도에서 1990년대 초반에 특허 및 상표 개혁을 도입한 이래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가파르게 상승한 것 (1999년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의 하락은 제외)이 그 증거가 된다. 브라질에서는 상승폭이 좀 더 컸는데 1996년 새로운 산업재산법이 도입되어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은 약품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20년간 특허를 보호하게 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연구개발투자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자들은 투자의 결과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제대로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⁶²⁾ 지식재산의 보호가 연구개발을 촉진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⁶³⁾ 게다가 지식재산의 보호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무역량을 늘리고 기술 이전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을 결합시키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1945년 이래로 기술발전의 속도가 상당부분 지식재산, 특히 특허 시스템과 맞물려 일어났고 이는 소위 “따라잡기”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었다.⁶⁴⁾

코넬 대학의 W. 레서 교수는 최근, WIPO의 의뢰를 받아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RIPS) 이후 시대,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국제경제활동과 지식재산의 관계를 연구했다. 레서 교수는 특히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와 두 개의 국제적 요소 즉 외국인 직접투자와 수입간의 관계에 주목했다. 레서 교수는 논문에서 “지식재산 보호 정도와 외국인 직접투자 및 수입의 관계는 긍정적이며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히며 “이전 연구자료의 맥락에서 보면 강력한 지식재산권은 개발도상국에 어느 정도의 이득을 제공한다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⁶⁵⁾

61) Tony Samuel “The Value of Protection”,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2000년 11월): 14 참조

62) J. Bradford De Long, “A Short Review of Economic Growth: Theories and Policies,” 초고 (버클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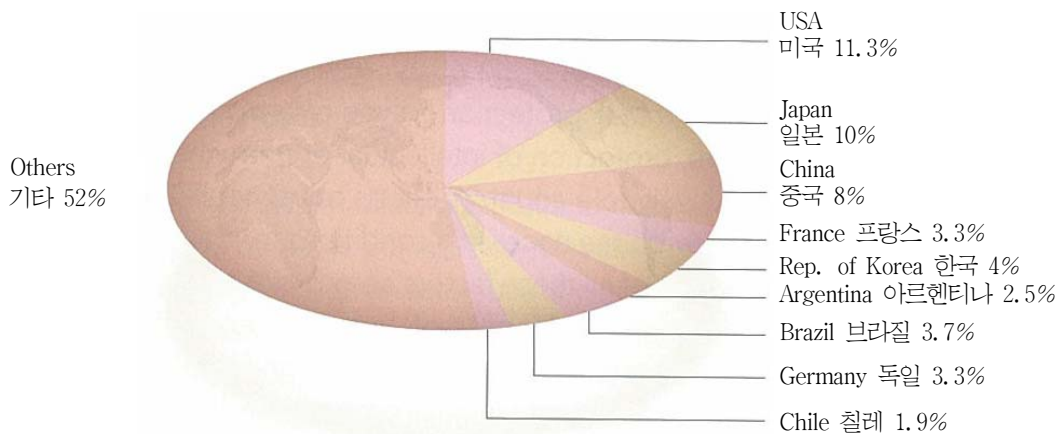
63) F.W. Rushing과 M.A. Thomps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4, No. 3 (1996년 9월): 267-285.

64) Ove Grandstrand, The Economics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Towards Intellectual Capitalism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lishing, 2000): 170.

65) W. Lesser, “The Effects of TRIPS-Mand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Economic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WIPO Paper, 2001년 4월, www.wipo.int/about-ip/en/index.html?wipo_content_frame=/about-ip/en/studies/index.html).

지식재산과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이익의 문제에 대하여는 이외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특히 지식재산에만 주목하면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상표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상표는 지식재산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민간 투자와 마케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상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여러 나라에서 수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도표 2.8 참조) 지식재산 책임자들은 자사의 상표가 갖고 있는 시장가치를 자사의 지식 무형자산으로 간주한다. (제5장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참조)

[도표 2.8] 총 등록된 상표의 국가별 비율 (1996년)



문화 산업 (문학, 음악, 미술 등)의 부가가치도 이와 유사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은 출판 부문에 관한 표2.9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당히 커졌다. 저작권 및 저자, 행위예술가, 사운드 레코딩 프로듀서, 방송인, 기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이들의 관련 권리가 얼마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등 저작권이 보호하는 작품이 무단복제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전 부문 매출 중 무단복제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음악의 경우 33퍼센트, 영상물은 50퍼센트, 소프트웨어는 43퍼센트에 달한다.

[표 2.9] 연간 출판량

국가	1991	1997	증감
아르헨티나	6,092	11,919	96%
브라질	13,893	51,460	270%
중국*	96,761	120,106	24%
인도	53,394	57,386	7%
이탈리아	40,142	45,844	14%
리투아니아	2,483	3,827	54%
필리핀	3,320**	3,770	14%
러시아	28,716	36,237	26%
스웨덴	11,866	13,210	11%
영국	67,704	100,029	48%

출처: 국제 출판업 협회

* 중국: 1993년, 1996년 자료

** 1992년 자료

독일, 일본, 미국의 해외 투자 및 기술이전의 양과 종류는 해당국가의 지식재산보호 시스템과 수준에 따라 크게 달랐다.⁶⁶⁾ 지식재산 보호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정량적 증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과 국제 무역간에는 긍정적인 쌍방향의 상호강화 관계가 존재한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 보호는 국제 거래를 강화시키고 국제 거래는 지식재산보호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⁶⁷⁾ 그뿐 아니라 장단기적 이익 및 소실도 고려해야 한다. 특허의 경우 논문에 따르면 “일단 어느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특허 보호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⁶⁸⁾ 최근 지식재산 보호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논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생명공학 및 유전자원, 변종 식물 및 농업 종사자의 권리에 대

66) Mansfiel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67) Mask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68) Mark A. Thompson과 Francis W. Rushing의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Patent Protection”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21 No. 2 (1996년 12월) 참조. David Gould와 William C. Gruben의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Economic Growth” 논문 94-09, 연방준비은행 달라스 지점 (1994년)에서는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을 상당부분 결정하며 개방된 국가일수록 그 영향력이 더욱 강력하다고 결론.

한 토론, 인간 유전자 지도 프로젝트, 유전 자원, 생태다양성, 전통적 지식, 민간전승 지식 및 지적, 상업적 활동의 기타 분야에 관한 특허논의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지식재산은 특히 유럽과 미국 지역 기업 규제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고 있다.⁶⁹⁾ 지식재산은 혁신 프로젝트나 제품 차별화에의 투자문제⁷⁰⁾, 인수합병 (사례 2.10 참조), 기술 협력, 제휴 및 라이선싱 등의 문제에 직면한 기업이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다.⁷¹⁾

[사례-2.10] 지식재산 관련 인수 및 합병

1997년 11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아마티 커뮤니케이션즈에 무려 3억9천5백만 달러를 지불했다. 아마티 커뮤니케이션즈는 스탠포드 대학의 시오피 교수가 설립한 작은 회사에 불과했다. 아마티 커뮤니케이션즈의 연간 매출과 재정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액수가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이 거래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렇다면 대규모의 반도체 기업이 실리콘밸리의 작은 벤처기업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불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아마티 커뮤니케이션즈는 Digital Subscriber Line (DSL) 기술에 25개의 주요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DSL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특허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25개의 특허 중에는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에서 DSL의 기준으로 채택한 차세대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마티 텔레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로 인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신기술에서 선두자리를 획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기술의 사용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빌려줌으로써 이윤도 얻게 된 것이다.

69) 특허와 병행수입에 관한 미국과 EC의 정책 참조.

http://www.ipmatters.net/features/000526_parallel.html
<http://www.cptech.org/ip/health/pi/>

70) Mask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71) 독일, 일본, 미국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화학 및 제약업체 중 40퍼센트 이상이, 어떤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보호는 너무 약해서 최신 기술이나 가장 효과적인 기술 라이선싱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Mansfiel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상표와 같은 다른 형태의 지식재산권의 보유 여부도 M&A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차 제조업체인 타타 티는 최근 영국의 테틀리 사를 인수했는데, 인수를 결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세계적인 브랜드와 세계적인 유통망을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테틀리 사를 인수함으로써 타타 티는 영업지역을 확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표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년간 M&A가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특히 2000년에는 무려 42%의 성장속도로 미화 2조3천억달러에 달하는 M&A가 있었다. 국내외에서 M&A가 활발히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규모의 경제와 신규시장에의 접근도 그 이유에 포함된다. 2000년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기보다는 기존의 회사를 인수합병하려는 이유 중 두 번째로 많이 꼽는 이유는 연구개발이나 기술적 노하우, 특허, 브랜드, 국내 허가 및 라이선스 보유, 공급망 및 유통망 등 전략적 자산이 필요해서이다.“

출처: 리베트와 클라인 “다락의 램프라트” 2000년 세계투자 보고서: “해외 인수합병 및 개발” UNCTAD 2000년

정부 지원 연구개발, 발명자 가족의 저축이나 다른 자원을 사용하여 자본 투자를 하도록 장려, 소위 “투자 엔젤⁷²⁾”의 참여를 촉진하는 일 등 혁신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영향은 그 자체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보기술, 통신, 생명공학 등 지식 주도적인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성장 정책으로서의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보호를 경제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산업 정책의 방법으로 보는

72) 신생 벤처기업을 개척하거나 막 생겨난 산업의 잠재력 및 기회를 활용하는데 관심이 있는 부유한 개인 (1998년 UNICE 연차 보고서 참조)

경우가 많다.⁷³⁾

개발도상국의 경우 두가지 요인이 기술 능력 획득 환경을 정의한다. 개발도상국들은 한편으로는 더욱 자유로운 무역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적 경향에 동참하고 외국 투자와 충분한 지식재산 보호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고 있다.⁷⁴⁾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기술지식의 양이 불과 20년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늘어났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⁷⁵⁾

어느 나라나 혁신의 능력을 지닌 영리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능력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서 지식재산 시스템은 특허 정보, 가장 최신의 기술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지식재산 시스템은 지식을 창출하는 국가의 능력이 조건이 더 좋은 다른 나라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나라의 국립대학에서 상업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발명을 했는데 이것이 특허출원 때문에 해외에 공개되었고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 의해 개발되었다. 왜냐하면 국립대학의 관계자들이 자국의 특허법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즉 자국보다는 해외에서 가치가 부가된다는 것이다.⁷⁶⁾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때로는 지식보호의 가용성과 힘에 의해 달라지기도 한다.⁷⁷⁾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기술과 사업 방법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원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벤처캐피탈 개발 분야에서 충분한 지식재산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소유권이나 통제력을 잃을까봐 벤처 파트너십을

73) 이 경우 “경제”는 광범위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신기술 및 다른 창조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사회 복지에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삶의 질이 상승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산업생산성, 교육기회, 기업의 성장, 보건, 빈곤퇴치 등에 미치는 영향 등등)

74)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Agreement)이 개도국의 지식재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레서의 “The Effects of TRIPS-Mand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Economic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참조.

75) Richard Nelson, 패널 디스커션 요약,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76) Sherwoo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77) Mansfiel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협약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개발품을 공개하지 않으려 들 것이다.⁷⁸⁾ 정부가 전통적으로 연구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분야인 농업분야의 경우 민간부문으로부터 투자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는 연구결과를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197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술적으로 앞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특히 특허가 연구개발 투자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⁷⁹⁾ 대부분의 최저개발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에서처럼 지식재산보호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업은, 낡고 특허기간이 지났거나 특허를 받지 않은 기술 솔루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발명 중 상당수는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술진보의 잠재력이 빛을 못 보고 묻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⁸⁰⁾ 이 주제에 관해 최근 열린 전자 컨퍼런스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개도국들이 자원 이전 협정을 통해 원자재를 계속 수출하도록 하는 것보다 수준 높은 지식재산보호를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며 이를 통해 생물자원이 개발되면서 국내 시장 가치가 높아진다는 발표를 세계은행에서 한 적이 있다.

● 빈곤국에서 지식재산의 가시성

도표 2.11은 한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른 경제 생산량의 차이 (GDP의 부가가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차이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다른 형태의 기술을 사용 및 개발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식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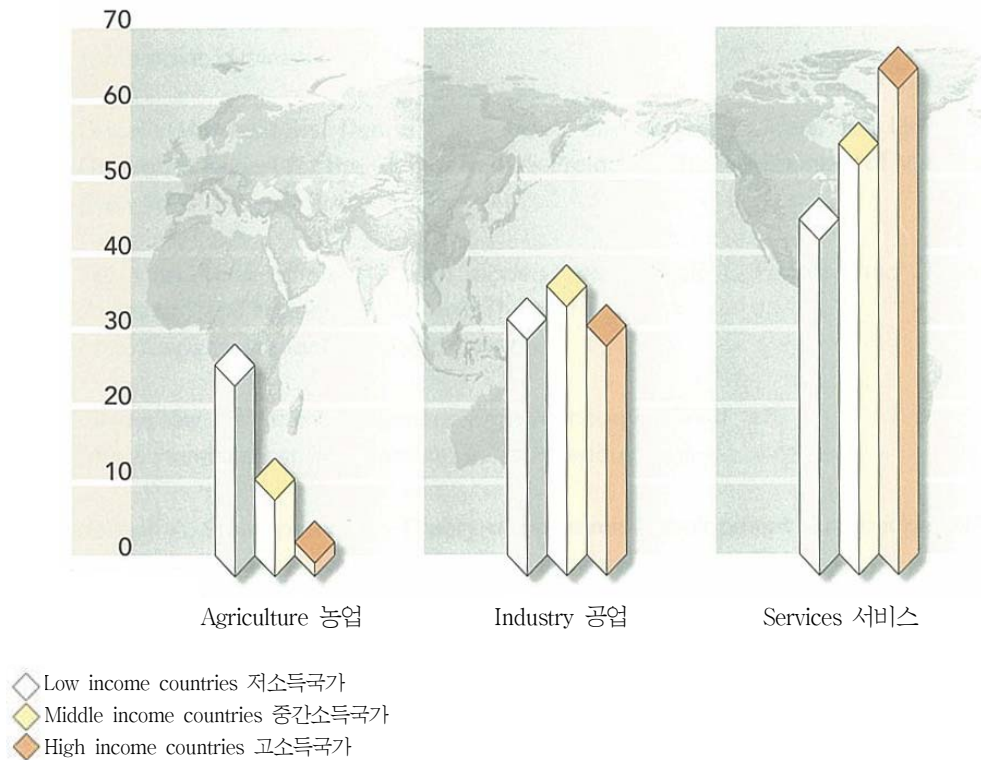
78) 독일-OECD 조인트 컨퍼런스 워크숍 II “Benchmarking Industry-Science Relationship” 참조 (2000년 10월 16-17일 베를린)

79) 레서의 “The Effects of TRIPS-Mand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Economic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도입부 참조.

www.wipo.int/about-ip/en/index.html?wipo_content_frame=/about-ip/en/studies/index.html

80) Sherwoo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도표 2.11] 소득집단 별 생산량 구조의 차이



Sourc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출처: 세계은행, 세계 개발 지표

제조업 부문에서는 지식재산 보호의 가장 큰 효과는 기계류 및 제조공정 현대화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국에서는 제조업 연관 경제 활동이 5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⁸¹⁾ 지식재산활동은 한 국가의 경제적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 체제가 혁신, 창의력,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가져다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인프라와 진보적인 정책뿐 아니라 적극적인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 국민들의 적극적이며 광범위한 인식 및 의지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4, 5, 6장에서는 지식재산, 구체적으로는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등의 분야가 어떻게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지 다루도록 한다.

81) Sherwoo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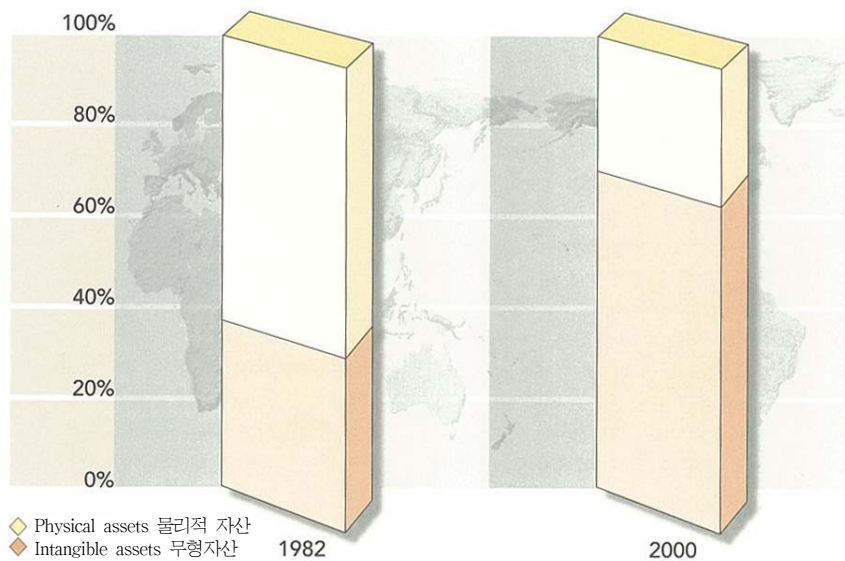
지식재산, 지식 및 부의 창출

이전에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이 경제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사용되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동력은 지식기반 자산이다.⁸²⁾

● 숨은 가치와 새로 발견한 부

지식재산이라는 자산은 기업의 활력과 향후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인정받고 있다. 1982년, 미국 기업 자산의 약 62퍼센트는 물리적 자산이었으나 2000년에 그 수치는 불과 30퍼센트로 줄어들었다. (도표 3.1 참조) 1990년대 초반 유럽에서는 무형자산이 총 자산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컨대 1992년 네덜란드에서는 무형자산이 총 공공/민간투자의 35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영국에서 나온 연구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기업의 가치 중 40퍼센트는 대차대조표에 드러나지 않는 무형자산이라고 한다.⁸³⁾ 지식재산은 무형자산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도표 3.1] 미국 기업의 총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⁸⁴⁾



82) Steven M.H. Wallman의 “In Pursuit of Intellectual Capital” 서문 Hidden Value: Profiting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Economy, ed. Bruce Berman (런던: Euromoney Publications PLC, 1999):9

83) Gordon V. Smith와 Russell L. Parr의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 2판 (뉴욕: John Wiley & Sons, 1994):117-119.

84) 출처: 브루킹스 연구소.

1993년에 총 284개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이 보고 기간 중 축적된 기업 지식의 45.2퍼센트를 차지했다. (여기서 지식은 문서로 고정된 지식처럼 성문화된 지식과 인간의 능력처럼 고정될 수 없는, 표현되지 않는 지식 모두를 포함한다)⁸⁵⁾

그러므로 지식재산이 주요 통화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아이디어의 경제가 예전의 굴뚝 경제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신경제에서는 지식의 가치를 창출하고 포착함으로써 부를 창출한다. 인간 문명의 역사를 보면 부는 물리적인 자산의 소유에 기반했다. 그러나 오늘날 패러다임은 바뀌었고 지식이 새로운 부가 되었다.

지식재산의 보호가 한 국가의 기술발전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미시적인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측정하기는 힘들었는데, 측정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지금까지 지식재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⁸⁶⁾

그러나 무형자산의 평가를 둘러싼 환경이 지난 10년간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최근의 발전, 그리고 지식자산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루도록 한다. 지식재산의 숨겨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많은 이들이 지식재산이 기업의 수익에 어떻게, 얼마나 많이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여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 무형자산, 지식재산 그리고 회계

지식재산의 숨겨진 가치를 깨닫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도 지식 도난에 대한 방어적인 보호로서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고 업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시장 혁신가로서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도구로서 자사의 특허를 관리하

85) 기구치 주니치와 이시이 야스유키의 “지식재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일본 지식재산 연구소 (1993년)

86) Russell L. Parr “Intangible Assets Dominate Hidden Corporate Value” in Hidden Value” Profiting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Economy, ed. Bruce Berman: 64.

며 사용하게 되었다.⁸⁷⁾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지식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자 기업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⁸⁸⁾ 주주들은 지식자산의 가치에 민감해지게 되었고 이를 기업의 수익 잠재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기업이 내부에서 잠자고 있는 혁신가를 깨우고, 혁신가 내부에서 잠자고 있는 기업가를 깨울 때에만 지식 창출이 경제적으로 의미를 지닌다.”라는 말이 있다. 세계화, 기술 발전, 그리고 인터넷은 기업가와 혁신가들에게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고, 양쪽 모두에게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발명과 마켓플레이스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야”할 필요성에 눈을 뜨게 하였다.⁸⁹⁾

신경제에서 혁신적인 사고는 능력만큼이나 귀중하다. 광범위하며 일반적인 정보를 창의적으로 관리하면 사업적인 아이디어는 가치가 부가된 지식으로서 섬뚱게 된다. 비즈니스 전략의 중심에 지식을 놓는 것이 전통적인 기업이나 신생 기업 모두에게 경쟁력있고 성공적이며 차별화된 기업으로 가는 열쇠인 경우가 많다. 지식자본은 혁신적인 지식 관리의 결과를 구현한다.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원천지식같은 기업 절차와 함께 기업의 무형자산 중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낸다.

경쟁력을 갖춘 현대의 경영진들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사용과, 근로자들의 혁신적인 사고와 지식 발굴을 장려하는 환경을 창출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예) 지식팀들 간의 능력 공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혁신의 전략적 선정, 지식자산의 평가)

신경제의 기업은 신뢰와 상생의 파트너십, 그리고 새로운 지식 창출과 사회를 위한 복지 창출의 균형에 기반한 안정적인 관계에 크게 의존한다. 지식재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영 어프로치는 지식자산을 교환하고 더욱 진보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긍정적인 지식재산의 평가는 특히 기술, 인수합병, B2B 시장에서 추진력이 된다. 또한 지식재산은 기업이 도움되는 브랜드 (상표, 도메인명 등)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브랜드야말로 인터넷 환경에서 인지

87) 회계법인인 PricewaterhouseCoopers는 상장된 미국기업의 총 시가인 7조 달러 중 3분의2가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88) Patrick H. Sullivan의 Value-Driven Intellectual Capital: How to Convert Intangible Corporate Assets into Market Value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0년) 참조.

89) S. K. Bijlani, WIPO 문서: WIPO/IP/MNL/00/3(b) (2000년 10월)

도와 신뢰를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식 근로자에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지식 자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근본적인 전략이다. 지식재산은, 지식근로자들의 활동이 내부 자산 창출에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보상하며 법적인 보호를 추구함으로써 이들에게 중요한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품과 서비스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업들은 지식자산을 전략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과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신속한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출원부터 하고 나중에 평가한다.”는 전술은 상업화의 가능성이 불명확한 자산에 적용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무형이며 측정 불능

어떤 회사건 지식자산을 비롯하여 유,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자산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윤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구현하지 못하는 기업은 수익 손실, 잘못된 포지셔닝, 시장가치 하락, 도산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⁹⁰⁾

일반회계기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에 따르면 자산은 (1) 유동자산, (2) 공장, 재산, 장비 (유형자산에 상응) (3) 기타 자산 (무형자산에 상응)으로 이루어진다. 회계사들이 오랫동안 무형자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긴 했지만⁹¹⁾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들은 “영업권”이라고 불리는 항목에 한꺼번에 기재되었다. 1960년대에 기업 인수합병의 물결이 일면서 무형자산 회계의 검토를 촉발시켰다. 1981년, 영국에서는 회사법을 제정하여 기업이 회계를 할 때 무형자산도 포함시키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1990년대가 되어서야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해 보다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경제와 비즈니스가 부가가치와 서비스 및 지식 집

90) Bruce Berman, ed. “The Emergence of an ‘Invisible’ Asset Class” Introduction to Hidden Value” Profiting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Economy: 12.

91) 1944년 12월 미 공인회계사회의 회계 절차 위원회에서는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24를 발간하여 영업권도 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에 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약적 산업에 초점을 맞춘 지난 10년간 무형자산 대 유형자산의 비율은 증가했다. 세계 시장 경쟁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전략적 제휴가 각광받게 되었고 세계적인 인수합병의 가치는,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1990년 미화 5천억 달러에서 2000년 3조5천억 달러로 계속해서 상승했다.⁹²⁾

❶ 지식자산의 가치

지식자산은 1990년대 기업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 신경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라고 불렸던 이유 중 하나는 낡은 회계방법으로는 신경제를 감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⁹³⁾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법안을 만들었다. 미국의 1993년 포괄재정조정법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에서는 무형자산을 몇가지 유형(예를 들어, 영업권, 계속기업가치, 고객명단, 특허, 저작권, 공식, 공정, 설계, 패턴, 노하우, 라이선스 등)으로 정의하고 기업이 이러한 자산의 비용을 상각하도록 했다.

무형자산에 대한 믿을만하고 널리 인정받는 회계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장부와 시가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통합 시가총액이 미화로 2조 천6백7십억달러인 영국 최대 기업 350개 사의 회계를 검토할 결과 통합 시가 총액 중 대차대조표의 총 자산은 6,030억 달러였으며, 무형자산은 389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통합시가총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사이에 미화 1조 5천억 달러 즉 72퍼센트의 설명되지 않은 차이가 있는 셈이다.⁹⁴⁾ 그에 따라 각국의 국내법이 발전하면서 이를 서로 조정하려는 지역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유럽 회계 협회는 1977년 설립 이래 유럽 지역의 학자들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이러한 시도는 무형자산의 개념 및 가치평가 문제를 다뤄왔다.⁹⁵⁾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독립적 민간 기구인 국제 회계기준 위원회 (International

92) 이코노미스트 (2001년 1월 25일호) "The Great Merger Wave Breaks"

93) Karen Lowry Miller, "A Run for the Money" 뉴스위크 (2001년 1월 29일호)

94) Thayne Forbes, "To Have and to Hold"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2000년 9월)

95) 이 주제에 관한 논의를 보려면 <http://www.eaa-online.org> 참조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⁹⁶⁾도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계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IASC는 국제 회계 기준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라고 불리는 일련의 공고를 통해서 기준을 발간하고 있다. 1998년에는 IASC에서 무형자산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IAS 38을 내놓았다.⁹⁷⁾ IAS 38은 광고, 교육, 창업, 연구개발 활동비용에 적용되고 있다. IAS 38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무형자산이 통제되어 기업의 영업권과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식별가능한 자산인 경우, 재무제표에서도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형자산은 효력이 있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 해야 한다. 무형자산을 밝힘으로써 이용자는 어떤 형태의 무형 자산이 재무제표에 나타났는지 이해하고 해당 연도의 자산 움직임을 알수 있게 된다.

일부 회계사들과 정부 당국에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지식재산의 전면적인 전략적 운영을 도입하는데 느린 행보를 보였다. 이는 아마도 많은 국가에서 경영책임의 한 부분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⁹⁸⁾ 그러나 자산의 공개 요건을 충족하려면 지식자산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산업의 여러 부문에 있는 기업들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고 아마 이것도 기업들이 지식재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⁹⁹⁾

● 평가 방법

지금까지 개발된 지식재산 평가 방법은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인 것이었다. 정성적 방법은 특정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점수나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정량적

96) IASC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전문 회계사 단체들이 만든 협약을 통해 1973년 설립되었다. IASC의 목적은 전세계 재무 보고를 위해 기업 및 여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회계 원칙에 통일을 기하는 것이다.

97) <http://www.iasc.org.uk>에서 지금까지 제안된 기준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98) 덴마크의 통상산업부, New Trends in Industrial Property Rights (코펜하겐: 1999년 통상산업부)

99) 업계에서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정부도 있다. 덴마크 특허상표청이 의뢰한 Ernst & Young과 Ementor Management Consulting의 Management and Valuation of Patents and Trademarks: Consultants' Analysis 참조. (코펜하겐: 덴마크 특허상표청, 1999년 12월), <http://www.dkpto.dk>. 1999년, 일본특허청에서는 특허관련 평가 지수를 발간. 여기에서는 특허를 평가하기 위해 A부터 E까지 다섯가지 순위를 매김으로써 정성적 접근방식을 제시.

방법은 가치에 대한 실제적인 수치를 매기는 것이다. 평가 방법은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¹⁰⁰⁾

(a) 비용 접근

내부적으로 지식자산을 창출하거나 외부의 출처로부터 지식자산을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자산의 향후 서비스 능력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돈의 액수를 나타냄으로써 미래의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가치는 감가상각된다.

(b) 소득 접근

소득 접근 방법은 자산이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방법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자산의 가치는 지식재산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순 경제적 이익의 현재 가치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접근 방법은 지식재산의 평가 방법 중 가장 신뢰할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 시장 접근

시장 접근 방법은 가장 직접적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가 기술이다. 이것은 시장에 있는 다른 이들의 평가에 대한 합의를 획득함으로써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를 측정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요건이 있다. 즉, 능동적인 공공시장의 존재와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의 교환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러한 조건은 충족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웹기반 특허 교환 시장이 부상하면서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다루도록 한다.

● 민영화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평가

민영화 문제 (국영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의 자산 이전으로 간단히 정의)는 지식재산 정책과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주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된다는 것은 최근들어 알려졌다.¹⁰¹⁾ 민영화에 관한 WIPO의 연구는 자문 위원회에서 수행했는데 지식자

100) Gordon V. Smith와 Russell L. Parr의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 3판 (뉴욕: John Wiley & Sons, 2000년):175, 215.

101) 민영화와 지식재산의 관계는, WIPO 34차 총회 (1999년 9월 20일-29일, 제네바)에서 승인한 Vision and Strategic Direction of WIPO (A/34/3)에 들어 있다. 이에 따라 WIPO에서는 민영화가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연구했다. 지식재산평가문제는 이러한 이슈중 하나로 부상했다.

산의 평가 문제가 민영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명백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분야로 규정하고 지식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실례를 보여주었다. 위원회는 기존의 국제 회계 기준과 평가 방법론이, 많은 국가에서, 특히 자유시장 원칙을 받아들이는 과도기에 있는 국가에서 경제에 큰 중요성을 지니는 지식자산을 포함하여 무형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건전한 토대를 제공해주는데 불충분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민영화와 지식재산에 관한 현재의 연구자료에는 겹쳐지는 바가 전혀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지식자산이 무형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한 기업의 가치와 전략적 가치의 측정에 있어서도 지식자산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위원회에 제시된 충격적인 수치 중 하나는 한 기업이 창출한 가치의 50-80퍼센트의 가치는 전통적인 물리적 자산이 아니라 지식자본에서 나온다는 주장이었는데 이는 경제 가치의 초점이 물리적 자본에서 무형, 지식자본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국적 기업들의 최근 전략적 특허 행태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특허는 애초에 의도한 대로 혁신을 보호한다는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사용료 및 경쟁사로부터의 보호 등을 통해 잠재적인 소득을 실현하고 심지어는 기업의 주요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소득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특허의 응용이 대단치 않을 수도 있는 경우에도 연구개발팀이 만들어낸 혁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을 개척해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존재를 공격적으로 밝히는 것이 사업적 이득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기업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특허를 가려내기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감사하는데 기업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¹⁰²⁾

상표와 같은 지식자산의 평가는 한 기업의 가치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2001년 인터브랜드 자료에 따르면 코카콜라, 디즈니, 포드사의 세계적인 상표 가치는 각각 기업 가치의 61, 54, 66 퍼센트를 차지했다. 액수로 따지면 각각 690억달러, 325억달러, 300억 달러에 해당된다.¹⁰³⁾ 약 10년전만해도 상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업은 드물었다.

102) WIPO 민영화에 관한 임시 권고 위원회 보고서 (2001년 4월), <http://wipo.int>

103) <http://www.interbrand.com>

❖ 마케팅 지식

1999년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지식재산 라이선싱 시작은 지난 10년간 급상승해 미화로 천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특허 정보는 지식재산의 상업화 가능성의 측정을 보조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부상하는 시장을 잘 보여주는 예가 IBM과 Internet Capital Group이 특허나 다른 지식재산을 평가, 구매, 판매, 라이선싱하기 위한 온라인 교류를 실시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동참한 일이다. IBM은 자사의 지식재산 네트워크, 즉 유럽, 일본, 미국 기업에 관한 무료 정보를 보여주는 콘텐츠 중심의 웹 사이트 자산을 제공했다.¹⁰⁴⁾ 특허 라이선싱을 위한 서비스와 가치가 부가된 특허평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몇몇 지식재산 정보 중개업체가 설립되었다.¹⁰⁵⁾ 최근 지식재산이 금융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식재산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주식, 옵션 및 기타 금융상품을 취급하듯 지식재산을 금융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¹⁰⁶⁾

❖ 부상하는 사이버 특허 시장

컨설팅 업체인 British Technology Group (BTG)에 따르면, 1999년에 세계 지식재산의 상업적 잠재력 중 불과 3퍼센트만이 실현되었다고 한다. 이는 총 3조 달러 중 천백억 달러만이 실현되었다는 얘기다. 이 천백억달러 중에서 불과 5억달러가량은 상당수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으로부터 나왔다. 오랫동안 특허량과 사용료 매출의 기준을 수립해온 IBM 한곳에서만 연간 사용료로 12억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자사의 특허나 상표, 기타 지식자산을 좀더 은밀하게 지키고 싶어한다.

“1년반 전에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에 15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그 중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쓰는 비율은 10퍼센트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P&G의 글로벌 라이선싱 및 외부 벤처 부문을 맡고 있는 제프 위드만 부사장의

104) <http://www.delphion.com>

105) <http://www.pl-x.com;WIPO> PCT 통계; “Corporate Finance” 이코노미스트 (2001년 1월 27일 호), “Corporate Secrets Up For Grabs at New Exchanges” CNN Interactive (2000년 11월 15일)

106) Intellectual Property Monetization, Nir Kossovsky,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에 관한 WIPO 제2차 국제 총회 (2001년 9월) <http://ecommerce.wipo.int/meetings/2001/conference/presentations/pdf/kossovsky.pdf>

말이다. 전세계적으로 2만7천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WIPO의 PCT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P&G는 지식재산에 대한 방침을 크게 바꿔서 이제는 자사의 모든 특허와 다른 기술을 라이선싱하고 판매하고 합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많은 기업들은 매출을 늘려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지식재산교환 사이트에 수상경력이 있는 R&D 비밀부터 회사 내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판매 혹은 라이선스 용으로 내놓고 있다. 구매자는 다른 기업의 연구 결과를 구입함으로써 연구개발비를 줄이려는 다른 대기업들이다.¹⁰⁷⁾ 특허 라이선스 거래소 (Patent & License Exchange)에서는 특허 평가를 위해 로버트 머토, 마이런 솔스, 피셔 블랙이 개발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옵션 이론에 기반한 산술적 모델을 사용한다.¹⁰⁸⁾ 이 모델은 채권자와 주주의 서로 다른 주장을 분석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B2B 마켓플레이스는 빠르고 효율적이며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이 방법이 아니면 빛도 못 봤을 발명을 이용한 매출을 창출해주고 있다고 한다.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지식 및 부의 창출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역할은 무형자산으로서 또는 기업세계에서 새롭게 현대적인 지식 자산으로서 지식재산을 평가하고 회계하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는 추진력이 되어 왔다. 지식재산은 새로운 지식의 상업적 구현, 부를 창출하는 도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지식재산을 경제적 재화로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식과 기술 시장에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새로운 지식 시장은 웹기반 기술과 가장 최신의 마케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시장에서 지식재산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지식재산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 현대의 IP 관리와 신경제

지식재산관리는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치

107) Cambridge, 메사추세츠에 본사를 두고 있는 Yet2.com, Pasadena,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The Patent & License Exchange를 포함해 수십곳의 중개업체들이 이러한 교환을 중개하고 있다. 2000년 11월,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Global Commerce and Communication은 발명, 상표, 특허를 사고파는 이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포럼인 NewIdeaTrade.com와 제휴했다.

108) <http://www.pl-x.com>

고 합작회사를 만들어내며 협력적인 연구개발 협정을 이끌어내고 라이선스 협상의 토대가 된다.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 가치를 고양시키고 상호 이득이 되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기업은 특정 기술 분야의 영향력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경쟁사들이 자사의 기준을 따르도록 만들게 되는 경우도 많다. 지식재산의 전략적 운용은 한 기업의 이윤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운용은 R&D와 시장 정보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매출을 늘리고 인수합병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라이선싱을 용이하게 한다.

지식재산은 한 기업의 시장가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식재산이 시장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월트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P&G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세 기업은 기업 가치의 80퍼센트 이상이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에 연관된 것들이다.¹⁰⁹⁾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유형자산은 900억 달러이다. 그러나 시가 총액은 2700억 달러에 달한다. 약 1800억 달러는 상표, 특허, 거래 비결, 노하우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¹¹⁰⁾

기업의 자산을 극대화하려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지식자산을 이해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❶ 기업의 새로운 지식재산 관리

지식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기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전에는 기업의 법무팀에서 다루었던 지식재산관리 업무가 이제는 미래 지향적인 지식재산 부서로 이관되고 있다. 특히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일부 신기술 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생명 과학 기술 시장은 2005년까지 38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다... 평균적으로 생명과학 기술 업계는 연간 소득의 45퍼센트 정도를 R&D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그 업계 가치의 거의 절반 가량이 지식자본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식자본

109) Russell L. Parr, "Intangible Assets Dominate Hidden Corporate Value," in Hidden Value: Profiting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Economy, ed. Bruce Bannan.

110) Bruce Berman, ed, "The Emergence of an 'Invisible' Asset Class," Introduction to Hidden Value: Profiting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Economy:24.

이 도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쉽게 복제, 또는 도난당해 무단으로 팔릴 수 있다... 연구원들은 특허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¹¹¹⁾ (생명과학기술의 특허 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장 참조)

이러한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관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몇가지 예를 보자.

- 필립스와 소니는 초반에 경쟁사들에게 CD 기술을 임대해줌으로써 경쟁사들이 대안 표준을 개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다. 만일 대안 기술을 개발했다면 VHS와 Betamax라는 비디오 포맷을 둘러싸고 그랬던 것처럼 표준을 둘러싸고 장기적인 소모전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¹¹²⁾
- IBM은 대규모 인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유 중 하나는 자사의 지식재산을 신기술 및 비즈니스로 만들고, 매년 50억 달러 정도를 R&D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IBM의 공격적인 지식재산 노력으로 인해 특허 라이선스 사용료가 1990년 3천만 달러에서 2000년 10억 달러로 3,300퍼센트 증가했다.¹¹³⁾
- 히타치는 특허 전략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1996년에는 4억5천5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히타치의 소득 대 지출비 (Earnings expenditure ratio: EER)는 1990년 0에서 1996년 4.5로 증가하였으며 특허전략 발전 4단계를 거쳤다.¹¹⁴⁾

지식재산권리는 민간분야에서만 활발한 게 아니다. 1987년, 저명한 국제 과학 연구소인 CERN (유럽 핵 연구 기구)은 업계와의 연계를 촉진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산업 및 기술간 연락 사무소 (Industry and Technology Liaison Office)를 설립했다. 이 사무소는 CERN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으며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도 지식재산 담당 사무소를 설립하여 지식자산 관리만을 맡도록 하고 있다. (4장 참조)

111) Evdokia Moisé,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rongs," OECD Observer (1999년 4월)

112) Alberto Torres, "Unlocking the Value of Intellectual Assets," 맥킨지 4/4분기 보고서 (1999년)

113) Tom Fremski, 파이낸셜 타임즈 (2000년 2월2일자)

114) 아라이 이사미쓰, 21세기 지식재산 정책: 일본의 부의 창출 경험 (제네바: WIPO, 1999): 34-37.

❖ 특허 지도

지식재산 관리를 마케팅 전략의 핵심으로 만드는 것은 최선의 공격이 될 뿐 아니라 방어도 된다. 일부 기술 분야에서의 R&D, 경쟁사의 R&D와 마케팅 전략의 동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려면, 모든 중요한 특허를 넣어서 특허 지도를 만들고 이들 사이에 기술적인 연결 고리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허 지도에는 해당 기업의 특허와 경쟁사의 특허가 그 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여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기술의 동향을 이해하고 R&D와 마케팅 투자를 위한 기업의 전략을 짜는 도구의 역할도 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기업의 고위 경영진들은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 지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허 지도를 만드는 것이 기업 전략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예전에는 특허 지도를 만들려면 수개월씩 걸렸지만 이제는 수시간, 또는 수일 내에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 경쟁사, 기업의 연구와 비즈니스 활동간의 관계는 이제 기술 발전의 패턴과 관계를 강조하는 3차원 보고서로 작성되고 있다.

많은 상업적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패키지가 개발되어 기업들이 쉽게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와 제품은 역동적인 분석 도구를 제공하여 전세계 특허의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됨으로써 고객들이 자신들의 혁신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고객들이 마켓플레이스, 혁신 자산 및 경쟁자들의 혁신 자산을 강력하게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는 업계 동향과 기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R&D, M&A, 기술 라이선싱 및 경쟁력있는 정보와 같이 주요 전략 분야에 대해 고객들이 신속하고 분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¹¹⁵⁾

❖ 신경제, 인터넷, 그리고 지식재산

지식재산은 궁극적인 자산이 되어 가고 있다.¹¹⁶⁾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정

115) Kevin G. Rivette와 David Kline이 Rembrandts in the Attic: Unlocking the Hidden Value of Patents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9)에서 소개한 Aurigin Systems (<http://www.aurigin.com>)이 좋은 예가 된다.

116) 상동.

보에 (지식은 정보를 통해 습득) 접근하는 속도, 양, 범위를 완전히 바꿔놓은 인터넷이 뒷받침하는 소위 지식경제의 도래이다. 부의 창출과 이의 사회적, 문화적 잇점은 세대에 따라 다르며 세 개의 I를 또 다른 I (인터넷)을 활용하여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세 개의 I는 혁신 (innovation), 정보 (information), 그리고 아이디어(idea)를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날 기술발전의 놀라운 진보를 추진하는 원동력이며, 어느 기업이건 자기 업계에서 앞서가려면 - 그것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됐건 기존 제품을 제조하는 혁신적이며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일이 됐건간에 - 이를 소유하거나 이에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통신 기술을 통해서 진정한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화는 이러한 신제품 및 공정에 있어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다. 경제환경과, 그 환경 안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바뀌었다.

새로운 환경의 주요 요소는 인터넷과 유저 프랜들리 그래픽 인터페이스인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다. 다른 발명들(바퀴, 내연기관, 라디오 등)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만큼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온 발명품을 떠올리기란 어려운 일이다. 월드와이드웹이 생겨나고 첫 4년 동안 이용자가 5천만명에 달하게 되었고 (전화는 사용자가 5천만에 도달하기까지 74년이 걸림) 인터넷 사용량은 100일마다 두 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¹¹⁷⁾ 웹은, 전세계를 한동네로 만들어 버렸고 가상의 채팅룸, 사이버 시장, 디지털 델픽 오라클 (아폴로 신전의 신탁-역자 주), 거대한 지식의 바다, 모두가 접근가능하며 현존하는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곳을 창조하고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비즈니스하는 가를 바꿔 버림으로써 지구상의 사람들과 기관들을 하나로 연결해 버렸다. “1세기 전, 뉴저지의 스탠다드 오일은 석유 시추를 위해 해외로 나갔다. 1990년대 후반, 아메리카 온라인은 전 세계에서 가입자를 확보했다. 1899년,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United Fruit Company)는 중미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바나나가 재배되었으니까. 오늘날 야후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방문자 수가 많아질 수록 주가가 높아지니까.”¹¹⁸⁾

교육, 연예부터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의 가능성은 엄청나다. 이 모든 변

117) WIPO, "E-commerce Primer," - <http://www.wipo.int/primer/index.html>

118) Moises Naim, 파이낸셜 타임즈 (2000년 12월 2일자)

화가 지식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시켰고 지식과 지식재산의 잇점을 최적화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연구원들이나 투자자들은 각 국가의 특허청과 WIPO PCT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허 문서로부터 나온 엄청난 양의 특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¹¹⁹⁾ 이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고객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연구가 독창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심도있는 혁신을 위하여 상용화된 발명품을 추적하고, 특정 기술 분야의 트렌드와 새로운 R&D 활동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를 내고자 하는 국가의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특허 검색 및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현대 기술이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하고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시장성이 풍부하지만 활용되지는 않은 아이디어와 우연히 맞닥뜨리는 경우도 생긴다. 제약회사인 파izer가 미국 특허상표청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항생물질 아지드로마이신 특허를 발견한 것을 좋은 예로 꼽을 수 있겠다. (4장 참조)

인터넷은 세계적인 인적,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와 경영인들은 신경체의 생존법을 이렇게 제안한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글로벌리즘”은 세계적이며 동시에 지역적이 되라는 말인데, 지역 문화를 침해하지는 않으면서 성장과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계화의 측면을 자국과 자국의 문화에 동화시키도록 한다.¹²⁰⁾ 인터넷에 의해 지역 산업과 지역사회는, 문화유산이나 전통적인 지식처럼 세계 시장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는 고유한 지식자산의 가치를 깨닫는 신선한 기회를 맞게 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7장 참조)

❖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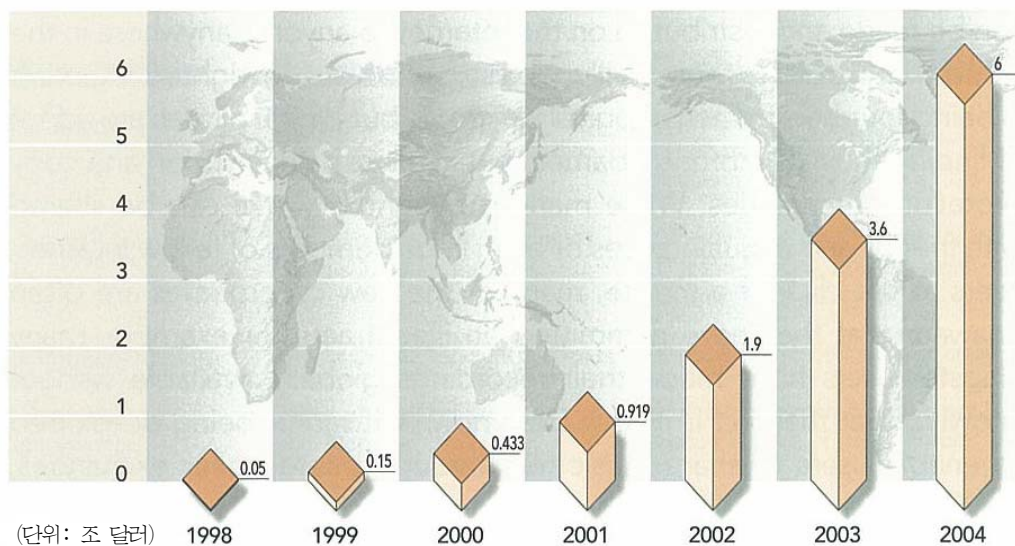
혁신을 용이하게 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가능케 하는 외에도 인터넷은 지식재산 업계에 몇 가지 과제를 던져 주었다. 그 중 하나는 최근에 미디어의 관심을 상당히 끌기도 했는데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에 관련된 문제이다. 전자상거래는 1995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했고 10년내에 1조 달러 규모의 산업으

119) 자세한 정보는 WIPO 지식재산 디지털 도서관 (IPDL) 참조. <http://ipdl.wipo.int>

120) Thomas L. Friedman,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세계화의 이해 (뉴욕: Anchor Books, 2000):295.

로 성장할 전망이다. 2000년 B2B 전자상거래는 1999년에 비해 189퍼센트 성장했고, 2002년에는 그 가치가 1조9천억 달러였지만 2004년까지는 6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도표 3.2 참조)¹²¹⁾ 이렇게 엄청난 규모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이버 비즈니스를 더욱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예가 아마존닷컴의 원클릭 쇼핑이다. 이 방법은 고객이 마우스 클릭 한번만으로 주문, 지불, 배달요청까지 끝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예가 델의 40여 가지의 특허인데, 고객들이 원하는 사양에 맞춰 컴퓨터가 조립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온라인 테크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은, 프라이스라인닷컴의 온라인 역경매 시스템부터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이미지를 체크하여 신용카드를 승인하는 테크닉까지 아주 다양하다.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출원 여부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4장 참조)

[도표 3.2] 전자상거래 성장 예측



출처: 가트너 http://www4.gartner.com/5_about/press_room/pr20010313a.html

121) Gartner, Inc. - http://www4.gartner.com/5_about/press_room/pr20010313a.html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터넷으로 인해 벌어지는 전쟁의 예를 보면 불순한 목적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터 (cybersquatters)의 추방을 놓고도 다툼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사이버스쿼터들은, 사용할 의도없이 유명인의 이름이나 상표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도메인 명 (특히 웹사이트 주소)을 등록해놓고 이를 상표권자나 유명인에게 이익을 남기고 판매하는 이들이다. WIPO 도메인 명 분쟁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들 중 몇 가지는 언론의 관심을 모았고 이는 상거래 업계에서 상표¹²²⁾와, 웹사이트 식별자로서 상표의 새로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도메인 명을 둘러싼 문제는, 인터넷이 전통적인 형태의 지식재산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고, 지식재산 업계로 하여금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도록 했음을 보여준다. (더욱 상세한 논의는 5장 참조)

지식재산이 당면한 또 다른 과제는 디지털 무단 복제 문제이다. 서적, 사진, 음악, 영화를 쉽고 빨리 완벽하게 복사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어디로든 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법 저작물 유통과의 전쟁이 기술적인 무기를 갖추고 수행되고 있지만 무단복제를 일삼는 디지털 해적들은 장벽을 뚫고 암호와 복사 방지 기술을 해독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있다. 많은 저작물들이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친구들 간에, 혹은 다수의 네티즌들 간에 공유되고 있지만 불법 복제를 행하는 이들 중 많은 수는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냅스터 사용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지도 모른 채 음악을 전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지금도 P2P로 음악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추적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인기 소설가인 스티븐 킹은 전자 자가 출판의 컨셉을 약간 변형시켰다. 스티븐 킹은 실험적으로 신간인 “The Plant on the Internet”을 정기적으로 한 장(chapter)씩 인터넷에 업로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장을 읽을 때마다 독자들이 1달러씩 지불하게 했다. (아마존닷컴을 통해 연결) 이 실험은 수입감소로 제 6장을 끝으로 중단됐다. 사이버 세계에서 저작권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는 사용료를 받는 방법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더욱 상세한 논의는 제 6장 참조)

122) 제대로 자리 잡은 상표는 전통적으로 귀중한 지식재산으로 인정되었다. 웹사이트 식별이라는 새로운 역할은 이들의 가치를 더욱 높였는데 그 정도가 상당하다.

[표 3-3]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법, 정책, 기타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

특 징	현 상	지식재산관련 이슈
세계적	국경을 넘나드는 효과	지식재산법의 조화, 판례 및 집행 인정
경계영역	새로운 중개자의 부상	온라인 공급업체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책임. 방송인의 권리 요구
디지털 기술	디지털 복제품의 품질이 완벽	복제의 정의 검토
감지, 익명성 및 사생활보호	사이버 해적행위 및 공정한 사용 (예) 냅스터)	지식재산권의 집행이 어려움. 저작물의 디지털 워터마킹 (저작권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미지나 비디오, 오디오에 삽입한 비트 패턴 - 역자 주)
빛의 속도	입법 노력과 기술 변화간의 큰 격차. 효과적인 사법 시스템 부재	국제 정책 공식화를 위한 인터넷 기반 컨설팅. 대안 분쟁해결 시스템 (중재) 사용 솔루션 부상.
기술적 특징	도메인 명,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도메인 명 분쟁 및 상표와의 갈등
인터넷 관리	미니멀리스트 대 맥시멀리스트	국가간 정책 상이 (정부가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

전자상거래는 이미 시장과 규제 구조의 양식에 예사롭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부문이 연루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각 국가는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에 대해 자국 영토내에서는 주권을 가진다는 기본 원칙하에 국가별로 지식재산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전자상거래와 이를 통해 불거지는 전자재산관련 문제의 국제적인 측면은 솔루션 개발을 복잡하게 하고 국가의 개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개입은 전자상거래의 국경을 넘나드는 잠재적 효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는 또한 표 3.3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법과 정책의 기타 부문에 수평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4장

특허, 연구 개발과 신기술

"특허 제도의 설립은 천재성이라는 불에 이익이라는 연료를 더한 것과 같다"

에이브러햄 링컨¹²³⁾

20세기에 우리는 일련의 기술적 돌파구를 목격했다. 극소전자공학, 컴퓨터, 통신, 신물질, 로봇공학과 생명과학 이 여섯 가지 핵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흔히 우리는 지금 제3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다고들 말한다.¹²⁴⁾ 특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허가 발명에 대한 금전적인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 세계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부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특허 제도가 개발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특허 반대론자들은 특허 제도의 이론과 실재를 오해하고 있다. 사실 특허는 경제 발전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특허 제도가 이론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면서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신기술을 창출하며,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 발전 전략을 가다듬고 강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특허라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도 제공한다.

❖ 특허의 당위성 -

특허 제도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에이브러햄 링컨은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쉬운 격언을 적재적소에 활용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앞서 인용된 금언은 특허의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이익이라는 연료”, 즉 금전적인 이익이라는 동기가 바로 과학, 기술, 경제 발전의 촉매라는 것이다. 이 금언은 여러 가지 강력한 힘이 촉발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과정의 시작은 발명가가 한정된 시간 동안 자신이 발명한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만들어 팔 독점적이고, 법적 집행이 가능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123) 미국 16대 대통령 (1861~1865년)이자 미국 특허를 획득한 발명가

124) Lester C. Thurow의 *Creating Wealth: The New Rules for Individuals, Companies, and Countries in a Knowledge-Based Economy* (London: Nicholas Brealey Publishing, 1999): 5페이지 참조

렇게 되면 발명가는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특허 제도는 발명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세 단계에 걸쳐 제공한다.

첫째, 발명가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발명에 소요된 경비로는 주로 자본, 시간, 장비, 노동력을 들 수 있다).

둘째, 발명된 기술이 포함된 제품의 개별 판매를 통해 발명가가 이익(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판매량을 늘리거나 유사 제품보다 가격을 높여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발명을 통해 실현하는 것은 발명된 기술이 실질적으로 그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지 그리고 발명된 기술과 그것이 포함된 제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있는 지에 달려 있다.

셋째, 발명가가 직접 진출하기를 원하지 않는 시장에서 특허 기술을 활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허를 실시허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실시허여를 받거나 특허권을 양수한 사람들은 발명가가 가지지 못한 유통 능력을 활용하거나 특허 기술을 다른 특허품이나 제품에 결합시켜 새로운 특허품과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 이들은 발명가에게 특허 사용료(판매액의 일부)를 지불한다.

발명가에게 이와 같은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발명가는 이 과정을 반복할 의욕이 생긴다. 즉 자신의 보상 가운데 일부를 새로운 발명을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역동적인 혁신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발명가는 또한 고용인과 훈련생을 두거나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들 또한 금전적 이익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스스로 발명품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된다. 연구 개발은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한 관련 제품의 발명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고용증대, 훈련,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그 밖의 경제적 영향력도 갖는다.

특허 제도를 발명가 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도구라고 말한다면 지나치게 그 의미를 단순화하는 것이 된다. 특허에 부여되는 독점권은 그 기한(보통 20년)이 정해져 있다. 또한 발명가가 특허를 획득한 국가나 법적 관할권 내로 특허권이 한정되며, 특허 획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서는 무료로 사용될 수 있다. 추후 서술되다시피, 특허 제도는 발명가의 이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특허는 시장 경쟁으로부터 잠정적으로 발명가를 보호하는 피난처의 구실을 한다. 특허 명세서의 내용에 한정되는 작은 피난처이지만 수년 간은 끄떡없이 버틸 수 있다. 이 피난처 안에서 발명가는 경쟁자가 모방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격 약탈자들의 가격 경쟁으로 제품 가격이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발명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 피난처는 발명가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고 이를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데 충분히 안정적이다. 이 피난처가 없다면 발명가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발명의 순환을 다시 시작할 동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짐을 꾸려서 좀 더 안정적인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것이다.

특허 제도는 발명가에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시장 우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 제도로 주어지는 피난처의 범위는 발명품의 가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특허 내용이 “요구”하는 만큼만 발명품을 보호해 줄 뿐이다. 특허 내용을 전부 복제하지 않는 한 경쟁자들이 유사한 발명품과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특허 제도는 경쟁 제품의 발명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특허를 획득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특허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허 등록 요건은 주로 발명품이 “새롭고, 유용하며, 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발명품에 특허를 부여해 주지는 않는다. 물론 이전의 발명품과 각종 자료를 참고하기 마련이지만, 특허를 획득할 정도의 발명품은 자신의 연구와 상상력에 기초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발명품이어야 한다. 독점권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대체로 특허 신청부터 20년까지이다. 독점권이 부여 되었다고는 하지만 특허 기술을 연구하고 학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공정 사용”에까지 독점권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는 특허를 출원하여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다른 지역의 발명가와 사업가들은 그 발명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하여 획득한 경우에도 특허 보유자가 타인에게 특허의 사용권을 공여하

기도 한다. 특허 실시여부는 때로 특허 보유에 대한 금전적인 동기가 되기도 하고, 또 “진출이 활발하지 않거나 아예 진출하지 않을 시장”(특허권 소유자가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그럴 만한 재원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지역이나 분야)에 진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특허권은 효율적으로 공유되고 그 혜택은 분배된다. 또한 특허는 공공 문서이기 때문에 정보라는 형태로 경제적, 기술적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특허 내용을 상세히, 즉 그 분야의 숙련 기술자라면 출원서를 보고 발명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대중에 대한 공개 요건이야말로 특허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특허권 보유자는 발명품의 내용과 작동 과정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대신 제한된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그 발명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특허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특허의 보호를 받기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 또 어떤 국가에서는 특허권의 남용과 불공정 경쟁 행위가 반독점 또는 경쟁법으로 제재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허권은 제한된 권리이며 발명가가 특허를 파낸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매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금전적 이익이라는 동기로 움직인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혁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회가 혁신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넓게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투자손실의 위험이 크면 발명가들은 움츠러들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발명가들에게 법적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경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 발명의 순환

히사미쯔 아라이는 그의 저서 “21세기의 지식재산 정책: 부의 창출에 대한 일본의 경험”에서 특허 제도의 역동성을 자세히 서술했다. 이 책은 특허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도표-4.1 참조)¹²⁵⁾

125) Hisamitsu Arai의 The Japanese Experience in Wealth Creation, 1999년 겨울 WIPO publication No. 834 (E) 참조

도표 4.1 지식 창출의 순환



위 도표는 특허 보유자와 경쟁자들이 발명품을 개선하고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특허 제도가 기술 및 기업 경쟁을 촉진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체로 특허 보유자들은 특허의 상품화로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여기서 원 발명품과 개선된 발명품 간의 순환이 발생한다. 개선된 발명품은 추후 새로운 발명품의 기반이 된다. 특허품의 새로운 형태로 또는 아예 새로운 발명품으로 발명품은 계속해서 개선된다(사례-4.2 참조). 각 발명품은 수많은 다른 제품에도 사용된다. 경쟁자들은 특허품의 “특허 내용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보다 효율적이고, 더 유리한 방법을 찾아내기도 한다. 특허 제도는 이러한 발명의 바퀴가 계속 돌아가게 하는 틀의 역할을 한다. 지식 창출의 순환은 외국 기술을 국내 수요와 시장에 적용하는 데도 기여한다. 한 국가에서 어떤 발명품이 특허를 획득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면, 그것을 기초로 다른 국가에서 그 보다 나은 발명품이나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사례-4.2] 토요타의 제 3의 도전

고전적인 혁신의 모델은 발명, 특허, 신제품, 이익, 연구 개발 투자, 또 다른 발명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순환의 형태이다. 19세기의 마지막 10년간 토요타 직기 회사를 포함한 여러 일본 기업은 섬유 산업을 위한 직기 기술 개발에 한창이었다. 중소기업의 활발한 연구 개발은 신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제도의 활용으로 그 빛을 발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어서도 나무로 만든 수동 직기에 주로 의존해 온 일본 기업들과 1894년 자동 직기가 발명되었을 때부터 그 기계를 사용해 온 유럽 기업들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었다.

1896년 사키치 토요타는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그리고 그보다 가깝게는 일본에서도 사용되던 기존의 기계와 유사한 동력 직기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토요타의 이와 같은 중요한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은 너무 치열해서 이 동력 직기는 동력 직기 시장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해 내지 못했다. 토요타는 자신의 동력 직기 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첫 시도 후 13년이 지났을 때 토요타는 자동 직기를 발명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유럽산 자동 직기를 부분적으로 개선했는데 이것이 주효해서 경쟁자들에 비해 우위에 놓이게 되었다. 그 발명품을 보완하고 정교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허를 더 따낸 1924년 토요타 G타입 자동직기가 출시되었다. 사키치 토요타의 아들 키치로 토요타는 플랫 브라더스사와 중요한 계약을 맺고 그 자동 직기를 사업화하기로 했다. 플랫 브라더스는 토요타에 10만 파운드(오늘날의 미화 2천5백만 달러에 준함)를 지불하고 일본, 중국,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자동 직기를 제조하여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사들였다. 이 매각으로 추가 연구 개발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다. 토요타는 그 10만 파운드를 초기 자본으로 삼아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다.

출처: 타다시 이시, “일본의 산업 혁신과 특허 제도의 역할”: 토요타 사례 연구(2000년 10월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표됨)

❖ 특허와 경제 발전 -

특허 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지금까지는 특허 제도의 이론적 당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특허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하려면 몇 권의 논문을 써야할 정도이다. 이 장에서는 그 방식이 일상의 거래와 정책에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겠다. 특히 다음의 네 가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 (1) 특허가 기술이전 및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촉진시키는 과정
- (2) 대학교와 연구 기관의 연구 개발의 촉매 기능
- (3) 신기술과 신산업의 촉발제 기능
- (4)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관련 자산을 축적하고 이를 기초로 거래에 참여하는 방법

끝으로,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들이 특허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이 역동적인 사업 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 기술이전과 투자를 촉진하는 특허

튼튼한 특허 제도와 적절한 시행은 기술이전과 투자의 전제조건이다. 특허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기업도 마음 편히 기술을 공개하거나 연구 개발에 투자하지 못할 것이다. 즉 특허가 기술이전과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사업과 추후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 합작투자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노하우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 세기에 신흥 경제국들의 경험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GATT 협상의 케네디 라운드가 시작되었을 때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일본을 개발도상국으로 지칭했다. 그 후로 일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일본의 정책입안가들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결정적인 수단으로 특허 제도를 택했고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일본에 FDI와 기술이전이 활발해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례-4.3 참조)

한국 또한 특허 제도와 발명주기 이론을 받아들였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미국에서 정보통신기술 특허를 획득한 외국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독일과 영국을 앞질렀다. 한국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10년간 그 전 10년에 비해 30배나 많이 특허를 획득했다.

[사례-4.3] 소니와 웨스턴 일렉트릭

1946년에 설립된, 축음기를 수선하는 20명의 직원을 둔 한 작은 회사는 특허 실시를 획득하겠다는 야심찬 결정으로 오늘날의 소니가 되었다. 1952년 미국에서 여행 중이던 소니 설립자 이부카 씨는 우연히 벨 연구소의 발명품인 트랜지스터에 대한 특허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는 일본 무역 회사의 미국 지점에서 일하는 주식중개인에게 특허소유업체인 웨스턴 일렉트릭에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때 당시 트랜지스터는 보청기로만 사용되고 있었고, 웨스턴 일렉트릭은 트랜지스터 기술을 응용해서 그보다 더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부카는 “보청기로는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적으니까 새로운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라디오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다. 당시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적었던 관계로,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특허를 획득한 기술은 중요한 것이라고 이부카는 해외무역산업 장관을 설득했고 웨스턴 일렉트릭은 소니에 특허 실시를 허여했다. 이부카는 미화 2만5천 달러를 지불했고 거의 최초로 특허 실시권을 획득 받은 사람이 되었다. 웨스턴 일렉트릭은 소니처럼 작은 회사가 트랜지스터로 쓸모있는 장치를 개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특허 실시 계약에 명시된 대로 소니의 한 공학자에게 트랜지스터에 대한 유용한 기술적 정보를 전달했다. 1955년 이부카의 공학자들은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생산했다. 이 신제품은 일본에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소니가 다른 대규모 경쟁업체를 추격하는 데 발판이 되었다.

출처: 모리타, *메이드 인 저팬*(1985)과 소니 홍보팀의 *소니 자서전*(2001)

브라질과 인도는 1990년대 초에 지식재산 개념을 받아들여 특허법을 강화한 후 1990년대 후반에 FDI와 국내 특허 출원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¹²⁶⁾ 이 밖의 개발도상국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특허 획득율이 크게 증가했다.¹²⁷⁾ 이들 중에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TRIPS)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인 1980년대 초부터 특허 제도를 현대화하기 시작한 국가들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이 국가들이 수출주도 성장에 의존하고 있었고 국내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 제도를 통한 발명된 기술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¹²⁸⁾

❖ 기술이전의 촉매

여러 가지 예에서 알 수 있듯이(사례-4.3과 4.5 참조), 특허는 기술 및 기업 정보의 풍부한 원천이 되고, 최신 기술을 분석하고 협력 기업과 사용권 공여자를 찾는 데 이용된다.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 제도의 역할은 지금까지는 FDI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것 정도로 과소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 특허 정보를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다.

특허 정보는 얼마나 방대하며 또 새로운가? 현재 전 세계에는 3천만 개 이상의 특허가 있고 해마다 평균 1백만 개의 특허가 출원되며 그 내용이 출간된다. 출간된 특허는 공개 서류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는 출원 시점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된다. 서류에 포함된 기술 및 기업 정보가 지나치게 일찍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특허 정보를 담아 분류해서 인터넷상에서 검색, 공개 및 신규 내용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국가들도 많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요 단어와 분야별로 분류된 특허 정보 파일을 둘러볼 수 있다. 이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국가들에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

126) Tony Samuel의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2000년 겨울: 46-48페이지 참조

127) 미국 상무부, 기술정책국, The New Innovators: Global Patenting Trends in Five Sectors (Washington, D.C.: 미국 상무부, 1998년 9월) 참조

128) WIPO의 도움으로,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베닌, 브라질, 부르키나 파소, 칠레,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한국, 태국, 베네수엘라 등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1980년대 초부터 1995년까지 자국의 특허 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본, 뉴질랜드, 폴란드,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싱가포르, 스페인, 태국, 영국, 미국이 있다.¹²⁹⁾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몇몇 특허청이 인터넷상에 공개한 것과 같은 집단적 지역별 데이터베이스 또한 온라인 정보의 중요한 출처가 된다.¹³⁰⁾ WIPO의 웹사이트에는 각 특허청의 인터넷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명단이 있다.¹³¹⁾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상업 서비스 중에는 수수료를 받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하는 곳도 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주로 발명품을 만들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새로운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허와 특허 출원 정보 외에 관련 잡지와 과학서적에 대한 정보도 담겨있다. 1997년 IBM에서 분사한 델피온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델피온은 자사의 사이트에서 1억 개의 데이터 기록과 6백 개의 데이터베이스, 1만5천 가지 잡지를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¹³²⁾ 어떤 경우는 준공공기관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싱가포르의 유명한 서프

129) 호주 www.ipaustralia.gov.au/services/S_srch.htm
 브라질 www.inpi.gov.br/pesq_patentes/patentes.htm
 캐나다 <http://patents1.ic.gc.ca/intro-e.html>
 프랑스 www.inpi.fr/brevet/html/rechbrev.htm
 독일 www.dpma.de/suche/suche.html
 헝가리 www.hpo.hu/English/db/
 일본 www.ipdl.jpo-miti.go.jp/homepg_e.ipdi
 한국 www.kipo.go.kr/ehtml/eLikIndex05.html
 뉴질랜드 www.iponz.govt.nz/search/cad/dbssiten.main
 폴란드 www.arsinfo.pl/arspatent/a_info.html
 루마니아 <http://193.230.133.4/cgi-bin/invsearch>
 러시아 연방 www.fips.ru/ensite/
 스페인 www.oepm.es/bases-documentales/oepmpat_sp?
 태국 www.ipic.moc.go.th/
 영국 www.patent.gov.uk/patent/dbase/index.htm
 미국 www.uspto.gov/patft/index.html
 이 웹사이트들은 <http://ipdl.wipo.int>으로 연결된다

130) WIPO: <http://ipdl.wip.int/>; for EPO,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espacenet/info/access.htm>, 참조
 3자간 데이터베이스: <http://www.uspto.gov/web/tws/sh.htm> 참조
 라틴 아메리카: http://www.oepm.es/bases-documentales/latipat_sp? 참조

131) 점차 검색자들은 상업 서비스를 우회해 특허 자료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있다. Robert M. Sherwood, Varda Scartezini, Peter Dirk Siemsen의 "Promotion of Inventivenes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a More Advanced Patent System", IDEA: The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39, No. 4 1999: 476페이지 참조

132) Patent Cafe www.patentcafe.com 과 Delphion www.delphion.com 참조

IP(SurflIP) 같은 웹사이트는 싱가포르의 지식재산 분야가 민영화된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민영이든 준공공기관이든 이런 서비스는 전 세계의 특허 정보를 확인하게 하는 훌륭한 출처가 된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다른 민간 기업들은 정부 기관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을 관리하면서 이를 상업적 용도로 전환하는 영국의 BTG(British Technology Group)는 지식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특허를 신청한다. BTG의 주장은 “기업의 연구진이 가능성 있는 발견을 하고 나서도 추후 개발이 미진한 경우가 많은 이유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추후 개발이 기업의 범위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³³⁾

거시경제 차원에서 특허 서류에 공개된 통계 데이터는 분야, 기업, 국가간 기술적 활동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며, 따라서 모든, 산업 발전과 기업 계획 분야에서 일하는 정책 입안가들에게 유용한 정보이다. 또한 기술 진전을 관찰하고, 산업 발전을 예측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투자와 정책 결정을 평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별 기업에게 특허 데이터베이스 검토는 기술 및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된다(사례-4.4 참조). 기술 정보의 경우, 과학자나 기업가는 특허 서류를 검토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최신 흐름에 대한 중요한 식견을 넓힐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대체로 사용이 편리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를 검색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공개된 특허 서류에 포함된 최신 정보는 기업들이 이미 완료된 연구에 투자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특허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연구 개발비용을 크게 낭비할 수 있다. 유럽특허청(EPO: Europe Patent Office)의 추정에 따르면 유럽 기업들은 특허 정보의 부족으로 기존의 발명품을 발명하거나, 해결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출시된 상품을 개발하느라 미화 2백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허 정보를 활용해 신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신제품이 특허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는 특허 제도를 합법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는 예가 된다.

133) 1998년 11월 17일자 Financial Times(London) Michael Peel

[사례-4.4] 특허 정보를 왜 활용하는가?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의 조언

- 틀부터 다시 만들지 말라. 전 세계의 특허 정보를 검색하면 이미 완료된 발명을 다시 하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거나 호주에서 특허를 획득한 것이 아니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공공재가 된 기술을 찾아라
- 경쟁업체의 연구활동을 관찰하라. 경쟁업체의 제품과 생산과정에 대한 기술 정보는 제품이 시판되기 수년 전에 이미 특허 명세서로 공개된다.
- 신기술과 업계 신흥 주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말라. 제품을 생산, 수입하기 전에 호주 특허 정보를 검색해서 고비용의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라.

출처: 호주 특허청

● 특허 공유를 낚는 특허 정보

전략적 사업이익을 위해 특허 정보를 사용하는 편이 특허의 기술적 내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 특허 정보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경쟁자에 대한 자료를 추적시키는데 사용된다. 기술에 밝은 기업들은 경쟁업체의 특허 출원과 획득 내용을 관찰하면서 경쟁업체의 기술과 제품의 핵심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기술 경향과 현재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연구 개발하는 지에 대한 시장 정보 또한 특허 정보를 통해 모을 수 있다.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려는 경쟁업체에게는 발명가의 이름도 중요한 정보가 된다. 3장에서 짚어본 바와 같이, 특허는 인수합병 실사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투자나 인수 대상의 특허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도 활용된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잠재적인 사업상 파트너관계와 실시하여 가능성을 타진하는데도 요긴하게 사용된다. 특허분류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타인에게 속한 기술을 유통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때(기술도입: license in), 자신이 개발했지만 사업화 할 재원이 없어서 실시하여를 하고자 할 때(기술제공: license out), 기술과 제품의 개발, 제조, 유통을 함께 할 합작투자를 원할 때,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할 때, 특정 분야의 사업기회를 노리는 사용자(licensee), 사업 파트너, 구매자, 투자자들은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자신의 사업과 보완적인 기업을 찾을 수 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사업가는 때로 사업화할 사용자나 제조업체를 찾지 못해서 사장되어 있던 기술을 찾아낼 수도 있다. 물론 그 기술이 아직까지 활용되지 않은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런 기술의 실시권을 획득함으로써 엄청난 사업기회를 갖게 되기도 한다. 그 기술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사례-4.3 소니의 예 참조). 사용자 공여자(licensor)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자신이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기술을 활용하도록 사용권을 공여함으로써 소득을 높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공여자는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를 두고 있거나, 그 기술을 수정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는 사용권자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할 것이다. 기술 수정에는 개선, 향상, 또는 파생 작업 등이 있다. 사용권자는 이렇게 수정한 기술을 가지고 사용자 공여자에게 상호 실시하여를 제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거래의 가치는 높아지고, 사용료는 낮아진다. 숙련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이 이런 거래에서 매우 유리하지만, 대학교와 연구센터 같은 제3자를 포함시켜 합작투자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당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를 찾는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이다. 특허 내용을 통해 어떤 회사가 어떤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투자 회수금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기술이나 제품의 사용자 공여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의 발명가는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자신의 발명품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나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 특허 서류의 내용을 보고 투자자나 사용자

의 신뢰도와 사업 가능성을 타진한 다음 유치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사례-4.5 아지스로마이신 참조 바람).

특히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검색자가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미 특허 실 시권이 허용되지 않은 기술을 찾는 데도 사용된다. 어떤 국가에서 제품을 만들고, 팔 거나 사용하거나 그 국가로 수입할 의사가 없어서 발명가가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국 가에서는 어느 기업이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그 기술을 실험할 수 있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하려면 특허 보유자의 노하우, 관련 자료, 훈련, 상표, 관련 특허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허 실시허여가 법적으로 필수 적이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장점 때문에 특허 보유자와 사업관계를 맺으려고 할 수도 있다.

[사례-4.5] 아지스로마이신 :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생 물질

잠들어 있던 신약의 시장 잠재력을 이용해 파이저는 크로아티아의 특허보유 회 사인 플리바와 호혜적인 실시허여 계약을 맺게 되었다. 런던의 다이와 유럽 연구 소의 분석가인 나이젤 키건은 1999년 플리바의 영업이익 중 75% 이상이 파이저 에 아지스로마이신의 사용권을 공여한 데 따라 파이저가 지불한 사용료와 아지스 로마이신의 판매 마진인 것으로 추정했다. 크로아티아 최대 기업이자 중부 유럽 최대 제약 회사인 플리바는 중부 유럽의 최초 다국적 기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으며 1996년에는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놀라운 성공을 거둔 지금의 상황 을 보면, 플리바가 한 때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작은 회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아지스로마이신을 발견한 이후 모든 게 바뀌었고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보내기 시작했다. 오늘날 아지스로마이신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항 생물질이다. 1980년 플리바가 특허를 취득한 이 약품은 그 후 파이저에 사용권이 공여되었고, 파이저는 지스로맥스라는 이름으로 이 약품을 판매한다. 지스로맥스 의 판매량은 지난 해 미화 1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허여 계약으로 들어오는 이 엄청난 수익은 플리바가 크로아티아, 폴란드, 러 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해주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파이저의 과학자들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있는 특허 서류를 뒤지다가 1981년 플리바의 특허 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벨기에 브뤼셀), 1999년 3월 3일

❖ 기술이전을 위해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권장하는데 있어 특허청의 역할

연구 개발비가 높아지고, 기술이 급변하고 제품주기가 줄어들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사용권을 획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핵심 사업을 보완하거나 이와 관련된 특허를 발견하는 기업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다. 이 때, 특허를 검색하는 회사가 특허 보유자보다 특허품을 평가, 개발, 판매하기에 더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을 수도 있다. 특허 보유자가 사용권을 공여하거나 특허를 양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특정 지역의 시장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허를 개발해 놓고 보니까 해당 기업의 현 사업 계획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와는 달리, 해당 특허품을 과거에는 활용했었지만 지금은 다른 발명품으로 대체해 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기업의 67%가 특허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특허품의 가치는 미화 1천1백5십억 달러 내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에 잠자고 있는 발명품이 미화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¹³⁴⁾ 그 발명품을 유지하느라 지속적으로 비용을 들이는 대신,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공여할 수 있다. 사용되지 않는 특허품을 유지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특허가 사장되기 전의 “효과적인 수명”은 평균 5년이다. 그런데 실제로 5년까지 유지되는 특허품은 전체의 37% 밖에 되지 않는다.¹³⁵⁾

지식기반사회에서 특허청의 역할이 날로 커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싱가포르 특허청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 특허청은 전략적인 기술 분야, 기술, 시장 연구를 파악하고, 특허 지도를 만들고, 검색하며, 지식자산을 관리하고, 기술과 제품의 로드맵을 만들고 기술과 시장을 평가하는 등 지역 산업과 연구 기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¹³⁶⁾ 특허청은 기술정보센터라는 새로운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 특허, 연구 개발의 촉진제

정책 결정자들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134) BTG International (기술이전 기업) 설문조사

135) Samson Vermont의 “Patent Costs and Benefits: The Economics of Patents and Litigation, ”Part II, Patent Strategy & Management, 2001년 8월: 5-60페이지 참조

136) www.surfiip.com 참조

는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고무되어 왔다(2장 참조). “내부성장이론”(경제 정책과 외부 요인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에 흐르는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최근에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연구와 공학 활동을 권장하고 수입되는 기술에 대항할 토종 기술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마디로 이 경제 성장 이론의 낙관적인 측면은 정책 결정자들이 특허 정책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개발도상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기술도입이 그 후에 국내 연구자, 공학자, 기업가, 다른 발명가들이 이전된 기술을 신기술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 없이는 소위 지식산업의 발전토대를 마련하는데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점을 깨달았다. 개발도상국가들에게는 투자와 제조를 위해 외국의 기술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했다. 이런 합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은 미미했다. 다시 말하자면, 기술이전의 혜택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은 활발한 해당 지역의 참여가 요구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지식재산의 과정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토종 개발’, 즉 자국 내에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한 가지 예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대학교와 공공 연구소가 민간 분야에 지식재산 형태로 기술을 공여해주는 것이다. 여러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공 연구시설과 학계가 지식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주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학계가 주도한 화학, 의약, 공학, 물리학, 기타 과학 기술 원칙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기초 및 응용 연구가 수행된다. 정책 결정자들이 무엇보다 염두에 둘 사항은 공공 분야와 학계의 노력을 상업 분야의 노력과 결합시킴으로써 위 연구 기관들로 하여금 지식을 이전하고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하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 혁신의 중심에 서도록 대학교를 지원하기

역사를 통틀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대학교, 연구 기관의 학생과 교수들은 국가의 문화적, 과학적, 지식 활동의 중심에 있어 왔다. 활발하게 성장하는 사회는 이러한 개인과 기관을 지원하고 그 결과 문화, 비평적 사상, 과학 발전, 인적자산 개발, 새롭고 유용한 기술적 수단과 제도의 발전이라는 소득을 얻는다.

대학교의 주된 기능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지만, 대학교와 연구 기관의 풍부한 지식 활동이 또한 현실적 문제 해결에 응용된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이 장의 앞 부분에서 설명한 발명의 순환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은 산업 분야의 연구 개발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학교 기반 연구와 국가 경제 발전의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

●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공공 분야 연구 개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주로 공공 분야나 대학교(대부분 공립대학교)가 주로 연구 프로그램의 자금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자금 지원은 대개의 경우 부족하고, 전 세계의 연구 개발비 중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¹³⁷⁾ 이는 주로 공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¹³⁸⁾ 현재 전 세계 연구 개발비의 96%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투자를 증대하여야만 연구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한 가능성이 있는 접근 방법은 바로 FDI와 민간분야의 협력이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지식재산 관련법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효과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¹³⁹⁾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분야 연구 개발 노력이 줄어들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법을 강화하거나 연구 결과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 함으로써 수익을 올려 추가적인 연구 개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137) Nagesh Kumar와 N.S. Siddharthan의 *Technology, Market Structure and Internationalization: Issues and Policies for Developing Countries* (London: Rutledge/UNU/INTECH, 1997) 참조

138) 선진국에서 연구 개발은 공공 부문이 일부 참여할 뿐 주로 민간 부문 주도로 추진된다. 예를 들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민간 부문이 전체 연구 개발의 70~75%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와 대학교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들은 기초 연구의 자금 지원의 85%를 담당하고 개발 비용의 경우 26%만 지원하는 반면, 민간 부문의 연구 개발 지원은 주로 시간이 덜 걸리고 위험 부담이 적은 연구 개발 과정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집중된다. Lita L. Nelsen의 "Investing in Technology-Based Un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in *Hidden Value: Profiting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Economy*, ed. Bruce Berman.

139) 최근의 사례에는 글락소웰컴이 싱가포르 분자세포기술연구소의 생명공학 연구에 투자한 예,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연구 개발 센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도 연구 개발 센터, 인도 콰이어의 인도기술연구소 부지에 IBM이 연구 시설을 설립한 예가 있다. 싱가포르를 포함한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민간 nans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자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선진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연구 개발 자금을 늘리고 있다. 1999년 11월 5일자 *The Times* (London)의 "Oxford University Venture Capitalists" 참조

기초 연구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체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발전하지 못한다. 제품수명주기가 짧아져 기업들이 연구 활동 구조를 수립하는 데 있어 점점 단기적인 계획을 채택하게 됨에 따라, 장기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와 공공 연구기관에서 올린 방대한 양의 과학 기술 성과가 그 일부만 학술적 성과로 인정될 뿐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이다. 특히 연구에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 노력이 연구 결과의 상업적 응용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업적 성공은 주로 기업과 산업이 취하는 추후 행동에 달려있다. 산업 분야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관여하지 않으면, 연구 기관에는 수익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연구 자금의 낭비와 이익의 감소라는 체계적인 악순환이 생성된다. 정부 정책은 학계, 연구 기관, 산업 간의 협력과 협업을 장려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실시허여와 이와 다른 형태의 기술이전, 합동 연구 활동, 전문기술 공유 등이 있다.

● 연구부터 개발까지

공공 분야와 대학교의 연구활동이 산업 및 경제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게 하려면,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산업계와 학계가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교가 공적자금으로 진행한 연구결과의 특허를 획득해 산업계에 사용권을 공여한다면 대학 기술의 산업계 이전이 훨씬 더 활발해질 것이다. 대학교가 기업에 특허 사용권을 공여하게 되면 실험실의 프로젝트 상태로 있는 시장 잠재력이 검증되지 않은 최신 기술을 시판될 상품으로 전환하는 위험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되고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다. 공적자금을 차입하여 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대학교에 지불하는 초기 실시허여 획득 비용보다 50배 내지 100배 정도를 더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드는 기업의 추가 투자액은 상당하다. 급격한 기술변화와 제품수명주기의 감소 속에서 기업들은 점점 더 대학교에 신제품의 개발에 사용할 신기술을 의존하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 분야나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민간 분야가 아닌 공공 분야가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의 소유권과 상업적 이익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이는 새로운 발명품을 사업화 할 노력을 할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이런 선택이 서로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다. 두 가지 길을 모두 추구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민간 분야가 참여하는 편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효과적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학교와 공공 분야가 사용료나 다른 형태로 실시하여나 기술이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실시하여나 기술이전은 “선물”이 아니라 대체로 연구 기관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¹⁴⁰⁾ 그래서 몇몇 국가에서는 대학교와 공공 기관의 기술의 민간 분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 대학교와 공공 기관이 특허를 취득하고 그 특허 기술의 사업화 에 관심이 있는 민간 기업에 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을 허여하게 한다.

한 예로, 1980년 미국은 1960, 1970년대 미국 정부의 특허 정책에 대한 연구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돌법(the Bayh-Dole Act of 1980)을 제정했다. 그 이전에는 연방 기금으로 발명된 제품의 소유권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없었다. 이 법에는 (1) 대학교, 비영리 단체, 중소기업이 연방기금으로 발명한 제품이나 기술의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고 (2) 연방기관이 기업에 특허품과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공여할 수 있게 해서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두 가지 취지가 있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미국 정부의 실시하여에 대한 정책은 보다 엄격했다. 어찌보면 민간 기업들에 사용권을 공여하기를 꺼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사실 그 때 당시에는 정부 소유의 특허를 실시하여하는 경우는 전체의 5%로 민간 부문의 30%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 법은 연구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산학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표-4.6에 포함된 자료는 바이돌법이 대학교와 산업계 간의 기술이전을 상당히 증가시켰다는 점을 나타낸다.

140) 스탠포드의 기술이전국의 재무제표 참조 www.otl.stanford.edu 참조

표-4.6 미국 대학교의 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1980년 바이틀법의 영향¹⁴¹⁾

자료/ 연	1980	1986	1992	1996
대학교가 취득한 총 특허건수	200 (20개 학교)	해당자료 없음	1, 557 (139개 학교)	1, 776 (131개 학교)
대학교가 공여한 총 특허건수	96 (1974-84 평균)	해당자료 없음	755	2, 209
실시허여로 인한 총 수입	해당자료 없음	US \$ 30, 000, 000 (1986년 자료, 112개교)	US \$ 57, 000, 000 (1989~ 1990 평균)	US \$ 365, 000, 000

전통적으로 민간 분야 활동을 지원해온 미국이 특별법의 도움으로 겨우 학계를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시장지향 경제로의 전환기에 놓인 국가들의 경우 공공 분야의 연구진과 교수들에게 상업적 인센티브를 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할 만하다.

중국은 1984년에 처음으로 특허법을 제정했고¹⁴²⁾ 이를 통해 연구진과 대학 교수들의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1999년에는 신기술의 발명, 첨단기술의 개발과 산업에의 응용에 대한 새 법이 도입되었다. 이 법의 영향으로 대학교들은 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대학교수 및 연구진은 기술과 과학연구 결과의 사업화에 중점을 둔 산업단지에 참가했다. 이 법의 취지는 대학교, 연구 기관과 시장 경쟁력을 가진 첨단기술 산업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었다. 이 법은 또한 대학교가 개발한 기술을 민간 분야에 이전하는데 기여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상을 하도록 했고, 대학교가 기술이전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은 대학교가 지식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을 발명한 직원과 연구진에게 적절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했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발명품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하도록 대학교를 장려하기 위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41) www.autm.net, www.gao.gov, www.cogr.edu 참조

142) 이 단락은 다음 보고서에 기초한다. Journal of the Japanese Patent Society 211 (2000년 5월)에 실린 Chen Meizhang과 Zhang Hong의 "Technology Transfer from Universities in China 70-76페이지 참조

❶ 독점적 또는 개방적: 실시하여 정책과 사업화

학계의 연구결과를 시장 수요에 맞추려면 보통 추가적인 수정과 개발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개발의 경제성과 시장 환경이라고 하면 민간 분야의 사용권자가 특허 기술을 사업화할 독점권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사용권자가 발명 기술의 개발에 투자해서 상품화하는 동안 그런 투자는 할 필요없이 원 사용권자가 해 놓은 작업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경쟁자가 있다면 사용권자가 수익을 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시장 경쟁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로 사용권자는 실시권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사용권자에게 실시권의 가치를 가져다 주게 하기 위해 전용 실시권이 필요한 지 아닌 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실시권 협상에서 잠재적 사용권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전용 실시권의 필요성에 대해 사용권 공여자를 설득시키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전용 실시권이 없으면 민간 분야의 사용권자가 해당 기술을 수정하거나 개선할 의욕이 사라지게 된다. 기술이 상업적 용도에 적합하거나 상업적으로 성공적이지 않으면 충분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용권 공여자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 몇몇 국가는 공적자금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시권 정책을 최근 검토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정부지원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최근 수정해서 이제 민간 분야가 특허 기술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50%의 소유권만 인정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발명기술의 사업화에 나서지 않으려 했다.¹⁴³⁾

이와는 달리 어떤 경우에는 사용권 공여자가 기술이 널리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용 실시권보다 통상 실시권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기술이 널리 유포되면 궁극적으로 수익은 높아지고, 더 많은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기술에 대한 사실상의 기준, 즉 틀이 정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43) Dr. Hanns Ullrich의 "Use and Exploi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Country of Public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Recent Legal Developments in Germany and in the European Union," Streamlin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ceedings of the 1999 Summit Conference on Intellectual Property,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참조

특허 보유자가 자발적으로 당사자들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여한다면 정부와 학계가 발명한 기술이나 근본 기술은 충분히 사업화 될 수 있다. 미국의 바이돌법은 안전보장권("march-in" rights)이라고 알려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공적자금으로 개발했으며, 제 3자에게 사용권을 공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특허 기술의 사용권을 특허 보유자가 자발적으로 공여하지 않는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권을 공유하게 되어있다. 한 가지 예가 바로 유전자접합기술에 대한 특허이다(사례-4.7 참조). 생명공학의 또 다른 획기적 발명인 줄기세포의 연구목적 사용은 위스콘신 대학교의 비영리재단이 그에 대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실시권 정책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토론을 촉발시켰다. 미국 정부 관리의 표현을 빌자면, '특허 보유자들이 상업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부담없이 기본 연구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실시권 전략만 세운다면, 특허 실시가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¹⁴⁴⁾

[사례-4.7] 유전공학의 주요 특허

오늘날까지 바이돌법의 적용 사례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미국 특허상표청이 1980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코헨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보이어 교수에게 각각 특허를 인정한 DNA 재조합 기술일 것이다. 이 기술이 세계 여러 곳에서 특허를 획득했지만, 스탠포드 대학교의 기술이전센터(OTL: 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는 영리단체들을 위해 통상 실시권 프로그램을 수립했고,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이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스탠포드 기술이전센터는 300 건이 넘는 실시권을 허여했고 수익 달러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실시 허여된 기술은 생명공학 산업의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 이를 통해 생명공학은 성장을 거듭해 지금의 거대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출처: 미국 특허상표청 외무국장 로버트 스톨의 2000년 6월 28일 제 1차 지식재산권위원회(CIPR: Commiss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연례 총회 발언과 <http://infoserv.rttinet.psu.edu>의 미국 연구행정가 네트워크인 "대학기술이전(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144) 미국 보건부, 국립보건원의 기술이전국 국장 마리아 C. 프레이레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1999년 1월 12일 노동, 보건, 교육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상원 소위원회, 예산담당위원회에서 한 발언

❖ 대학교와 연구 기관이 여러 가지 실시하여 기법을 개발한다.

수월한 기술이전과 실시권 협상을 위해 공공 연구 기관과 대학교는 기술이전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협상력이 있고 기술과 지식재산에 능통한 직원이 있다면 이상적인 것이다. 전략과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이런 전문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모델은 다양하다. 특허청이 보유 인력을 동원하여 대학교와 연구 기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준정부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곳도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추후 민영화되었다. 법을 제정하여 대학교와 연구 기관들이 특허 실시하여 활동의 요건에 맞게, 또는 공적자금 수혜 조건에 맞게 자체적인 기술이전센터(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를 설립하도록 장려하는 국가도 있다. 이 각각의 모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미국은 바이돌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대학교에 기술이전센터를 설립했다. 그 결과 대학교기술관리자협회 회원이 1980년 113에서 1999년 2,178로 크게 늘었다.¹⁴⁵⁾ 대학교와 교내 기술이전센터의 수가 이같이 늘어난 것은 정부 지원 연구의 결과인 발명과 관련된 기술의 이전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이 학계와 민간분야를 효과적으로 연결했음을 나타낸다.

1970-80년대 일본은 정부지원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연구기관과 엄선된 민간 기업들로 구성된 여러 개의 컨소시엄을 수립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고갈되었고, 참여 기업의 이해가 달라 기초 연구 결과가 쉽게 사업화되지 못했다. 바이돌법의 성공에 고무된 일본 정부는 1998년 기술이전센터법(the Technology Licensing Office Law)을 제정했다. 이 법은 기술이전센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만 충족시키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행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이 법의 취지는 대학교와 민간 분야 간의 기술이전 계약을 장려하는데 있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2000년 현재 총 10개의 기술이전센터가 설립되었다. 기술이전센터들은 기술이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최대 미화 3십만 달러의 자금을 포함하는 원조를 받을 수 있고 특허 출원료도 면제받는다.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대학교들이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일반적인 지식재산 원칙과 규정을 만들도록 장려해왔다. 그 예로, 케이오 대학교의 이익 공유 비율은 기술의 사업화로

145) <http://www.autm.net> 참조

얻는 연간 총수익이 1백만엔(미화 9만 달러)에 못 미칠 경우 발명가가 수익의 80%를 갖기로 되어있다. 민간 분야는 이 기술이전센터 제도를 유용하다며 환영했다. 그 이유는 첫째, 대학교가 개발한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 발견할 수 있고, 둘째, 기술이전센터라는 하나의 연락창구가 생겨서 대학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⁶⁾

인도네시아는 최근 전국의 대학교와 연구 기관에 지식재산 관리소를 세우는 야심찬 작업에 착수했다. 20개의 지식재산 관리센터가 설립되어 지식재산 실시허여 기법과 지식재산권 관리, 상담, 특허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지식재산 관리센터의 설립은 ITB 내외에서 발명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판매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식기반의 국가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¹⁴⁷⁾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신기술 경제강국의 선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대학교와 특허 실시허여: 지식창출을 위한 최적의 결합

많은 대학교들이 기업화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그 27개의 단과대학은 학내 연구 결과로 개발되는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최근 1천 7십만 유로(미화 2천5백만 달러)를 들여 벤처 캐피탈 기금을 세웠다. 이시스 대학 기금(Isis College Fund)은 대학 연구를 상업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1988년 이 대학교는 실험실에서 발명한 기술의 특허를 획득하거나, 그 특허받은 기술을 실시허여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업들을 통해 상업적 용도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시스 혁신(Isis Innovation)이라는 특별 부서를 만들었다. 이미 18개 기업에 투자를 한 상태이고, 그 중 적어도 5개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¹⁴⁸⁾

1995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는 기술이전센터(TLO)를 세웠다. 처음에는 단 한 명이 수행한 시범 프로그램으로 불과 세 개의 기술로 미화 5만5천 달러의 수익을 올렸

146) 1999년 실시허여 실행 학회(Licensing Executive Society)의 일본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표본: 100개 농장)

147)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Office of Institute of Technology, Bandung, WIPO에 파일로 된 안내책자 있음.

148) 1999년 11월 5일자 The Times의 “Oxford University Venture Capitalists”,

지만 이제는 세계 각지의 기업에 사용권이 공여된 1,100 개 이상의 널리 사용되는 발명품을 관리하는 20명의 직원을 둔 어엿한 센터로 성장했다. 전체 발명품 중 220개는 사용료로 총 미화 4천4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¹⁴⁹⁾ 1999~2000년 동안에만 스탠포드 대학교는 총 사용료 수익으로 미화 3천6백9십만 달러를 달성했다. 게다가 이 때는 그 유명한 코헨-보이어 DNA 특허(사례-4.7 참조 바람)에 대한 사용료 지불 기간이 끝난 첫 해였다.¹⁵⁰⁾

뛰어난 신기술의 실시권을 허여하는 대학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MIT 공대에서 개발한 광학기술의 실시허여,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줄기세포 실시허여, 영국 바쓰 대학교의 광섬유기술, 이 모두가 연구 결과의 사업화를 허용하기로 한 유명 연구 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¹⁵¹⁾

대학교와 공공 기관 연구진들이 작성한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 및 실시허여 규정을 대학 규칙에 포함시켜야만 연구 기관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갖춰지면 성공적인 실시허여로 재정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생각조차 못했던 연구원들에게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쉽게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문적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부적절한 일로 여겨졌다. 그 결과 여러 국가에서 아주 소중한 지식 자산이 사장되었다. 기술이전센터는 연구진이 발명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준다. 정책 결정자들은 특허의 실시허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학문적 연구 활동과 민간 분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법에는 발명의 핵심을 분석하고, 강력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잠재적 사용권자를 찾고, 실시권 협상을 하고, 발명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실시권 계약으로 잠재적 또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대학교와 연구진은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연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49) Hans Wiesendanger의 A History of OTL (Palo Alto: 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 Stanford University). <http://otl.stanford.edu/about/resources/hitory.html> 참조

150) Stanford OTL 1999-2000 연례 보고서 참조

151) 2001년 7월 9일자 NY Times의 "Pursuing a New Line in Optical Research".

● 기술이전기관의 민영화

정부 지원 연구 결과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관들 중 몇 곳은 이미 민영화되었다. 민영화된 후 이 기관들의 사업 범위가 확장되었고 활동의 유연성도 제고되었다. 국립연구 개발회사(NRDC: the 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가 좋은 예이다. 1948년 영국 정부가 특허 실시허여를 통해 대학교와 공공 연구 기관이 정부 지원 연구 활동으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한 국립연구 개발회사는 1981년 BTG로 새롭게 태어났다. BTG의 수익은 실시허여를 통한 사용료와 BTG가 관련된 혁신의 결과로 설립된 벤처 기업들의 주식에서 비롯된다. BTG는 관련 기술을 패키지로 특허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이미 사업화될 준비가 된 기술로 판매하는 전략을 개발했다. 한 예로 자기공명영상법(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은 노팅엄, 애버딘, 옥스퍼드 대학교의 발명품을 결합한 기술이다. 의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견인 MRI는 BTG에 미화 1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¹⁵²⁾

독일의 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도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원래는 1949년 독일 연구 인프라 구조를 재조직하고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뮌헨에 바이에른 연구소로 설립되었던 이 협회는 현재 독일 최대 규모의 응용과학 연구 기관이다.¹⁵³⁾ 이 협회는 처음부터 혁신을 향한 업계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 협회는 우선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연구 분야에 집중했다. 1952년 독일연방정부의 경제부는 프라운호퍼 협회가 독일연구협회(DFG: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와 막스플랑크연구협회(Max-Planck-Gesellschaft)와 더불어 독일 연구활동에 세 번째로 중요한 연구소로 인정했다. 1969년 프라운호퍼 협회는 정부의 기초자금 지원계획에 포함되었고 1973년에는 각료회의의 결과 이른바 “프라운호퍼 모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되었다. 프라운호퍼 모델이란 프라운호퍼 협회가 성공적으로 계약 연구 업무를 따낼 경우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그에 비례해 올린다는 것이다. 그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연구 개발이 엄격히 시장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 정책 결정자들이 프라운호퍼 협회를 응용연구협회를 주도하는 대표 기관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152) http://www.btgplc.com/company_profile/index.html 참조

153) <http://www.fhg.de> 참조

드러난 것이었다. 1978년에 이르러 중소기업에 위한 계약 연구를 촉진하는 프라운호퍼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고, 큰 성공을 거두어 명성을 떨쳤다. 설립 50년이 지난 1999년, 프라운호퍼 협회는 9천3백명의 직원이 47개 기관에서 일하며 연 수익으로 약 14억 마르크(미화 6억4천만 달러)를 창출하는 거대 기관으로 자라났다. 1992년 이래 프라운호퍼 협회는 독일에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연구 단체들의 특허 출원 순위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1999년에는 독일에서 공개된 유효한 특허 숫자로 18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협회의 특허 센터는 특허 관련 모든 사안에서 협회를 대표할 뿐아니라 학계와 업계의 파트너 역할도 한다. 특허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발명의 평가, 특허 출원, 실시허여, 기술자문, 전략적 기획, 특허와 기술 평가가 있다. 특허 센터는 대학교와 다른 연구 기관은 물론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수행한 연구를 토대로 한 신기술의 발명을 장려하며 업계와의 실시권 계약을 촉진함으로써 특허를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를 독려한다. 특허 센터는 신제품을 기획,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특허 정보로 조언을 하고, 혁신적인 기술의 중개인 역할도 한다.

이스라엘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다. 저명한 화학자이자 이스라엘의 첫 대통령인 차임 바이즈만 박사는 1949년 이스라엘 최초의 학술기구인 바이즈만 과학 연구소를 설립해 자체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기구의 역할을 하게 했다. 연구 결과의 실시허여를 돕도록 1959년에는 민간 기업인 예다연구 개발회사를 설립했다. 예다는 연구소가 발명한 기술이 연구소에서 시장의 제품으로 변화하는 전 과정에 적합한 산업 파트너를 찾아주고 이에 대해 서비스료를 받았다. 예다는 상업적 가능성이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파악해 평가하고, 발명된 기술의 특허를 획득하고 연구소와 소속 과학자들의 지식재산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하고, 연구 결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담보로 연구 자금을 유치하고, 관련 업계에 특허 기술과 제품의 실시권을 허여한다. 오늘날 예다는 이스라엘 최고의 특허기구로 성장했으며 1995~1999년 동안 미국에서 108개의 특허를 획득했다. 이스라엘의 첫 첨단 산업단지인 근처의 키르야트 바이즈만 산업단지¹⁵⁴⁾와의 협력이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 108개의 특허는 전 세계에 실시허여되었다.

154) <http://wis-wander.weizmann.ac.il/> 참조

● 신기술과 신산업을 지원하는 특허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교와 연구 기관의 연구 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들 기관과 새로 부상하는 기술과 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특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제 특허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특허, 기술, 떠오르는 신산업과의 관계에 대한 주목할 만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과거에 주로 공장에서 생산된 기계, 장치, 도구(결론적으로는 제품)에 특허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술 혁신을 반영해 특허성의 대상도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오늘날 특허는 중공업뿐 아니라 기타 일반 산업은 물론 서비스업에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났지만, 지난 세기의 마지막 15년간 가장 중요한 혁신은 컴퓨터 전자, 디지털 기술, 계몽학, 생명공학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컴퓨터 기술과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특허 보호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 또는 제한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었는데 그 중에는 특히 큰 위험부담을 안고 기술을 발명한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산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나라에서는 특허 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를 두어 특정 형태의 지식창조물(예: 집적회로 배치설계)을 보호한다. 또 다른 해결책은 특허법의 해석이나 특허 대상(예: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제품, 사업 방법, 인간 계몽)의 범위를 일정 부분 수정한 특허 제도로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변화가 신속하게는 아니라도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여전히 전 세계적인 논의의 대상이 된다. 분명한 것은 최근 특허 제도가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 더 역동적으로, 빈번하게 수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 부상하는 기술이 창출해낸 새로운 형태의 지식창조물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책 결정자들은 특허 보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 방식과 계몽학은 금세기 초 특허 제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 컴퓨터 기술도 초창기에는 특허의 보호를 필요로 했다

통신에서 항공까지 생활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컴퓨터는 현대 사회 기능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이다. 금세기 전야에 Y2K 바이러스로 생활이 거의 마비될 것이라고 크게 걱정했던 일은 우리가 얼마나 컴퓨터에 의존하면서 살며 우리 일상생활에 컴퓨터가 얼마나 가깝게 다가왔는 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1959년 잭 S. 킬비는 신기원을 이룩한 반도체 집적회로(일반적으로 마이크로칩으로 알려짐)의 시연을 했다(사례-4.8 참조). 후에 마이크로칩은 인텔 286 같은 성능이 더 뛰어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되었고, 컴퓨터와 다른 전자제품에 마이크로프로세서(또는 칩)는 아주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회로의 밀도를 높이는 제조 기술과 칩의 속도 및 기능과 관련된 발명은 특허로 보호 받았다. 하지만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특허 제도가 아닌 특별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배치설계에는 발명의 노력이 포함되었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입법자들이 배치설계는 특허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프로세서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 산업의 연구 활동의 초점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처음에 소프트웨어는 특허 보호와 관련해서는 논외로 여겨졌다. 기능성있는 불가분의 설계에 관한 특허권의 영향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가 있는 후에, 이런 견해는 바뀌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컴퓨터 산업의 원동력으로 경제에 그리고 다른 많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은 분명해졌다. 오늘날 인터넷의 도래로 특허 제도가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는 사업방식의 발명이라는 것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특허법 및 특허 정책과 관련된 정책 결정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사례-4.8] 킬비의 마이크로칩 특허

조레스 I. 말페로브와 허버트 크뢰머와 함께 200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의 영예에 빛나는 잭 S. 킬비는 20 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기 공학자 중 하나로 손꼽히고 마이크로칩의 발명가로 계속 기억될 것이다. 마이크로칩은 미국 특허 번호 3,138,743번이 부여된 특허품이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킬비는 특허번호 743 기술을 기초로 마이크로칩과 관련된 60가지 발명을 했고 1970년대 중반까지 산업적 응용의 범위를 넓히고 컴퓨터 산업의 근본적인 구분을 만들었다. 이러한 발명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당시 부상하던 시장인 마이크로칩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을 뿐아니라 오늘날 정보기술의 기본적인 특징인 더 빠르고 더 작은 것을 추구하는 연구 개발 경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출처: www.nobel.se/physics/laureates/2000/illpres/kilby.html, www.ti.com/corp/docs/press/company/2000/c00017.shtml

● 지식재산의 보호를 받아 발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1980년대에는 특허 제도나 저작권 제도 또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식재산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했다. 논의 결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장치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품은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했고 협정국들에게 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세계적인 협정(TRIPS와 WCT)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발명된 제품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에 대한 법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는 해당 지식재산의 성격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저작권과 특허법 두 가지로 보호받기도 한다.

1980년대에는 또한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에 필요성이 커졌다. 그로 인해 1989년에는 WIPO에서 이를 주제로 외교적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저작권 보호 같은

다른 지식재산 보호 수단에 비해 특허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 관련법이 국가별로 어느 정도 다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이었다.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보호가 지나치면 지식창조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욕을 꺾게될 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특허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치열한 컴퓨터 산업에서는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로 특정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품을 보호하는 편이 낫다는 정치적 기류가 형성되었다. 정책 결정자들은 컴퓨터 관련 신기술이 발전된 국가들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도록 기업들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품을 특허로 보호하는 편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컴퓨터 관련 발명품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수는 계속 늘어난다. 벤처회사는 자금 유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특허를 획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더 자주 특허 출원을 한다. 이미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해놓은 기업들 중 특히 훌륭한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¹⁵⁵⁾를 보유한 기업들은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점차 다른 기술의 기초가 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하드웨어를 설계, 제조,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예: 하드웨어 기술 언어인 베릴로그(verilog). 이 소프트웨어는 많은 경우에 저작권, 특허 모두의 보호를 받는다.)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성의 범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국가간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자사의 지식재산을 보호받기를 원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 대한 기준의 통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어떤 국가는 특허 제도로 발명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다면, 특허 제도를 둔 국가에서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특허 자산을 가지려는 의욕을 갖게 되는 반면 특허 제도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국가와 관련 기업은 해당 분야의 특허 자산을 축적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특허 자산의 실용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적 도구로서의 특허의 기능 중 실시권의 사용에 대해 설명할 때 다루겠다.

155) 미국에서 IBM이 취득한 특허의 1/3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것이다.

● 영업방법과 지식재산 보호가 인터넷 관련 사업의 성장에 부합한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식재산의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지식재산 보호가 다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예가 바로 급성장 중인 인터넷 상의 전자상거래이다. 최근 소위 영업방법 특허라는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가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사업 모델은 대부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응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업방법의 특허성은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최근에 제정된 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98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이 SSB 은행(State Street Bank&Trust) 대 금융서비스 제공 회사인 시그너처 파이낸셜 그룹(SFG: Signature Financial Group) 사건에 대해 영업방법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¹⁵⁶⁾ 이 중요한 결정은 특허의 “기술적 성격”에 대한 여러 국가의 기존의 견해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SSB 사건 이후 온라인 결정 분석, 온라인 재무 제도, 온라인 고객 보상 제도, 심지어 특허를 분류, 평가하는 제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가 허여되었고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특허 보호의 잠재적 기능이 훨씬 더 크며, 아주 더 광범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에 특허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영업방법의 응용이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은 사실 오늘날 경제에 있어서 사업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영업방법 발명은 대체로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과 인터넷 상에서 보다 간편하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이 발명 덕분에 관련 당사자들이 근거리에 있지 않고도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특허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취득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 영업방법의 특허는 그 수가 1996년 700건에서 1999년 2,60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그 중에는 일반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것도 있다.¹⁵⁷⁾ 인터넷 관련 특허가 가지는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영향과 이와 관련된 특허

156) 미국에서는 1998-1999년 동안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 출원이 붓물을 이루었다. 그래도 1999년 USPTO에 접수된 총 특허 출원의 1%에 못 미치는 하지만, 숫적으로는 1996년 700건이던 것이 1999년에는 2,100건으로 크게 늘었다.

157) 여기에는 프라이스라인의 “직접 가격을 매기는...” 역경매를 통한 상품 구매 시스템(미국 특허 번호 5897620), 종종 원클릭 방법이라고 불리는 사용자들의 구매 절차를 단순화하는 아마존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구매 주문을 분류하는 방법과 시스템”(미국 특허 번호 5960411), “쌍방 통신 시스템 내에서 개별 고객의 특성에 맞춘 광고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더블클릭의 특허(미국 특허 번호 5933811)가 있다. 더블클릭이 특허를 받은 방법은 기업의 인터넷 광고에 대한 것이다.

성, 선행기술, 광범위한 특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진행 중이다.¹⁵⁸⁾ 최근 인터넷 특허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대한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토론이 더 가열되고 있다.

한 예로 온라인 서점 아마존(Amazon.com)은 역시 온라인 서점 반스앤노블(Barnesandnoble.com)이 특허를 받은 자사의 주문 방법인 “원클릭(one-click)”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반스앤노블이 원클릭 구매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비 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다. 프라이스라인(Priceline.com)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여행 사이트 익스피디아(Expedia.com)가 프라이스라인이 특허를 획득한 “역경매(reverse-auction)”를 모방했다는 것이다. 결국 합의 끝에 익스피디아는 프라이스라인에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인터넷 영업방법과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발전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야말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온라인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는 유형 자산은 제한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 같은 무형 자산에 사업의 성공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특허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¹⁵⁹⁾ 미국 특허상표청에 따르면 1990년까지만 해도 사업모델 특허는 주로 자동우편요금측정법과 자동금전등록기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지만, 1994년에 들어서는 재무거래시스템에 대한 사업모델 특허 수가 더 많아졌고, 1999년에 들어서는 재무거래시스템과 전자구매가 주요 분야로 자리 잡았다. 최근 특허 출원 경향을 보면 광고관리 시스템이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00년에 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를 허용한 사업모델은 총 899개에 달한다.

영업방법 기술의 특허 보호에 나선 국가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 8월 1일 시행된 영업방법 심사기준에 따라, 현재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한국

158) 선행기술을 제대로 검색할 수 없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특허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 특히 소프트웨어, 영업방법, 생명공학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특허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2000년 3월 29일, USPTO는 전자상거래와 영업방법 관련 기술에 대한 조사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USPTO 백서(Washington, D.C.: USPTO, 2000)의 USPTO, “Automated Financial or Management Data Processing Methods (Business Methods),” 참조

159) USPTO의 “Automated Financial or Management Data Processing Methods”와, http://www.hellopatent.com/us_bm/us_bm.html 참조

특허청에 따르면 이미 접수된 특허 출원만 4,000 건에 달하며 대부분이 인터넷에 관한 것으로 자신들의 심사기준을 수정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에 적용 가능한 영업방법의 특허성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다. 유럽 위원회의 경우 2000년에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해 영업방법의 발명이 유럽공동체 내에서 특허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고, 그 결과 최근 새 정책을 제안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채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¹⁶⁰⁾ 상술한 바와 같이 1980년대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품의 특허 보호 사이에 경계가 있었는데, 영업방법이 점차 단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인터넷이 사실상 그 경계를 지워버렸다.

다른 모든 기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업방법에 있어서도 특허는 신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사례-4.9 참조).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히 핵심적인 사업모델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특허를 허여하는 경우, 이런 특허가 남용되면 혁신을 막고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¹⁶¹⁾ 온라인 사업모델이 특허 획득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의 사업모델이 인터넷 상에서 단지 재발명될 뿐이라는 것이다.

영업방법의 특허가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영업방법에도 특허를 부여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아주 기초적인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을 따라잡기에도 벅찬 국가도 있다. 이런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장의 영업방법의 소유권을 영업방법 특허에 집중적인 지원을 한 국가의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영업방법 특허에 관심이 적은 국가나 그 사안을 다룰 능력이 없는 국가의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시장이 국내로 한정된다면 이 격차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인터넷 상의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이 분야의 지식자산을 갖지 못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 소유한 특허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있다. 전자상거래 산업을 발전시킬 인적자원이 부족해도 정책 결정자들이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라

160)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 참조

161) 현재의 획일적인 특허 제도를 개혁해서 좀더 차별화된 제도를 만듦으로써 지식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허여되는 특허의 종류에 차이를 두는 것이 생산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촉진하는 최적의 규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비판론자들, 특허법조계 일각에서는 그 반대 주장을 한다. 즉, 주제를 기준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영업방법 특허와 관련된 문제점은 현재 기준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은 지식자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이 훨씬 역동적인 다른 국가로 가서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런 “두뇌 유출”은 다시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영업방법의 특허의 범위와 영향이 세계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세계 각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례-4.9] 아이디어 공장

워커 디지털(Walker Digital Corporation)은 1994년 인터넷 기업가 제이 워커가 설립한 기업이다. 혁신적인 기업용 정보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하는 이 기업은 토마스 에디슨의 유명한 멘로 파크 실험실(Menlo Park invention factory)을 본따 창립되었다. 워커 디지털은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최소 12개 보유하고 있다. 워커 디지털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며 프라이스라인의 부회장인 제이 워커는 “영업방법의 특허성에 대한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의 정책과 법원의 결정을 볼 때, 이제 기업은 자사가 개발한 상품 뿐 아니라 그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려고 개발한 방법까지 보호할 수단을 갖게 되었다. 특허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와 같은 인식은 미국 기업이 흥미롭고 중대한 혁신을 이루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새로운 사업방식이 생겨나고 번성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프라이스라인의 설립 기반의 일부는 이른바 “직접 가격을 매기는 역경매” 사업 모델로 워커 디지털이 획득한 특허이다. 이 사업 모델은 관심있는 구매자들이 잠재적 판매자에게 구매의사를 제한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사업 프로세스이다. 워커 디지털은 프라이스라인에 특허권을 양도하고 미화 5십만 달러를 받는 대신 프라이스라인 주식 750만 주를 받았다. “우리는 특허로 경쟁우위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때문에, 특허는 프라이스라인의 사업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프라이스라인의 회장이자 CEO인 릭 브래덕은 말한다. 릭 브래덕은 또한 “지식재산이 보호되면 우리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쟁적인 모방에 대해 별 걱정 없이 사업과 브랜드를 발전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허는 또한 실시허여를 통해 새로운 수익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도 생긴다”고 덧붙인다.

출처: 포브스의 워커 디지털과 프라이스라인

● 생명공학: 미래의 기술

기술혁신의 다음 주자는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 게놈의 해독, 동식물 유전학의 성과, 이 밖의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을 볼 때, 이런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금세기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주요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신약, 치료법, 기술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세계 모든 국가의 연구원들은 과학적 지식의 진전과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미 과학자들은 최신의 유전적 발견을 활용해 혁신적인 신약에서부터 농사법 개량에 이르는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 예로, 식물 육종학으로 유전학적 식물 자원을 개선한 종자에 대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아시아에서는 밀과 쌀에 위축 유전자를 포함시키는 유전학 활용 종자 개선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밀 생산량이 연간 미화 20억 달러, 쌀 생산량은 연간 미화 15억 달러나 늘어났다. 터키의 야생 밀 공장은 각종 상업용 밀에 내병성 인자를 도입해서 해마다 미국으로만 미화 5천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이와 비슷한 예는 그 외에도 많다.¹⁶²⁾

이러한 노력은 모두 지식재산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식물변종 보호는 이 분야의 발전의 촉매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력한 특허 보호는 윤리적 환경적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고 생명을 구하는 필수적인 신약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것은 이 책에서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정책 결정자와 입법가들은 기술의 발전 뿐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사안에 맞게 계속해서 특허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특허 보유자와 공공의 이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은 재차 강조하고 싶다.¹⁶³⁾ TRIPS 협정에 대한 장관 선언문도 TRIPS가 보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균형을 찾고자 했다.

162) UN 사무국, 지속가능한 개발 위원회, 생물다양성에 대한 1995년 회의용 CSD 보고서, 1995, E/CN.17/95/7, 20 단락 참조

163) WIPO 웹사이트에 1999년 말 게재된 밀레니엄 메시지 참조(http://www.wipo.int/about-wipo/en/index.html?wipo_content_frame=/about-wipo/en/dgo/index.html), 2000년 5월 15일 Gro Harlem Brundtland의 "World Health Assembly Technical Briefing: Scaling up action to tackle illness associated with poverty, the Global Fund for AIDS and Health", 2000년 5월 WHO 사무총장의 연설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Health Leaders of Today," (<http://www.who.int/director-general/speeches>) 참조

시장과 규제의 세계화, 신기술(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 상품의 가치가 핵심 자산으로 부각되는 것과 같은 최근의 발전 상황으로 인해 유전자 자원과 기존 지식의 보존, 관리, 지속 가능한 사용, 혜택 공유에 지식재산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7장 참조). 이제 생명공학 분야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특허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지난 20년 간의 발전상을 요약하고 유망한 미래를 그려보겠다.

❶ 특허가 위험 부담이 높은 생명공학 연구를 지원한다

1980년은 특허와 생명공학에 있어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린 해였다. 그 해 미국 대법원은 다이아몬드 대 차크라바티(Diamond v. Chakrabarty)¹⁶⁴⁾ 건에 대해 원유를 분해하도록 유전자 조작이 된 박테리아에 특허를 허여할 수 있다고 결정내리면서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특허를 허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획기적인 결정은 미국에서 생명공학적 발명이 특허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생명공학적 발명이 특허성을 인정받는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¹⁶⁵⁾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에 기여해 왔다. 신약 개발 비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연구에 기반을 둔 제약 사업에 있어서 연구 개발 투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적절한 특허 보호가 있다는 것은 기업의 사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멕시코가 1991년 특허법을 강화한 이후 멕시코 제약회사에 대한 미국의 연구 개발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의 제약 회사들은 1980년대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가 도입된 이래 내수 제약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한 여론 조사를 보면, 독일, 일본, 미국의 유명 화학 및 제약회사들이 국가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정도는 그 국가의 연구 개발 시설에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 큰 고려사항이 된다고 한다.¹⁶⁶⁾

164) 206 USPQ 193(1980) 참조

165) TRIPS 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식물과 동물의 생산을 위한 지극히 생물학적인 과정”과 식물, 동물의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미생물과 “비생물적이고 미생물적인 과정”에 대한 보호는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국들은 더 나아가 특허나 효과적인 특별 제도 혹은 그 두 가지의 결합으로 식물 변종을 보호해야 한다.

166) Edwin Mansfield의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iscussion Paper No.19,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95) 참조

[사례-4.10] 사람 한 명과 개 한 마리로는 신약을 개발할 수 없다

각각 최근 합병을 통해 초거대 기업으로 탄생한 글락소스미쓰클라인(GlaxoSmithKline)과 파이저워너램버트(Pfizer Warner-Lambert)는 2001년 각자 미화 40억 달러를 연구 개발비로 투자했다. 글락소스미쓰클라인은 과학적 자원을 많이 보유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질병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사람 한 명과 개 한 마리 가지고는 신약을 개발할 수 없다. 여러 다른 분야의 광범위한 지식을 한데 끌어모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심지어 12억 파운드의 연구 개발 예산이 있어도 예산 부족으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글락소스미쓰클라인의 회장 리처드 사익스 경은 말한다.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고 시판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미화 8억 2백만 달러로 추정된다.

출처: 2000년 4월 6일자 파이낸셜 타임즈, 신약개발 연구를 위한 터프츠 센터(Tufts Center for the Study of Drug Development, 2002)

● 개발도상국들이 특허 기술을 활용해 질병 치료법 개발의 선구자 역할을 한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됨에 따라, 세계 모든 연구자들이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 주는 혜택과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브라질, 중국, 쿠바, 인도, 한국, 싱가포르와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 생명공학 연구소가 계속해서 설립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공학 연구는 점차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 국가들은 자국의 생명공학 기술의 진전과 과학 기술의 발전을 후원하는 정책에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다(사례-4.11 참조). 한 예로, 중국의 장쩌민 주석은 “우리의 목표는 중국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 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과학적 윤리를 정립 발전시키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과학기술 연구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¹⁶⁷⁾.

167) 2000년 10월 30일자 Singapore Straits Times의 “The Jiang Zemin Theory” 참조

[사례-4.11] 쿠바: 생명공학분야 주요 수출국

최근 스미쓰클라인 비참 (SmithKline Beecham) 과 쿠바의 핀레이 연구소 (Finlay Institute) 간에 맺은 계약으로, 영국계 미국 제약회사그룹인 스미쓰클라인은 핀레이가 개발한 뇌막염 백신을 전 세계에 판매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 이 백신은 뇌막염에 대한 백신으로는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막염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주로 발병하며 사망률이 7-19%로 높은 전염성 질병이다. 쿠바에는 이 질병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으나 여전히 세계 다른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1980년대 뇌막염이 유행했을 때, 이 백신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로 수출되어 뇌막염 발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안전한 백신으로 입증되었다. 백신 판매는 쿠바가 이들 나라에 진 부채를 상환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백신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발달한 쿠바의 생명공학 산업이 거둔 여러 성과 중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오늘날 쿠바는 생명공학 제품 수출의 선두주자로 연간 판매액이 미화 2억9천만 달러에 달한다. 쿠바에서 생명공학 산업은 자국의 가장 큰 수출원이다. 쿠바는 유전공학 생명공학 연구소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Institute), 분자면역학연구소 (Molecular Immunology Institute), 국립 생물의학 연구소 (National Bio-Medical Institute) 과 핀레이 연구소가 발명한 66개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쿠바 과학자들은 또한 암, 콜레라, 장티푸스, 뎅기열, 폐렴 상구균 박테리아,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쿠바 과학자들은 생명공학 연구를 농업과 기타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병원균을 가진 진드기로부터 소를 보호하는 백신, 유전자조작으로 병충해에 강한 곡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산업용 효소가 있다.

이 같은 쿠바의 생명공학 분야의 대성공은 정부가 생명공학 시설, 연구 및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쿠바에는 인구 1000명 당 1.8명의 과학자와 공학자가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높은 비율이다. 또 연구센터는 총 222개로 34,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출처: 로이터와 타임

인도 또한 신약 개발에 앞서가는 검증된 선두주자이다(사례-4.12 참조). 의약품의 특허 보호를 강화하면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이 약품을 대량으로 모방하는 데서 벗어나 자사 소유의 지식재산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점점 많은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얻고 있다.¹⁶⁸⁾ 이 기업들이 가치 사슬의 단계를 밟아 올라감에 따라, 이들 중 상당수는 혁신적인 약품의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벌써 지식재산의 증가라는 결실을 거두고 있다.

[사례-4.12] 레디 박사의 인도 성공기

K. 안지 레디 박사의 연구소는 그 규모가 급속도로 커져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 품질이 좋고,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레디 박사의 연구 재단(Dr. Reddy's Research Foundation, DRF)은 1993년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4년 이래 DRF는 여러 분야의 몇 가지 새로운 화합물을 발견했다. 세 개는 공식화했고 두 개는 이미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르디스크(Novo Nordisk)에 실시권이 허여되었다. 이 실시권 허여는 자사의 발견을 외국 다국적기업에 실시허여한 최초의 인도 기업이라는 명예를 DRF에 가져다 준 획기적인 계약이었다.

이 거래로 노보 노르디스크는 DRF가 발견하고 특허를 취득한 화합물을 기초로 의약품을 개발하고 인도를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판매할 전용 실시권을 얻게 되었고, 그 댓가로 DRF에 기념비적인 최고 금액과 사용료를 지불했다. 이 계약서에는 당뇨병, 비만, 이상지방질혈증의 치료에 필요한 화합물이 포함되었다. 그 중 DRF-2725는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자로 현재 임상실험 중이며 이에 대해 DRF는 이미 노보로부터 미화 8백만 달러라는 획기적인 사용료를 받았다. 신약 출시에 드는 비용 중에 임상실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매우 높지만 그렇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DRF에게 있어 노보와의 거래는 매우 중요했다. DRF는 또한 노보 노르디스크가 약품을 세계 시장에 판매하게 됨에 따라 자사의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 노보 노르디스크로써도 이미 새 분자 발견에 필요한 초기 연구가 완료된 상태라서 가장 시간 및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망한 새 화합물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이익이다. 개발도상국 기업이 발견한 새 분자의 발전과 사업화는 앞으로 이 같은 계약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168) 1999년 10월 28일자 Far Eastern Economic Review 참조

DRF는 특허 보호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레디 박사는 기업과 국가의 경제적 성공을 특허 출원수로 알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허로 혁신적인 발견과 발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DRF가 세계 시장에 신약을 판매하고 또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특허 제도가 강력하면 혁신적인 신제품과 방법을 개발하려는 현재의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 DRF는 자사의 모든 발명품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했다. 미국에는 31개의 특허를 신청했는데 그 중 이미 17개가 인정되었다. 인도에서는 110개의 상품과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 출원이 활동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DRF는 전 세계의 자사 특허 출원과 특허 전략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할 사내 지식재산 관리그룹을 설립했다.

출처: 레디 박사 연구 재단

❶ 지식재산에 기초한 다국적 합작투자가 의약품 연구를 향상시킨다

의약 및 생명공학 연구는 그 성격상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제휴를 맺게 한다. 합작투자와 다른 연구 협력의 형태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는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나눌 필요를 생긴 것이 최근 의약산업에서 나타난 다국적 합병 및 통합의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세계 의약 산업의 연구 개발 투자는 1998년 미화 390억 달러에서 1999년에는 미화 430억 달러로 늘어났고, 생명공학 기업들도 연구 개발에 미화 100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 국립의료원은 해마다 연구비로 170억 달러를 사용한다. 세계의 다른 어느 곳보다 미국의 연구 개발지출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17% 증가해 미화 24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례-4.13] 바이오브라스(BIOBRAS)

바이오브라스는 원래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연방 대학교의 소규모 독립 실험실이었다. 바이오브라스는 미국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효소센터(New England Engyme Center)와 실시권 계약을 맺고 효소 생산 활동을 시작했다. 1977년 브라질 보건부의 도움으로 바이오브라스는 특허 소유업체이자 다국적 제약회사인 엘리 릴리(Eli Lilly)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브라질 내에서 동물 인슐린의 생

산과 사업화를 담당하게 되었다. 엘리 릴리는 바이오브라스의 지분 45%를 가져가는 대신 기술을 이전해 주었다. 이 합작투자 계약의 내용 중에는 엘리 릴리가 바이오브라스의 직원들을 연구 개발 측면은 물론이고 행정과 마케팅에 대해서까지 교육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엘리 릴리와 바이오브라스의 합작투자 계약이 만료된 6년 후, 바이오브라스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주요 인슐린 제조업체로 성장해 있었다. 바이오브라스의 인슐린 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을 보였고 이 브라질 기업은 곧 주요 생산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한편 바이오브라스는 연구 활동에도 참여하여 최근 몇 년 사이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바이오브라스는 이제 재조합 인간 인슐린을 생산할 기술과 능력을 가진 세계 4대 회사에 들며 그 중에서 유일한 비다국적 기업이다. 이 기술은 바이오브라스가 브라질리아 대학교와 공동 개발하였고 그 후 브라질, 캐나다, 유럽과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재조합 인간 인슐린에 대한 특허 획득은 바이오브라스에게 새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최근 몇 년간 매출은 꾸준한 상태를 유지하였고 주가는 5년 동안 6배로 상승했다. 바이오브라스의 지식재산(특히 재조합 인간 인슐린에 대한 특허)을 금융시장에서 미래 성장의 주춧돌로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바이오브라스의 성공의 비결은 규모가 큰 제약회사와 특허 실시권 계약을 맺고 기술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자체적인 선구적 기술을 만들어 낼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한 데 있다.

출처: <http://www.uol.com.br>, <http://www.biominas.org.br/home.html>, USPTO, pharmalicensing.com

자금과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연구자들은 기반이 잡힌 연구 기관이나 기업들과 연구개발 합작투자를 함으로써 연구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찾고 있다(사례 4.13, 4.14 참조). 열대성 질병과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발병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법 연구 개발은 세계 연구개발 투자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해마다 보건 연구 비용이 미화 560억 달러가 넘지만, 이 중 세계 인

구의 90%가 감염될 수 있는 질병 퇴치에 할당되는 것은 10%도 채 안된다. 1975년~1997년간 1,223개의 새로운 화합물이 출시되었지만, 이 중 열대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은 11개에 불과했다.¹⁶⁹⁾

신약 개발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그에 따른 재정적 보상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이 분야의 연구 개발 투자를 줄여왔다. 그 결과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이 질병들의 치료법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전통 의학에 기반을 두고 민간 분야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특허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첫째, 특허 보호 없이는 연구 개발에 필요한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는 영리 단체를 찾을 수 없으며, 둘째,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아마도 독자적으로나 합동으로 연구에 따른 발명품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자국 시장 또는 외국 시장에서 그 발명품에 대하여 특허를 획득할 필요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 보호 없이는 다국적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한 발명을 할 지는 모르지만 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서 실시권 거래에 사용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받거나, 추후 연구 개발 자금을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례-4.14] 싱가포르에서는 생명공학이 어떻게 과학의 지평을 바꾸고 있는가

투구게는 살아있는 화석이다. 4억년 동안 살아남았고 동아시아 연안에 산다. 투구게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혈액에 포함된 강력한 항독소가 유해한 박테리아를 막아주었던 데 있다. 1950년대부터 제약회사들은 투구게의 혈액에서 채취한 화합물을 사용해 약, 주사액, 식품, 임상용 표본의 순도를 실험했다.

169) 1999년 8월 14일 The Economist의 “Science and Technogoy: Balms for the Poor” 참조

오늘날 이 제품은 널리 활용되지만 이제 투구계는 멸종 위기에 놓인 상태다. 유전학 연구를 통해,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의 생물학자들은 응고 반응을 관장하는 효소를 복제했는데, 이렇게 유전자 조작된 화합물이 자연 화합물보다 더 쓸모있다. 이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이와 관련된 특허가 여러 개 허여되었다. 또 올 초 미국의 한 생명공학 회사는 이 화합물의 실시권을 획득했다. 세계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한 것 외에, 이것은 개발도상국 과학자들이 생명공학 연구 기회로 혜택을 얻는 또 하나의 예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최근 정부는 자국의 신생기업들과 합작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명과학 투자 기금에 추가적으로 10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함께 20억 싱가포르 달러(미화 11억7천만 달러) 이상을 생명공학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외국인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분사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단체가 개발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합작투자를 유치해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사용된다. 정부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같은 외국의 연구 기관을 유치했다. 싱가포르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개발도상국에서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채택하는 정책과 수단의 한 가지 예이다.

출처: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 http://ssss.feer.com/review_news/00101862.html, J.L. 딩 교수,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

● 특허가 현재 농업의 혁명을 주도한다

농업은 연간 종사자 수는 13억, 생산품의 가치는 미화 1조3천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산업에 속한다.¹⁷⁰⁾ 다른 주요 산업과 마찬가지로, 현대 농업의 성장은 기계적 발명에서부터 산출량이 높고, 병충해에 강한 작물과 화합물 등 계속되는 혁신과 기술발전의 결과로 이 중 상당수는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했다면 발명되지 못했을 것이다.

170) 2000년 3월 25일 The Economist의 "Agriculture and Technology: Growing Pains," 참조

현재 생명공학이 농업과학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식물 변종의 보호

산출량이 높고, 품질이 개선되고, 병충해에 강한 식물의 변종은 농업, 원예, 임업에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 예로 지난 50년간 영국에서 밀 수확이 세 배 증가한 두 가지 비결의 하나는 바로 식물 육종학이다.¹⁷¹⁾ 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생산성이 개선된 근대식 품종이 처음 도입된 이래 1964~1966년간 쌀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육종학 연구가 주로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많은 국가에서 육종학 정부 기금은 사라졌거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민간 기업에 의존하게 되었다. 새로운 식물 변종의 육종에는 기술, 노동, 물질적 자원, 자금 등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며, 수 년(식물에 따라 주로 10~15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일단 발표만 되면 쉽게 다른 사람들이 재생산할 수 있어서 육종가가 자신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

식물 변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면 육종 활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정되거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추수된 종자로부터 재생산할 수 없는 변종에만 제한될 것이다. 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과 같은 현재의 식물 변종 보호 제도(일종의 지식재산)는 신종 육종자(대부분의 경우 진보 농민)에게 자신이 발견한 변종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고 식물 육종에 투자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농업, 원예, 임업의 발전에 기여한다.¹⁷²⁾ 또한 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국제협약은 육종자 예외 조항이라고 알려진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보호받는 변종을 새 변종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몇몇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육종자와의 계약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독특한 조항은 모든 육종자들이 진행중인 개발을 결합하여 발전시키

171) 영국 식물 육종가 학회(British Society of Plant Breeders)의 Plant Breeding: The Business and Science of Crop Improvement, (Cambridge: British Society of Plant Breeders, 2000)과 IRRI에 대한 사실 <http://www.cgiar.org/irri/aboutirri.htm> 참조

172) UPOV는 WIPO의 자매기구인 범국가기구이다. UPOV의 목적은 식물 변종 보호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후원하는 것이다. 이는 식물의 신변종의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식물 육종자들의 권리는 1961년 12월 2일 제정되고, 1972년 11월 10일, 1978년 10월 23일, 1991년 3월 19일에 각각 개정된 식물신품종보호국제협약에 근거해 보호받는다(<http://www.upov.int>).

는 식으로 새로운 식물의 변종을 개발하는 시너지 현상을 촉진한다. 위 협약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 “농민의 특권”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 특권에 의해 농민들은 육종가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보호되는 변종의 수확물을 보관하여 증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민간의 농업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식량 안보와 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가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게 될 사안임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들은 농업 관련 기술을 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술을 보유하려면 국내 농업의 혁신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국가의 기술을 획득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에 연구 기반 프로그램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에 따른 것이다. 농업 분야 연구 개발이 대부분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게다가 농업에 대한 해외 원조는 1986년 이래 반으로 줄었다. 이런 점을 볼 때, 개발도상국에서 농업 분야 연구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내 투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농업 기술이나 생명공학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민간 분야와의 제휴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식재산법을 강화시켜야 한다.

다른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은 위에서 말한 연구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및 재정 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공공 연구 기관들은 자체 연구 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받아야 민간 분야와 협상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실시허여를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연구 기관을 포함한 많은 연구 기관들이 연구 개발 결과를 특허화하기 시작했다. 한 예로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인도 과학 산업 연구 회의(Indian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 (사례-4.15 참조)는 1995~1999년 동안 미국에서 95개의 특허를 획득했다. 인도 최대 연구 개발 네트워크인 CSIR은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적자산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개적인 지식자산 정책 선언문을 만든 최초의 기관이기도 하다.¹⁷³⁾ CSIR은 특허 출원수와 실시허여에 따른 영업이익 차원의 자체 목표를 두고 있다. 생물의 번식 능력으로 인해 쉽게 모방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 분야의 지식재산권은 특히 중요하다.

173) 1999년 8월 4일 BBC Monitoring South Asia-Political; London

[사례-4.15] CSIR - 인도 지식 센터

CSIR은 1996년 지식재산 관리과를 설치했다. 이 과의 주요 업무는 처음에는 CSIR 소속 연구소들이 발명한 기술의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활동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 CSIR은 인도에서 발명되는 제품 및 기술을 가장 많이 특허를 신청하는 기관으로 해외 특허 활동이 지난 몇 년간 매년 두 배로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활동의 발전상이 나타난다.

연도	인도		해외	
	출원	획득	출원	획득
1990-1991	202	55	15	10
2000-2001	410	118	452	56

CSIR은 기술, 특허의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지식재산의 인터넷 마케팅을 장려했다. CSIR 소속 연구소들이 다국적 기업이나, 자국 업체 등에게 성공적으로 특허 기술의 사용권을 공여한 사례는 많이 있다. CSIR에는 과학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반적인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하에서 연구진 뿐 아니라 기술과 행정 업무 담당자들도 지식재산의 활용으로 얻는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CSIR 소속 연구소들은 발명품과 기술의 해외 특허를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어떤 연구소들은 해외에 특허 신청을 할 경우 증서와 메달은 물론 추가적인 프로젝트 기금을 제공한다. 또 특허 기술의 실시하여를 통해 창출되는 사용료 수입을 공유하기 위한 소득-공유 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연구소 내부의 제도는 특허화하기 전에 발표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다. CSIR의 지식재산 관리과는 연구결과의 특허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을 독려하고, 안내하고 지원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출처: CSIR

● 유전체학: 의학의 모습을 영원히 바꾼다

인간 유전자 지도 초안의 완성은 의학 혁명을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 유전자 과학은 신약 제조에 응용될 수 있고 유전적 질병의 맞춤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¹⁷⁴⁾

유전자 지도 초안은 정부 지원의 인간게놈 프로젝트 컨소시엄과 민간 기업 셀레라 지노믹스와의 합작의 결과이다. 연구 결과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상품으로 전환하여 유전자 연구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셀레라가 이 연구에 투자할 수 있었다. 민간 분야는 인간 유전자 지도 작성을 가속화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인간 유전자에서 얻은 정보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약과 치료법을 사업화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지식재산이 보호되지 않았다면 과연 민간 기업이 엄청난 재정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고도 인간 유전자 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을 지 의문이다. 유전자 관련 발명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보건 관련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¹⁷⁵⁾

유전체학의 과급효과는 신생 생명공학 회사들과 제약산업의 거물들 간의 제휴가 증가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의 작은 생명공학 회사인 쿠라젠(CuraGen)은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로 얻은 엄청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적 발판을 마련하여 이미 수 백개의 특허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쿠라젠과 독일 제약계의 거물 바이어(Bayer)는 향후 15년간 신약 개발에 13억 마르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했다.¹⁷⁶⁾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혜택은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유전자 과학은 유전자나 그 단편(EST)이 특허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특허성을 가지는 지 등 특허 제도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컴퓨터 유전자 해독의 응용과 특허성 조건을 컴퓨터로 평가하는 등의 사안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다.¹⁷⁷⁾ 영업방법 특허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의 특허성 기준도 국가마다 달라서 유전자해독의 특허성을 인정한 국가의 경우 이에 관한 특허 활동이 훨씬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한 신중하고 진지한 조사가 필요하다.

174)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000년 6월 26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

175) 2000년 3월 14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공동 선언문

176) 2001년 1월 20일자 The Economist의 "Biotechnology, Rites of Passage," 63페이지 참조

177) 예를 들면, 3자 협동의 틀 내에서, 유럽특허청, 일본 특허청, USPTO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과 관련된 특허 응용을 위한 기준을 공동 조사했다 (http://www.jpo-miti.go.jp/saikine/tws/sr-3-b3b_bio_search.htm). WIPO는 또한 여러 회의를 주관하여 생명공학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사안과 문제를 논의했다. WIPO 워킹 그룹에게 생명공학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제안한 프로젝트들은 WIPO/BIOT/WG/99/1에 명시되어 있다.

이제 연구 활동은 유전체학에서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분석(protonomics)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슈퍼컴퓨터의 고난이도 활용이 필요하다.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고급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protonomics 연구는 유전체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기업과 공공 연구소들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특허 제도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같은 기술적 변화에 적응할 뿐 아니라 상업적 이익과 공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제공해야 한다.¹⁷⁸⁾

● 기업들이 특허자산을 축적하고 특허자산 거래를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특허 제도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연구 개발과 신기술의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다. 특허 제도는 그 밖에도 특허 자산에 기초한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지식자산을 축적하고 지식재산 사용권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과 개인의 소득을 높이는 기업 활동을 일으키고 경쟁을 장려한다.

이제는 소송이 아니라 지식자산의 사용권 공여, 공유, 유포가 특허의 존재이유이다. 한 논평가는 생명공학 산업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연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실시허여와 교차 실시 계약을 통해서 이들이 자체 특허와 타기업들의 특허로부터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개발비 부담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¹⁷⁹⁾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자산의 보유가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시허여가 특히 유용하다. 유용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가격이나 다른 조건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중소기업이 지식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발명의 공동 소유나 다른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

178) Richard Oliver의 "The Coming Biotech Age: the Business of Biomaterials," (McGraw-Hill Trade, 1999년 12월) 252페이지 참조

179) Tabitha Parker의 "Biotech Companies Call for Patent Reform",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2001년 6월) 20페이지 참조.

생 생명공학 회사인 밀레니엄 파마수티컬(Millennium Pharmaceuticals)의 특허 자문은 “과거에는 대규모 제약 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 실험을 하도록 맡기는 것에 전혀 반감이 없었지만, 이제는 시장에 내놓을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이 완전한 이중 작업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¹⁸⁰⁾ 이 같은 실시하여 합작투자는 반드시 고가의 기술과 선진국 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들도 지식재산 실시하여 합작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사례-4.16 참조).

일단 제약 산업의 실시하여 사례를 들었지만, 지식재산의 실시하여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실시하여가 성공하는 이유는 시장 문을 걸어 잠그고 경쟁을 배제시키기 보다는 기업들이 시장을 확대하고 부를 증대하는데 지식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4.16] 국제적 사업-에이즈 백신을 위한 대학교 합작투자

최근 에이즈 백신 개발을 위한 합작투자라는 반가운 소식이 발표되었다. 에이즈 중 아프리카 변종을 겨냥한 첫 에이즈 백신 개발과 시험에 참여한 이들은 신약의 특허 소유권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프란시스 기차가 나이로비 대학교 부총장과 뉴욕에 위치한 국제 에이즈 백신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S Vaccine Initiative)의 세스 버클리 회장은 2001년 8월 25일 3개년 계약에 서명했다. 세 번째 당사자인 영국의 의학연구협회(Medical Research Council)는 같은 주 영국에서 계약에 서명했다. 당사자들은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보도된 바와 같이 나이로비 대학교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이 합작투자로 거두게 될 지식자산 중 일부를 공동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기차가 부총장은 “모든 당사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타협해야 하는 매우 미묘한 과정이었다”며 “신약 개발단은 공정, 기회 균등과 이 프로젝트로 얻게 되는 모든 명예와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원칙에 따라 활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2001년 9월 10일 에이즈위클리

180) 179)와 같은 책 21페이지 참조

지식재산의 실시허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도 있다. IBM은 2000년 한 해 동안 특허 실시허여로 미화 17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미화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¹⁸¹⁾ 특허 실시허여로 인한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1990년에는 미화 150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미화 1100억 달러로 증가했다.¹⁸²⁾ 이 정도 수익은 경제 전반에 걸친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교육을 개선하고,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이 장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발명의 순환을 지속시킨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기술이전센터는 1999-2000년에 실시허여 소득으로 미화 369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들을 보고 기술이전이 단지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나 세계 유수의 연구소들에만 한정된다는 인상을 받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특허에 기반한 수익창출의 우수한 사례들은 실시허여가 특허의 주된 수익창출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특허 자산 개발의 목표는 타인이 자신의 발명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기보다는 발명품을 사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데 있다.

이 같은 기초적인 경제적 사실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IBM, 바이오브라스, 인도의 레디 박사, 쿠바의 생명공학 벤처기업들의 실시허여 사업의 기저에 깔린 생각이다. 발명의 사업화는 제품의 생산뿐 아니라 이 제품들을 생산, 사용, 판매할 권리를 실시허여 함으로써 발명가가 사용료를 받는 것도 포함한다.

이제 특허는 숨겨진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혁신의 가치는 그에 따른 제품의 생산이나 개선 그리고 판매수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시허여로 창출되는 수익원도 포함한다. 특허를 단순히 상품 보호나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부의 창출 차원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¹⁸³⁾

거래의 양 당사자가 서로 실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허의 교차 실시허여가 발생한다. 교차 실시허여는 종종 거래의 일방에 대한 순 사

181) 2001년 9월 11일자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의 "IBM Research Lab Sets the Pace" 13페이지 참조

182) Kevin G. Rivette과 David Kline의 "Discovering New Value in Intellectual Property", Harvard Business Review, 2000년 1~2월: 59

183) "IAMs and Beacheads" IP Predictions", Harold C Wegner, Patent Strategy and Management, 2001년 8월; Rivette and Kline: 56.

용료 지불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다른 경우에는 특허나 특허 포트폴리오의 교환이 이루어진다.¹⁸⁴⁾ 이런 교차 실시허여는 종종 저작권, 상표, 영업 비밀 등 다른 형태의 지식재산의 실시권과 훈련, 서비스, 상품 판매, 가격책정 선호, 향후 사업거래를 위한 선택사항 등 다른 분야의 협력과 같은 보다 폭넓은 사업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특허 자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위와 같이 특허를 활용하는 사업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허 자산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유리한 출시 시기, 뛰어난 서비스 등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모두 적용된다.

● 개발도상국에서의 특허의 적합성: 강력한 도구로서의 특허

이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개발도상국가들의 기술 발전 수준이 낮기 때문에 특허는 다른 지식재산과 달리 개발도상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이라는 맥락에서는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등은 유용할지 모르나 특허는 FDI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끔씩 제기된다. 특허 제도 반대자들은 특허 보유자들이 갖는 시장 지배력과 가격 책정력 때문에 개발도상국에는 특허 제도가 해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특허가 개발도상국에는 적합하지 않거나 개발도상국의 경제 목표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국제 특허 제도에 속하지 않고 경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정확하지 않다. 이는 틀린 생각이다. 특허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경제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제시한 사례 중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발도상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해 특허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특허는 경제 발전의 강력한 도구이고 혁신적인 특허 제도를 도입해서 특허 제도를 경제 발전에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정책 결정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방할 수 있도록 특허 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국가의 교훈과 경험에 대해 알아봤다. 그 교훈과 경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게 한다.

184) 182)와 같은 책 57페이지에는 델 컴퓨터와 IBM 간의 지식재산의 전통적인 교차 실시허여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 혁신적인 특허 정책

우선 경제 발전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혁신적인 특허 정책(Pro-active Patent Policy, PPP)이 필요하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특허 정책 관련 경험은 혁신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 정책이 기술과 산업 발전에 영향을 주고 또 그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허 정책과 경제 개발 정책의 조율은 필수적이다.

강력한 도구로서의 특허와 PPP의 사용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 일관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마구잡이식 정책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보완적인 특허 정책으로 몇 가지 주요 분야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한 주요 분야의 경우 재정, 교육, 세제 및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합법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분야의 선정 방식은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응용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정책들은 지식재산 보호 측면에서 비내국인을 차별하거나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 정책적인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다. 틈새 분야 개발은 여러 국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성장과 안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 왔다.¹⁸⁵⁾ 이런 관점에서 특허는 광범위한 경제개발 우선 과제와 전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같다.

특허를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장에서는 특허 제도의 4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째, 기술이전과 FDI를 촉진하고, 둘째, 대학교와 연구기관에 연구 개발을 장려하며, 셋째, 신기술과 신산업의 촉매가 되며, 넷째, 지식재산 축적, 관리, 사용의 측면에 있어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이런 기능은 정부가 혁신적이고 잘 계획되고 조율된 특허 정책으로 기업가들을 지원한다면 문화, 종교, 정치 제도,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와 상관없이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기술과 투자의 재원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주로 기술이전과 FDI의 촉진에 기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FDI를 촉진하는 정책과 병행해서, 정책 결정자들은 기업이 특허를 축적, 관리, 사용하도

185) 과거에는 시계 제조, 지금은 금융 산업과 의약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가 바로 단적인 예이다.

록 지원하는 정책도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종류가 다양하고, 오래된 전통 기술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및 세제 인센티브의 제공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와 실시하여 계약의 경우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자생적 발전 경우에도 가능하다.

● 자생적 발전

국내의 자생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은 대학교와 연구기관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다. 지식을 수입하는 것과 정반대로, 대학교와 연구 기관들은 자생적인 혁신의 순환이 유지되게 하는 “연료”를 제공한다. 운전대만 제대로 돌린다면, 특허는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국가적, 자생적(수입 기술의 반대의 의미인) 혁신, 연구 개발, 상품 제작 및 사업 거래를 위한 효율적인 운전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학교와 연구 기관들이 원래 진행 중이던 연구 개발에 기초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지식재산을 수확하는 것이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만큼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꼭 그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 개발비가 그리 높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기술도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물론 투자, 시간, 자원, 경비와 그 결과물인 특허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이고 고정된 상관 관계는 아니다. 진행중인 활동이 농업 분야든, 나노테크놀로지든, 탈염이든 재조합형 DNA든, 핵심은 실용적인 가치를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하는 지식의 잠재성은 정보의 유포와 인력 개발에 달려있다.

기술 정보와 숙련된 인적 자원이 부족할 때도, 지속가능한 자체적인 지식 순환은 시작되고, 그 간의 성과나 기존의 지식에 기초한 유용한 기술이나 제품이 발명된다. 사실, 가장 위대하고 근본적인 혁신은 비교적 단순한 도구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바꿔 말하자면, 연구 개발비만 많이 투입되었다고 해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유용한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몇몇 기술 관련 기업들은 작

은 신생 기업들이 대기업보다 더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 기업들은 고의적으로 작은 기업들에 대한 돈을 끌어버림으로써 작은 기업들이 그냥 그대로 의사하는지 해업을 쳐서 살아남는지를 시험한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생 기업의 기술 발명 능력이 관건이다.¹⁸⁶⁾ 또한 선진국에서 발명한 기술이나 제품의 상당 부분은 “최첨단”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영업방법 특허는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훑어보면 복잡하고 비용 집약적인 기술에 기초한 특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단순한 기술에 기초한 특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허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측면의 기술이전 기회나 특허 정보 활용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정보의 사용을 정부 정책으로 후원하게 되면 발명의 순환과 신기술이라는 형태의 결실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사용권을 누구에게서 획득해야 하는지, 국내에서 개발중인 기술의 사용권을 누구에게 공여해야 하는지와 사업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국가 정책과 PPP는 FDI는 물론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특허 실시하여 합작투자과 전략적 제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적인 거래는 양 당사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비용과 혜택을 거의 반반씩 나누는 것이다. 주로 개발도상국이 사용권자가 되는데, 사용권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내 시장에 상품 또는 기술을 생산 또는 유통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제조 및 유통으로부터 사용권자는 단지 수익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 교육, 가치있는 상품의 도입과 함께 국내 제조로 인한 비용절감의 이익도 함께 얻게 된다. 사용권에는 또 대학교와 연구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관련 상품과 기술을 개발, 향상, 유통시킬 권리가 포함될 수도 있다. 사용권 공여자에게도 이전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시장으로부터 사용료라는 수입이 들어오고 사용권자가 해당 지역에서 만들어 낸 새 특허자산을 다른 시장에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큰 이익이 된다.

186)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경제적 성공은 두 명의 젊은 발명가(윌리엄 휴렛과 데이비드 팩커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차고에서 일하면서 오디오 진동자를 개발했다. 이 두 사람은 후에 휴렛팩커드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될 기본 반도체를 발명했다. www.hp.com/hpinfo, David Packard의 The HP Way: How Hewlett and I Built Our Company(Harper Collins Publishers, 1996) 참조

● 특허 실시허여, 정보, 숙련된 인적 자원

특허 실시허여가 이익을 가져오려면 사용권자와 사용권 공여자가 자신들의 발명품을 포함한 상품을 효율적으로 제조, 사용, 판매할 시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략적 특허 기획에 있어서 정책 결정자들은 시장 정의를 감안해야 한다. 시장의 규모가 작으면 사용권 공여자에게 돌아올 사용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적거나 제조 여건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은 실시허여의 좋은 대상이 아니다. 실시허여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려면, 상당한 사용료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규모가 커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 국가들이 서로가 허여하는 특허가 유효하고 시행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면 이 국가들이 지역적 협력을 통해서 더 매력적인 실시허여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역적 협력은 또 지식재산 관리 비용을 낮추고, 정보 기술, 전문지식 교류 및 교류지원 등 추가적인 이익도 가져다 준다.

인적자원 개발은 특허 정책의 또 다른 핵심 부분이다.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까지 창의력과 발명을 장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존중하게 하며, 자생적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독려한다면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 단지 지식재산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으로는 부족하다. 혁신과 지식재산이 국가에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명이 장래성이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고등학교의 과학 박람회든 유용한 발명을 하는 직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든 어떤 식으로든 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발명을 높이 평가하고 발명가를 포상하면 특허가 사회 전체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된다. 발명가들이 자신의 발명품을 사업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장려금이나 다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발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여실히 보여지게 된다. 대학교와 공공 연구 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고 발명품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다. 직원 훈련, 교육 및 연구 개발 참여가 양 당사자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사업 계약에 따른 FDI의 경우 특히 인적자원 개발의 주요 원천이 된다.

토착 자원의 사용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특허의 도구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지평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국가의 부가 어느 한 특정 분야에서 창출되는 국가라면, 다른 국가들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 분야로 특허 정책을 선

회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농업 개발, 화학, 관계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라면 반도체 기술이나 생명공학의 사용권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특허 제도는 맥락에서 전통적 지식, 문화, 민속, 모든 다른 국가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마케팅하고 사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7장에서 논의될 전통 지식은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매우 방대하고 풍부한 분야이다. 근원적인 전통 지식이 고대의 것이라 하더라도, 개발도상국들은 모든 신기술이 옛 기술을 창조적으로 응용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얻어졌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 지식재산 담당관청의 역할

특허 정책의 기획과 시행의 핵심에 있는 지식재산 담당관청의 행정의 중요성과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사상가, 정책 기여자, 경제 발전의 파트너로서의 지식재산 담당관청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자 출원, 안내 데스크, 사용의 편리성을 높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발명가의 총 수익에 기초한 차별적 출원비 등 특허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식재산 행정은 매우 유용하다. 연구원들과 교수들이 기술을 발명, 특허 출원, 사업화 할 수 있게 돕는 기술이전 센터와 지식재산 관리 센터도 필요하다.

조직적 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 OD) 개념을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리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¹⁸⁷⁾ 경우에 따라서 산업 재산과 저작권 담당 관청을 하나의 지식재산 담당 관청으로 통합해서 경제 발전과 교육 담당 부처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실질적인 측면을 볼 때, 지식재산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처들 사이의 의견 조율이 제도화되어 원활히 이루어질 때, 특허가 경제 발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특허법, 적절한 기술 인프라, 적절한 지식재산 보호 및 이의 집행은 모두 특허 제도가 이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돕는다. 지식재산권의 집행 없이는 이론 상의 특허 제도가 현실적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이야말로 특히 중요하다.

187) Kim S. Cameron와 Robert E. Quinn의 Diagnosing and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Based on 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Addison-Wesley Longman Inc., 1999) 참조

● 결론

이 장에서는 급속한 기술 혁신의 시대에 특허 제도가 갖는 기능, 가치, 영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특허 제도는 지속적으로 조정, 이행되어서 권리 보유자, 시장의 신규 진입자, 일반 대중, 시민 사회의 최적의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특허 제도의 잠재성은 지식 창출과 역동적 혁신이라는 맥락에서 널리 인정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특허 정보와 그 확산이 경제 발전을 어떻게 촉진하는 지를 설명했다. 또한 신기술이 특허 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어떤 국가들이 자국의 특허 정책과 제도를 성공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신기술이 제기하는 도전에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봤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포함하는 통신 기술과 생명공학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신기술 분야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으로써 특허 정책이 21세기에도 지식과 기술이 주도하는 경제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신기술에 대한 지나치게 강력한 특허 보호는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신규 진출자들을 위한 경쟁적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균형잡힌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허는 경제 발전의 강력한 도구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다국적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상표와 지리적 표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순진한 줄리엣이 달빛 창가에서 말한다.

이름이 뭐가 중요한가요?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도

여전히 달콤한 향기가 날텐데.

그러니 로미오도 로미오라고 불리지 않아도

그 이름과 상관없이 완벽한 그 모습은 그대로일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2막 2장

안타깝게도, 불쌍한 줄리엣도 이제 깨달았겠지만 이름은 중요하다. 상표도 마찬가지이다. 이름은 그것이 대표하는 대상으로부터 강력한 힘을 받는다. 상표는 상품의 상징이며 소비자가 자신이 사고자 하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¹⁸⁸⁾ 예를 들면, 도브(Dove)는 비누 상표인데 비둘기라는 새의 이름을 차용함으로써 평화롭고,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느낌을 떠오르게 한다.¹⁸⁹⁾ 스페로우(참새), 피카(공작), 오스트리치(타조) 등 다른 새의 이름을 골랐다면 그 이미지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상표가 아주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된다. 상표(trademark 또는 mark)¹⁹⁰⁾는 단어, 표어, 로고, 한 가지 색상 또는 색상, 소리, 심지어는 향의 조합도 포함하는 말이다.¹⁹¹⁾ 고객들에게 익숙한 상표는 지식자산, 심지어는 기업의 모든 종류의 자산 가운데 가장 부가가치가 큰 자산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와 말보로는 상품을 만들고 보호하는 데 투입된 초기 투자와 지속되는 투자에 대한 수익

188) Felix Frankfurter 판사의 판결대로 “상표를 보호한다는 것은 상징의 심리적 기능을 법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징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이 맞다면, 상징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마땅히 옳다.” *Mishawaka Rubber & Woolen Mfg. Co. v. S.S. Kresge Co.*, 316 U.S. 203, 205 (1942)

189) 도브 브랜드에 관해서는 2001년 7월 22일 New York Times의 “The Making (or Possible Breaking) of a Megabrand” 기사를 참조하기 바람.

190) 이 책에서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표를 상표에 포함시켜 칭한다.

191) 색상, 색상 결합, 소리, 향을 상표로 사용한 데 대한 논의는 Adam L. Brookman의 *Trademark Law: Protection, Enforcement and Licensing*, (Panel Publishing, 1999): sections 2.01(D-G)를 참조하기 바람.

의 관점에서 볼 때 놀라운 경제적 자산임을 입증했다.¹⁹²⁾

이 장에서는 상표의 거시, 미시 경제적 기능을 살펴보고, 상표가 혁신과 투자를 양성함으로써 사회와 소비자에 혜택을 가져다 주는 방식과 개별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본다.

상표가 사업에 있어서 전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역동적으로 대응한다. 상품, 서비스, 기술의 복잡성,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에서의 상표의 사용 변화도 짚어볼 것이다.

이 장은 또한 서비스표, 증명표장, 단체표장, 상장, 지리적 표시와 같은 관련 지식재산 개념도 다룬다. 서비스표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는 표장(예: 차에 붙어있는 타타 인디카 마크는 상표이지만 타타 그룹은 서비스 표)인데 상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증명표장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기준 또는 규격에 부합한다는 표시이다(예: UL 로고는 전기 안전을 뜻한다). 단체표장은 한 단체의 회원에 속한 상품과 서비스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장이다(예: UAW는 United Auto Workers(전미자동차노조)를 의미). 상장은 사업 또는 어떤 경우에는 상품의 고유의 모양으로 주로 상징, 표어, 로고의 형태로 상표와 서비스표를 모두 포함한다. 지리적 표시는 어느 상품이 어떤 지역이나 장소에서 생산된 것임을 나타낸다. 샴페인, 끼안띠, 다질링이 그 예이다.

상표와 이와 관련된 법적 개념은 지식재산 강화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 다른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과 달리(아주 엄격히 다뤄지는 영업 비밀을 제외하고는) 상표는 적절히 유지하고 사용할 경우 소유자에게 영원히 독점 사용권을 보장해 준다. 따라서 상표는 기업의 부 창출 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다.

● 상표의 기원

상표는 오랫동안 상품의 출처를 밝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과거 4000년전부터 중국, 인도, 페르시아의 상인들이 자신의 상품임을 표시하기 위해 서명이나 상징

192) Robert P. Merges, Peter S. Menell, Mark A. Lemley의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Technological Age, 제2판 (Gaithersburg, MD: Aspen Publications, 2000) : 563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 로마의 도자기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0 가지가 넘는 표장을 사용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포르티스(Fortis) 표장으로, 이를 모방한 많은 복제품이 나왔다. 이 수공업자들이 표장을 사용한 이유는 상품의 제조업자를 광고하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상품이 특정 상인의 소유임을 입증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⁹³⁾

중세 시대에는, 표장의 사용이 결과적으로 상거래(trade)의 발달과 성장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상표(trademark)”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이 때 표장은 상거래의 경험에 있는 조합의 회원이 만든 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사용된 용어는 “marque déposée”로, 여기서 déposée는 표장이 상인 조합에 등록되었다는 의미이다. 현대에 들어와 상표는 개별 기업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발전되었고 그에 따라 중요한 사업 자산이 되었다. 브랜딩이 중요한 마케팅 개념이 되면서 상표의 법적 보호 또한 그 중요성이 높아진다. 오늘날 “상표”는 “브랜드”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이라는 용어는 상표가 사업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기여도의 금전적 가치를 나타낸다.

● 상표의 경제적 효과

상표는 주로 두 가지의 거시 경제적 기능을 한다. 첫째,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의사 결정을 돕는다. 둘째, 기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하게 하는 일종의 동기가 된다.¹⁹⁴⁾ 상표는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의 출처나 서비스의 품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돕는다. 예를 들면, TV, 자동차나 컴퓨터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상표로 각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고 상품의 특징과 품질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들이 상품을 사용한 후 상표와 상표와 관련된 광고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수긍할 경우에만 브랜드 자산이 생긴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게 되면 상표는 또한 기업들의 품질개선 투자의 동기로 작용한다. 기업들이 불명확한 품질적 특징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기업의 장기적 명성이 소비자 만족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93) Merges: 557 et seq.

194) The Trademark Reporter 78 (1988년 5-6월): 270-271 페이지 William M. Landes와 Richard A. Posner, “The Economics of Trademark Law,”를 참조하기 바람.

이 두 가지 기능은 서로 보완적이며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고객들은 상표를 보고 품질을 짐작해서 상품을 선택하고, 기업들은 브랜드 명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품질에 투자하면, 품질이 개선되어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생기게 될 것이다.

● 고객의 결정을 돕는 상표

소비자들은 항상 비슷해 보이는 상품들을 두고 선택을 하게 된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품질과 특징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말 만족스러운 상품을 고르기란 운에 달린 일일 때가 많다. 물론 판매자들은 품질의 차이가 나는 상품을 내놓으면 되겠지만, 소비자들로서는 만족스러운 구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품질의 차이를 손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상표는 소비자들이 검색 비용을 낮추도록 도와준다.¹⁹⁵⁾ 상표는 상품 정보를 알리는 광고(상품 홍보, 인쇄물, 포장, 판매 시점 전시)와 함께 사용된다. 과거에 어떤 상표의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라면 그 상품의 실제 품질이 상표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지를 알 것이다.

모든 상품이 상품의 특징을 대표하는 상표없이(따라서 소비자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베이지 색 상자에 넣어져 팔린다고 상상해 보면, 상표가 갖는 정보 제공 기능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카메라를 그렇게 고르려면 정말 힘들 것이다. 식품 용기에 적힌 원료 명단과 비슷하게 상품에도 특징을 적은 명단을 부착해 놓는다면, 상표가 없어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시각적이고, 예술적이며, 상징적인 표시는, 물론 그 표시가 옳다면, 자세한 정보를 모두 읽을 시간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특징을 적은 명단도 사실에 근거해야 유용한 것이다.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어느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상품에 대한 요구에 기초해서, 상표가 중요한 상품 정보를 압축하는 방식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EAZY”라는 용어가 상표와 함께 어떤 상품에 쓰인다면(예: TMXXEAEZY), 소비자들에게 이 상품이 비교적 사용하기 쉽다

195) 194)와 같은 책의 270-277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는 점을 알리게 된다. 이 상표는 실제로 이 상품을 다른 상품보다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든 특징을 기술적으로 상세히 적어놓은 설명서만큼이나 중요하고 유용하다.¹⁹⁶⁾ 또한 상표를 잘 알고있는 소비자라면 복잡한 상품 설명서보다는 상표를 보고 선택 범위를 좁혀 현명한 구매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광고를 인위적인 상품 차별화를 통한 부자연스러운 수요창출이며 독과점을 영속시키는 수단으로 간주한다.¹⁹⁷⁾ 어떤 비판가들은 상표가 실제로는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품들을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구별하게 하고, 과장되거나 잘못된 품질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심리적인 조종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분석에 따르면, 광고는 상표 소유자가 심리적인 호소만으로도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하고, 품질과 특징을 고려할 때 그 상품에 적당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가격 책정력을 부여한다.¹⁹⁸⁾ 최근 세계화 반대론자들도 특히 상표와 로고를 부정적인 문화적 현상의 예로 들면서,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나 감정과 심리 상태의 추상적 표현이 된다고 지적한다.¹⁹⁹⁾

이와 다른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상표와 광고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⁰⁾ 이 견해는 상품의 눈에 보이는 간단한 특징(가격, 모양, 상품 분류)과 써봐야 알 수 있는 보다 복잡한 특징(맛, 장기적 내구성, 복잡한 사양)의 차이에 기초한 것이다.

광고 친화적인 견해가 강조하는 점은 광고와 상표가 소비자의 검색 비용을 줄여주

196) 상표를 사용하는 이와 같은 마케팅의 고전적인 예는 KODAK INSTAMATIC으로 사용의 편리성과 자동성을 알린 아주 성공적인 카메라 상표이다. 1999년 7-8월 Harvard Business Review의 "What High-Tech Managers Need to Know About Brands" (91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197) Merges 561 페이지 Joan Robinson의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1933)의 인용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198) Merges 559-563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199) 최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Naomi Klein의 No Logo (Flamingo Press 2001)와 Foreign Affairs 2001년 9-10월호에 실린 Peter van Ham의 "The Rise of the Brand State"를 참조하기 바람.

200) 예를 들면 1999년 7-8월 Harvard Business Review 에 실린 Scott Ward, Larry Light, Jonathan Goldstine의 "What Hight Tech Managers Need to Know About Brands", Trademark Review 523 페이지에 실린 Nicholas S. Economides의 "The Economics of Trademarks", 1961년 69 J. Pol. Econ. 213 페이지에 실린 Stigler, Georges의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Merges의 561 페이지에 인용됨)를 참조하기 바람.

고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장려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마케팅의 계획이 개선되고 소비자 현혹 행위가 줄어들게 한다는 것이다.²⁰¹⁾ 상표는 원하는 품질의 상품을 찾기 위해서 들여야 할 검색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시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어느 두 상품의 화학적 공식이 같다고 해서 품질도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 기업의 품질 투자를 유도하는 상표

상표의 두 번째 거시 경제적 기능은 상표가 나타내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인정할 수 있게 하여 판매자들이 상품의 품질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유명한 상표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래서 상표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인 사업 전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투자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 상표는 기업들이 상품의 품질, 유지, 개선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기여한다.²⁰²⁾

한 마디로 상표 소유자는 뿌린대로 거둔다. 품질이 개선되는 만큼 고객 충성도가 따라온다. 반대로 어떤 상표의 상품이 품질이 나쁘다고 인식이 되면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고객의 상품 사용후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그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나빠지고 기업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른 상품과 확실히 구별되게 해 줌으로써 기업이 상표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인도의 대기업이 '타타'의 간부가 말한 것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커지면,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구매한다. 브랜드는 약속을 나타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²⁰³⁾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가 특정한 품질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약속이 무색하게 품질이 실망스럽다면, 소비자는 다시는 그 브랜드의 상품을 사지 않게 될 수도 있다.

201) 대중의 오해를 막기 위한 상표의 역할에 대해 논하는 J. Thomas McCarthy의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1998년 제4판), 3.1장을 참조하기 바람.

202) The Trademark Reporter 78 (1988년 5-6월): 270-271 페이지 William M. Landes와 Richard A. Posner, "The Economics of Trademark Law,"를 참조하기 바람.

203) Tata sons, Limited의 부장 R. Gopalakrishnan과의 인터뷰, www.tata.com/0_people/interviews/20000729_r_gopalakrishnan.htm

광고되는 상품의 품질에 투자하도록 기업을 유도하기 때문에 상표 보호는 사회에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²⁰⁴⁾ 기업은 브랜드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품질 개선에 투자한다. 상품의 반복적 사용을 통한 브랜드 충성도 때문에 소비자의 브랜드와 상품 사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품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은 잘 안다.²⁰⁵⁾

● 사업을 위한 상표의 전략적 사용

기업들은 또한 상표를 여러 가지 방식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한다. 가장 흔한 방법이 상품 매출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이지만, 상표 사용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오늘날 상표 사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사례-5.1 참조).

[사례-5.1] 널리 알려진 상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판매 단위를 높인다.
- 고객 충성도를 굳힌다.
- 경쟁의 압박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된다.
-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유지하게 한다.
- 상품을 차별화한다.
- 신제품군을 도입하게 한다.
- 특허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충성도를 높이게 한다.
- 프랜차이즈의 기반을 마련한다.
- 전략적 제휴와 마케팅 제휴를 지원한다.
- 금융 거래 시 기업 가치를 정당화한다.
- 자선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준다.
- 안전 요건을 따르게 한다.
- 기술 사양을 충족시키게 한다.
- 복잡한 기술 시스템의 호환성을 높인다.

204) American Economic Review 63 (2) 31-39 페이지에 실린 Jack H. Hirshleifer의 “Where Are We in the Theory of Information?”을 참조하기 바람.

205)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4), 1981 615-641 페이지에 실린 Benjamin Klein과 Keith Leffler의 “The Role of Market Forces in Assuring Contractual Performance”를 참조하기 바람.

● 대고객 매출 높이기

상표와 서비스표의 가장 흔한 용도는 상품과 서비스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다. 상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긍정적이라면 고객의 브랜드 인지도는 판매되는 단위의 차원에서 매출을 높여준다. 앞서 다룬 브랜드 가치 현상과 같은 맥락에서 상표가 매출 증대에 사용되는 사례는 무척 많다. 그러나 상표 캠페인만으로는 매출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상표는 효과적인 것이라야 한다. 독특한 표장으로써의 법적 요건과 마케팅 요건을 갖추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좋은 상표와 서비스표는 전반적인 사업과 상품 개선 전략과 연관될 때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사례-5.2 참조).

[사례-5.2] 뿌리 깊은 반얀 트리 리조트

싱가폴인인 호권핑과 아내 클레어 치앙은 예전에 홍콩*의 융슈완 또는 반얀 나무 해안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았다. 이들에게는 아주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였다. 스과 리조트로 성공을 거둬 다른 곳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 이들은 좋은 상표와 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애정, 원기 회복, 친밀감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호권핑과 클레어 치앙은 반얀 트리 리조트를 서비스표로 선택했지만, 잘 알려진 식물 이름을 딴 것이기 때문에, 상표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 호텔 주인이나 같은 이름을 써서 질이 낮은 숙소로 그 이미지를 망쳐버릴 수 있었다. 이들은 거의 모든 리조트를 새로 짓고, 리조트마다 아주 화려한 분위기를 잘 나타낼 수 있게 독특하면서도 쾌적한 특징을 잘 살리게 했다. 상표의 실시허여를 거절했고, 호텔의 경영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했으며, 추가적인 사업 기회도 거절했다. 이들은 “소수를 위한 독점적인 브랜드로 유지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1999년 반얀 트리 리조트는 유명한 브랜드 컨설팅 기업인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아시아의 50대 브랜드 가운데 18위에 올랐다.

* “중국 홍콩 특별자치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앞으로는 “홍콩 SAR”이라고 칭함.

출처: 2000년 5월 25일자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기사 “뿌리를 내리다(Putting Down Roots)”

● 고객 충성도 굳히기와 경쟁에 대응하기

상표와 마케팅 개념이 긴밀하게 결합되면 상표는 고객 충성도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 결과 고객 유지가 신규 고객 유치 만큼의 수익 창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점을 5% 낮추면 은행의 한 지점은 85% 이상, 보험중개업체는 50% 이상, 자동차 수리 업체의 경우 30% 이상 수익이 높아진다”.²⁰⁶⁾ 따라서 상표가 대고객 관계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때 상표의 가치는 지극히 중요하다. 상표는 기업이 표방하는 이미지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반영한다. 상표는 이 장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품질 개선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이 쌓은 명성도 반영한다. 상표의 주요 이점은 상표를 보고 소비자들이 연상시키는 긍정적인 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 그리고 지속적인 고객 충성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상표로 고객 충성도를 높인 고전적인 사례가 바로 코닥의 예이다. 코닥은 “가정적인” 가족 관계라는 무형의 순간적인 요소를 포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고품질 필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수 년간 캠페인을 벌였다.²⁰⁷⁾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그 광고 캠페인의 주요 목적은 고객들에게 코닥 필름이 친숙하고, 확실하며 신뢰할만 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릴 때 코닥 필름을 쓴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코닥에 익숙해져서, 가격이 더 저렴한 다른 필름보다 코닥을 선호하게 하려는 것이다.

상표는 약탈적 가격책정(상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경쟁업체를 업계에서 쫓아내려는 것)이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원가 이하나 최저가로 공급해서, 다른 기업의 선의를 악용하면서 경쟁적 우위를 얻으려는 등 다른 불공정 사업 관행을 뿌리 뽑는 데도 유용하다. 저품질 상품 판매자들이 고품질 상품 판매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방지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은 브랜드 명칭의 사용이다.²⁰⁸⁾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고품질 상품 제조업자가 잠재 고객들에게 그 상품의 우수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206) Aaker, David A.의 Building Strong Brands (New York: The Free Press, 1996) 22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207) 206) 과 같은 책의 2-7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208) 206) 과 같은 책의 562-564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 매출 수익 증대

고객들은 효과적인 상표가 전달하는 상품의 품질과 특징을 보고 그 상품이 제값을 한다고 판단하면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살 용의를 보이기 때문에 상표는 판매 단위의 증가 뿐 아니라 매출 수익 증대에도 기여한다. 기업들은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차별화하고 특징과 사양 면에서 우수성이나 차이를 보여준다. 상표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고가품 시장을 겨냥하고, 고객들에게 자사의 상품이 차별화된 구매자들 또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거나 보다 스타일리쉬한 “취향(taste)”의 구매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릴 수 있다(사례-5.3 참조). 상표는 또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들은 감수하려 하지 않을 위험도 감수하여 품질 개선이나 혁신을 이룰 용의가 있다는 점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표 전략의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아사히 맥주의 아사히 드라이이다. 아사히는 일본 고객들이 혁신을 독립적인 품질의 한 요소로 간주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래서 자사의 새 상표인 “드라이(Dry)” 맥주가 맥주 제조에 있어서 최신 기술이며 신상품이라는 점을 홍보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면서 “대안의 맛”을 제시하여 “일본 맥주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아사히는 자체 평가한다. 자사의 드라이 맥주 덕분에 일본 소비자들이 이제 “가볍고 건조한(light and dry)” 맛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아사히는 2001년 설립 이후 최초로 일본 시장 점유율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²⁰⁹⁾

[사례-5.3] 픽익 스타일이 패션 선언(Fashion Statement)을 만든다

픽익은 현재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점차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수 많은 청소년들을 매혹하는 이탈리아의 유명 의류 브랜드이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픽익은 상표를 고안한 디에고 바르바레스의 머릿속에 있던 반항적인 머리 모양을 한 얼굴 없는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한 상상속의 상표에 불과했다. 바르바레스는 의류를 선별하고, 자신의 독특한 상표를 부착한 후, 동업자의 도움으로 로마에 있는 상점에 옷을 유통시키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수도 주변의 한 차고에서 아주 낮은 비용으로 상표를 부착했다.

209) <http://www.asahibeer.co.jp/english/company-e/superdry>

픽워는 오늘날 성공적인 마케팅과 효율적인 상표의 사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의류 제조는 여전히 도급업체에 맞기고, 픽워는 상표의 생산과 부착, 마케팅, 유통에만 주력한다. 젊은 이탈리아인들은 픽워 로고를 최신 유행이라고 판단하며 픽워 상표가 부착된 옷은 조금 비싸더라도 산다. 좋은 상표는 실제로 성공적인 사업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2000년 10월 23일 라 리퍼블리카(La Repubblica)

❖ 시장 점유율 확대 또는 유지

상표는 기존의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애플 컴퓨터의 “다른 생각하기(Think Different)” 캠페인은 상표를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애플 컴퓨터가 컴퓨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한 예이다(사례-5.4 참조). 부진한 시장 점유율에 못마땅한 기업 경영진이 더 넓은 영역, 더 많은 수의 소비자들을 노리고 상표나 표어와 관련된 광고 캠페인을 벌이는 예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표와 광고 캠페인이 기업의 사업 제안과 본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상표는 빙산의 일각이다. 성공적인 상표 캠페인 아래에는 거대한 토대가 있다. 시장의 누구를 겨냥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렇게 정한 잠재 고객 층의 요구에 부합할 만한 상품을 디자인하고, 고객들의 소망과 관련되고 이를 상징할 수 있는 상표를 고안해내고, 실제로 상품이 모든 측면에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고, 마케팅, 가격 책정, 포장, 유통, 서비스, 광고 활동을 조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토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상표라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²¹⁰⁾

210) 브랜드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1999년 7-8월 Harvard Business Review 에 실린 Scott Ward, Larry Light, Jonathan Goldstine의 “What Hight Tech Managers Need to Know About Brands” 92-93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사례-5.4] 다른 생각하기

애플 컴퓨터의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한 캠페인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애플 컴퓨터는 특히 교육, 과학 및 디자인 응용, 개인용 컴퓨터 부문에서 매우 높은 수익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개인용 컴퓨터 판매의 선두주자였다. 초창기 애플 컴퓨터의 운영 체제는 매킨토시 컴퓨터(북미 지역에서 매킨토시는 여러 애플 컴퓨터의 이름으로 쓰인다)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애플은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IBM-호환 컴퓨터에 시장 점유율을 뺏길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때 컴퓨터 애호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애플은 자사 컴퓨터의 선호도가 높던 시장에서 점유율이 줄어들고, 매킨토시 체제를 개발했던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 줄어드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매킨토시 시스템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애플의 설립자 스티브 잡스는 1997년 포부도 당당하게 애플로 돌아왔고 그가 초기에 착수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대담한 “다른 생각하기(Think Different)” 광고 캠페인이었다. 이 캠페인은 과감히 다른 길을 선택했고, 비범한 방식으로 성공한 간디, 제인 구달, 알프레드 히치콕,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의 유명 인사의 사진을 보여주는 광고였다. 이 광고는 일부러 흑백으로 디자인을 하고 간단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다른 생각하기(Think Different)”란 문구를 애플의 친숙한 글씨체로 써서 화면 한 구석에 표시했다.

이 광고 캠페인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표어가 “다르게 생각하기(Think Differently)”였어야 옳고 기업의 수용성보다는 개인성을 강조했다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잡스의 도박은 성공했다. “다른 생각하기” 캠페인, 즉 소비자들이 달라지려고만 한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용감한 주장은 애플하면 창의성과 개인성을 연상시키게 해 주었다. 전달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품 개발로, 이 표어는 애플이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제 위치를 되찾게 해 주었다. 이전에 애플 컴퓨터를 샀던 소비자들에게 그 컴퓨터가 왜 좋다고 생각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애플 컴퓨터를 다시 찾게 하고, 애플 컴퓨터의 품질을 높이 평가하는 새로운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이다.

❶ 신상품의 도입 또는 기존 상품의 이미지 전환

특정 상표를 보면 연상되는 신뢰할 만한 유명 제품이 있어서 신상품에 경쟁 우위를 부여할 경우 상표를 이용해서 신상품을 도입할 수 있다. 시장에 신상품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작업이다. 시장에 이미 출시된 다른 경쟁 상품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브랜드가 750개가 넘고, 립스틱 브랜드는 150개도 더 되며, 고양이 사료 브랜드도 93개나 된다는 점을 한번 고려해 보자.²¹¹⁾ 선택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쉽사리 신상품을 선택할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미 소비자들이 인정한 브랜드 명칭만이 눈에 띄게 된다.

신상품이 기존 상품과 함께 판매될 때 상표는 신상품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 최근 몇 년간, 신상품은 기존의 브랜드 명칭과 함께 판매되곤 했는데, 이것은 잠재 소비자들이 신상품의 품질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²¹²⁾ 기업들이 잘 알려진 브랜드의 경제력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은 흔히 사용되는 관행이 되었다. 실제로 성공적인 브랜드는 수명이 매우 긴 편으로, 높은 수익을 돌려주고 그에 따라 브랜드의 가치는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아이보리(비누), 에버레디(건전지), 나비스코(비스킷), 켈로그(곡물 식품), 코닥(카메라), 질레트(면도기), 코카 콜라(탄산 음료)는 1925년의 주요 브랜드였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브랜드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²¹³⁾ 강력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투자는 장기적인 성장과 시장 계층 다각화를 위한 좋은 전략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상표는 기존의 상품을 다른 시장에 출시하거나 이미지를 전환하는 데 또는 이미 사람들에게 익숙한 상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이징에서 열릴 2008년 올림픽에 사용될 새 로고이다. 새 로고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서로 연결된 5개의 고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서예체로 바꾸어, 달리는 사람 또는 태극권을 연습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세계적인 브랜딩 기업인 인터브랜드는

211) David A. Aaker의 *Managing Brand Equity: Capitalizing on the Value of a Brand Name* (New York: The Free Press, 1991)과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4 3호 (1997년 봄) 206 페이지에 실린 Chiranjeev Kohli와 Mrugank Thakor의 "Branding Consumer Goods: Insights from Theory and Practice"를 참조하기 바람.

212) 신제품에 기존의 브랜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논한 2001년 7월 22일 New York Times의 "The Making (or Possible Breaking) of a Megabrand" 기사를 참조하기 바람.

213) Boston Consulting Group 1987의 *Perspectives*에 실린 Thomas S. Wurster의 "The Leading Brands: 1925-1985"와 Kohli의 "Branding Consumer Goods"를 참조하기 바람.

이 로고가 중국이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²¹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표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이다.

● 기업 내 상품군을 구별한다

상표는 또 상표 소유 기업의 서로 다른 상품군을 구별하는 데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에 7-8가지 사업 단위나 상품군이 있다면, 똑같은 이름으로 된 여러 가지 상품을 보고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상표를 다르게 쓸 수 있다. 이 경우는 대표 상표를 써서 하나의 통일된 표시(보통 기업 이름)와 각 상품과 관련된 상표를 같이 부착하는 것이다(사례-5.5 참조).

[사례-5.5] 달콤한 전략: 아코르 그룹(아르헨티나)

아코르는 세계적인 사탕 제조업체이자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초콜릿 제조업체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코르 그룹은 기업의 얼굴(visual identity, VI)을 바꿨다. 새 기업 로고는 아코르의 새 기업 전략을 상징하고 아코르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두 가지 면에서 돕는다. 첫째, 새로운 기업의 얼굴이 생겼다. 둘째, 아코르의 핵심 사업 분야인 식품, 사탕류, 초콜릿, 쿠키 등 다양한 분야에 각각 개별성을 부여했다.

출처: www.arcor.com.ar
http://www.arcor.com.ar/quienes_somos/grupo_historia.asp

● 실시허여와 프랜차이징(Franchising)으로 사용료 수입을 올린다

기업은 상표를 수익성있는 실시허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²¹⁵⁾

214) http://www.interbrand.com/features_effect.asp?id=50

215) LES Nouvelles 34, 1999년 제3호 125-128 페이지에 실린 Stephen A. Degnan과 Brian Napper의 "Trade, Service, Persona Marks Get Big Royalties"를 참조하기 바람.

상표의 실시허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때로는 상표 소유 기업이 활동하지 않는 다른 시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간단한 사용권 공여가 사용된다(예: 야구팀 이름을 커피 머그잔에 사용하도록 사용권을 공여하는 것). 캐릭터 실시허여는 흔히 사용되는 상표 실시허여의 하나로 책이나 영화의 유명한 캐릭터를 같은 고객층을 겨냥한 다른 상품에 상표로 사용하도록 사용권을 공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캐릭터를 사용할 권리가 여러 개의 다른 시장에서 사용할 권리로 세분화된다. 수익성이 매우 높은 캐릭터 실시허여의 한 예로 워너 브로스(Warner Bros.)가 J.K. 롤링의 유명한 아동 소설 시리즈의 주인공인 해리 포터 캐릭터의 전 세계 판매권을 인수한 것을 들 수 있다. 워너 브로스는 이 실시허여를 세분화해서 사업 파트너들에게 분배했다. 해즈브로(Hasbro)는 청소년용 전자 게임과 트레이딩 카드(trading card)의 제조 및 유통을 담당하고, 경쟁업체인 매텔(Mattel)은 장난감을 만들고, 또 다른 기업은 인터랙티브 캔디(interactive candy)를 만들고, 캘리포니아의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일렉트로닉 아트(Electronic Arts)는 해리 포터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을 만들고, 코카콜라는 첫 해리포터 영화의 마케팅과 관련된 권리를 갖게 되었다.²¹⁶⁾ 이렇게 복잡한 계약의 네트워크라는 맥락에서 볼 때, 상표 실시허여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캐릭터가 점점 유명해지면서 각 상품이 다른 상품의 판매를 돕게 된다. 실시허여의 네트워크를 개울물이 모여서 큰 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상표 소유자에게 그 여러 가지 실시허여가 사용료 수익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상표는 보다 폭넓은 지식재산의 실시허여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다(예를 들면, 특허권을 포함하는 의약품 제조권, 기술 문서화 할 권리와 약품의 판매와 유통과 관련해서 약 이름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함께 라이선스하는 것).

종합적인 지식재산의 실시허여인 경우 중요한 점은 기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상표가 이 전체 실시허여 거래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핵심 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권리는 만약 그 거래에 널리 알려진 상표까지 포함된다면 훨씬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경우에는 상표의 이미지가 좋아서 다른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라는 것이 관련 상표 없이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한 예

216) “The Harry Potter Phenomenon”, 국제상표협회 회장인 Nils V. Montan과의 인터뷰, 2001년 4월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18 페이지 이하를 참조하기 바람.

로, 유명한 탄산 음료를 제조하고 유통할 권리만 있을 뿐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물론 그 맛을 기억할 소비자도 있기에 하겠지만, 이름이 다르다면 아예 마셔보려고 하지 않을 소비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 상표와 프랜차이징은 함께 간다

잘 어울리는 로고, 표어, 상징은 프랜차이징의 필수조건이다. 국제총판권구매자협회(International Franchisee Association)는 프랜차이징이 맥도널드(McDonalds), 코카콜라(Coca-Cola), GM(General Motors), 리맥스(Re-Max)의 미국 전체 소매 매출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²¹⁷⁾ 프랜차이징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프랜차이지(Franchisee)와 프랜차이저(Franchiser)가 장비 구입, 공급과 관련된 조건을 포함한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여기서 필수 요소가 바로 상표 실시허여이다. 상표 실시허여가 있어야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의 상호, 상표, 상징, 수단, 절차를 사용해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획득하는 대신, 프랜차이지는 사용료와 고정료를 지불하고 상표의 이미지에 걸맞는 방식으로 사업하기로 동의한다.

앞서 살펴본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지 않는 실시허여 거래에서와 같이, 프랜차이즈 계약의 가장 큰 가치는 주로 상표 사용권의 획득에 있다. 맥도널드 햄버거를 판매할 실시허여와 맥도널드의 장비 구입 계약은 그 친숙한 로고, 포장, 가장 중요한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별 의미 없는 실시허여가 될 것이다. 수 십년간 쌓아온 맥도널드 브랜드의 이미지가 결여되기 때문이다. 맥도널드의 팬이라면 햄버거의 맛을 알아차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수는 아마 적을 것이다.

● 전략적 제휴와 파트너십 형성

두 기업의 상품이 서로 보완적일 수 있듯이, 상표 두 가지도 서로 보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표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공동 브랜딩 계약은 합동 마케팅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인터넷이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서

217) 29)와 같은 책 126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로 다른 기업의 상표가 결합되어서 합작 투자의 유용성이나 상품의 상호 보완성을 사용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여러 웹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웹사이트 소유자가 어떤 형태의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의 웹사이트로 연결되게 한 “파트너 페이지(partner page)”는 매우 흔하다. 이런 관련 기업들의 로고와 상호는 웹사이트 소유자의 로고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²¹⁸⁾ 이것을 보고 사용자는 이 상품과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공동 브랜딩 계약의 전반적인 효과는 물론 잠재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공동 브랜딩이 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합이 부분보다 크다는 고전적인 메시지이다. 즉 상품이든, 시장 확대이든, 호환 가능한 장비이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합동 솔루션이든, 서로의 실적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든,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든 간에 각 기업들이 혼자서는 이루어낼 수 없었던 일을 힘을 합쳐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전략적 제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표를 적절히 사용한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인텔 인사이드 캠페인이다(사례-5.6 참조).

[사례-5.6] 인텔 인사이드

미국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체인 인텔은 8086, 286, 386, 486 등의 “X86” 마이크로칩을 계속해서 생산했다. 그러나 인텔은 자사의 숫자 시스템에 대한 상표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AMD, 칩스 앤 테크놀로지(Chips and Technologies), 시릭스(Cyrix) 같은 경쟁기업들도 자사의 프로세서에 똑같이 X86 이라는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수를 알아차린 인텔은 1991년 IBM, 컴팩(Compaq), 게이트웨이(Gateway), 델(Dell)과 같은 컴퓨터 제조업체들을 설득해서 이들 기업의 컴퓨터 광고와 포장에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로고를 표시하게 했다. 이를 위해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인텔의 프로세서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의 3% (포장에도 표시할 경우 5%)에 해당하는 공동 광고 비용을 인텔이 부담하기로 했다.

218) 예를 들면, http://www.arm.com/armwww.ns4/html/semicon_partners 나 <http://www.intel.com/eBusiness/affiliates/index.htm?iid=eBus+homeWW3303&>를 참조하기 바람.

그 결과 18개월간 9만 페이지가 넘는 광고가 실리게 되었고, 소요된 비용은 약 미화 1백억 달러에 달했다. 기업 최종 사용자들 간의 인텔 브랜드 인지도는 46%에서 80%로 크게 높아졌다. 인텔 인사이드 캠페인을 펼친 1년 후인 1992년 인텔의 전 세계 매출은 63%나 증가했다. 유명한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인텔 인사이드 로고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좋게 평가하게 된 것이다.

출처: Chiranjeve Kohli와 Mrugank Thakor, "Branding Consumer Goods: Insights from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4, No. 3(1997년 봄)과 David A. Aaker의 *Building Strong Brands*, The Free Press, 1996: 12-13페이지

● 금융거래 자산이 되는 상표

상표가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에 인수 합병과 같은 금융 거래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실제로 물리적 자산보다 상표가 더 가치있는 자산이 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오래된 브랜드 이름의 가치를 인정해서 네슬레(Nestlé)는 페리에(Perrier)를 인수하는 댓가로 미화 25억 달러를 지불했다.²¹⁹⁾ 마찬가지로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도 크래프트(Kraft)를 미화 13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 액수는 크래프트의 장부 가치의 6배에 달한다. 이 매입으로 필립 모리스는 크래프트의 프랜차이즈를 활용하여 소매품 판매로 이익을 얻고 브랜드 이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²²⁰⁾ 브랜드 이름의 가치에 대한 더 많은 예가 표-5.7에 나타나 있다.

219) Kohli의 "Branding Consumer Goods"를 참조하기 바람.

220) David A. Aaker와 Alexander L. Beil의 Brand Equity and Advertising과 Kohli의 "Branding Consumer Goods"를 참조하기 바람.

표-5.7

순위	브랜드	2001년 브랜드 가치(\$MM)	퍼센트 변화(2001년 대 2002년)	2000년 브랜드 가치	모기업의 시가 총액(2001년 7월)	시가 총액의 퍼센트로 본 브랜드 가치 (2001년 7월)
1	코카콜라	68,945	-5%	72,537	113,400	61%
2	마이크로소프트	65,068	-7%	70,197	380,000	17%
3	IBM	52,752	-1%	53,184	198,700	27%
4	GE	42,396	11%	38,128	498,600	9%
5	노키아	35,035	-9%	38,528	104,200	34%
6	인텔	34,665	-11%	39,049	202,200	17%
7	디즈니	32,591	-3%	33,553	60,000	54%
8	포드	30,092	-17%	36,368	45,900	66%
9	맥도널드	25,289	-9%	27,859	35,400	*
10	AT&T	22,828	-11%	25,548	148,950	15%

* 이 브랜드의 가치는 모기업과 가맹점들의 수익을 모두 합해서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업의 시가총액에 따른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출처: Interbrand Survey-www.interbrand.com

☒ 안전 기준과 기술적 사양을 충족시킨 것을 나타내는 상표

단체 표장은 특정 단체의 회원임을 나타내고, 증명 표장은 해당 상품이 안전 기준이나 기술적 사양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전자의 예로는 노조총연합의 회원사가 만든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장이 있다. 이 표장의 광고를 보면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노래를 하면서 “노조 표시(Union label)를 찾으세요”라고 소비자들을 설득한다.

소비자에게는 상품이 폭발하거나 전기로 인한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나 다른 안전상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그냥 보기만 해서는 이 상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험을 거쳤음을 알려주는 증명 표장은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안전 증명 라이선서 중 가장 유명한 단체는 보증연구소(Underwriters Laboratories)로 그 유명한 UL 로고의 사용권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가 전기 제품의 안전 실험을 거쳤음을 나타낸다.²²¹⁾

● 상표가 자선 활동이나 국가 이미지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상표는 비상업적인 맥락에서 자선 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자선 단체는 그 목적과 독특한 이름과 상징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상표를 사용하고 홍보한다. 기부자들은 금방 상표를 알아보고 그 목적을 떠올리며 자신의 기부금이 원래의 의도대로 자선 활동에 쓰일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게 된다.”²²²⁾ 자선 활동을 위한 상표의 익숙한 예로 1918년 처음 사용되었고, 1965년에 상표로 등록된 붉은 구세군 방패 표시를 들 수 있다.

최근 증가하는 현상은 국가가 상표, 특히 표어와 로고를 사용해서 관광객 유치, 투자 또는 자국에 대한 정치적 선호도를 위해 자국의 독특한 특징을 강조하는 관행이다. 표어나 로고는 국가가 내보이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국가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상품에 있어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²²³⁾ 그림은 천 마디 말보다 낫다고 한다.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광고되는 강렬한 그래픽 로고와 몇 마디 말이 관광 수익 등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US 오픈 테니스를 TV로 시청하는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있는 IBM, 나이키, 아디다스와 다른 스포츠 용품 광고 외에 화려한 색상의 ESPAÑA 로고를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스페인이 태양, 스포츠, 흥미의 나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 상표에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

상표의 사용은 마케팅과 사업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다.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한 사업의 요소로 자리잡음에 따라 상표의 사용도 변화되었고 더 복잡해졌다. 세 가지 중요한 경향은 첫째, 여러 상품이 점점 더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는 점, 둘째, 마케팅과

221) 여러 증명 표장에 대한 알기쉬운 설명과 전자 제품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UL 웹사이트 <http://www.ul.com/mark/index.html>을 참조하기 바람.

222)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Review, 1999의 18페이지 Century of American Innovation을 참조하기 바람.

223) Foreign Affairs 2001년 9-10월호 2페이지 이하에 실린 Peter van Ham의 “The Rise of the Brand State”에 나타난 흥미로운 토론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저자는 우리가 “브랜드와 국가가 종종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하고 있으며 “현명한 국가들은 현명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명성과 태도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유통 채널로써의 인터넷의 보편화, 셋째, 브랜딩이 세계적인 마케팅과 문화 현상으로 부상하는 점이다.

(1) 상표와 기술 상품의 복잡성 증대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기술 제품들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상표의 역할은 상품을 떠올리게 하는 기존의 기능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100년 전의 소비자들은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컴퓨터, TV, 커피 제조기, 오디오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엄청나게 다양한 기술적 특성을 가진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인텔 인사이드 로고가 붙은 컴퓨터라면 컴퓨터 구매자가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TV 속의 온갖 부품을 다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소비자가 과연 있을까? 소비자들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름”을 신뢰한다.

식품 중에도 어떤 요건을 충족시켰음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가 필요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유기농 식품은 몇 가지 실험을 거치게 되고, 이 유기농 식품의 생산자는 특정 증명 표장을 획득하게 된다.²²⁴⁾ 변화하는 요즘 세상에서, 순무 중에는 단순히 순무가 아니라, 실험을 통과해서 증명된 순무로 증명 표장을 자랑하면서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있다.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점점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요즘 상표에 두드러지는 경향은 증명 표장과 단체 표장을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이 기술적 사양을 충족시켰으며 실험을 통과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명 표장”은 일반적으로 상표 소유자가 기술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관련 실험을 통과한 기업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상표이다. 증명 표장은 종종 로고와 함께 상품에 표시되어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낸다. 일반적으로 증명 표장은 제3자 표장으로 상품의 제조업체/유통업체의 표장과 나란히 부착된다.

224) 조사와 실험을 통해 유기농 농산물임을 입증하고 이 실험을 통과한 생산자들에게 로고를 부여하여 “증명의 7단계”를 설명하고 증명된 기업들에게 “유기농 업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표장”을 수여하는 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 Organization의 예를 참조하기 바람(<http://www.ccof.org/certification.htm>)

기술 사양을 충족시켰음을 나타내는 상표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 우선 상품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신호로 사용된다. 제3자가 부여한 표장인 경우는 증명 표장으로 등록될 수 있다. 때로는 상표의 사용권 보유자가 상품의 제조업체이거나 유통업체이면서 동시에 비슷하거나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다른 기업이 같은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컬러싱크(ColorSync)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상품의 유통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애플 컴퓨터가 등록한 상표로, 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애플 컴퓨터의 컬러매칭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애플은 “컬러싱크로 만든(Made with ColorSync)”이라는 로고를 컬러싱크 기술의 사용권자이자 컬러싱크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나 상품을 만드는 다른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²²⁵⁾ 이 상표 실시하여 방식을 통해, 상표는 서로 관련 없는 기업들이 만든 기술적으로 관련 있는 상품들을 “가족화” 하는데 사용된다.

기술 플랫폼 이니셔티브에 있어서의 상표의 효과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이 업계에서 신뢰받는 “최신”기술을 사용하여 그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있다. 사용권 공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표는 해독하기 어려운 기술 명세서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준다는 점에서 기술 그 자체의 가치를 높여준다. 기억하기 쉽고 눈에 잘 띄는 상표가 없었다면 기술 실시하여(이 경우 컬러매칭 명세서와 기술)만으로는 그와 같은 가치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사용권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품을 개선하는 유용한 기술을 획득할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화되며 사용권자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했을 대규모의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뒷받침되는 마케팅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표는 즉각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신호를 통해서 기술 명세서의 내용을 알려준다. 상표가 아니었다면 소비자는 복잡한 문구를 읽고 같은 내용을 이해해야 했을 것이다. 기술 상품군에 상표를 활용함으로써 마케팅 우위를 창출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돌비 사운드” 상표 실시하여 프로그램이다(사례-5.8).

225) www.Apple.com/Colorsync에서 ColorSync 라이선스와 관련 문서를 참조하기 바람.

[사례-5.8] 돌비, 전 세계에서 들리는 소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민간 기업 돌비 연구소(Dolby Laboratories)는 오디오 신호 프로세싱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영화, 방송, 음반 산업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전문 장비를 제조한다. 돌비는 또 이 기술과 상표 그리고 로고를 소비자 전자 기업에 실시하여한다.

1960년대부터 돌비는 아날로그 “소음 감소(noise reduction)”라고 알려진 기술을 발명함으로써 소리 분야의 기술 선두주자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돌비의 소음 감소의 작동 원리는 오디오 신호가 없을 때는 소음을 낮추고, 다른 때는 오디오 신호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소음을 가리는 것이다. 돌비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돌비 A-타입(전문가용)과 돌비 B-타입(소비자용) 소음 감소 기술로 테잎 녹음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1970년대 후반 돌비는 돌비 스테레오(Dolby Stereo) 아날로그 음향 시스템으로 영화 음향을 혁신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돌비 SR(Spectral Recording) 덕분에 테잎 녹음과 영화 음향이 현격히 개선되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돌비는 흠뻑어터라는 새로운 분야를 위해 돌비 서라운드 사운드(Dolby Surround Sound)와 돌비 프로 로직(Dolby Pro Logic)을 내놓았다. 1990년대에 돌비는 자사의 아날로그 소음 감소를 디지털 오디오 기술에 적용시킨, 돌비 디지털을 내놓았다.

돌비 로고의 사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기술 및 실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돌비 로고를 사용하도록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이 돌비 측의 설명이다.

돌비 상표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는 돌비가 제조한 상품의 판매보다 훨씬 더 널리 그 이름을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돌비를 인지하게 된 것이다. 돌비 웹사이트에는 2002년 8월을 기준으로 사용권이 공여된 상품의 판매 건수가 1,071,970,000건에 달한다는 놀라운 통계가 나타나 있다. 이 숫자는 제3자인 사용권자가 판매한 상품의 수를 나타낼 뿐 돌비 영화트랙과 방송 상품이라는 큰 상품군의 판매는 제외한 것이다.

돌비의 실시하여가 얼마나 성공적인 지는 총 수익의 2/3이 실시하여된 상품으로부터 창출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돌비의 기술 혁신은 특허로 보호받는 것으로 특허 기간은 언젠가 만료된다. 그러나 돌비의 실시하여 프로그램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바로 상표였고, 상표는 영원히 돌비가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다. 상표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돌비는 최첨단 비디오 오디오와 거의 동일시되는 상표로 그 이름을 널리 알렸다. “돌비 사운드”는 모든 소비자 가전 제품에 필수적인 상표가 되었다. 소비자들이 구매할 상품에 돌비 로고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 이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술력이 나타난다.

출처: <http://www.dolby.com/stats>
<http://www.dolby.com/digital/diggenl.html>.

상표를 이용해 어떤 상품이 기술 요건을 충족시켰음을 나타내는 방식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 중에 특이한 방식이 몇 가지 있다. 증명 표장은 증명되는 상품의 제조업체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잠재적 사용자들은 일종의 협회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술 플랫폼을 추진한다. 컨소시엄의 회원사 중에 증명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그 기술을 채택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독립적인 단체가 설립되어 증명 표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단체는 기술의 실시허여를 허가할 뿐 아니라 기술 사용자들의 기술 입증 및 증명 실험을 실시할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상표 소유자가 실제로 상품은 전혀 제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NXT라는 영국의 기술 분야 신생 기업은 슬립 라인의 확성기를 설계하고 공개적으로 돌비의 라이선싱 모델을 모방한다. 차이점은 언젠가부터 이 기업이 스피커의 자체 생산을 중단했다는 점이다.

증명 표장은 잠재 구매자들에게 이 상품이 같은 상표가 붙은 다른 상품들과 호환이 된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상표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은 신경제하에서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호환되지 않으면 전체 운영이 중단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인 컴퓨터 사업 분야에서는 호환성이 더욱 중요하다. 두드러지는 표장이 없으면, 기술적 배경지식이 없는 구매자는 사려고 하는 상품이 이미 구입한 상품과 호환되는 지 어떤 지를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단어나 로고의 형태로 된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보다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과 호환한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깃발 로고이다. 이것은 윈도우즈 깃발을 달고 있는 모든 상품은 서로 서로 그리고 윈도우즈 운영 체제와 호환된다는 신뢰감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계획된 상표 실시하여 프로그램으로 매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사례-5.9 참조).

[사례-5.9]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로고, 깃발을 휘날려라

가장 성공적이고 광범위한 상표 실시하여와 증명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깃발” 로고 프로그램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눈에 잘 띄는 휘날리는 깃발 로고를 디자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상품과 호환하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개발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했다. 그 깃발을 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표 실시하여 계약에 서명하여야 했다. 실시하여 계약에 따르면 사용권자는 상호 호환성과 기능성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권자들에게 증명 프로세스를 통과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새 운영 체제인 XP를 도입하면서, 새 상표 라이선싱과 증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상표의 전략적 사용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권자들이 깃발 로고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자사의 브랜드를 광고하는 효과를 갖고 사용권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상품과의 관련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이익을 갖는다. 로고 프로그램은 또한 사용자들에게 고품질의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가족”의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광범위한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지원한다.

사용권 공여자가 유통시키는 상품과 보완적인 상품의 개발자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상표를 표시하려면 개발자는 특정 사양에 부합하는 상품을 설계, 제조하여야 하며, 부합 여부는 사용권 공여자나 그 대리인이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상표 소유자는 상품군 중 가장 중요한 상품의 소유자이며,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자사의 상품과 잘 어울리는 보조 상품 군단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 따라서 상표는 상호 호환적

인 기술 시스템을 지원하는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는다.

(2) 인터넷의 성장과 상표에 미치는 효과

상표가 부착된 상품들이 기술적으로 점점 복잡해지는 것과 더불어, 상표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경향은 바로 인터넷의 성장이다.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인터넷은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방식 뿐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상표와 상표법은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상표는 전자상거래에서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다. 기업들은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고 기업은 물론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얼굴을 맞대는 상호 작용이 거의 없고 구입하기 전에 상품과 서비스를 관찰할 기회가 거의 없거나 전무한 가상의 시장에서는 특히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업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상표에 크게 의존한다.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삼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상표가 오프라인 상에서 사용되는 상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가지고 가치도 더 높다고 할 수 있다.²²⁶⁾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몇몇 국가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또는 그와 관련해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한 예로 USPTO에 1999년 접수된 인터넷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상표의 신청은 33,731건이었는데 5년 전에는 그 수가 307건에 불과했다. 1999년에는 12,000건의 상표출원에 “.com”이라는 조사가 붙어있었지만 1994년에는 그러한 출원 건수가 4건에 불과했다.²²⁷⁾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상표의 소유자들은 인터넷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가지 예는 상표와 도메인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이다. 도메인은 단순한 인터넷 주소로, 사용자들이 쉽게 인터넷 상에서 위치를 찾아가도록 계획된 것이다.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를 알려준다는 그 자체로도 상표와 유사한 독특한 가치를

226) 보다 자세한 내용은 WIPO의 전자 상거래 입문서를 참조하기 바람 (<http://ecommerce.wipo.int/primer/section3.html>)

227) 2000년 5월 15일자 New York Times의 기사 “A Flood of Trademark Applications Clearly Shows That the Internet is a Place Businesses Want to Be”를 참조하기 바람.

지니지만 때로는 웹사이트 소유자의 브랜드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 도메인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특정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의 경우 한 단어에 한 장소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품 종류가 다른 ABC 브랜드가 또 있다 하더라도 ABC.com은 하나뿐이다. .com 하에는 ABC 브랜드를 도메인으로 하는 장소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상표와 도메인의 관계는 무수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 예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도메인을 등록하려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에 나타나는 등록된 상표 소유자의 권리 침해의 한 형태는 타인이 소유한 것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고의적으로 도메인으로 등록한 다음 그 상표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도메인을 넘기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라고 알려져 있다(사례-5.10 참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WIPO는 통합분쟁해결정책(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을 마련하여 사이버스쿼팅이라 불리는 도메인 선점에 대처하는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사례-5.10] 난도스: 남아프리카의 성공 이야기

요하네스버그의 포르투갈인 거리의 한 가운데에서 극비의 조리법으로 만든 닭고기 요리를 페르난도 두아르테가 친구인 로버트 브로진에게 대접했을 때, 브로진은 후에 자신의 꿈이 된 요리의 첫 맛을 보게 되었다. 그 꿈은 다른 아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은 동업자가 되었고 1987년 9월 난도스가 탄생했다. 오늘날 난도스는 아프리카, 호주, 캐나다, 이집트,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영국에 200개의 지점을 둔 급속도로 성장하는 레스토랑 체인이 되었다. 이 기업은 난도스 상표로 엄청난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이미지를 높였다. 난도스라고 하면 전 세계 닭요리 체인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이제는 난도스라는 이름과 관련되어 등록된 상표만 전 세계적으로 상당하다.

난도스는 1997년에 처음 요하네스버그 주식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2000년 10월에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설문 조사 결과 남아프리카의 11위 기업에 꼽히면서 난도스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이룬 성과를 분명하게 인정받았다. 난도스 브랜드의 힘으로 기업은 난도스 브랜드를 표시한 소매 상품을 포함하는 다른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었다. “우리는 미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대의 퀵서비스 레스토랑 브랜드이다. 많은 남아프리카 기업들이 해외 브랜드를 들여왔지만 정작 남아프리카의 브랜드를 더 넓은 세계 시장에 내놓은 기업은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고 브로진은 말한다.

2000년 3월 난도스는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채택한 고유의 유명 도메인에 적용되는 통합분쟁해결정책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 WIPO의 중재조정센터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사이버스쿼팅의 해결을 신청했다. 누군가 nandos.com과 nandoschicken.com이라는 도메인을 미리 등록해놓고 난도스에게 그 이름의 사용권을 공여받든지 양수하라고 제의를 한 것이다. 중재조정센터에서는 이 사건에서 난도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도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한 측에게 난도스에게 도메인을 넘기라고 명령하였다.

출처: Nando's International Limited와 the Financial Times (London)

도메인 등록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의 영토성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인터넷의 영역은 세계이고, 상표법의 영역은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국가에서 같은 상표에 대한 권리를 등록한 여러 당사자가 인터넷에서는 하나의 도메인을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영국에 등록된 “ABC”와 싱가포르에 등록된 “ABC”는 상표의 소유자와 부차적인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ABC.com” 도메인으로 등록하려고 한다면 분쟁이 발생한다.

도메인과 관련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상표 이외의 기업 특유의 상징과 관련된 문제

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 이름, 출처의 지리적 표시, 지리적 용어, 상호, 국제기구 이름, 국제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일반 의약품 성분이 제2차 WIPO 도메인 회의(WIPO Domain Name Process)의 보고서 주제이다.²²⁸⁾ 이 보고서는 때로 상표 처럼 특유의 상징으로 활용되는 이런 종류의 이름과 관련된 도메인 시스템의 사용을 다루고 있다.

이 사안은 ICANN이 허용한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s, gTLD)이 매우 많다는 점 때문에 더 복잡해진다(예를 들면, .com, .org, .net과 새로 나온 .aero, .info, .pro, .coop, .name, .museum, .biz). 이 밖에도, 멕시코의 .mx와 같은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level domains, ccTLD)도 있다.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아랍어, 중국어, 히브리어와 같이 알파벳이 아닌 다른 글자로 된 도메인도 생겨나고 또 ICANN의 지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다른 최상위 도메인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사안은 더욱 복잡해졌다.

상표 소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새 도메인이 생길 때 마다 상표의 이행은 힘들어진 다. 각 도메인이 상표의 오용과 다른 이행 제도에 대한 잠재적인 보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ccTLD와 gTLD에 의한 통합분쟁해결정책의 응용을 권장 한다는 측면에서 WIPO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3) 세계를 상대로 한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의 출현과 문화 현상

이 장의 앞부분에서는 상표의 두 가지 새로운 경향, 즉 기술의 복잡성과 인터넷의 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 번째 경향은 상표를 문화적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비판적인 논평가들은 소비자들이 점점 삶의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브랜드를 선택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²²⁹⁾ 이 비판의 논지는 요즘 기업들이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상품이 아닌 이미지를 마케팅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보다 브랜드 그 자체가 소비자나 브랜드 소유업체의 주주에게 더 가치있고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마케팅 담당 중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28) <http://wipo2.wipo.int/process2/>를 참조하기 바람.

229) Naomi Klein의 No Logo (Flamingo, 2000)를 참조하기 바람.

예를 들면 나이키는 사람들이 운동과 건강에 대해서 느끼는 깊은 감정을 활용한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완전히 편입시켰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정을 무기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위대한 브랜드는 기준을 높인다. 운동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도전 정신이든 한 잔의 커피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확신이든 간에 위대한 브랜드는 어떤 경험에 큰 목적 의식을 부여한다.²³⁰⁾

브랜드 개념을 확대하려는 이러한 경향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관찰로는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품의 품질과 기능과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소에 대해서 취약함을 보였다. 대중이 브랜드를 판단할 때는 그 브랜드의 상품 하나가 품질이 좋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보지는 않는다. 브랜드와 그 기업의 총체적인 이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업이 브랜드의 가치를 홍보하면 할수록, 윤리적으로 떳떳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보여야 한다.”²³¹⁾ 이렇게 소중하지만 취약한 브랜드와 지금껏 쌓아놓은 명성 그리고 기업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이 정치, 윤리, 환경, 사회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브랜드 소유자들은 소중한 브랜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 활동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압력을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 지리적 표시²³²⁾

지리적 표시도 상표처럼 의미를 전달한다. 잠재 구매자들에게 어떤 상품이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 지역에서 만든 그 상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알린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리적 표시는 관련된 양자, 지역 또는 다자간 협정의 구속을 받는 국가에서 해당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해당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다(예를 들면, 다질링 차라는 지리적 표시는 아무리 맛이 비슷하다고 해도 세계 다른 지역의 차에는 붙일 수 없는 표기이다).

230) Klein의 No Logo 21 페이지에 인용된 현 Starbucks의 마케팅 부사장이자 전 Nike 마케팅 팀장 Scott Bedbury의 말

231) 2001년 9월 8일 The Economist의 “Pro Logo: Why Brands are Good for You”

232) 이 책에서 사용되는 “지리적 표시”라는 표현은 와인 레이블과 같은 원산지 명칭과 출처 표시를 포함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는 그 의미가 다르다. TRIPS 협정에는 지리적 표시가 더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의 한 분류로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은 상표와의 구분이다. 상표는 시장에서 일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표하는 반면,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과 다른 특징을 필연적으로 나타내는 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는 개념과 효과에 있어서는 상표와 유사하며 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기업들이 상품을 홍보하는 데도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치즈를 원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의 로크포르 주변에서 만든 로크포르 치즈를 찾는다. 프랑스 이외 지역의 치즈 제조업체가 로크포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불법이다.²³³⁾ 베트남 요리 애호가라면 진짜 베트남 산 생선 소스인 푸 퀵 생선 소스를 찾을 것이고 제대로 된 베트남 요리를 베트남의 산 투엣 목 차우 차와 함께 즐길 수 있다(사례-5.11 참조).

[사례-5.11] 베트남에서 온 생선 소스

푸 퀵 생선 소스와 산 투엣 목 차우 차는 최근 원산지 명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초의 베트남 상품이 되었다. 푸 퀵 섬은 베트남 본토의 메콩 삼각주에 있는 키엔 기앙 주에 포함된 섬으로 다양한 생선 소스로 유명하다. 그래서 “푸 퀵”이라는 용어는 종종 베트남에서는 특히 남부 지방에서는 생선 소스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산 투엣 목 차우 차는 북부 산악 지대인 손 라 주에 있는 목 차우에서 생산된다.

2001년 6월 하노이에서 한 행사가 열려 원산지 명칭과 베트남이 지리적 위치와 무역 사기 방지를 위해 프랑스와 시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베트남 부총리는 이 상품들과 이들의 법적 지위의 전략적, 개발적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우리는 베트남 상품의 원산지 명칭을 세계 시장에서 보호해 나갈 수 있다”고 부총리는 말했다.

출처: The Saigon Times Daily; 호치민 시, 2004년 6월 7일

233)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로크포르” 치즈는 EC 규정 No. 2081/92에 의거 유럽연합에서 보호된다. 지리적 표시는 농산물과 식품의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지정의 보호에 대한 1992년 7월 14일에 열린 유럽 공동체 의회 규정 no. 2081/92와 TRIPS 협정 22-24조에 의거 인정된다. 원산지 명칭의 보호와 국제적 등록에 대해서는 리스본 협약을 참조하기 바람.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리적 위치는 어떤 상품과 그 제조 지역 간의 품질의 연계를 암시한다.²³⁴⁾ 농산품은 산지에 따라 품질이 차이가 나고 기후와 토양 같은 특정한 지역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대조적으로 지역과 상품 간의 품질의 연계 없이, 단순히 어떤 상품이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것으로 고려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디종 겨자는 이제 일반적인 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디종 외 지역 사람들이 이 겨자를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겨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명칭이 되어버렸다. 어떤 명칭이 일반적이냐 아니냐는 국가의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국가마다 여러 가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는 (1) 독자적인 법 또는 법령, (2) 표시 등록, (3) “사기통용(passing off)” 같은 불법 행위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법이 있다. 마지막 방법의 경우, 해당 지역이 원산지가 아닌 상품에 그 지역의 지리적 표시를 부착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된다. 지리적 표시는 단체 표장이나 증명 표장을 등록함으로써 보호받을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 같은 많은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특정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독점권을 지역의 생산자들이 갖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특히 맛있는 음식의 경우가 더욱 그렇지만, 약초, 목재, 의상, 양탄자와 기타 여러 상품에도 마찬가지로의 원칙이 적용된다. 상표처럼 지리적 표시는 특히 그 지역의 상품이 실제로 품질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 역동적인 마케팅 능력을 갖게 된다. 지리적 표시는 본질적으로 집단이 소유하기 때문에(로크포르 지역의 모든 치즈 제조업자들이 모두 로크포르라는 지리적 표시의 소유자), 지역 단위 경제 개발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어느 지역이든 상품과 지역 간의 품질 연계가 있거나 앞으로 만들 수 있는 특산품이 있다면,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여 그 지역의 상품을 품질이 낮은 다른 지역 상품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34) WIPO 지식재산 소책자, 2001, 2.675

호주 와인이 지리적 표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산업을 일으킨 좋은 예이다. 호주산 와인은 지난 10~15년 동안 유명해지고 그 품질과 맛이 인정을 받아 명성이 쌓였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자 호주는 호주/유럽 공동체 와인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국내로는 법을 통과시켜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게 하였다. 호주 와인 산업은 지리적 표시가 인정을 받게 되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 한 와인 기업은 “아이콘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브랜딩을 사용했고, 호주산 와인이라는 표시는 영국에 대한 수출을 1986년 5천 건에서 1994년에는 1백만 건으로 늘리고 1995년에는 프랑스산과 캘리포니아 와인을 제치고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와인 브랜드로 성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²³⁵⁾ 멕시코의 테킬라도 지리적 표시에 기인한 또 하나의 성공 사례이다 (사례-5.12 참조).

[사례-5.12] 테킬라: 용설란이 자라는 곳에서만

멕시코 음료인 테킬라는 멕시코의 상징을 담은 병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고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테킬라가 1977년부터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았으며 멕시코에서도 주요 원료인 선인장을 닮은 용설란이 자라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생산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테킬라라는 지리적 표시를 만든 대통령령이 1977년 10월 13일 발표되어 멕시코 내 4개의 주(나중에 5개로 늘어남)에 이 음료를 생산할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테킬라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게 됨에 따라, 제조업자들은 테킬라를 전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용설란이 아닌 다른 대체 원료를 사용한 상품은 테킬라로 판매되지 못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 해에 생산되고 판매되는 테킬라의 양은 1억9천 리터에 달하며 지난 5년간 83%나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테킬라 생산은 3만 6천 명의 멕시코인들에게 농부, 기술자 등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었고, 운송, 유통, 및 다른 활동을 통해 비간접적으로 테킬라와 관련된 일자리는 그 수가 더 많다.

235) 1995년 4월 5-6일 호주 정부와 공동 주최한 지리적 표시의 세계적 보호에 대한 WIPO의 심포지움에 대한 WIPO Publication No. 739(E)를 참조하기 바람.

1978년 테킬라는 WIPO가 주관한 리스본 협약에 의거 WIPO에 등록되어 전 세계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리스본 협약과 멕시코와 유럽 연합이 1998년 상호 지리적 표시 인정을 위해 맺은 상호 인정 협약 덕분에 생산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다른 제조업체들이 테킬라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진짜 멕시코산 테킬라 상품의 명성을 유지하고 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서 테킬라의 매출은 크게 늘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테킬라 상품의 제조권을 멕시코 생산자들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이 상품을 전 세계에 내놓음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테킬라 제조업체들이 협력하여 상품의 명성을 더 높일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출처: 테킬라 규제 협의회(Tequila Regulatory Council)

이 장에서는 상표와 지리적 표시가 단순한 이름이 아니며 여러 가지 이유로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오늘날 그 어느 때 보다 더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이 장의 앞부분에서 논의한 대로 기업과 국가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사회, 상품, 기술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사용은 변화되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또한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 자유화로 인해 시장 경쟁이 세계화되면서 상표는 세계를 상대로 하는 시장에서 사용된다. 이로 인해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상표와 지리적 표시를 전략적 도구로 사용할 중요성이 커졌으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시, 미시 경제적 잇점도 있다.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신기술 특히 인터넷의 등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브랜드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례없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지역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던 전통적인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그와 관련하여 민간 분야가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야 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능력도 부각되었다. 상표권의 이행과 관련한 사안은 9장에서 다뤄진다.



제6장

저작권과 문화정보산업

저작권은 회화, 조각, 음악, 소설, 시, 연극, 건축, 무용, 설명서, 기술문서,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저작자의 원 저작물(original works of authorship)”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러한 법적인 보호는 저자가 독립적으로 해당 작품을 창작하였고 그 아이디어의 “표현”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복제된 것이 아니라 저자의 고유한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저작권의 기준은 새로움을 기준으로 하는 특허권과는 다르다. 특허권의 경우 아이디어의 표현 측면보다는 유용한 아이디어나 개념이 얼마나 새로운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저작자의 작품은 발명과는 달리 반드시 효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저작권은 아이디어와 개념의 표현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아이디어나 표현 그 자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the idea-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불린다.²³⁶⁾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창의적으로 표현된 연극으로 저작권(당시 그러한 개념이 존재했었음)의 보호를 받는 작품이지만 젊은 남녀가 가문의 원한과 신분의 장애를 뛰어넘는 사랑에 빠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셰익스피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작품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엄격한 규칙은 없다. 저작권은 모든 “어문 및 예술적 저작물(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 해당하며 유연성 있는 기준이 적용된다. 사실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일반 사람들이 문학 또는 예술작품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기술문서에까지 이른다.

다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상품 혹은 기술에 대해 저작권이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발명품이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그 컴퓨터 코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저작권은 산업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예술작품이나 사업 기밀로 간주되는 문서를 보호할 수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인식될 수 있는 고정된 형태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는 어떠한 특정한 등록, 위탁, 또는 관료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표현이 창작, 혹은 고정되었을 때 작품은 자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

236) Melville B. Nimmer and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뉴욕: Matthew Bender & Company, 2000), 2-6 에서 2-30. Berne Convention 2(1)조, 2(2)조 참조; TRIPS 협정 9(2)조.

는 것이다. 지난 수 년간 저작권의 사용과 향유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형식(formalities)”을 요구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합의되었다.²³⁷⁾

1961년 로마협약(The Rome Convention)을 통해 이전에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분야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권리를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방송, 음반, 실연(performance) 등이 이에 포함된다.²³⁸⁾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으로 인해 저작인접권이라는 용어의 표기가 “neighboring rights”에서 “related rights”로 바뀌었지만 현재 두 가지 모두 통용된다.

❖ 문화 산업

문화 산업이란 1차 산물과 서비스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을 통한 보호에 기반을 둔 활동 및 산업을 지칭한다.²³⁹⁾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 또한 저작권 보호대상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용어의 정의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개인의 가장 문화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일차적 수단은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라고 한다. 또한 의상, 활동, 정신적 수양, 식습관 등이 문화적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만큼 “문화”적인 것은 없다. 언어가 문서로 기록될 때, 가사로 음악의 일부가 될 때, 시청각 자료로 각색될 때, 또는 컴퓨터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 바로 저작권법하에서 보호될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업적 목적을 띠며, 전략적으로 조직될 때 우리의 수많은 즐거움, 조건, 이익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필요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및 산업분야로 분류되는 것이다.

6장에서는 각각의 문화 산업에 대해 그 특징과 활동을 다루고 이러한 문화적이고

237) 베른협약 5(2)조 참조.

238)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Rome Convention) (1961).

239) Shahid Alikhan, Socio-Economic Benefit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Geneva: WIPO, 2000): 50, 56.

역동적인 활동들과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보호의 관계에 대해 집중 조명할 것이다. 여기서 “산업(industry)”이라는 용어는 특정 활동 또는 사업에서의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상업적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창작가, 저자, 예술가, 실연자(performer)들과 그들이 구성하는 공동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구성하는 산업을 가장 논리적으로 구별하여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다: 음악, 시청각, 예술, 건축, 문학, 정보기술, 양방향 영상오락(interactive entertainment), 교육. 이러한 분류는 대부분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작품의 다양한 범주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특정 산업형태와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적합한 활동 및 상품의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종 상품과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분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창작과 발명은 저작권 산업의 핵심이다. 창작과 발명으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힘은 부인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책 한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화 한편에 울고 웃었던 경험이 있다. 그래픽 아티스트와 조각가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한다. 컴퓨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업무를 한층 수월하게 하고 국경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며 정보와 지식의 무한한 보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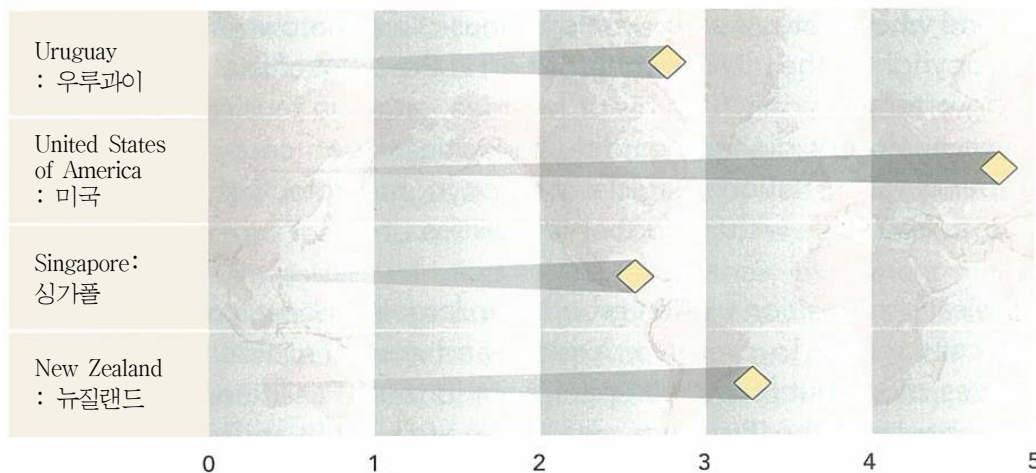
표 6.1 미국의 6대 해외 판매 및 수출 산업 (1999년)

순위	산업
1위	핵심 저작권 산업
2위	화학
3위	자동차
4위	항공기제조
5위	농산물
6위	전자부품 및 부속품

출처: Economists Incorporated,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 2000년 보고서* (워싱턴 D.C.: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2000).

저작권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통계가 제시되었다(표 6.1, 도표 6.2 참조). 1999년 미국의 통계를 보면 핵심 저작권 산업은 4,572억 달러 규모로 GDP의 약 4.9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1977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 동안 핵심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의 고용은 전 노동인구의 1.6퍼센트(150만 명)에서 3.24퍼센트(430만 명)로 증가하였다. 핵심 저작권 산업의 해외 판매 및 수출의 경우 1999년 7,965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다.²⁴⁰⁾ 다른 국가들의 통계치가 위와 같은 사실은 그대로 반영해준다. 뉴질랜드의 GDP대비 저작권산업 비율은 1987년 3.1퍼센트에서 1994년 3.4퍼센트로 증가하였다.²⁴¹⁾ 우루과이의 저작권 산업은 GDP의 2.9퍼센트를 차지하며²⁴²⁾ 싱가포르의 경우 2.7퍼센트이다.²⁴³⁾

도표 6.2 GDP 대비 저작권 산업 비율(퍼센트)



240)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 The 2000 Report (워싱턴 D.C: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2000).

241) 뉴질랜드 상무부 장관 John Luxton 연설, 1997년 9월 9일.

242) Luis Stolovich, Graciela Lescana, José Mourelle 공저, La Cultura Da Trabajo (Montevideo: Fin de Siglo, 1997).

243) Alikhan, Socio-Economic Benefit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69.

❖ 음악의 보편성

세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음악은 저작권 관련 산업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가장 널리 퍼져있다. 음악은 영화, 비디오, 양방향 소프트웨어 제품 등 다른 미디어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TV의 성공에 지대한 역할을 하며 라디오에서 제공되는 주요 저작물이다. 음악사업은 광범위하며 수익성이 좋은 문화사업으로 특정 형태의 음악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 다양한 형태와 스타일의 음악이 존재한다.

다음에서는 음악이 뮤지션이나 작사·작곡가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전체 과정의 각 비즈니스 모델 단계를 살펴보고 저작권 보호 체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 작곡

음악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되는 전 과정은 노래,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작곡에서부터 시작한다. 작사·작곡가(보통 작곡과 작사 모두를 하는 음악가를 지칭)와 작곡가(보통 멜로디만 있는 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지칭)는 작곡의 고정(fixation) 단계²⁴⁴⁾에서 일체의 저작권을 소유한다. 고정단계란 작사·작곡가가 음표로 혹은 아날로그나 디지털 녹음기기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창작 혹은 고정단계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른 추가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발동하게 된다.

작곡된 많은 노래가 그룹을 이룰 때는 음악 카탈로그를 형성한다. 음악 카탈로그를 보존, 활용, 상업화하기 위해 음악출판사가 생겨난다. 지식재산권(IP) 시스템의 소유권적 특성으로 인해 카탈로그는 매일 판매, 구매되며 그 가치가 기존, 그리고 향후의 현금흐름 및 수입으로 결정되는 자산인 것이다. 또한 한명의 아티스트 또는 그룹에 의해 인기를 끌게 되면서 문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가치가 변화하기도 한다. 그 예로 스페인 그룹인 로스 델 리오스(Los Del Rios)의 “마카레나(Macarena)”는 전 세계 히트를 기록하며 수백만 장이 팔려나갔고 무명에 불과했던 이 그룹의 카탈로그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탈바꿈하였다.²⁴⁵⁾

244) 작곡이 한 명 이상 작곡가의 “공동 작품”이거나 혹은 곡의 소유자가 작곡가의 고용인인 경우 “고용을 위한 작품”일 수도 있다는 사실 유의.

작곡된 곡이 카탈로그를 이루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지속 가능한 특성,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창의적 사용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사례 6.3 참조). 작곡된 곡은 어떠한 실연자에 의해서든 재녹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근본 자산(작곡된 곡)의 고유 가치(inherent value)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전 과정이 권리보유자에게 재생산과 대중실연, 배급, 대중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 권리보유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저작권과 저작권접권법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례 6.3] 보위 채권(Bowie Bonds)

영국의 유명 공연가인 데이빗 보위(David Bowie)는 30년 이상 공연 활동을 하면서 수 백곡의 노래를 작곡하여 실연, 녹음하였다. 그가 자신의 곡을 녹음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들에 의해 그 곡이 다시 불려지면서 소득의 흐름이 발생하였고 이는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풀만 그룹(The Pullman Group)은 작곡된 곡들을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자금화(securitize)”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착했다. 풀만 그룹은 보위가 작곡한 곡들에 대해 미화 5,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보위의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였다. 그리고는 작곡된 곡들로부터의 수입을 투자에 대한 담보이자 변제(repayment)의 원천으로 이용하며 변제와 수익모델을 근거로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판매하였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윈윈(win-win) 전략이다. 보위는 향후 예상되는 사용료(royalties)수익에 근거하여 소득을 취해왔다. 풀만 그룹은 수수료를 받았으며 창작 비즈니스 모델로부터도 수익을 얻을 것이고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일반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를 받을 것이다. 전체 거래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입증된 지식재산 자산에 의해 자금화 된다. 현재 마빈 게이(Marvin Gaye), 홀란드 도지에 홀란드(Holland-Dozier-Holland),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과 같은 이들의 음악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유사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진행 중인 인간계놈연구와 관련된 제약특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위의 예에서는 특히 음악) 가능성이 사실상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http://www.pullmanco.com/article_136.html; *Global Finance*, November 1999: 66-67

245) <http://www.geocities.com>

● 녹음

음악 산업 비즈니스모델에서 다음 단계는 작곡된 곡을 녹음하는 것이다. 작곡된 곡이 물론 콘서트나 무용 공연 등에서 실황으로 전달, 보급될 수 있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녹음되어 테이프나 CD에, 또는 다이아몬드 리오 플레이어(Diamond Rio Player) 등의 MP3기기와 같은 신기술로 녹음되어 보급된다. 지난 몇 년간 가장 일반적인 녹음 음악 형태는 CD였는데 전체 녹음 음악매출의 약 65퍼센트를 차지한다.²⁴⁶⁾

작곡된 음악을 녹음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실연자가 참여하게 되어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이러한 녹음과정을 촉진하며 음반의 성공을 위해 녹음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일체의 관련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뮤지션들과 가수들은 사운드 엔지니어, 에디터, 프로듀서들과 함께 말 그대로 음반을 창작한다. 따라서 법은 마치 작곡가가 최종 작곡물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최종 녹음 결과물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음반제작사들은(다음 섹션 참조) 이러한 녹음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의 이전을 보장받고 음반제작사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실연자들과의 계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사·작곡가들과 작곡가, 뮤지션, 가수들의 창작 및 참여 전 과정과 음반제작사의 투자과정, 그리고 최종상품의 대중으로의 전달과정 등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최신기술의 등장으로 녹음작업은 이제 소형휴대용기기에서부터 사운드를 가능한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수 백개의 채널이 설치된 최첨단 녹음스튜디오까지 그야말로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고 음질의 녹음을 위해서는 기술 과정에 대한 특정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녹음단계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특정 기술은 기타 미디어에서도 응용가능하다(예를 들면 라디오와 텔레비전, 실황 콘서트, 나이트클럽 등). 레코딩 믹싱은 엔지니어나 프로듀서의 기술과는 별개로 최종 결과물이 테이프와 CD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녹음과정 참여자들은 이렇게 각각의 위치와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상이한 직업, 기술, 그리고 고용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24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World Sales of Recorded Music, 1999 (<http://www.ifpi.org/statistics>).

음반유통사업

음악의 녹음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세계 음악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가시적인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음반유통사업은 음악 이외의 상품 및 서비스에까지 관여하고 있는 5개의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AOL/Time-Warner, Sony, Bertelsmann, EMI, Vivendi Universal.²⁴⁷⁾ 이들 다섯 기업의 유통시장점유율은 집계마다 약간씩 다르고 또한 세계 많은 국가들에 독립 레코드 프로듀서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 다섯 기업이 전 세계 음반 총 매출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⁴⁸⁾

세계 음악 사업을 촉진하는 것은 광범위한 마케팅 활동이다. 잠재 음반구매자들은 매일 자동차, 엘리베이터, 라디오, 텔레비전, 가게, 식당 등에서 음악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테이프나 CD를 사야겠다고 마음먹도록 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자본, 인력, 창의적 자원이 소모된다. 메이저 음반회사들은 기존의 유명 아티스트와 신인 아티스트의 홍보에 수 백만달러를 지출한다. 이러한 홍보 활동들은 때로 수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별한 이벤트(콘서트 투어나 뮤지컬, 스포츠, 텔레비전 이벤트 등)를 중심으로 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규모의 홍보활동과 자원의 투자는 추후 금전적인 성과에 대해 이를 창작측면에서나 재정측면에서나 가능하게 만든 이들이 자신들의 투자와 노력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받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2001년 세계 음악 시장은 미화 337억 달러 규모였다.²⁴⁹⁾ 그리고 북미, 유럽, 일본(아시아 시장의 83퍼센트를 장악하는)이 시장의 선두에 있었다(도표 6.4 참고). 이 도표의 수치는 녹음된 음악의 판매에 한정된다.²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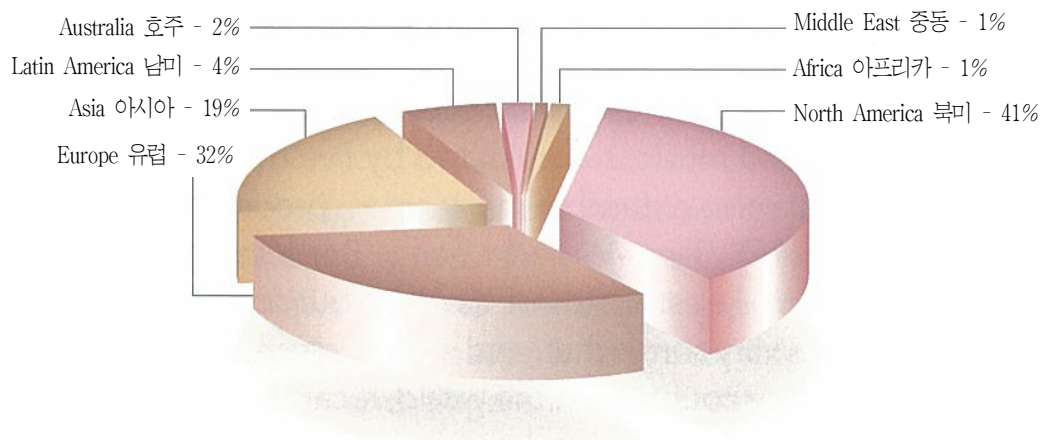
247) Irish Times, 2000년 2월 16일자. <http://acusd.edu/gen/recording;www.ifpi.org;www.duke.edu>. 참조.

248) Independent (런던), 1999년 2월 8일자.

249) IFPI 통계 - <http://www.ifpi.org>

250) 작곡가와 음악 출판가들은 그들의 다양한 자산을 다른 형태로 이용함으로써 수입을 얻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들이 소유한 작곡으로부터 직접적으로(텔레비전과 라디오 공연 등), 그리고 광고와 영화를 위한 레코딩, 그리고 수수료가 지불되는 다른 형태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료(licensing)로부터 소득이 발생한다.

도표 6.4 세계 음반 산업 매출 - 2001년



출처: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

다국적 음반회사들은 새로운 인재, 신인 작사·작곡가, 신인 가수, 신인 뮤지션, 신인 그룹 그리고 새로운 음악의 발견, 양성, 개발, 발표, 상업화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이들 기업들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신인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상업적 가능성을 지닌 인재를 더욱 정확하게 감별해 낼수록 그들은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소규모의 인재풀이 아닌 대규모의 인재풀에서 신인을 고를수록 성공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차세대 “마카레나” 주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측면은 소규모 틈새시장이 간과되어 왔거나 최소한 강조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규모 회사들이 수익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취향을 가진 대규모 시장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도표 6.4에서도 나타나듯이 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음반 판매상황을 보면 이들 지역의 시장 잠재력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녹음 음악의 새로운 홍보 및 보급수단으로서, 그리고 지명도가 낮은 신인 뮤지션들의 홍보수단인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음악 산업의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가 점

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음반회사들과 뮤지션들은 자신들의 상품과 스스로를 마케팅할 수 있는 이 전례 없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본 장의 마지막 섹션 참고). 소규모 음반회사들은 다양한 지역음악과 그 지역의 숨겨진 재능 있는 뮤지션들을 발굴함으로써 잠재 고객들에게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저작권이 지역사회의 작곡가, 뮤지션, 음반사들이 사업을 촉진하는 기회로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면 틈새음악과 토착음악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형태의 음악에 대해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업계와 작곡가, 뮤지션들에게 있어 토착음악의 거대한 잠재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세계 음악, 지역 음악

“세계 음악”이란 흥미로운 용어이다.²⁵¹⁾ 어떤 이들은 세계 음악을 “서양 음악”의 주류 밖에 있는 일체의 음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 “서양 음악”은 광범위한 의미의 용어로 비서양 음악과 뮤지션들에게는 중요한 어떤 차이와 문화적 측면을 간과하는 음악이다.²⁵²⁾ 어떤 이들은 세계 음악에 대해 기성 음반회사들이 열렬하게 마케팅활동을 펼치는 현재의 주류 음악이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던 세계 음악은 오늘날 인기가 있으며 전 세계 각 지역의 뮤지션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능과 음악적 전통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시해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고유의 음악을 선호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국가, 지역주민, 문화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러한 빈틈을 이용한 지역, 국가, 지역의 주체와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은 향후 세계 시장으로 발돋움할 잠재가능성이 있는 지역시장에 음악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는 제작, 인재, 보급 관련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 그 지역에 적합한 음악을 제공하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음악 산업에서 신기술의 도래로 인해 모든 뮤지션들과 음악 그룹이 자체적으로 음반회사로 활동하고 작사·작곡가들이 스스로 출판활동을 하며 녹음 스튜디오와 제작사 등 음악 창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민속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7장 참고).

251) Asian Wall Street Journal, 2000년 1월 28일자; Mainichi Daily News, 2000년 1월 14일자; Boston Globe, 1999년 11월 21일자.

252) New York Times, 1999년 10월 3일자.

다국적 기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문화적, 지역적, 또는 공통 분모식 접근방식을 취하기에는 너무 “틈새적”이라고 간주되었어도 결국 성공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 로스 델 리오스(Los Del Rios)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다른 예들도 많이 있는데 쿠바 음악의 경우는 이제 주류 음악이 되었다. 글로리아 에스테판(Gloria Estefan) (4500만장 판매²⁵³)과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Buena Vista Social Club)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이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리키 마틴(Ricky Martin)이 부르는 라틴음악의 리듬과 영어가사를 조절한 노래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었다. 미국의 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Christian Aguilera)는 수 백만명에 달하는 스페인어권 팬들을 위해 영어로 된 노래를 스페인어 가사로 바꿔 부를 예정이다.

인터넷과 한층 발전된 통신 서비스로 인해 세계 음악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세계 음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북 아프리카에서는 지난 수 년간 라이(rai)라는 음악이 존재하였는데 그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알제리의 첵 마미(Chebb Mami)는 이 지역에서 성공을 거둬하고 있다. 영국의 유명 음악가 스팅(Sting)의 레코딩 작업에 참여한 이후로 첵 마미와 라이 음악은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며 주류 소비자 층을 확보하게 되었다.²⁵⁴ 이와 유사하게 세네갈의 가수 요수 엔두르(Youssou N'Dour)도 영국의 유명 아티스트 피터 가브리엘(Peter Gabriel)과의 합작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엔두르는 1998년 프랑스가 개최한 제16회 FIFA 월드컵의 주제를 작곡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²⁵⁵

신경제, 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은 음악 비즈니스에게는 좋은 전조가 되고 있다.²⁵⁶ 다음 유행은 킹 서니 에이드(King Sunny Ade) (110장 이상 음반 녹음²⁵⁷)의 주주(juju) 음악과 같은 나이지리아 음악이나 인도네시아의 가메란(gamelan) 음악²⁵⁸, 혹은 남미의 탱고, 보사노바, 삼바나 다른 지역의 음악이 될 수도 있다. 음

253) <http://www.music365.fr>

254) <http://www.ark21.com/chebmami>; <http://www.cnn.com>

255) <http://www.isis-imtl.com>; <http://www.africana.com>; New York Times, 1998 6월 24일자.

256) Independent (런던), 2000년 2월 14일자.

257) <http://www.nwlink.com>

258) <http://www.unesco.org>

악 산업이 흥미진진하고, 수익성이 있으며 세계적인 이유는 음악이 지역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작성이 기반이 되고, 신인 아티스트와 그룹들이 빠르게 등장하며 유행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9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강력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과 적극적인 집행은 지역 및 국가 음악 산업이 활력을 띠게 하는 근간이 된다. 불법 음악복제는 지역 사회로부터 원래대로라면 지역 상품에 흘러들어가 그 지역의 아티스트와 뮤지션, 작사·작곡가와 작곡가, 제작사와 음반사를 발전하도록 만들었을 기회와 자금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리키 마틴의 새 음반 해적판과 지명도가 낮은 지역 아티스트와 뮤지션들이 합법적으로 그 지역에서 녹음 제작한 음반(인재 발굴, 양성의 비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두 음반간의 엄청난 제작 비용의 차이는 곧 사람들이 해적판을 선택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효과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부재가 주 요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지역 시장을 사장시키고 인재와 산업을 질식시키며 지역 음악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단 관리

지역 음악 문화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단(collective) 관리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몇몇 국가에서 정부의 주도하에 또는 관련 민간분야의 주도하에 구축되었다. 집단 관리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그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관리기관은 사용자(라디오 방송국, 방송인, 나이트클럽, 영화관, 식당 등), 또는 사용자 그룹과 협상하여 그들이 돈을 지불하고 일정 조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일을 맡는다. 문서(회원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정보)와 사용자가 제출한 프로그램(예를 들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음악 목록)을 기초로 하여 집단관리기관의 정해진 규칙을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회원들에게 분배한다. 관리 비용과 일부 국가의 경우 사회문화적 홍보 활동비 등을 포함하는 수수료가 보통 저작권 사용료에서 공제된다.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저작물의 사용에 상응하고 그 사용의 분류내역에 따른다. 위의 활동과 운영은 특별히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컴퓨터 시스템의 지원으로 수행된다.²⁵⁹⁾

259) http://www.wipo.int/about-ip/en/index.html?wipo_content_frame=/about-ip/en/copyright.html

집단 관리는 현재로서는 한 개인이나 회사가 스스로 작곡한 곡이나 음반의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도 - 물론 이것도 관련 기술의 개발로 가능해 질 수도 있겠지만 - 모두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용하다. 텔레비전, 라디오, 나이트클럽, 라이브 콘서트 등과 같은 공공 실연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집단 관리 협회는 음악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추적하고 그러한 사용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누가 어느 정도의 보상액을 받아야 하는가를 계산하고 해당 보상액이 적시에 적절한 사람에게 지불되도록 한다. 이러한 거대한 업무를 규모가 천차만별인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집단 관리 협회의 예이다.²⁶⁰⁾

표 6.5 세계 저작권 집단관리협회

국 가	협 회	비 고
호주	APRA	1926년 설립
쿠바	ACDAM	
에스토니아	EAU	회원수 1,000명
프랑스	SACEM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협회로 회원수 87,000명
독일	GEMA	Richard Strauss에 의해 설립
인도	IPRS	
인도네시아	KCI	
이스라엘	ACUM	회원수 3,000명
일본	JASRAC	1998년 회계연도 총 수입 940억 엔(미화 8억500만 달러) ²⁶¹⁾
싱가포르	COMPASS	
남아프리카	SAMRO	아프리카 최대 협회
트리니다드&토바고	COTT	1986년 설립

260) <http://www.prs.co.kr>

국 가	협 회	비 고
미국	BMI와 ASCAP	BMI는 25만 회원을 보유한 세계최대협회로 라이선스를 목적으로 450만개 이상 곡 레퍼토리 관리 ²⁶²⁾ , ASCAP의 회원 수는 10만 명으로 1999년 기준 총수입 미화 5억6000만 달러 ²⁶³⁾
	SESAC	1930년 설립,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협회(본사는 내쉬빌에 위치) ²⁶⁴⁾
	Harry Fox Agency	전국음악출판가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는 음악 저작권 라이선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1927년 설립되어 현재 800개 이상의 미국 음악출판사를 대표 ²⁶⁵⁾
짐바브웨	ZIMRA	아프리카 최초의 독립 협회로 PRS(영국 협회)에 의해 설립

* 협회들의 공식명칭은 약어목록 참조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서의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집단 관리 협회의 설립과 운영의 촉진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작권을 중시하는 동시에 음악 산업의 창작 및 사업 프로세스에 참여한 아티스트, 뮤지션, 송 라이터 등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산업이 국가 문화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시청각: 사운드와 이미지 믹싱

시청각 산업은 아마도 정의를 내리고 설명하기에 가장 난해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261) <http://www.jasrac.com>

262) <http://www.bmi.com>

263) <http://www.ascap.com>

264) <http://www.sesac.com>

265) <http://www.nmpa.org/nmpa.html>

것이다. 시청각 산업은 지금까지 필름(film), 무비(movie), 또는 모션 픽처(motion picture) 라는 서로 다른 용어로 지칭되어 왔다. 이 용어들이 시청각의 의미를 완전히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본 장에서는 시청각 산업이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영상(image)을 담을 수 있는 가장 고화질의 매체는 필름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고화질의 영상을 재생하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비디오(테이프)이다. 그리고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이 있다. 또한 수작업 이미지 또는 컴퓨터 생성 이미지가 있는데 이는 보통 애니메이션(묘사, 채색, 또는 모형이 되거나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 혹은 장면²⁶⁶⁾)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영상과 청각적 요소를 함께 포착하여 시청각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다른 방식들을 지칭하기 위해 시청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필름 메이킹

모션 픽처는 특정 스케줄에 따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각 단계에서의 잠재 수익을 극대화한다. 첫 번째 단계는 극장 상영으로 관객들은 커다란 스크린을 보며 증폭된 사운드를 듣는 경험을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한다. 이 단계에서는 별개의 소득 구분이 유지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홈 비디오 시장으로 비디오테이프, 또는 최근에는 DVD 장비를 구입, 혹은 대여하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시청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케이블 및 텔레비전 시장에서의 공개로 보통 소비자들i가 가입비를 지불하고 보게 된다. 이는 시청기준과금(pay-per-view)으로 시작해서 일반 케이블 또는 위성 프로그램의 일반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정도 단계가 되면 비행기와 선박의 승객 등과 같은 특정 시청자를 향한 틈새 마케팅이 이루어진다. 시청각 저작물이 등장하는 마지막 단계는 보통 무료 텔레비전 방영이다. 그러나 DVD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기존 제품에 대한 새로운 소비자 층을 끌어냄으로써 휴면상태에 있던 자산을 부활시키고 상당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다.²⁶⁷⁾

저작권법은 시청각 또는 영화(cinematographic) 작품에 특히 적용된다.²⁶⁸⁾ 그러나 시청각 작품의 창작과 관련된 비용과 참여 인원이 노래나 서적에 비해 훨씬 방대하기

266) <http://www.dictionary.msn.com>

267) Los Angeles Times, 2000년 6월 22일자; M2 Presswire, 2000년 7월 28일자.

268) 베른협약, 2(1)조 14bis.

때문에 시청각 작품의 정당한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관해 특별 규정이 개발되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자금을 담당한 프로듀서를 소유주로 간주한다. 또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작품에 공헌을 하는 사람들, 즉 영화의 뼈대가 되는 대본의 작가, 감독, 프로듀서, 배우, 카메라맨 등을 소유주로 본다.²⁶⁹⁾

시청각 작품의 창작의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 중 중요한 부분이 작품에 연기가 그대로 실리는 배우와 기타 실연자들이다. 이들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저작권법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다. 로마 협약(Rome Convention) (1961)은 실연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보호권을 부여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현재시점에서 일부 로마협약 규정들은 시청각 실연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협약이 채택된 이래로 기술 및 경제가 급변하였기 때문이다. 시청각 제작에서 실연자 보호와 관련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00년 12월 7일에서 20일까지 기간 동안 시청각 실연자 보호에 관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on the Protection of Audiovisual Performances)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음반 실연자 보호만을 다룬 WIPO 실연·음반 조약(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의 후속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 새로운 협약의 채택이 거의 성사되는가 싶었지만 조약 초안의 20개 조문 중 19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미진하여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시청각 작품 내에 등장하는, 혹은 관련된 아이템을 상품화함으로써 시청각 작품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장난감, 자동차, 작품의 이름이나 캐릭터가 등장하는 양방향 게임, 서적, 옷 등을 상품화하는 것은 이제 주요 시청각 작품의 부수적인 측면이 아닌, 고비용의 제작물에 대해 고수익을 안겨주는 중요 수단이 되곤 한다.²⁷⁰⁾ 전 세계 회사들이 메이저 영화에 자사의 제품을 등장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왔다.²⁷¹⁾ 이러한 상품아이템은 고유한 지식재산권, 주로 저작권과 상표권의 보호를 받는다.

269) 베른협약, 14bis(2), (3)조

270) 예를 들어 영화 스타워즈와 ET의 경우 캐릭터들에 기초한 제품의 제조와 판매로 인해 거대한 산업이 통째로 새로 형성되었고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였다.

271) 보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사는 'The Lost World'에 자사의 자동차를 출연시키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였다. 노키아와 BMW의 경우도 제임스 본드 영화 최근 시리즈에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다. <http://www.vanguardngr.com>

음악 산업에서의와 마찬가지로 시청각 산업은 세계 거대 엔터테인먼트사들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들에게 시청각작품은 단지 몇 가지 작품유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표 6.6 참조). 그러나 특히 모션 픽처 수준의 시청각 작품은 유럽, 일본 또는 미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도의 시청각 산업은 연간 800여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 십억 인구가 이를 관람한다.²⁷²⁾ 홍콩 SAR은 역동적인 영화제작활동의 중심지로 독특한 스타일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작품들이 제작된다.

표 6.6 시청각작품 총매출액 기준 세계 주요 영화사 순위

1	Walt Disney	미국
2	Viacom	미국
3	Sony	일본
4	Time-Warner Ent.	미국
5	ARD	독일
6	News Corp.	호주
7	Polygram	네덜란드
8	NHK	일본
9	General Electric	미국

출처: *Statistical Yearbook: 유럽 시네마, 텔레비전, 비디오와 신 미디어(Cinema, Television, Video and New Media in Europe)* (Strasbourg: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1998).

❖ 서적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어문저작물 출판 산업, 특히 서적분야에 관련이 있다. 약 1,000년까지의 서적 출판은 고되고 느린 작업이었다. 필사자들은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썼는데 일부 필사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예술적인 필체를 보유했다. 당시에는 종 교단체가 서적을 통한 지식의 보존과 서적 보급에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 서적으로 인해 세계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확산은 오늘날까지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통신, 그리고 인터넷 등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서적은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영속성 있는 발명품이라 할 수 있다. 서적을 통한 지식의 확산과 유포는 과거나 현재나 문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²⁷³⁾ 신문과 잡지, 서적은 쉽게 공유할 수 있는데 이는 그 크기가 작고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72) <http://asia.cnn.com>

273) 베른협약은 부속서에서 교육과 관련된 서적 출판의 중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 협약은 개발도 상국들이 그들의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의무 서적 라이선싱(번역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을 위한 절차를 제공하였다.

● 대중 시장

어문저작물 출판 산업은 비록 일반적으로 서적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곤 하지만 단지 서적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매년 5만 개 이상의 새로운 제목의 책이 출판되는데 1999년에는 5억 부 이상의 서적이 출판되었고 총 매출액은 미화 8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다.²⁷⁴⁾

그러나 서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문저작물 출판 산업의 전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신문 출판과 정기간행물 또한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6.7 참조). 1996년 기준 전 세계 일간 신문의 수는 8,391개, 독자 수는 5억 4800명으로 추산된다.²⁷⁵⁾

표 6.7 주요 신문과 발행 부수 (1999)

1	Yomiuri Shimbun	일본	10,233,923
2	Asahi Shimbun	일본	8,321,138
3	Sichuan Ribao	중국	8,000,000
4	Bild	독일	5,674,400
5	Mainichi Shimbun	일본	3,978,617
6	Sun	영국	3,687,370
18	Eleftherotypia	그리스	1,858,316
20	Wall Street Journal	미국	1,752,693
21	Kerala Kaumudi	인도	1,720,000
40	New York Times	미국	1,086,293

출처: <http://www.medianinfo.com>.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뉴스, 시사, 단문 뉴스와 특집기사, 화려한 사진 등의 내용을 손쉽게 전달한다. 따라서 신문과 정기간행 출판물과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성공적으로 무분별한 불법복제와 불법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 왔다. 어문 저작물로서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서적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출판물과 서비스의 특성상, 그리고 새로운 배급방식으로 인해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이 현

274) Donald T. Hawkins, "Electronic books: A Major Publishing Revolution," Online 24, No. 4(2000년 7월/8월). <http://www.ipa.org/statistics> 참조

275) <http://www.unescostat.unesco.org>

재 두 가지 분야에서 도전과 재조명의 국면에 있다. 하나는 언론의 자유, 공공 담화, 그리고 비평을 위해 저작물의 발췌문과 인용문을 출판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 특히 미국에서 그러한 성격의 출판은 “정당한 사용(fair use)”이라는 이론 하에 저작권법의 예외로 정당화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 시스템은 저작권자의 이해와 대중의 이해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절 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 문제 가운데 최근 대두된 흥미로운 것은 신문과 잡지가 어문 저작물을 먼저 종이인쇄물로 출판하고 이를 전자 형태로 재출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관련 라이선스나 양도(assignment)가 두 가지 형태의 출판을 모두 관장하는가? 이것이 바로 현재 저작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하급에서 상급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재판들이 진행 중에 있다. 찬반론이 무성한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보증, 일관성 있는 결과, 그리고 신뢰성 덕분에 산업으로서의 서적, 신문, 잡지 등이 저작물과 서비스를 보호받고, 사업을 확장하며 수 백만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혁명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 규모가 엄청나며²⁷⁶⁾ 말 그대로 디지털로 된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은 디지털 혁명의 영향에 대처할 필요가 없었던 유일한 분야인데 그 이유는 디지털 형태로 사업이 시작된 유일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부의 창출의 근간이 되어왔다.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는 서로 밀접한 관계이다. 컴퓨터가 처음 발명된 것은 1940년대로 초기에는 느리게 진화하였다. 그러다가 1976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당시 애플 컴퓨터(Apple Computer)가 강력한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여 일반인들도 전혀 없이 뛰어난 성능의 컴퓨터를 각자 집에서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1981년 PC의 도입 시점으로부터는 컴퓨터 성능, 기술, 데이터 저장 및 관리, 통신 등과 같은 분야에서 매일같이 발전과 진보가 거듭되어 왔는데 이러한 모든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분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다(사례 6.8 참조).²⁷⁷⁾

276) Kiplinger's Personal Finance Magazine, 2000년 11월

[사례 6.8] 이스라엘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1984년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수출은 미화 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연평균 성장률 25퍼센트를 기록하며 총 수출액이 5억4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국내 소프트웨어 판매는 매년 10퍼센트씩 성장하였고 1998년에는 15억 달러를 상회하는 추정치가 나왔다.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규모면에서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이스라엘은 국방, 상업,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스라엘의 모든 유치원에는 컴퓨터가 있으며 35퍼센트 이상의 가정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스라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벤처 캐피털의 활약이 대단해서 불과 지난 몇 년간 소프트웨어 분야 유망 창업 회사가 500개를 넘어섰다. 이러한 모든 경제성장과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 정부가 지식재산권법의 강력한 지지자였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iasb.org>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다음은 1999년 4대 미국 기업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총 수입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미화 216억 달러; IBM, 127억 달러; CA(Computer Associates), 49억 달러; 오라클, 38억 달러.²⁷⁸⁾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literary work)”로 간주된다. 소프트웨어는 언어, 혹은 소스코드로 된 명령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하에 둘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만 독자적(sui generis) 혹은 특별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적용하는 일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지식재산에 대한 아이디어는 결국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예술형태에 적용되는 저작권 규칙이 컴퓨터 소스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에 적용될 수 있을

277) <http://www.britanica.com> (PC)

278) <http://www.softwaremag.com>

만큼 충분히 유연하다는 것이 명백해 졌기 때문이다.²⁷⁹⁾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법이 특히 미국에서 변화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structure), 순서(sequence), 편성(organization)”과 스크린에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텍스트와 시각적 외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표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만 어문 저작물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나타난 아이디어나 프로세스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종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 versus 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발명물이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로 보호받도록 하였다.²⁸⁰⁾

❖ 저작권과 특허 보호

많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산업적으로 응용 가능하고(효용성) 새로우며 뻔한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특허 획득의 기본 요소들을 충족한다. 그 결과 많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들이 특허를 획득하였다.

소프트웨어 특허 획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특허권자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에 의존한다. 저작권하에서의 보호와 특허권하에서의 보호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시점에 저작물의 형성에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관련 국내법 조항에 따라 이러한 보호는 개발자의 사망 이후에도 50년의 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다(현재 유럽공동체 회원국과 미국 등 많은 국가의 국내법이 70년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허 보호는 권리를 완전히 부여받기 위해 심사(examination), 공개(public disclosure), 등록수수료(maintenance fees)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허 보호 기간은 더 한정되어 있는데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 집행은 그러나 저작권법하에서 집행되는 내용보다 더욱 광범위하다. 마지막으로 특허 발명은 일반적으로 범위가 더 방대하고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동일한 아이디어를 표현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를 피할 수 있다.

279) TRIPS 협정 10(1)조에서 확증됨. 본 조문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로 되어있든 목적코드로 되어있든 베른협약 하에서 어문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

280) Gregory J. Kirsh, “The Changing Role of Patent and Copyright Protection for Software” - <http://www.gigalaw.com>; TRIPS 협정 9(2) 참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보충할 수 있는 기타 법으로 영업비밀법 (trade secret law)이 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비밀이 유지되는 한 보호 받을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지식재산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기술이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 시대의 도래 이전에는 특허법은 기술에 적용되고 저작권법은 문화와 예술에 적용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 이러한 구분은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었다. 최근의 예로 영업 방법 (business method)에 대한 수많은 특허를 들 수 있는데²⁸¹⁾ 영업 방법은 최근 일부 국가의 판례법이 특허권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였지만 수 년전만 해도 비기술 부문으로 인식되어 저작권법, 영업비밀법 또는 불공정경쟁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간주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명한 지식재산 전략이라면 동일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법적 보호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영업 방법 소프트웨어가 특허 시스템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더욱 강력한 독점권의 추구를 보여준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새로운 운동, 특히 운영시스템과 관련된²⁸²⁾ 새로운 경향은 마음이 맞는 다른 프로그래머들과 지적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다.²⁸³⁾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은 운영 시스템과 관련하여 애플 컴퓨터사 경영진이 처음에 내린 사업 결정과는 사뭇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애플 컴퓨터의 경영진은 다른 제조자에게 운영 시스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애플 컴퓨터의 운영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로부터 지지를 잃게 되었다.²⁸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와도 완전히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라이선스 조건에 동의하는 제조자와 판매자에 한해 윈도우 운영 시스템 라이선스를 부여함으로써 운영 시스템의 세부사항을 독점 자산으로 유지 (guard) 한다. 윈도우 운영 시스템

281) 미 연방 항소법원은 그 유명한 State Street Bank vs Signature Financial Group 소송(149 F.3d 1368) 사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 방식은 특허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상세 내용은 4장 참조).

282) 운영시스템은 컴퓨터 하드웨어가 작동하고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을 수용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와의 유닛 인터페이스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명령한다.

283) 대표적 주창자는 Linus Torvalds로 리눅스 운영체제의 기초를 개발하였다.

284) Independent, 2000년 8월 23일자; Irish Times, 1999 4월 23일; Computerworld, 1998년 1월 26일

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공개(open)” 상태가 보장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핵심 아이디어는 소프트웨어 복제본을 받아서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동의한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나 해당 운영 시스템을 적용, 변경, 수정, 재생산, 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무료이거나, 공공 소유이거나 또는 별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픈 소스의 기본 관념은 일종의 집합적 개발과 같은 것이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집중함으로써 업그레이드 속도 가속화, 더욱 신속한 문제 및 버그 해결, 더 향상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것과 아무도 업그레이드 혹은 수정판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⁸⁵⁾ 전 세계 PC의 약 90퍼센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 시스템을 이용한다.²⁸⁶⁾ 현재 오픈 소스 운영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 오픈 소스와 관련하여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몇몇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한 수정판을 승인 또는 비승인할 만한 중앙 당국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정 버전에 대해 기술적 지지와 보장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²⁸⁷⁾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만큼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도 없다.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동 보호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이 분야가 매일 같이 발전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기술과 통신의 발전, 특히 인터넷의 발전과 속도를 맞추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조약(Copyright Treaty, WCT)에 의해 업데이트 되고 명확해졌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과 더불어 실연·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은 미디어에서 “인터넷 조약”이라고 불리었는데 전자는 2002년 3월에, 후자는 2002년 5월에 발효되었다. 일견 저작권과 저작권의 이론적 근거에 위배되는 듯 보이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조차도 저작권 덕분에 개발과 유지가 가능하였던 것

285) <http://www.opensource.org>

286) <http://www.intellectualcapital.com>

287) <http://www.opensource.org>; IBM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IBM Public License 참조(<http://www.ibm.com>), Mozilla Public License 참조(<http://www.mozilla.org>).

이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으로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이 공유하는 독점적인 권리(재생산, 적용, 대중에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는 저작권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오픈 소스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에 고유한 것이며 비록 계약적 라이선싱을 통해 시행되기는 하지만(대부분 클릭랩(click wrap)과 쉬링크랩(shrink wrap) 라이선스의 형태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을 통해 집행된다.

❖ 세계의 근로자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기존의 인력 풀 만으로는 필요한 고용 인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보너스 지급은 점점 더 일반화 되고 있으며 스톡 옵션은 신생 기업이나 기존의 중견기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도입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향후 고용 잠재력을 강조하며 수요보다 많은 수의 숙련 근로자들을 양성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도로 풍부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사례 6.9 참조).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숙련 근로자들의 이민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²⁸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프로젝트와 직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숙련노동자들에게 특별 이민 지위와 비자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숙련 근로자들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숙련 근로자,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국가의 저작권 체제가 너무 부실해서 저작물을 불법 복제와 도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면 숙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의 교육과 양성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288) <http://www.ita.org>

[사례 6.9]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

1970년대 인도 정부는 국민 고등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한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1980년대 인도 정부는 컴퓨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였다.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하면서 표준 컴퓨터 운영시스템을 변경하였는데 당시 새롭게 부상하는 국제표준이었던 CP/M을 채택하였다. 인도 정부는 또한 방갈로어(Bangalore)에서 가장 대규모의 소프트웨어 기술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인도의 I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 규모는 1999/2000년 총 미화 57억 달러에 이르렀고 전반적으로 53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포춘지선정 500대 기업(Fortune 500)”의 40퍼센트 이상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인도 기업들로부터 아웃소싱하였다. 1999년 1월에서 2000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인도 증권 거래소(Indian Stock Exchange)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미화 40억 달러에서 950억 달러로 꺾충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동안 소프트웨어 수출로 미화 4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였고 인도 총 수출의 10.5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설문에 따르면 향후 일년간 인도의 소프트웨어 분야는 50퍼센트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미국에서 발급되는 13만 4000개의 H-1B 근로비자 - 국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승인하는 비자 - 가운데 48퍼센트가 인도 근로자였는데 이는 인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출처: <http://www.nasscom.org/>; <http://www.heinz.cmu.edu>

●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독점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이용가능성 및 사용과 관련된 보다 흥미로운 현상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들(ASPs)의 갑작스런 등장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자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유저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한정된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단기간, 혹은 가끔씩 사용할 프로그램을 누군가로부터 빌릴 수 있다면 굳이 프로그램을 구매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들은 독점적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를 가져온다. 프로그램의 임대권은 프로그램의 남용을 방지하고 프로그램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들은 유저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야말로 상이한 구성 요소들을 결합시키고 스스로를 경쟁사들로부터 차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²⁸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 불법 복제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문화 산업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문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적 역동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단호한 노력이 필요하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용의 한 유형은 때로 중소기업 내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정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한 회사 내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그 복사본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흔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저작권법과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유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 라이선스가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식제고 노력과 함께 관련 유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²⁹⁰⁾

인터넷상에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불법복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터넷에서 불법 활동을 의미하는 특정 단어나 문구를 쉬지 않고 검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웹 크롤러 소프트웨어(web crawler software)”라고 알려져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한 결과 33개국에서 7,500개의 불법 복제품이 제거되었고 15개국에서 64건의 불법 행위 단속과 17건의 민사소송이 발생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자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89) <http://www.stardock.net>

290) <http://www.salon.com>:<http://www.bsa.org>

검색뿐만 아니라 음악 및 영화 관련 불법 복제를 탐색하는데 사용된다.²⁹¹⁾ 세계지식 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대책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 보호의 집행에 공헌하며 우리 모두를 때로는 위협할 수도 있는 불법 제품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교차하는 분야이다: 창의성; 기업가정신; 다국적 기업; 혁신; 점차 줄어드는 제품 수명; 일반 대중과 정부의 관심; 많은 기타 산업과 기업의 변형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기술, 마케팅, 제품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엄청난 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본 장에서 논의된 모든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은 심각한 불법 복제문제를 안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에 의존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불법복제는 단 한순간이라도 무시코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양방향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와 교육제품

1980년대 중반 멀티미디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저작물의 범주를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CD-ROM(CD-Read Only Memory)과 같이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저장하는 관련 기기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상 이 산업은 현재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는 두개 분야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즉 양방향 게임과 양방향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제품이다. 이들이 같은 그룹으로 간주되는 것은 동일한 기술과 동일한 저작권 보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제품들이 역학면에서나 기술면에서 유사해 보여서 교육제품이던 엔터테인먼트 제품이던 마찬가지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에듀테인먼트”).

● 게임

3대 다국적 기업(소니, 닌텐도, 세가)이 현재 하드웨어 제조라는 측면으로 볼 때 양방향 게임산업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엄청

291) <http://www.law.com>

난 수익이 창출되는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²⁹²⁾ 이러한 양방향 게임을 위해 제작되는 기기들은 시장 우위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닌텐도의 게임 보이(Game BoyTM)는 52개 색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1억 개 이상이 팔린 게임 산업의 대표주자이다. 게임 보이는 PC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닌텐도의 64TM 기기와는 달리 휴대용으로 제작되었다. 게임 보이로는 큰 인기를 모았던 포켓몬(PokemonTM) 시리즈 게임과 같이 특별히 게임 보이 혹은 플랫폼을 위해 제작된 게임을 할 수 있다. 이 기기는 또한 애드 온(add-on)으로서의 게임 보이 카메라(Game Boy CameraTM)와 게임 보이 프린터(Game Boy PrinterTM) 와도 호환이 가능하다.²⁹³⁾

닌텐도(Nintendo)의 경쟁사들은 이 방대한 시장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해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다. 소니(Sony)는 현재 이 분야의 선두주자이다. 소니사의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TM) 플랫폼은 매우 인기 있는 제품으로 성능이 훨씬 향상된 플레이스테이션 2(Playstation 2TM) 모델로 업그레이드되었다. 플레이스테이션 2 기기는 엄청난 기능을 가진 콘솔로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DVD 플레이가 가능하며 인터넷, 하드 드라이브, 키보드에도 연결될 수 있다. 플레이스테이션 2가 일본에서 발매된 첫 주에 백만 개 이상이 판매되었다. 미국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2용으로 특별 제작된 26개의 새로운 게임 타이틀과 함께 2000년 10월 26일에 발매되었다.

세가(Seга)는 오랫동안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 대해 자사의 드림캐스트(DreamcastTM)로 맞대응할 계획을 세워왔다. 그러나 2001년 1월 31일 세가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드림캐스트 모델 개발을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분야 시장의 엄청난 규모와 수익성을 인식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XBoxTM 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경쟁에 뛰어들었다. XBoxTM는 600MHz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그래픽 칩, 3-D 오디오 사운드, 8기가바이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윈도우 2000 기반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웬만한 PC 보다 뛰어난 기능을 자랑한다.²⁹⁴⁾

위의 내용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에서 특별히 디자인, 제작되는 하드웨

292) Wall Street Journal, 2000년 6월 13일자; <http://www.guardianunlimited.co.uk>

293) <http://www.gameboy.com>

294) <http://www.guardianunlimited.co.uk>; New York Times, "Microsoft's Game Plan," 2000년 9월 4일; <http://www.cnn.com>

어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간략한 개관이다. 이러한 타입의 게임과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하는 다양한 가정용 PC 시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 저작권법이 관여되는 부분은 다양한 제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에 관한 것이다. 캐릭터가 예술적으로 생생하게 그려지거나 또는 비디오 게임, 에듀테인먼트, 필름 제작 등의 근간인 어문 저작물에서 적절하게 묘사되면(이러한 제품의 개발은 모두 저작물 창작으로부터 시작)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캐릭터가 만들어지거나 고정(fix)된 시점부터 추가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저작물 전체가 보호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캐릭터를 보호한다. 제임스 본드(James Bond™), 핑크 팬더(the Pink Panther™), 라라 크로프트(Lara Croft™), 포켓몬(Pokemon™), 스타워즈(Star Wars™)의 수많은 캐릭터들은 최초 상영 이후 실제 캐릭터로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지식재산(여기에서는 저작권)이 재생가능하고 직업과 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산업을 창출하며 지식재산체제가 촉진되고 활발하게 집행될 때에는 경제 발전까지도 가속화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소수 예에 지나지 않는다. 적절한 저작권 보호가 없었다면 이러한 캐릭터들은 아마도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국제적 맥락에서 모든 국가에서 똑같이 인식되거나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캐릭터 보호에 있어서 법, 대책의 다른 분야들이 종종 이용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계약, 불공정경쟁, 오용, 상표 관련 법 등이 있다.

● “에듀테인먼트”

디지털 혁명은 교육과 더불어 여가 중 엔터테인먼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카르타 백과사전(Microsoft Encarta Encyclopedia™)과 같은 교육적 자료를 담고 있는 CD-ROM이 널리 퍼진 것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양방향 CD-ROM은 서적 백과사전 시장을 거의 사장시키다시피 했다. 그런 면에서 브리태니카 백과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이 지면 형태에서 양방향 사전으로 제작되어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웹 사이트 중 하나에서 제공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오디오와 비디오 요소를 추가(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CD-ROM 플랫폼 내에서도 제공)한 것은 디지털 혁명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 예로, 음성이 나오고 음악과 기타 사운드가 통합되며 기타 과목과 링크가 되고 이용자의 질문이나 지시에 반응하는 교육 상품을 들 수 있다.

양방향 게임과 오락 프로그램들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방대하면서 성장가도에 있는 산업이다. 양방향 게임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급속하게 성장해왔는데 연 총매출이 미화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⁹⁵⁾ 인기 있는 양방향 게임이나 프로그램은 수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베스트셀러 서적의 매출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등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극소수 영화를 제외한 다른 엔터테인먼트 부문들을 모두 능가하고 있다. 미스트(MystTM), 심시티(SimCityTM), 커맨드 앤 컨커(Command and ConquerTM), 윙 커맨더(Wing CommanderTM)와 같은 멀티 플랫폼 타이틀들은 각각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²⁹⁶⁾ 골프, 농구, 포뮬러1 자동차 경주, 미식축구, 축구, 비행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타이틀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자체적으로 인기를 얻기만 하면 양방향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제임스 본드(James BondTM)는 상품이 걸린 게임인 007네버다이(Tomorrow Never DiesTM)의 주제이며 데이빗 보위는 양방향 비디오 게임인 오미크론(Omikron: The Nomad SoulTM)을 만들어 냈다.²⁹⁷⁾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이러한 게임과 프로그램의 주제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과 발전의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 즉 무한한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모든 형태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불법 복제와 위조는 이 산업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미국의 양방향 비디오 게임 제작자들은 불법 복제로 인해 1998년 한 해 미화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²⁹⁸⁾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추가 논의는 9장 참조).

295) Economist (런던), 2000년 10월 7일

296) Dean Takahashi, "Myst Opportunity," Upside (1999년 1월).

297) <http://www.guardianunlimited.co.uk>; Stereo Review's Sound & Vision, 2000년 1월

298) <http://www.idsa.com>

양방향 엔터테인먼트 및 교육산업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며 저작권법의 결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정보, 엔터테인먼트, 여가활동,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한다. 기술 혹은 제품 개발, 소비자 보호 및 대응 등의 측면에서 더 이상 경쟁 산업이란 것은 없다. 이 산업의 제품은 때로 시사, 엔터테인먼트 화제, 최신 이슈 등을 반영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경험을 하게 해준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코스에서 경기를 하거나 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는 것 등이다. 교육제품의 경우 특정 사항에 대해 그것을 접할 수 없는 장소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계몽된 시각을 갖게 한다. 이는 기회나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대상에 대해 그러한 것들을 부여해 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들은 동시에 엄청난 재미를 선사하기도 한다.

● 저작권과 기술적 변화

새로운 미디어, 정보, 통신기술의 도입과 발전 - 1970년대 말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VCR), 1980년대 디지털 혁명, 그리고 1990년대 인터넷 등 - 은 저작권법과 문화산업, 관련 공동체들에 끊임없는 도전을 제시했다. 다음 섹션에서는 기술적 진보가 가져온 변화들이 저작권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저작권법이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해석, 변경, 명료화 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 VCR

VCR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개발, 도입되었다. 그리고 가정에서 다른 카세트로부터 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카세트 기기 모델이 개발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대규모 법정 소송(Sony Corp. vs. Universal City Studio, Inc., 464 U.S. 417 (1984))도 일어났다. 당시 미국 대법원은 나중에 시청할 목적으로 가정에서 공중과 방송을 시청자가 무료로 녹화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제작물을 차후 시청을 위해 녹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간-이동(time shifting)”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적인 복사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공 테이프와 하드웨어 등 공 레코딩 자재에는 때로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 문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뤄온 것으로 보인다.²⁹⁹⁾

❶ 디지털 혁명

1995년에 어느 미디어 거장은 원자에서 비트(bits)로의 변화를 돌이킬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인류가 책, 잡지, 신문, 그리고 VCR로 대부분의 정보를 느린 속도로 처리하는 것과 같이 음악을 아날로그 신호로 플라스틱 테이프에 꼼꼼하게 녹음하던 모습도 즉각적이면서도 값싼 전자 데이터 전송방식이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발전하게 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³⁰⁰⁾ 사실상 디지털 혁명이 실제 시작된 것은 1981년 필립스와 소니사가 CD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 기술의 라이선스를 간단한 라이선스 및 사용료 조항에 동의하는 모든 제작사 또는 회사에 주겠다는 교묘한 제안을 했을 때부터이다. 이로 인해 최초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렴한 가격에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며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❷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CD는 기존의 레코드와 카세트를 재빠르게 대체하였는데 이는 휴대할 수 있고 더 오래 지속되는 형태로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는 CD의 새로운 포맷을 일반 대중과 메이저 음반 회사가 신속하게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음반 회사들은 기존의 음악 카탈로그를 CD 형태로 새롭게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³⁰¹⁾ 이러한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수익의 증대로 인해 음반사들의 전례 없는 팽창과 많은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계약 및 양성이 가능해졌고 수많은 M&A의 밑거름이 되었다.

시청각 자료의 디지털 제작은 높은 해상도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덕택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들이 이전까지는 상업적으로 실용적이지

299) 예를 들어 미 저작권법(United States Copyright Act) (17USC 1000 이하) 참조

300) Nicholas Negroponte, Being Digital (뉴욕: Alfred A. Knopf, 1995): 4.

301) Economist, 2000년 10월 7일자

않다고 간주되었던 시청각 제품들을 재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각 자료는 디지털로 제작되어 DVD 포맷으로 재생산되었을 경우 복사가 훨씬 용이하고 인터넷상에서 무단 게시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수 백만개의 복사본이 불법 복제될 수도 있다. 현재 이러한 형태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업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불법 복제가 일어난 경우에는 자사 트랙의 불법 복제를 중단시키고 불법 복제자에 대한 민사 혹은 형사법상 대책을 강구한다. 디지털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암호화같은 기술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다. 시청각 업계는 DVD 포맷으로 제작, 보급되는 시청각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에 합의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 조약(WPPT)은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대책을 교묘히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³⁰²⁾

어문 저작물 또한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다. 전자책(e-book)은 보통 작고 휴대할 수 있는 전자 기기로 스크린과 주소지정이 가능한(addressable) 운영 체제를 통해 읽을 수 있게 된 책 한권 이상의 디지털 버전이 내장되어 있다. 아직 일부 기술적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전자책은 휴대가능성, 검색기능, 그리고 트리(tree)의 보존 측면에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전자책은 또한 신인작가와 무명작가들에게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회들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전자책은 비 출판사에 의한 저비용 출판이나 또는 저자비용부담 출판(vanity publishing), 기부금 출판(subscription publishing), DIY 출판(do-it-yourself publishing) 등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에 의한 저비용 출판뿐만 아니라 자체 출판의 채널을 열어주기 때문이다.³⁰³⁾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포맷의 전자출판은 맞춤형, 최첨단 서적과 자료출판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복합(composite)” 서적이 수요에 따라 출판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독자는 매우 특정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검색가능성, 해당 자료에 대한 전자 라이선스의 책임, 비용 효율적인 자동 인쇄 등은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전자 출판이라는 방식을 실현시키고 있다.³⁰⁴⁾ 새로 개발된 자동인쇄체제는 또한 신인 혹은 무명작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들, 그리고 그들의 교육관련 서적과 인쇄물의 공급에 있어

30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 11조; 실연·음반 조약(WPPT), 18조.

303) Donald T. Hawkins, New York Times, 1998년 7월 2일자.

304) New York Times, 2000년 7월 18일자.

서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면 10만 타이틀의 10부를 제작하는 것이 10개 타이틀의 10만 부를 제작하는 것만큼 수익성이 있거나 비용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서적은 특정 상황, 계급, 혹은 학교,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언어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분야가 제시하는 가능성과 기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³⁰⁵⁾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발전은 기본 저작권법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복사와 전송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해당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 더 간단해졌다. 가입자 암호 혹은 요금기준키(fee-based keys)와 같은 기술적 보호방법들은 디지털 포맷으로 된 작품을 보호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들이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작품에 대해 보호막을 두껍게 형성할수록 소비자이 접근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어 결국 애초에 대중 판매에 있어서 최대한 상업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발견되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포맷의 작품에 대한 대중의 필요뿐만 아니라 작품을 보호된 환경에서 상업적으로 배포하고자 하는 작가와 출판사들의 필요까지도 고려될 것이다.

디지털 혁명,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모든 기술적인 변화와 다른 다양한 변화에 대해 일부는 과연 저작권이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저작권은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기술적인 변화를 잘 극복해왔으며 게다가 기술적 혁신과 창의성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저작물을 포함하여 우리가 정보를 수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작권법을 완전히 바꿔야한다는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그러한 도전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다듬어져 왔다. 모든 저작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베른협약의 조항들, 특히 재생산에 관한 조항은 이러한 모든 형태의 기술적, 그리고 다른 도전들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베

305) Wall Street Journal, 2000년 7월 3일자.

른협약 9(1)조에 의하면 “동 협약의 보호 하에 있는 어문 저작물과 예술적 저작물의 작가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작품이 재생산될 때 이를 승인할 수 있는 독점권리를 보유한다.” 이 조항은 오랜 시간과 변화, 그리고 심지어 디지털 기술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견재하다. 이러한 개념과 표현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 조약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 조약들의 합의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재생산권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전적으로 적용된다.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이다.”³⁰⁶⁾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법적소송들의 경우 근거가 되는 사실이 현 저작권법의 해석을 확대시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음악분야의 냅스터; DVD시청각 제품;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 쇼) 이러한 소송에서는 건전한 저작권 원칙에 근거하여 일괄적으로 판결이 내려진다. 냅스터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판사들은 작가, 아티스트, 개발자 그리고 발명가들과 더불어 투자자, 제조자, 유통자의 권리를 지지, 입증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해석하고 있다.

● 저작권과 인터넷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법의 진화가 촉진되었다. 이는 1908년, 1928년, 1948년, 1967년 그리고 1971년에 개최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s)에서 채택된 베른협약의 개정에서 나타난다. 1996년 12월 2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되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 조약을 채택한 특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외교회의(The Diplomatic Conferences on Certai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Questions)는 저작권법을 업데이트하고 명료화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회의에서는 특정 이유들로 인해 기존의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조약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었다.

이 외교회의는 대략 20년마다 개최되었는데 회의가 열린 그 당시의 기술적인 도전 과제들을 반영한다. 이러한 도전의 기저에 있는 저작권법과 그 목적들은 그동안 기술

306)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 합의 성명서 1; 실연·음반 조약(WPPT) 합의 성명서 6

이 제기한 모든 도전들을 극복했다. 그러한 도전으로는 축음기, 라디오, 텔레비전, 복사기, VCR, CD, DVD 등이 있다. 그러나 이제 저작권에 대한 또 다른 거대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아직 모든 가정에 보급된 것은 아니지만(현재 인터넷 보급률은 5억6,000만 명 즉, 세계인구의 9%로 추정된다), 인터넷 사용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널리 퍼져있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³⁰⁷⁾ 기업의 수익에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인터넷은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이 거의 동시에 무제한으로 제품, 서비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인터넷의 엄청난 효용성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이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인터넷을 절도, 불법복제, 사기, 또는 기타 범죄활동이 판을 치는 불법 활동의 무법지로 만들 수는 없다.

저작권법, 그리고 그것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터넷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1990년대 전반, 인터넷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뜨거운 논의가 벌어졌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양대 인터넷조약인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 조약은 2002년 3월과 5월에 각각 발효되었다. 다음 섹션은 이러한 인터넷조약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다.

● 냅스터의 도전

새로운 기술(MP-3)로 인해 음악파일의 압축이 쉬워졌고 이에 따라 음악파일이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인터넷상에서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휴대기기에도 간단히 저장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은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저작권법의 정신, 취지, 조항을 위배한다. 냅스터는 MP-3의 음악파일의 공유를 촉진하는데(다른 저작물의 파일 뿐만 아니라) 이에 수 천개 파일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중앙서버로부터의 공유와 보통 P2P교환으로 알려진, 중앙 서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비자들끼리의 공

307) <http://www.gltreach.com/globstats>

유가 있다. 이러한 공유 활동은 거의 저작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동의 없이 일어난다. 메이저 음반회사들에 의한 소송의 결과 위 MP-3기술의 소유자들은 해당 음악의 정당한 소유자들과의 라이선스 협의를 시작하여 그들의 활동을 정당화시켰다. 이제 저작물의 특정 사용에 대해 합의된 사용료, 또는 라이선스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기술제공자들, 예를 들면 MP-3회사의 가입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정의 월회비 혹은 연회비를 지불하면 저작권법과 관련된 법적 틀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음악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실행 가능한 것은 중앙 서버가 운영의 핵심에 있기 때문이다.³⁰⁸⁾

한편 냅스터 프로그램과 그 계승자(Gnutella, Freenet, OpenNap, and Aimster 등)들이 형성하고 촉진한 P2P 활동의 경우 불법 활동의 여부를 가려줄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정 불법 활동에 대해 제시되는 해답은 불법 거래를 식별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과 관련 전문가 혹은 기관 등이다. 소비자들은 음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음악을 필요로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음악이 자신에게 가장 손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전달되기를 원한다.

2000년 2월 12일 제9연방순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은 A&M 레코드사 등과 냅스터 간의 중요 법정 공방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냅스터가 샘플링과 공간이동(space shifting), 허용된 보급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정당한 사용”에 대한 변호는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만약 해

308) <http://www.salon.com>. 최근 신문 주요 기사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수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음반산업협회(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는 온라인상에서 음악을 들려주는 웹캐스터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그룹을 형성하였다. 음악 작곡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 작가 및 작곡가 협회연맹 2000년 세계 대회(2000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에서 웹캐스팅, 스트리밍, 주문형 음악(music on-demand)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음악사용(음악 작곡)으로부터 발생하는 라이선스 소득의 징수를 위한 합의문이 발효되었다(<http://www.CISAC.org>; <http://www.RIAA.com>). 2002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저작권 로열티 중재 패널(Copyright Arbitration Royalty Panel, CARP)은 인터넷에서의 음악사용에 대한 요금 및 의무적 라이선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최종 결정문(37CFR의 201번)을 공표하였다(http://www.copyright.gov/carp/webcast_regs.html).

당 사건이 지방법원 수준에서 재판되었다면 냅스터는 저작권에 대한 기여적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냅스터는 음악 파일 공유라는 활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법적 통보를 실제로 받은 적이 있으나 그러한 침해 사항에 대해 전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법원에 따르면 냅스터가 파일 추적(file-tracking) 기능을 통해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체 시스템 정화 활동도 하지 않았다. 냅스터는 또한 사용자들의 침해 내용도 대리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법원은 냅스터의 주장과는 반대로 정당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에게 적용 가능한 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면책 조항(safe harbor provisions)이 냅스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냅스터는 2000년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냅스터를 통해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사용자 수가 약 8,000만에 이르게 되었다. 냅스터의 활동은 정품 CD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 제공 사업에 뛰어들려 했던 정당한 저작권자들(음반사들)에게 장애가 되었다. 냅스터의 활동은 상업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냅스터는 더 많은 투자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주가도 더 오르게 된 것이다. 마침내 법원은 냅스터의 파일공유 활동을 정당화할 의무적 라이선스 중재를 거부하였다(법원에 따르면 그것은 “냅스터가 쉽게 빠져나갈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냅스터 관련 소송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자면 냅스터는 파일공유가 단지 가정에서의 복사와 개인적인 사용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미 대법원은 소니사와 유니버설사 간의 VCR관련 소송에서 이러한 면을 인정한 바 있다. 냅스터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위 두 가지 사건을 별개로 취급하였다. VCR로는 어느 정도 정당한 사용이 가능하며 기껏해야 잠재적으로 재생산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냅스터의 경우 대체로 불법 활동이며(기초 문건에 따르면 냅스터는 이러한 불법 활동의 가정하에 사업을 구상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유통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냅스터 서비스는 2001년 7월에 폐쇄되었다. 그 이후로 냅스터와 음반사들은 미 남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US Federal District Court in Northern California)에서 재판

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반회사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2002년 2월 연방법원판사 마릴린 파텔(Marilyn Patel)은 손해 배상이 수 십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³⁰⁹⁾ 냅스터 사건은 알려진 바대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성을 띤다. 저작물을 해당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것이 불법이며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저작권 침해관련 모든 법적 조치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하였지만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 조약 조항에 전적으로 근거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관련법 분야에 중요 선례를 남긴 셈이 되었다. 위의 두 조약의 이행 과정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좋은 법 집행의 예를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사건은 음악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원칙은 영화, 비디오 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문 저작물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어문 출판물에 대한 도전

어문 저작물 또한 공격을 받고 있으나 이 업계의 반응은 음악 산업의 반응과는 다소 다른 면이 있다. 서적은 음악과는 달리 대체로 복사와 유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비록 컴퓨터 스크린으로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인터넷상에서의 디지털 출판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법적, 기술적, 실제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³¹⁰⁾ 출판가가 그의 카탈로그 전체를 디지털화 한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불법 복제의 가능성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제대로 감시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 산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상당부분 변경하였다. 대부분의 주요 신문사들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자사 신문의 전자 버전을 무료로 게시한다. 전자 신문을 읽으려는 독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신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무료로 전자 신문을 게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신문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된

309) New York Times, 2002년 2월 23일, Napster Wins One Round in Music Case, Matt Richtel.

310) DOI 프로젝트, <http://www.doi.org> 참조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무료로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뉴스 서비스에 대해 구독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와 CNN 같은 유명 인기 사이트들은 접속자수가 많은 이러한 사이트에 자사의 광고를 올리고자 하는 회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는다. 콘텐츠가 풍부한 인터넷 사이트들은 그들만의 브랜드 네임을 구축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 이렇게 경제적 변화들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³¹¹⁾ 그러나 시의성 있는 단문의 글을 다루는 신문과 관련 출판사업의 경우 대체로 커다란 소송이나 소모적인 분쟁 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적응이 이루어졌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저작물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받고 있으며 다만 선택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인터넷상에서의 무분별한 복제와 불법 다운로드가 문제시 되어 왔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인터넷에서의 불법 복제와 실제 파일의 불법 제작 및 판매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보호대상 저작물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 조약에서 규정된 권리에 근거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는 제품을 불법적으로 대중에 제공하는 이들을 색출하였다. 그리고 법원과 법 집행 기관의 힘을 빌기도 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추적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웹 크롤러 소프트웨어)을 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불법 복제 운영사이트들이 매일같이 새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단속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며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불법 복제를 퇴치하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의 현재와 향후의 노력, 특히 인터넷을 재생산과 유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형태의 불법 복제 퇴치 노력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 조약의 관련 조항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 두 조약을 비준 혹은 가입하는 국가들의 해당 조항 관련 법규의 실행을 통해 뒷받침될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불법 복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직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았던 1996년 당

311) American Journalism Review, 1999년 9월, 2000년 6월; Independent, 1999년 8월 24일자; Editor & Publisher, 1999년 2월 20일자; Guardian, 2000년 4월 10일자; New York Times, 1999년 10월 4일자.

시에 위 두 조약의 채택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했던 대표단의 선견지명은 매우 존경받을 만하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이렇게 포괄적인 국제조약을 탄생시킨 포럼과 환경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긍지를 갖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 조약 가운데 두개의 조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서의 저작물게시를 포함하여 대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저작권자 혹은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경우 동의할 권리를 최초로 부여한다. 이 중요한 권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의 대상인 저작인접권과 일체의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다른 조항은 디지털 환경,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권리 보유자들이 채택하는 기술적 대책에 대한 방해요소에 대응하는 법적 대책의 제공 의무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한 기술적 대책으로 워터마킹(watermarking)이라고도 알려진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즉 심층암호방식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다. 스테가노그래피를 통해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서적 등의 저작물에 정보가 디지털 혹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심어져서 해당 저작권자와 단체가 작품의 불법 복제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³¹²⁾ 암호화(encryption)를 포함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보호대책은 디지털 환경과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발전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 관리가 진보하면서 일체의 불법 복제를 줄이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도구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증명된, 고유의 이점과 함께 저작권과 관련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발전시키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나치게 강력한 관리기술이 특히 공공 토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기타 대중의 이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효과적인 저작물 보호와 저작권법상 예외를 두는 공공 정책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312) 디지털 음악저작권 보호협의회(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 SDMI)는 오디오 자료에서 사용될 기술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스테가노그래피의 추가 기술정보에 관해서는 Business2.com, 2000년 2월 6일자: 56; <http://www.jitc.co/steganography> 참조.

● 시청각 산업에 대한 도전

영화와 비디오 산업은 한동안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제품의 복제와 유포문제를 비껴갔다. 그러나 시청각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황이 변하고 있다. 시청각 저작물 부문에서 심각한 불법 복제, 유포문제가 없었던 것은 영화의 경우 대역폭(bandwidth) 확보와 대용량 저장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영화 한편 전체를 다운로드 하는 데에는 1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영화 다운로드에 그만큼이나 시간을 소비하고 싶은 이용자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 인프라가 한층 발전하면서 대용량의 대역폭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이 점차 변하고 있다.

영화 산업은 지난 몇 년간 “디지털화”를 추구하기로 합의 결정하였다. 업계 전반의 기준에 대해 마침내 동의가 이루어졌고 영화 전편의 유포, 이용, 감상을 위한 공동 플랫폼으로 DVD가 등장하였다. 영화가 디지털화 됨에 따라 음악과 기타 저작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 복제가 더 용이해졌다. 컨트롤 스क्रम블 시스템(Control Scramble System)이라고 알려진 DVD 암호화 시스템이 구축되었지만 곧 해킹당하였다. 암호해독(disencryption) 프로그램의 유포를 막기 위한 소송은 지금까지 불법 복제자들과 해커들의 이해에 반대하며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지지해왔다.³¹³⁾

비디오 게임과 양방향 엔터테인먼트, 교육프로그램들은 영화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규모가 크고 대용량 저장 스토리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해도 불법 복제가 만연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허가 없이 제공한 일부 웹사이트들은 저작권자들에 의해 고소되었으며 저작권자들의 권리도 유지되었다. 영화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해당 재산과 권리의 보호에 대해 매우 빈틈없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 조약의 지지하에 저작권은 이러한 모든 도전을 극복할 것이다.

저작권법이 제공하는 틀을 통해서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사람들은 중대한 사업 결정을 내리고 의존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과 투자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대할 수

313) New York Times, 2000년 7월 14일자, 16일자, 18일자; <http://www.salon.com>; <http://www.cnn.com>

있고 또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 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인해 각 산업에서 확실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였고 상당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창의성과 혁신이 엄청나게 증대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모든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났다.



제7장

전통지식

앞 장에서는 산업재산과 저작권과 같은 전통지식재산의 기능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공헌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초점은 산업, 과학, 문학, 혹은 예술 분야에서 인간의 지식 활동의 산물인 발명품이나 창작물의 보호에 두었다. 본 장에서는 풍부한 전통지식을 보유한 국가들의 지식재산과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전통지식”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몇 가지 용어중 하나이다. 다른 용어들로는 “토착 문화와 지식재산”, “토착 유산”, 그리고 “간접적 유산권” 등이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현재 산업, 과학, 문학 혹은 예술 분야에서의 지식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전통에 기초한(즉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고 특정 사람들이나 그 지역과 관련이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진화하는) 발명품과 창작물을 지칭할 때 “전통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³¹⁴⁾ 최근까지 전통지식자산은 지식재산분야에서 대체로 간과되는 편이었고 그러한 점에서 전통적이지만 새로운 지식자산인 셈이며 그 경제적 가치는 관련 통계를 통해 제시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몇몇 사례연구와 실제 사실을 이용하여 지식재산이 전통지식의 가치를 증진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잠재 가치

전통지식자산은 인구의 대부분,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있어 소득, 식량, 보건의 주요 원천이 된다(사례 7.1 참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80퍼센트 정도가 일차적인 의료수단으로 전통 의약품을 사용한다고 한다.³¹⁵⁾ 인도의 예를 보면 전통 보건 시스템의 경우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가들이 약 60만 명 정도 되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건인력이 100만 명 이상 있다.³¹⁶⁾

314) WIPO, “Intellectual Property Needs and Expectations of Traditional Knowledge Holders, WIPO Report on Fact-finding Mis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 (WIPO: 제네바, 2001년): 25.

315) WHO/IUCN/WWF, Guidelines for the Conservation of Medicinal Plants (Gland, 1993).

316) V. A. Hafeel 과 Darshan Shankar, “Revitalising Indigenous Health Practices,” Compass Newsletter for Endogenous Development, No. 1 (1999 2월) (UNCTAD 인용, “Systems and National Experiences for Protecting Traditional, Innovations and Practices,” UNCTAD Expert Meeting on Systems and National Experience for 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제네바, 2000년 10월 30일-11월 1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 또한 전통지식의 보존과 사용이 상당한 환경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재래식 농업과 토지 사용 관행은 식단의 다양화, 소득의 발생, 안정적 생산, 위험의 최소화, 해충과 질병 발병률 감소, 노동의 효율적인 사용, 제한된 자원으로 생산성 증대, 그리고 낮은 수준의 기술로 수익 최대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³¹⁷⁾

이 책은 비록 지식재산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지만 전통지식이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이유로 인해 중요성을 띤다는 사실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통지식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경제사회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지식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국가적 통합과 정체성을 촉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토착사회와 지역사회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존엄성과 존중을 위해 전통지식을 보존, 인정,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곤 한다.

[사례 7.1] 식량의 근원으로서의 전통지식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전통지식은 여전히 식량 생산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베닌(Benin)의 킬리만자로 연구소(Kilimanjaro Institute) 라자레 세후토(Lazare Sehoueto)에 의하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의 60퍼센트 이상, 이 지역 농업 종사자의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지역에 대한 지식은 최대 지식 원천이다.”

출처: Douglas Nakashima, Lyndel Prott, Peter Bridgewater, "Tapping Into the World's Wisdom," UNESCO 자료 125 (2000년 7월-8월): 11.

전통지식은 특정 유전적 자원(genetic resources)과 연관될 수 있다. 현대 생명공학의 부상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서 유전적 자원은 점차 더 많은 경제적, 과학적, 그리고 상업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자세한 내용은 4장 생물학적 발명품의 특허 보호 부분 참조). 민속물 같은 기타 전통적 창작물 또한 특히 인터넷으로 인

317) Graham Dutfield, "The Public and Private Domain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raditional Knowledge," Science Communication 1, No. 3 (2000) 276-277

해 세계화된 정보 사회 내에서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3장 참조). 따라서 전통지식이 관련된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여 제약, 생명공학, 농업, 화학, 그리고 다른 분야의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민속 저작물과 같은, 전통에 기반을 둔 발명품과 창작품들은 한 공동체의 유산과 문화적 전승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데 엔터테인먼트, 예술, 여행, 건축, 패션 등의 다른 시장에서 핵심 자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전통에 기초한 발명품들과 창작물들이 만약 관련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상업화된다면 경제적 이익발생과 함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다. 전통지식이 풍부한 국가들의 경우 전통지식의 보호, 촉진, 그리고 개발을 통해 경쟁 우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토착 사회 및 지역 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가능 개발여부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 지역 사회가 고유의 전통적, 지역적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³¹⁸⁾ (사례 7.2 참조).

[사례 7.2] 브라질 토착 사회: “우리는 사업 방식을 배워야 한다.”

브라질 아마존지역의 토착 사회인 야와나와(Yawanawa)는 수 세대동안 우루쿠(uruku)라고 불리는 천연붉은색 염료를 만들어내는 식물을 재배해왔다. 현재 에스테 로더(Estée Lauder)가 이 식물을 사용하여 립스틱을 생산하고 있다. 1998년 야와나와는 미화 12,000 달러를 벌어들여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고 에스테 로더의 지원으로 병원도 설립하였다. 야와나와 지역의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만약 경쟁도 하지 않고 언어와 전통을 보존하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휩쓸려 떠내려갈 것이다.”

출처: Sette, *Supplement to Corriere della Sera*, 2000년 11월

지식재산문제는 농업, 생물학적 다양성, 문화, 생명공학, 인권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논의하는 수많은 포럼에서 다루어져 왔다(사례 7.3 참조).

318) UNCTAD, “Systems and National Experience for Protecting Traditional, Innovations and Practices.”

[사례 7.3] 지식재산과 인권

지식재산과 인권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기타 국제 및 지역 인권 조약과 법 등에 의해서 인권으로 인식된다. 이와 동시에 일부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과 기타 인권에 대한 존중, 예를 들면 적절한 의료 혜택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과학적 진보를 공유할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간에 갈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식재산의 관련성은 물론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급선무는 지식재산과 전통지식에 기초한 경제 개발간의 연결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 두 요소와 전통지식의 보존, 보호, 개발, 활용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현재 지식재산법과 관련 정책이 전통지식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그리고 보호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존, 문화유산 보존, 토착민 권리 보호의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데 지식재산권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장애가 되는가? 어떠한 면에서 지식재산이 전통지식(예를 들면 문화적 표현 등)을 보호하는데 적합하지 않은가? 지식재산과 전통지식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체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전통지식 보유자들의 필요와 기대를 모두 충족하는 기술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최근 몇 년간 유전적 자원에 접근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문제와 전통지식 및 민속 보호 문제의 지식재산측면에 대한 집중 연구에 돌입하였다. 1998년 이래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수행한 활동으로는 다양한 범주의 진상 조사 작업, 연구 활동, 인식 제고 활동, 토착민과 지역사회, 정부, 민간 분야, 시민 사회, 그리고 기타 핵심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 활동 등이 있다. 본 장의 대부분의 정보는 오늘날까지 지식재산권기구가 수행한 작업의 결과물로부터 나온 것이다.

● 전통지식의 성격

전통지식이 생성되고 보존되는 각 환경이 그 지식의 특성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제한적 관측만이 가능하다.

전통지식은 어떤 특정한 기술 혹은 예술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의학과 치료,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 식량과 농업 분야에서의 전통지식 체제는 잘 알려져 있다. 전통지식의 다른 주요 부분은 한 민족의 음악, 무용, 민속 예술(즉, 디자인, 의상, 플라스틱 예술, 공예) 등이다. 따라서 전통지식은 다양한 범위의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포괄 한다: 농업, 과학, 기술, 생태학적, 의학적(관련 의약품과 치료법 포함), 생물다양성 관련 지식; 음악, 무용, 노래, 수공예, 디자인, 동화, 예술작품 등의 형태로 표현한 민속 문화; 이름, 지명, 상징 등과 같은 언어적 요소; 이동가능한 문화적 재산.

비록 순전히 예술가의 미적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들도 있지만 많은 작품들이 보다 심오한 이치나 신념 체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전통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는 그 리듬이나 멜로디, 형식 모두 수 세대동안 고수되어 온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 노래 공연은 오늘날의 청중을 즐겁게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며 현재의 사람들이 과거와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

실질적 지식과 사회적 역사, 예술, 정신적 혹은 종교적 신념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값진 토대가 된다. 현대 예술과 과학이 때로 개인적인 성과를 공동체의 발전보다 우위에 두지만 전통지식 체제는 공동체의 협동적인 노력을 추구한다.

전통지식은 때로 역사, 신념, 미학, 윤리학, 그리고 특정 민족의 전통 등을 전승시킨다. 예를 들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물은 또한 종종 지역 사회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 많은 조각, 회화, 공예들은 엄격한 관례와 전통에 따라 창작되는데 이는 그러한 작품들이 상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지식은 다중적인 개념이다. 전통지식으로부터 생겨난 결과물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지는 모르나 개인 혹은 집단 창작자의 문화적 환경에 대한 반응과 상호작용에 따라 만들어진다. 또한 문화적 가치를 나타내는 전통지식은 보통 집단적으로 보유된다. 따라서 동떨어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간주되는 것(예를 들면 시)이나 하나의 발명품(예를 들면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식물 자원 등)은 사실상 신념과 지식의 거대한 일관적인 복합체를 통합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제하

는 것은 지식의 한 단편을 사용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혹은 집단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통지식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구전되며 문서로는 거의 기록되지 않는다.

전통지식의 중요한 근본적인 측면은 전통지식의 형성과 사용이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의 일부일 때에 한해서만 전통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지식이 고전적이거나 정적이어서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적 환경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의 반응으로서 진화하는 것이 전통적인 것이다: “전통지식은 단시일 암기로 습득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전통지식은 본래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여 끊임없는 확증, 적응, 창작의 과정을 통해 그 형태와 내용을 바뀐다.”³¹⁹⁾

따라서 전통지식은 동시대의 지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과거에 형성되어 현재 소멸할 위기에 있는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문서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통의 지속적인 사용에 기초한 발명품의 촉진과 유포에 공헌하는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지식을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통적 발명과 창작의 촉진에 필수적인 강력한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다.

전통지식과 관련된 지식재산 문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과 같은 지식재산법의 전통 분야들을 망라한다. 많은 경우 전통지식 보유자는 그들의 지적 창작물과 발명품의 실용적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 두 가지 모두 그들의 일상생활과 관습에서 표현되는 단일한 신념체계로부터 뿔어져 나오는 것으로 본다.

● 경제적 이익

토착 사회와 지역 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가능한 개발은 어느 정도는 그들이 얼마나 전통지식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또 한편으로 자

319) Douglas Nakashima, "Conceptualizing Nature: The Cultural Context of Resource Management," Nature & Resources 34, No. 2(1998): 18.

신들의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연관된 다양성과 전통지식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부유한 국가들의 경쟁 우위가 되어 그들이 세계시장에 좀더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현재의 빈곤과 상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지식을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들의 국제 경제로의 편입을 촉진하는 잠재적으로 강력한 도구로 간주될 수 있다.

● 천연 자원 기반 산업에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상업적 가치³²⁰⁾

식량,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목적을 위한 식물 및 동물 종들에 대해 전통지식의 상당한 상업적 이해가 존재한다. 전통지식이 연관된 특정 유전자원은 제약, 화장품, 개인용품, 농업, 식품 첨가제, 산업 효소와 유기물 살충제와 같은 기타 시장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 제약

예를 들어 의학적으로 유용한 성분을 추출, 합성할 수 있는 식물을 파악하는 데 있어 전통지식의 가치는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미국에서 열개의 처방약 중 아홉 개는 식물, 곰팡이, 동물, 미생물 등으로부터의 천연 성분, 즉 생물 다양성의 산물에 기초한 것이다.³²¹⁾ 198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판매된 식물 성분 추출 의약품의 총 시장 가치는 미화 4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³²²⁾

● 자연 치료/ 허브 치료 산업

세계의 자연 치료시장은 중국 허브, 서양 허브, 그리고 아유르베다(Ayurvedic) 허

320) 이 섹션은 Graham Dutfield와 Henrietta Marrie가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 (아직 미 출판)에 대해 작성하여 WIPO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근거.

321) President's Committee of Advise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Panel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s, Teaming with Life: Investing in Science to Understand and Use America's Living Capital (워싱턴 D.C.: PCAST, 1998): 5.

322) Principe, 1989. 이 추정치는 OECD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전체 약품의 총 판매액 중 25퍼센트가 최소한 한 개의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로 구성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브와 식물 치료와 같이 다양한 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약 산업의 치료법과 경쟁관계에 있다. NulifeTM, EfamolTM, NutripurTM, VitaTM, Nature HarmonyTM, Green+TM, SisuTM, NutisanaTM 등을 포함한 수많은 브랜드는 그러한 천연 허브 치료의 인기를 반증한다. 자연 치료는 체중 조절, 몸매 관리, 불면증 치료, 셀룰라이트 조절, 폐경관리, 스킨케어, 소화 보조제, 이완제, 변비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된다. 은행, 포도씨, 켈프(kelp), 카바(kava), 인삼, 삼황, 금달맞이꽃, 마로니에씨, 산사나무, 성요한초(St. John's wort), 노간주나무, 로즈마리(이는 가능한 재료의 일부에 불과) 등의 추출액, 오일, 진액이 갖가지 방법으로 혼합되어 알약, 화장품, 음료수, 차, 로션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질병의 완화를 위해 사용된다(사례 7.4 참조).

[사례 7.4] 크래브 오일(Crab oil): 가이아나(Guyana)의 유망 비목재 산림작물

크래브우드(Crabwood)는 가이아나의 아이워크라마(Iwokrama) 산림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종류의 재목이다. 이 나무의 씨가 크래브 오일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크래브 오일은 꿀과 혼합되거나 농축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감기 기침과 천식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부서지기 쉬운 모발의 경우 이 오일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크래브 오일을 피부에 문지르면 멍이나 붓기, 근육통, 관절염, 피부트러블 등이 완화되며 곤충 기피제(insect repellent)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이워크라마 국제열대우림보존 및 개발센터(Iwokrama International Centre for Rain Forest Conservation and Development)는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크래브오일 생산과 상품화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출처: Iwokrama Bulletin 4, No. 1 (2000년 8월), 8.

세계 허브 의약품 시장의 일부는 전통지식에 근간을 두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통 의약품은 몇몇 아시아 국가들, 예를 들면 중국, 인도, 일본,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서 인기를 유지해왔다. 중국의 경우 전통 의약품(허브 약재)이 총 의약품 소비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를 차지한다. 1993년 허브 의약품 총 판매는 미화 25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전 세계 인구의 약 80퍼센트가 전통적 의약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통 의약품의 약 85퍼센트는 이러한 식물 추출물을 사용한다.

❖ 화장품과 개인용품 산업

전통 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거대한 국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산업은 화장품과 개인용품 산업이다. 알로에, 조조바, 차나무와 같이 전통적으로 사용된 식물로부터의 추출물은 현재 에센스 오일, 아로마, 비누, 스킨케어제품, 샴푸 등 다양한 제품의 기초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사례 7.5 참조).

[사례 7.5] 병에 담긴 고대의 비밀

인도는 과거 수 십년간 개방 경제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로레알과 레브롱과 같은 회사들이 시장 개방 이전에는 암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었던 서양의 주름방지 크림과 샴푸를 수입 판매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유르베다(Ayurveda)의 고대 원칙에 기초한 인도 전통 미용 제품이 오히려 서양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아유르베다 원칙은 이미 5,000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미국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한때 자신의 피부를 단순히 지성, 혹은 건성으로 구분하는데 만족했던 여성들이 자신의 도샤(dosha, 정신적 에너지)를 카파(kapha, 지구), 바타(vata, 공기), 혹은 피타(pitta, 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아유르베다(인생의 지혜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전체론적인 접근방식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그 기본 원칙은 각 사람이 카파, 바타, 혹은 피타라는 세 가지 도샤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비록 누구나 스킨 타입에서부터 성격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도샤를 갖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도샤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내적 건강과 외적 아름다움을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요가는 아유르베다의 한 분야에 해당하며 미국에서 요가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동양의 정신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서양에서의 마케팅 기회도 확대되었다.

1999년 3월 바디샵(Body Shop)은 아유르베다 관련 제품(카파들을 위한 베개 스프레이 제품 등) 라인을 선보였다. 그리고 1999년 10월에는 모델 크리스틴 털링턴(Christine Turlington)을 포함, 세 명의 여성이 고급 스킨케어라인인 선다리(Sundari™)를 출시하였다. 이 두 라인의 제품 모두 주로 인도에서 재배되는 에

센스 오일과 허브를 사용한다. 파키스탄에서 태어나 하바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선다리의 공동 창시자 아일라 후세인(Ayla Hussain)은 “우리는 수 천년 동안 전해져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현대 과학을 이용합니다.” 라고 밝혔다. 페어필드(Fairfield) 지역에서 라즈(Raj)라고 하는 아유르베다 스파의 매니저인 린지 올리버(Lindsay Oliver)는 7년 전 리조트를 개장했을 당시에는 언론 매체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말한다, “보그 지에서도 우리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출처: M. Orecklin, 2000년, Graham Dutfield and Henrietta Marrie 인용.

❖ 식품과 음료

대규모 식품 및 음료 제조사들 중 상당수가 전통 허브 의약품으로 제품을 만들곤 한다. 기능성 음료 - 원래의 영양적 가치 이외의 건강상 이익을 준다고 알려진 음료 - 시장은 지난 1997년 미화 26억 달러에서 2000년 47억 달러 규모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기능성 식품의 판매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 기능성 식품과 음료 모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³²³⁾

❖ 동물 용품

전통 사회들은 지난 천여 년 동안 생존을 위해 다양한 동물, 조류, 어류 등에 의존해 왔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종을 집에서 키우기도 했다. 따라서 동물들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병든 동물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가축생산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치료법들과 육질을 가장 맛있게 하는 목초나 사료에 대한 지식, 다양한 기생충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 등이 함께 개발되었다.

오늘날에는 육류, 달걀, 유제품 등을 제공하는 상업적 목적의 동물들과 애완용으로 기르는 동물들 모두를 위한 거대한 동물용품 시장이 형성돼 있다. 약품 및 천연제품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한 동물관련제품의 개발에 있어서 전통지식이 유용한 자원이 되고 있다(사례 7.6 참조).

323)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1년 5월 28일자.

[사례 7.6] 전통 수의학

인도 타밀 나두(Tamil Nadu)의 뱀부르(Vembur)마을에는 16살때부터 동물을 치료해온 티루 팔카미 가운더(Thiru Palchamy Gounder)라는 사람이 있다. 정신적 지주였던 칸다빌스워니(Kandavilswamy)의 지도하에서 치료법을 배운 이 전통 수의사는 다양한 소 관련 질병을 치료하여 그 지역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그 지역의 식물로부터 만든 약품을 사용하여 골절, 농양, 부러진 뼈, 부은 혀와 얼굴 등을 치료한다. 치료 기간은 짧게는 두 시간부터 길게는 한달까지 이어지는데 그의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봐서 그 효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민간 발명가 협회들은 이러한 전통지식의 소멸을 방지하고 전통지식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증진하며 전통지식을 널리 유포하고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전통지식들을 수집하고 있다. 그들은 전통지식을 수집하여 모으는 것이 개발로의 상향식 접근방식의 하나라고 간주하고 있다. 일부 협회는 전통지식을 기초로 한 제품들에 대해 특허 보호를 취득한 후 마케팅 활동을 펼쳐 해당 지식을 개발한 공동체 및 발명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Keeping Knowledge Alive: Gounder's Cattle Cures," Honey Bee 9 No. 4 (1998년 10월-11월 호) & WIPO 남아시아 진상규명단(South Asia Fact-Finding Mission), 1998.

❖ 문화 산업에서 전통지식의 가치

문화 산업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의 가치는³²⁴⁾ 예술과 공예, 문화 관광, 음악, 멀티미디어와 출판, 건축, 패션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산업분야에서 전통지식이 공헌하는 가치와 관련된 경제 데이터는 거의 없다. 관련 정보와 예시는 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에서 발견된다.

예술과 공예 산업은 전통지식의 보호뿐만 아니라 존폐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음 세

324) 이 섹션은 Graham Dutfield와 Henrietta Marrie의 앞의 인용문에 근거한 것이다.

개의 방대한 분야로 구성 된다:

- 주로 관광 산업을 겨냥한 기념 예술품과 공예품(기념품);
- 공공, 민간 수집가들을 위해 순수 예술품으로 제작된 전통 예술;
- 전통 예식 물품으로 주로 구성된, 전문 수집가와 투자자들을 위해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문화 재산.

전통 기념 예술품은 보통 튼튼하고 휴대가능하며 저렴한 기념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관광지, 공항과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다. 이러한 기념품 중 일부 - 회화, 직조 바구니, 조각상 등 - 는 전통 예술가들이 제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관광 기념품 대부분이 대량 생산되며 티셔츠, 티 타월, 좌석 매트, 게임카드, 허리 띠, 엽서, 음료 받침과 쿨러, 달력, 컴퓨터 마우스 패드 등 비전통적인 품목에 전통 예술 문양을 가미한다. 때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전통적인 디자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지식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위에서 구분된 세 개의 분야 중 가장 도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전통 기념품 시장이다. 티 타월과 같은 품목에는 대부분 일반적인 디자인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 전통 예술가의 작품이 도용된다고 볼 수 없다. 바위 또는 동굴 회화가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그림들은 수 천년 된 것이지만 여전히 특정 민족의 소중한 유산인 것이다. 이러한 유산은 연대가 오래되고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위조 예술품 시장의 경쟁으로 인해 전통 예술가들은 원래대로라면 자신의 독창적인 창작품의 판매로 발생하였을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하는 것이다(사례 7.7 참조).

순수 예술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많은 국가들의 전통 예술이 공예품으로부터 유럽지역이 거의 주도하는 순수 예술로 전환하였다. 오늘날 전통 예술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되었다. 전통 예술품은 전 세계 주요 미술 박물관들이 영구적으로 소장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통 예술품의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다.

[사례 7.7] 기념품 시장에서 호주의 원주민 예술

국립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제도 문화 산업 전략보고서(The National Aboriginal Torres Strait Islander Cultural Industry Strategy)는 토착 예술 및 공예품 시장이 연간 미화 2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미미하다. 1989년 예술 및 공예품 산업 개관(Review of the Arts and Crafts Industry)은 원주민들이 예술품과 공예품의 판매 수익으로 받는 금액은 연간 미화 700만 달러를 겨우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위 전략보고서는 원주민 예술가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여 연간 약 미화 5,000만 달러에 이르지만 판매 수익 대부분은 예술가들보다는 상인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토착 예술품과 공예품의 불법 복제와 해외에서의 무허가 제작과 같은 불법 활동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출처: Graham Dutfield and Henrietta Marrie 인용

음악은 전통 생활에 있어서 활기를 주는 중요한 부분이다(6장 참조). 전통 음악은 최근 몇 년간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왔다. 레코딩 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음악 산업의 부상, 그리고 세계 음악에 대한 갈증 등으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사운드를 위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폴 사이먼(Paul Simon)의 ‘은혜의 땅(Graceland)’(1986년)과 ‘성자의 리듬(Rhythm of the Saints)’(1990)은 아프리카 음악과 남미 음악을 각각 사용하였는데 이는 서양 뮤지션들이 비 서양 음악을 자신의 노래와 혼합하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은혜의 땅’의 경우는 31주나 빌보드 차트에 머물면서 전 세계적으로 350만장 이상이 팔려나갔고³²⁵⁾ ‘성자의 리듬’은 발매 4주 만에 130만장이나 판매되었다³²⁶⁾ (사례 7.8 참조). 그러나 지식

325) Sherylle Mills, "Indigenous Music and the Law: An Analysi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Yearbook for Traditional Knowledge Music, 1996: 57.

326) 상동.

재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통 음악은 오늘날 상업적인 음악 세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사례 7.8] 투바 지역의 음악

러시아의 투바(Tuva) 지역은 최근까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1990년 투바의 민속음악이 녹음되어 수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때부터 투바음악을 담은 23개의 CD가 발매되었다. 이 음반들 중 투바에서 녹음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이 지역에서는 판매도 되지 않으며 오직 세계 음악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출처: T. Levin, "A Tale of Tuva," (민속음악학협회(The Society for Ethnomusicology) 회의 중 낭독, LA, 캘리포니아, 1995년 10월 20일).

● 전통지식의 상업적 가치: 결론

전통지식의 전체 가치를 금전적인 측면에서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첫째, 전통지식은 때로 다른 분야의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둘째, 전통지식에 기반을 둔 많은 제품들이 현재 시장에 진출한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분야별, 혹은 GNP 지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잃게 된다면(예를 들어 약초 등) 시장에서 대체물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비용은 특히 소득 비율로 따져볼 때 아마 상당할 것이다. 셋째, 전통지식의 많은 부분들이 양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지닐 것이다.³²⁷⁾

세계 무역 시장이 미화로 수조 달러규모라면 전통지식의 기여도는 아마 최소한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가장 큰 공헌을 하는 분야는 농업, 제약, 생약, 천연 제품, 식료품 및 음료 등과 관련된 천연 자원에 기초한 분야이다. '생물다양성의 상업적 이용(The Commercial Use of Biodiversity)' (표 7.9 참조)의 저자인 케이트(Kate)와

327) UNCTAD 앞 인용문.

래어드(Laird)가 유전적 자원에서 파생된 일정 범주의 제품들에 기초한 세계 무역 추정치를 내놓았다. 전통지식이 이러한 범주들에 공헌하는 정도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때 국가별로 통계 데이터를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수치가 각각 다를 수 있다.

표 7.9 유전자원으로부터 개발한 제품의 연간 시장 추정³²⁸⁾

분야	시장최저 (미화십억달러)	시장최고 (미화십억달러)	제품이 유전자원으로부터 파생된 정도
제약	75	150	일부 제품이 유전자원에서 파생. 낮은 추정치: 천연 제품이 세계 시장의 25퍼센트 차지. 높은 추정치: 50퍼센트
생약	20	40	모든 제품이 유전자원에서 파생. 낮은 추정치: 세계 생약 시장 포함. 높은 추정치: 생약, 미네랄, 비타민 포함
농업 생산물(농산물 종자의 상업적 판매)	300+ (30)	450+ (30)	모든 제품이 유전자원에서 파생. 낮은 추정치: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농산물의 최종 가치. 농민에 대한 상업적 종자 판매 10배. 높은 추정치: 농민에 대한 상업적 종자 판매 15배
장식 원예 제품	16	19	모든 제품이 유전자원에서 파생. 낮은 추정치: 입수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 높은 추정치: 미 보도된 판매 및 제품
작물 보호 제품	0.6	3	일부 제품이 유전자원에서 파생. 높은 추정치는 반 합성 제품뿐만 아니라 완전 합성 아날로그 포함
보건 및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의 생명공학	60	120	일부 제품이 유전자원에서 파생. 낮은 추정치와 높은 추정치: 환경적 생명공학기술 평가에 근거
개인 용품 및 화장품	2.8	2.8	일부 제품이 유전자원에서 파생. 낮은 추정치와 높은 추정치: 시장의 자연적 요소 반영
합계	500	800	

328) 출처: Kate 와 Laird, The Commercial Use of Biodiversity, (Earthscan Publications, 1999) 2.

● 전통지식의 보존 및 존폐에 대한 위협

전통지식 소유자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모두 지식 재산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각한 문제는 젊은 세대가 오래된 고유의 것들을 그다지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전통을 거부하고 현대적인 삶의 방식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종종 전통지식과 관습이 쇠퇴하는 결과를 낳곤 한다. 문화의 변용 혹은 전파를 통해서 많은 전통 관습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전통지식 소유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연장자들과 공동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문서화 하고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전통지식에 대해 계승자로 자칭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결국 전통지식 소유자의 죽음이 전체 전통과 지식체제의 소멸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지식 소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전통지식에 대한 존중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통지식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현대 과학으로의 단순화된 접근방식으로 인해 종종 간과되곤 한다. 정보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균 상태에서 개발되지 않는 한 그 정보는 언젠가 “열등한” 것으로 비쳐지게 된다. 이것은 일부 기업 연구 및 개발 부서에서 “여기에서 개발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발명품을 거부하는 “NIH(Not Invented Here)” 신드롬의 당연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 치료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허브의 혼합물을 제공하면서 현대 생화학적 관점에서 분자간의 상호작용으로 그 혼합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치료사는 이전 치료사들이 수 세대동안 시술해온 “임상적” 실험 결과에 근거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때때로 현대 사회는 전통지식에 대해 편견을 보여 왔다. 왜냐 하면 전통지식은 일반적인 교육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지식을 지칭하는 일부 속명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도 함축되어 있어서 전통 의학과 시술자들을 비하하기도 한다.

전통지식 소유자들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의 지식을 다른 이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법적 보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호주의 모닝 스타 폴(Mornign Star Pole)과 같은 예술적 디자인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님(neem) 나무에서 추출되는 오일과 같은 천연 제품의 경우 모두 현대 세계 경제에서 전통지식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전통적 사회

와 민간 기업들 간의 상업적 교류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쌍방 합의가 이뤄지게 되고 이는 양쪽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불완전성 혹은 권리의 상실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기존의 공식 체계에 대한 경험 부족, 경제적 독립성 결여, 통일된 목소리의 부재, 그리고 많은 경우 전통지식의 활용과 관련된 명확한 국가 정책 부족 등으로 인해 전통적 사회가 결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또 한편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할 명확한 규칙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 신뢰할만하고 집행 가능하며 제대로 확립된 규칙 하에서의 계약을 선호하는 기업들에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안기기도 한다.

❖ 소유권과 통제권

전통지식은 공동체 전체가 소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몇 개인이나 한 명의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전통지식의 소유자와 공동체는 그 지식이 대중에 공개되어 공공의 소유가 되어버린 이후에도 그러한 지식이 다른 이들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지속적으로 강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전통 사회의 지식이 외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 결국 출판으로 이어진다면 그 공동체로서는 해당 지식이 사용되는 방식과 기타 제3자의 해당 지식 획득 여부 등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한 전통지식은 누구에 의해서든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비밀스러운 혹은 신성한 종교적 지식이 허가되지 않은 채 폭로되는 경우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상업적 사용을 방지하거나 통제할 권리

학술적 목적의 식물 및 기타 생물학적 재료 채집은 상업적 이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한 재료들의 원산지 지역 사회와 학술적 연구를 시행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러한 수집물 재료 혹은 정보에 근거하여 상업적 제품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학술적 문서들에 대해 보통 업계 연구가들이 협의를 하며 가치 있는 지식(예를 들면 민족식물학(ethnobotanical) 정보)은 기업들의 R&D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가들에 의한 이러한 활동은 그러한 수집물이나 문서에 있는 전통지식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 상업적 이득을 취할 권리

많은 공동체들의 경우 전통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아주 외딴 지역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들과 공동체 일원들은 금전적 경제의 일부를 구성하며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 현금이 필요하다. 일부 전통지식의 상업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활용된 지식을 제공하는 공동체에 돌아가는 이익은 전체 이익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다.

때로 전통 사회가 스스로의 지식을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외부에서 부과된 법규들에 의해 제한된다. 예를 들면 남부 인도의 카니(Kani) 민족이 그랬듯이 전통 사회들은 보호 구역에 거주한다는 것 때문에 한동안 약물 식물을 재배하여 판매할 수 없었다(사례 7.10 참조).

[사례 7.10] 지바니와 카니 부족

전통적으로 유목 공동체에 속하는 카니(Kani) 부족은 현재 케랄라(Kerala)의 티루바난타푸람(Thiruvananthapuram) 지구에 있는 서부 가츠(Western Ghats) (인도 남서부에 있는 산지) 삼림 지역에서 정착생활을 하고 있다. 약 16,000명에 달하는 카니 부족민들은 몇 개의 부락에서 거주하는데 각 부락이 그 지구의 삼림 지역 내외에 퍼져있는 10 내지 20개의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니스 부족민들은 비록 그들이 공통의 특성과 관습을 공유하지만 어떤 단결된 군(群)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카니스 부족민들은 전통적으로 목재 이외 삼림 제품의 수집가들이다. 이들은 자연과 벗하여 살면서 자원의 사용에 대한 고유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는데 특히 그들 주변에 있는 생물학적 자원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다.

1987년 12월 P. 푸쉬판가단(Pushpangadan) 박사가 이끄는 '민족생물학에 관한 인도합동연구프로젝트(All India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on Ethnobiology, AICRPE)' 관련 작업을 하던 과학자 팀이 카니 부족의 정착지를 조사하기 위해 아카스티아르(Agasthyar) 언덕의 열대 우림지역을 지나고 있었다. 이 팀의 일원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피로를 느꼈는데 이들을 안내하고 있던 카니 부족의 가이드들은 놀라우리만치 활력 있고 민첩한 상태였다. 이 카니 부족민들은

수시로 검은 빛깔이 나는 열매를 씹곤 했다. 가이드 중 하나가 과학자들에게 열매 몇 개를 건네면서 그것을 먹으면 걷는 도중에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AICRPE 팀은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에 카니 부족민들은 이 과학자들에게 이 “마술” 열매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결국 *Trichopus zeylanicus* ssp. *travancoricus*라는 이름의 식물로 판명되었다.

화학적, 약학적 조사에 따르면 그 식물의 잎사귀는 다양한 당지질(糖脂質)(glycolipids)을 함유하고 있으며 적응소(adaptogenic) 및 면역증진 특성을 지닌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성분을 갖고 있다. 해당 열매는 주로 항 피로적 특성을 나타냈다. 열대식물정원연구소(The Tropical Botanical Garden Research Institute, TBGRI)는 카니 부족의 주도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표준화된 허브 약물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 약은 지바니(Jeevani)라고 명명되었으며 1995년 아리아 바이디아 제약(Arya Vaidya Pharmacy)에 의해 상업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TBGRI는 이 제약 회사에 해당 약품의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한편 사용료와 수수료를 카니 부족과 반반씩 나누기로 동의하였다.

애초에 카니 부족의 주요 관심사는 그러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TBGRI, 일부 정부 관료들, 그리고 NGO들의 도움으로 카니 부족은 기명 신탁(registered trust)을 설립하였다. 케랄라 지역 카니 부족의 약 60퍼센트가 이 신탁의 회원이다. 1999년 2월부터 이들이 지급받을 금액에 발생하는 이자가 카니 부족의 복지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 금액이 신탁으로 송금되었다.

TBGRI는 삼림지역에서 거주지역 주변에서 이 식물을 재배하도록 하기 위해 25명의 부족민들을 훈련하였다. 훈련 첫 해에 0.5 헥타르 공간에서 재배된 *Trichopus Zeylanicus*의 잎사귀를 판매하여 각 부족민이 약 8,000루피를 벌어들였다. 불행하게도 삼림부(Forest Department)가 이 식물의 재배를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족민들이 삼림에서 자연산으로 자라고 있는 이 식물 종을 제거하면서 이 식물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현재 해결된 상태이며 삼림부는 이 식물의 재배를 허가하였다.

출처: Dr. R. A. Mashelkar, 인도 과학 연구 위원회(Council for Scientific Research) 위원장

● 인정과 귀속의 권리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일부 전통적 공동체들이 우려해 오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때로 지역민들을 논문이나 서적의 주 저자, 혹은 공저자로, 영화와 비디오의 공동 제작자로 세움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통지식의 출판의 경우 그러한 서적이나 연구 보고서가 전통지식 소유자가 무료로 제공한 정보로 만들어진 것인 경우에도 해당 연구가, 작가, 출판사, 또는 그 연구의 스폰서는 저작권을 신청한다. 정부나 대학 스폰서들은 해당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공공 기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정당화한다.

● 명예 훼손적, 공격적, 허위적 사용을 방지할 권리

무용과 음악 공연과 같은 전통적 문화 표현은 때로 적절한 상황을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 공연 방식이 원 공연자들과 그 공동체에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더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때로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 자체가 빈곤이나 협박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비하적인 방식으로 공연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공격적, 명예 훼손적 공연은 주로 해당 공동체와 상관없는 외부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무허가 제작물이다.

또 다른 문제는 종교적으로 신성한 상징물이 복제되어 전혀 부적절한 제품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호주에서 어느 카펫 제조 회사가 몇몇 토착 예술가들의 종교적 디자인을 재생산한 일이 있었다.³²⁹⁾

이와 관련된 것이 토착민 혹은 부족민 집단의 이름을 허가받지 않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느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의 이름을 체로키(Cherokee)라고 붙였다. 또한 호피(Hopi)와 주니(Zuni)라는 단어가 해당 부족의 허락도 없이 상표에 첨가되었다. 때로 토착민들에게 공격적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특정 단어들이 프로 스포츠 클럽의 타이틀 혹은 별명으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Chiefs, Braves, Indians, Redskins 등이 있다. 어떤 경우 그러한 맥락에서 이들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토착민 그룹에 의해 강력한 도전을 받았다.

329) Milpurrurru v. Indofurn (Pty) Ltd. (1995) 30 IPR 209.

❖ 지식재산의 역할

지식재산문제가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속과 관련하여 보존, 관리, 이익공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졌다.

유전자원은 지식재산과 몇 가지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첫째, 유전자원이 인간의 개입에 의해 변경되어 자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을 획득하였을 때 지식재산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이 새롭고, 창의적 조치들과 관련이 있고 산업적 적용이 가능하다면 특허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롭고, 뚜렷하고, 충분히 통일성 있는 모양의 안정적인 식물 종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은 해당 식물 종의 보호를 신청할 자격이 될 수 있다.

둘째, 많은 종류의 생명공학 발명품들이 자연발생적인 식물, 동물 그리고 기타 유기체에 대한 정보와 특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혹은 사용으로부터 생겨나는 발명에 관한 관심을 기록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지식재산 공동체가 고려할 만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한다.

보통 전통에 기초한 발명품과 창작물들의 경우 일부는 현 지식재산법이 세워놓은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중이 마음대로 복제하고 비전통적 개인 및 단체가 사용하도록 방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 및 단체들은 현 지식재산법하에서 합법적인 양 행동하면서 전통적 창작물과 발명품으로부터 파생한 작품들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는 그 전통지식의 출처가 되는 공동체나 공동체 일원들을 인정하거나 그들과 상업적 이익을 공유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지식재산이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으로 전통 재산 소유자들이 지식재산 보호의 이익을 누리지도 못하게 제외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 또한 지식재산 공동체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한다.

1998년 이 문제와 함께 관련 문제들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의 일련의 활동들에 착수하였다; “지식재산의 필요, 그리고 토착 지식 및 발명 보유자들을 포함한 새로운 수혜자들의 기대를 파악, 조사하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에 대한 지식재산체계의 공헌을 촉진한다.”³³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330) WIPO, Program and Budget 1998-1999: 11.1.

는 몇몇 진상조사단 활동에 착수하고 원탁회의들을 소집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활동에 대해 탐구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³³¹⁾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회원국들은 유전적 자원에 대한 접근 및 관련 이익의 공유에 대해, 그리고 전통지식과 민속의 보호와 관련해 지식재산의 필요와 기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 협의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전통지식 보호에 있어서 지식재산 체제의 실제 역할과 잠재적 역할을 추가로 조사하는데 관심을 표명했다. 전통지식 혹은 전통지식의 파생물 가운데에는 현 지식 재산 체제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들이 많다. 몇몇 자료 제공자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재산법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조항들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 일부 참가자들은 또한 최소한 단기적으로 현 지식재산 도구가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현하였다. 지식재산의 현 범주를 시험하는 것은 토착민들과 지역 공동체 등을 포함, 전통지식 소유자들과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지식재산 체제의 기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 체제의 적용을 실제적, 기술적으로 조사하며 관련 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아이디어는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설명된 부분에 있어서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현 지식재산 도구로 개발, 실험하는 것이다.

전통지식 소유자들은 모든 현존하는 지식재산 체제 부문들, 특히 상표권, 지리적 표시, 특허, 산업 디자인, 저작권, 그리고 영업 기밀을 포함한 불공정 경쟁 부문 등에서 좀 더 활발한 사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331) WIPO 참조, “Intellectual Property Needs and Expectations of Traditional Knowledge Holders - WIPO Report on Fact-finding Mis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 자세한 내용은 www.wipo.int/globalissues/index-en.html 참조.

[사례 7.11] 전통지식 전자 도서관

최근 전통지식을 분류하고 전통지식 디지털 도서관(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KDL)을 설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특허 심사의 질을 개선하고 특허 심사자들이 적절하게 분류되어 있는 전통지식 형태로 있는 선행 기술(prior art)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1998년과 1999년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상정되었다.

인도 의학과 동종요법체제 부(Department of Indian Systems of Medicine & Homeopathy, ISMH)에 의해 한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아유르베다 및 시다 중앙 연구 위원회(Central Council of Research of Ayurveda and Siddha), 베나레스 힌두 대학교(Benares Hindu University), 국립 정보 센터(the National Informatics Centre), 과학 및 산업 연구 위원회(the Council of Scientific & Industrial Research)와 특허 및 상표권 검사관(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and Trade Marks) 출신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지고 TKDL 전담반(TKDL Task Force)라고 알려진 학제간 전담반이 구성되었다.

TKDL 전담반은 전통지식 자원 분류(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 TKRC)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전통지식에 관한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들은 중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 그리고 미국으로 구성된 전통지식 전담반(Traditional Knowledge Task Force)을 구축하였다. TKRC의 구성에 관한 인도의 제안서가 이 전담반에 제출되었다.

출처: Dr. R. A. Mashelkar, 인도 과학연구위원회 위원장.

특정 국가들은 특정 지식재산 도구를 사용하거나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념 혹은 선택사항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 발명품이 전통지식으로 파생되었거나 전통지식에 기초하는 경우 특허법 하에 서의 보호;

- 특정 그룹 혹은 수집물로부터 나오거나 특정 방법, 기준 등에 따라 제작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표장(sign)을 구축하기 위해 단체상표와 증명표장(collective marks) 등록(사례 7.12 참조);
- 상표법 하에서 문화적으로 공격성을 띠고 공공질서 혹은 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전통적 명칭, 상징, 기장 등의 무허가 등록 방지;
- 전통지식과 생물학적 자원에 기초한 발명품의 특허 출원에 해당 전통지식 혹은 생물학적 물질이 원산지국의 사전 통지된 동의를 획득하였고 모든 관련 공공 부문과 공동체에 기초한 지식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포함시킬 것;
- 구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 원문 데이터베이스와 비원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를 이용하여 전통지식 문서를 보호

또한 현존하는 지식재산도구로는 보호할 수 없는 전통지식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재산 도구를 장기적으로 개발할 것에 대해 폭넓은 요구가 있었다.³³²⁾

[사례 7.12] 호주의 증명표장 등록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전통에 기초한 발명품과 창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상표와 증명표장 등록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1999년 말 호주에서는 토착 인증 상표(Indigenous Label of Authenticity) 제작이 착수되었다. 상표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제도 위원회(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Commission, ATSIC)와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의 지원을 받아 국립토착예술후원협회(National Indigenous Arts Advocacy Association)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러한 인증 상표는 다음 사항들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332)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본 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다른 지식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조인국가들에서 전통지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자간 기본 틀 수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먼저 가능한 법적, 운영상 해결책이 마련되고 국가적, 지역적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WIPO/UNESCO의 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 (1982)는 이러한 점에서 향후 과제해결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원주민 및 토러스 해협 제도 예술의 문화적 온전함을 보전;
- 원주민 및 토러스 해협 제도 공동체들에게 정당하고 공평한 수익 보장;
- 원주민 및 토러스 해협 제도에서 나온 제품과 서비스의 인증에 대해 소비자의 확신 극대화;
- 원주민 예술의 다채로움과 다양성 극대화;
- 원주민 및 토러스 해협 제도의 문화적 유산과 예술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이해 증진.

출처: 국립토착예술후원협회 제안서, Terri Janke 인용, “Our Culture, Our Future” (호주 원주민 및 토러스 해협 제도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와 원주민 및 토러스 해협 제도 위원회(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Commission)에 제출된 보고서, 1999년): 78.

전통지식의 소유자들은 그들에게 지식재산체제와 지식재산권을 획득, 유지, 집행하는 비용문제 등이 생소하여 과연 지식재산체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널리 표명해왔다. 그러한 운영상 문제들은 아마 위에서 논의된 법적 문제들만큼이나 중요할 것이다. 이는 또한 힘과 관련된 더 커다란 우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지식재산을 사용하고 이용할 재정적, 정치적 힘, 지식재산법과 정책의 진보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 힘, 다른 이에 의한 지식재산 청구에 도전할 힘 등. 전통지식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지식재산체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촉진해야 하는 필요성은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필요는 예를 들면 지식재산을 토착 및 지역 사회에 널리 유포함으로써 지식재산과 자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국내 지식재산기관과 지식재산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 결론

2000년 말 경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들은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를 설립하였다.³³³⁾ 이 새로운 포럼은 2001년 4월 30일에서 5월 3일까지 첫 회의를 가졌는데 상기 위원회 명칭에서 지칭된 세 가지 분야에 대해 국가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정부간 위원회 1차 세션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들은 위 세 주제에 대한 논의를 증진하기 위한 몇몇 사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³³⁴⁾ 이러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유전적 자원과 이익의 공유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루는 지식재산 계약모델조항 마련;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전통지식부문 파악과 현재의 지식재산체제가 이러한 형태의 지식을 처리하는데 충분한 범위의 경험적 정보 수집; 선행 기술로서 전통지식의 위상에 대한 정보 수집; 민속 표현물의 보호와 관련된 국내 경험에 대한 회원국들의 조사, 특히 1982년 WIPO/UNESCO의 '민속표현물의 불법 이용과 기타 유해행동방지에 관한 국내법 모델조항(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의 이행과 관련된 조사 등. 정부간 위원회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은 각각 2001년 12월 10일에서 14일, 2002년 6월 13일에서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열렸다.³³⁵⁾

이러한 논의들이 향후에도 정보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 그리고 전통지식과 민간전승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면 유전적 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민간전승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법과 정책이 모든 국가들의 공동체들을 지지하는 발전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33) WIPO 총회 (2000년 9월 25일-10월 3일).

334) WIPO/GRTKF/IC/1/13 참조

335) <http://www.wipo.int/globalissues/igc/documents/index.html> 참조



제8장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유지

지식재산 체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권리와 절차를 규정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법률적 기반이다. 이러한 법률적 기반은 국제 협약과 협정에서부터 시작되며, 국가의 법, 법령, 규제가 만들어지는 각국의 국내 입법 절차로 이어진다. 두 번째 요소는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는 기관과 기구이다. 여기에는 법원, 세관, 경찰 등 기관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집행 뿐 아니라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국내 및 지역 특허청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유지가 포함된다.

각국의 특허청(IP Office, IPO)은 두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취득 체계의 관리를 담당한다.³³⁶⁾ 어떤 종류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지가 주요 경제 정책의 문제이다. 두 번째 요소와 관련된 비용은 권리의 취득과 유지에 드는 행정 비용과 권리 침해시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적, 사법적 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본 뒤 권리의 취득과 유지의 경제적 측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지식재산권 제도의 집행 문제는 9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 제도의 이용자들이 지식재산권의 출원, 취득, 유지에 드는 비용을 줄여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특허청의 설립과 유지에 드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최근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자 상거래의 출현 및 시장과 무역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고자 함에 따라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특허청에게 있어 비용 절감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번 장에서는 특허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몇 가지 대안들에 대해 한 가지씩 짚어 보고자 한다.

● 특허청의 조직과 구성

각국 특허청의 조직과 구성은 서로 상이하며 거의 모든 국가가 자기 나라만의 독특

336) 파리 협정(Paris Convention)하에서, 협정의 모든 당사국(2002년 7월 15일 현재, 163개국)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허청을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³⁷⁾ 구조가 이렇게 다른 만큼 각국 특허청의 역할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일부 국가의 특허청은 사업 등기소(프랑스의 경우처럼)³³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경쟁 방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도 하며(페루의 경우처럼)³³⁹⁾, 일부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거나(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특허권 관리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한 가지 경향은 특허청이 국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제도적, 재정적 독립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직접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재정을 책임질 수 있는 기구나 기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일본, 멕시코, 페루,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 특허청은 재정적 독립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라 해도 특허청은 여전히 정부의 정책 조율을 받게 된다.

특허청의 독립이라는 개념과 관련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이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적 자립을 통해 특허청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하며 집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은 특허, 상표 등록 및 다른 출원서를 통해 얻은 매출을 사용해 대국민 활동, 전자 출원(e-filing), 심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 IT 데이터베이스 등 특허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특허청이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지식재산 개발을 촉진한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개발을 격려함으로써, 특허청이 중소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특허청은 기업들의 광범위한 요구와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부응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결국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져 수수료를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허청은 보다 민첩하게 정책 및 실질적인 문제

337)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Ministry of Industry (프랑스), Ministry of Justice or Law (독일 및 싱가포르), Ministry of Commerce or Economics (미국과 아르헨티나), 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Tourism (브라질). WIPO, Christine Perrot,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and Websites of National IP Offices, WIPO/CEIP/PI/SB/99/20, 1999. 각국의 특허청에 대한 링크는 <http://www.wipo.int/news/en/>에서 제공한다.

338) <http://www.inpi.fr/inpi/html/quelqmots/index.htm>

339) <http://www.indecopi.gob.pe>

들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법률적 또는 행정적 승인을 받지 않고도 출원 기관의 수입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낮추거나 대상별로 차등을 두는 유연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할 수도 있다. 국가의 지식재산권 정책과 목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특허청의 의무와 유연성과 민첩성이 조직에 제공하는 이점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각국은 이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재정적 독립과 정책적 협의간의 올바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새로운 과제

도표 8.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 변화가 빠르고 제품 주기가 짧아지는 시대에는 특허와 상표를 부여하는 과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점차 커지게 된다. 특히, 혁신이 매우 놀라운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리한 특허 부여 과정은 기술 혁신과 창의성 증대라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잠재력을 방해할 위험도 있다.

지식재산권 체계는 효율성과 완벽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고 대응력을 높여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강화해 기업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많은 특허청이 보다 신속한 특허 부여, 직원 보강, 출원과 심사과정의 전산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³⁴⁰⁾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340) 한국에서 특허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1998년 28개월에서 1999년 24개월로 줄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a) 심사관의 대폭적인 충원 (b) 선행기술 조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외부의 선행 기술 조사 기관에 위탁 (c) 실용신안의 경우 신속한 등록 시스템 도입 (d) 우선 심사 제도의 대상을 확대. 특허와 실용신안을 신속하게 부여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용성과 기업계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으며,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http://www.kipo.go.kr/ehhtml/eNewB01.html>

도표-8.1 특허청에 대한 수요 증가

Need for speed

Growing need for expeditious decision-making, as technical changes and product life cycle speed up

속도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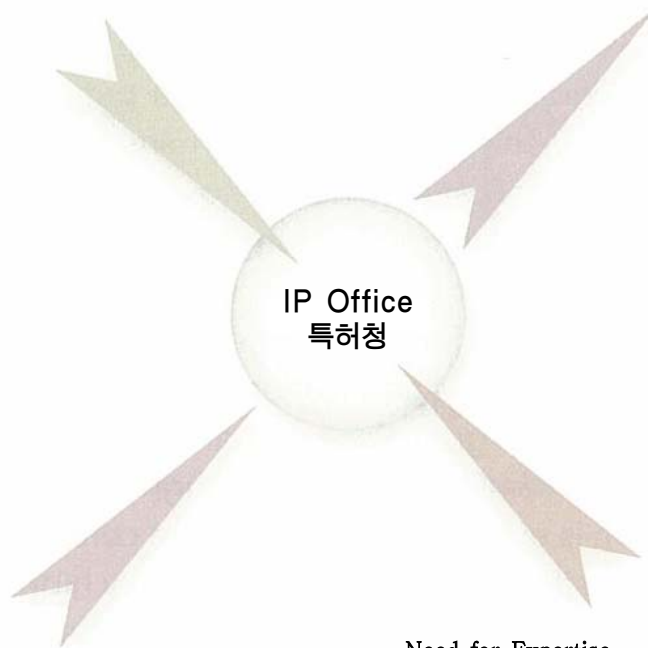
기술 변화가 빨라지고 제품 주기가 짧아지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한 요구 증가

High Quality of Decisions

Consistency of decisions with internationally harmonized standards

높은 품질의 의사결정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의 일관성



More Filings

An increasing number of applications

출원 증가

출원건수의 증가

Need for Expertise

More complex inventions to examine and more information to search

전문성 요구

복잡한 발명품 심사 건수 증가 및 조사대상 정보의 증가

● 특허

출원인이 지불하는 비용 분석

수수료

특허권 보호 및 특허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출원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몇 개의 대규모 특허 시장에서 하나의 신기술 보호를 신청하고 유지하는 데는 적게는 미화 10,000 달러에서 미화 100,000 달러(특허 주기 전체에 걸쳐)정도가 소요된다. 이러한 수치는, 만일 많은 국가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더 올라간다. 자국의 언어로 출원서류를 준비하는 것과는 별도로, 출원서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비용, 수 년간의 연차 등록료, 많은 나라에서의 변리사 고용 비용이 전체 비용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허청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초기 출원 수수료, 검색과 심사를 위한 비용, 설정 등록료(grant fee), 연차 등록료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최대 기간동안 특허를 유지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특허 기간 만료까지 특허권자에게 높은 연차 등록료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몇몇 국가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많은 “잠자고 있는 특허”를 공공 분야에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특허권 보유자의 상업적 이해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많은 국가가 예상했던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 (도표- 8.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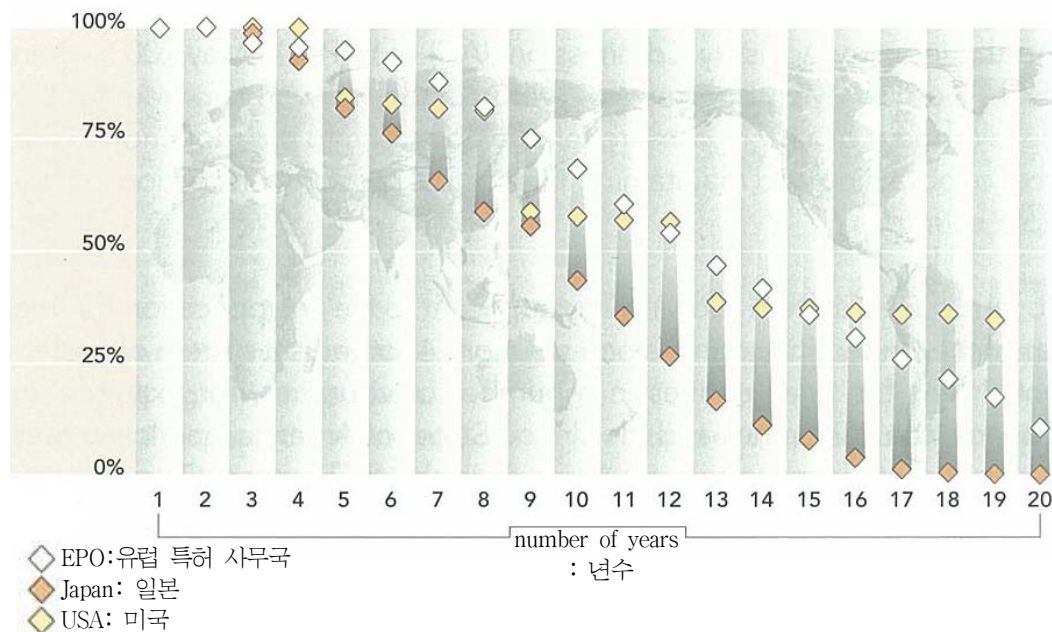


도표- 8.2 3대 특허청이 부여한 특허의 유지

출처: 3대 특허청 웹사이트 <http://jpo-miti.go.jp/saikine/tws/tsr99/graph433.htm>.

번역 비용

특허 비용의 또 다른 카테고리는 특허 출원 시 번역과 관련이 있다.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은 공동체 특허(Community Patent) 도입을 통해 번역 비용(현재 총 특허 비용의 25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됨)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2000년 7월 5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공동체 특허를 도입해 발명가들에게 유럽 연합 전체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단일 특허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유럽에서 발명품에 대한 특허 비용을 줄이자"는 것으로 특허, 번역 요구 사항을 줄일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³⁴¹⁾ 또한, 번역 비용은 외국에서 특허 출원을 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문제는 이번 장의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세계 3대 특허청(표- 8.3 참조)에서의 총 특허 비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때 왜 취득 비용이 너무 높다고 불평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2000년 5월 WIPO가 주최한 산업 자문 위원회(Industry Advisory Commission, IAC)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제기되어 왔다. IAC는 "여러 나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WIPO의 회원국들이 실무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³⁴²⁾

어떤 출원인이든 수수료만 내면 출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도입(영국의 경우처럼)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캐나다, 필리핀, 미국같이 몇몇 국가에서처럼 작은 기업들에게 유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PCT 시스템에서처럼 몇몇 국가에서 출원인에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보다 공정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³⁴³⁾ 제도 내

341)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Proposes the Creation of a Community Patent, 2000년 7월.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intprop/indprop/2k-714htm

342) WIPO, Industry Advisory Commission, Report of the Third Meeting, 2000년 5월 4-5일.

343) 1999년 1월, 대한민국 특허청은 업무 협력 협약(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을 한국변리사협회(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 하에서, 변리사들이 중소기업에게 최초의 특허 출원 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허청 보도 자료, 1999년 12월. <http://www.kipo.go.kr/ehtml/eNewB01.htm>

에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대학이나 공공 연구소 같은 비영리 단체에게 특허청이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특허 시스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된다.

변리사 비용

또한, 출원인은 변리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비용을 지불한다. 변리사는 복잡한 특허 문서와 다양한 특허법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기술적 전문지식과 법적 지식을 결합해 특허 출원인이 특허 출원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존재이다. 변리사 수수료가 나라마다 크게 다를 수 있지만, 특허권 보호에 있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국가, 일본, 미국에서 특허 변리사 수수료는 각각 평균적으로 총 특허권 보호 비용의 34퍼센트, 51퍼센트, 55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8.3 참조).

표-8.3 EPC, 미국, 일본에서 특허권 확보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
(미 달러화 기준)

	Filing and search fees	Examination fees	Grant fees	Renewal fees	Translation cost	Attorney fees	Total
EPC*	758+498	1340	669	15,725	11,800	15,920	46,810
United States: 미국	645	n/a	1,135	2,560	n/a	5,340	9,680
Japan:일본	197	1,030	797	5,475	n/a	7,920	15,419

*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수치는 8개 회원국에서의 “전형적인”유럽 특허(European Patent)를 기반으로 했다.

출처: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유럽 위원회는 2000년 7월 공동체 특허(Community Patent) 창설을 제안했다.

● 특허청 운영과 관련된 비용

개요

출원인이 지불하는 수수료가 특허청 운영의 주요 수입원이다. 특허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합리화하며 특허청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특허 시스템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 운영 시 행정 비용은 표- 8.4에서 알 수 있듯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표- 8.4 특허의 출원에서 취득까지의 과정과 비용의 영향

시간의 순서에 따른 과정	비용의 영향		해결책 제안
	출원인	특허청	
(a) 처리 및 사전 심사	오류 교정 작업	사전 심사를 위한 자원	전자 출원(E-filing*) (데이터 입증 및 적합성 조사), PCT, 합의된 절차(PLT**)
(b) 관련 기술 조사(선행 기술 조사)	특허 설명서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조사 업무	데이터베이스 검색, 심사관의 조사 업무	PCT 조사 보고서, 지역이나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특허 조사 데이터베이스
(c) 실체 심사	변리사 비용	심사관의 업무	심사관 간의 지역적 또는 국제적 협력, 결과의 인정
(d) 특허 공표	없음	서류상 특허의 인쇄와 교부	인터넷 공표

*전자 출원 (Electronic filing)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사무 자동화

특허의 출원, 조사, 심사 절차의 자동화로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온라인 출원 과정으로 종이없는 환경을 운영해 온 일본 특허청(JPO)의 경험은 출원서의 전자적 처리를 통해 (a), (c), (d)로 명시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전자적으로 정보를 수집, 저장, 검색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사례-8.5 참조). 하지만, 자동화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대다수의 특허청이 자동화된 출원 메커니즘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시장의 수요

특허 주기의 시작은 국내 또는 지역의 특허청에 특허 보호를 위한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특허권에 대한 수요(특허 출원서의 수로 봤을 때)는 1990년대 하반기에 크게 증가했다(예를 들어, 1994년 2,306,840건에서 1998년 5,806,570건으로 152퍼센트가 증가했다³⁴⁴⁾).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은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의 우선순위 규칙(priority rule)을 재확인했다. 많은 나라에서 특허 보호를 원하는 사용자는 최초국가에서의 출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출원서를 서류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출원서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특허청에 여러 장 복사해서 준비해야 하는 출원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가 사용되고 있다. PCT 및 전자 출원 시스템(e-filing system)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식심사

일반적으로 심사는 방식심사(formal examination)와 실체심사(substantive examination)라는 두 종류의 심사로 나뉜다. 특허청은 방식심사를 통해 출원서가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특허가 적절한 형식으로 초안이 구성됐는지, 필요한 수수료가 지불됐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출원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출원인에게 반송되거나 출원서가 특허신청이 가능한 분야가 아니라면 기각되기도 한다.³⁴⁵⁾ 최근 전자 출원(e-filing) 소프트웨어를 통해 출원인은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고 특허 출원서가 규정이 제시하는 형식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출원 과정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출원을 채택한다면 컴퓨터 기반 방식심사를 통해 출원인과 특허청 모두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344) WIPO, Industrial Property Statistics (Geneva, 1999), Trilateral Cooperation, Trilateral Statistics Report (1999): 1.

345) WIPO, Alternatives to the Substantive Examination of Patent Applications WIPO/ARIPO/IP/96/2, 1996.

조사 및 실체 심사

특허청은 실체심사를 통해 출원서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심사하게 된다. 해당 기술이 새로 발명된 것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선행 기술 조사(prior art search)를 포괄적이고 완벽해야 수행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특허 심사관이 해당 발명품이 속한 기술분야와 관련된 기존의 문서를 모든 언어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신청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성(patentability)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언어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 정리, 저장 및 처리할 수 있는 특허청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 관련 문서만 해도 거의 50,000,000건에 달하며 매년 1,000,000개의 새로운 문서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과학 관련 문서들 역시 비슷한 속도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언어로 된 모든 문서를 검토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심지어, 직원이 1,000 명이 넘는 규모가 큰 특허청도 몇 개의 출간물에서 나오는 몇 개의 언어로 된 정보밖에 다룰 수 없는 실정이다.³⁴⁶⁾

특허청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최신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작업이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 미국 특허청(USPTO) 등 3대 특허청(Trilateral Office)은 검색 기능을 갖춘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에 대부분의 IT 투자(전체 예산의 20퍼센트~30퍼센트를 차지함)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1980년 초기 3대 특허청 대표들이 모여 3자 협력(Trilateral Cooperation)을 시작한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특허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함이었다. 검색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하는 문서 요건과 기술적 능력이 있는 심사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실체심사 제도를 구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1998년 말, 거의 4백만 개의 특허가 유효한 상태였다. 일단 출원서가 받아들여지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각 특허청이 채택하는 심사절차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EPO에서는 특허 출원 신청 건수 중 64퍼센트가 실제로 특허를 부여 받게 된다. JPO와 USPTO의 경우 그 수치는 각각 64퍼센트와 71퍼센트다. 뒤에 더 논의 할 문제이지만, 이 특허 부여 비율은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나라들에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³⁴⁷⁾

346) Ibid.

347) Trilateral Statistical Report 1999.

출원인(출원인이 과거에 자신만 알았던 기술을 공개)과 특허청간의 현재의 업무 분담은 특허청만이 포괄적인 기술 문서를 보유할 수 있었던 몇 십년 전에 굳어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에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첨단 검색엔진을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제 특허청이 관련 기술 정보를 검색하는 데 있어 출원인과 이해관계자 또는 잠재적 경쟁상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 논의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인력

특허 출원서는 내연 엔진, 생명공학 발명품, 스포츠 장비, 전자 장치, 악기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실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전 분야의 발명품을 다루고 있는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에는 70,000 개의 기술 카테고리(또는 그룹)가 있다.³⁴⁸⁾ 실제 심사에는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최첨단의 기술적 발전을 잘 알고 있는 매우 높은 자질의 심사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력은 곧 대규모 인건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표- 8.5는 각국의 특허청 운영비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 경제적 이점, 기존의 역내 협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 표는 인구가 많은 국가와 똑같은 수준의 심사를 하기 위해 인구가 적은 국가가 보다 높은 비중의 GNP와 공공 분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348) <http://www.wipo.org/eng/pressupd/2000/upd92.htm>

표 - 8.5 각국의 특허청 인력과 예산

각국 특허청	직원 수		A- 특허 출원 신청 (PCT 지정 포함)	B- 특허청 연간 예산 (백만 달러)	C-인구 (백만명)	D- 1인 당특허청 예산 (미 달러화)
	심사관	총 직원 수				
USPTO	3,000	4,700	262,787	863	275	3.13
EPO (20개국)	2,400	4,400	121,750	513	420	1.22
일본	1,100	2,500	437,375	844	127	6.64
러시아 연방	900	27,00	58,532	14.3	145	0.1
한국	382	1,002	121,750	120	47	2.55
중국	800	1,500	114,830	-	1280	-
브라질	150	610	50,866	42	170	0.24
스웨덴	300	1,000	149,493	69	9	7.6
호주	196	830	57,706	42	19	2.2
캐나다	125	-	65,682	42.1	31	1.35
스페인	130	600	147,889	45.3	39.5	1.13
멕시코	60	611	44,727	25.5	99	0.25
이집트	25	146	1,682	1	66	0.015
모로코	3	60		1	28	0.036
싱가폴	0	85	44,948	4.9	4	1.2

주: 심사관 수에는 방식심사(formality check)를 담당하는 직원도 포함될 수 있다. 특허청이 특허 뿐 아니라 등록 상표나 의장 등록 같이 산업재산권 업무도 다루는 경우, 수치는 총 직원의 수와 모든 서비스를 위한 예산이다.

출처: IMF, World Bank, 3대 특허청 웹사이트 (www.european-patent-office.org/tws/twsindex.htm) 및 특허청들의 연례 보고서. 수치는 2001년 9월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사느냐 죽느냐

실체심사(substantive examination)나 단순한 등록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동시에, 몇몇 대안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 (사례-8.6 참조) 실제 심사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실체심사를 폐지하기를 꺼려한다.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허의 실체심사는 특허가 특허성(patentability)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 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대안적인 심사 제도를 선택해 왔다. 일부 국가의 특허청은 선행기술 조사(prior art search)와 함께 이른바 등록 시스템으로 불리는 제도를 마련해 왔다. 이 제도 하에서, 특허청은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보고서를 마련해 출원인과 일반 대중에게 이를 공개한다. 일부의 경우, 심사관 수가 적은 소규모의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를 실제 조사를 하기에 더 적절한 대규모 특허청에게 비용을 내고 위탁하기도 한다. (예: 싱가포르의 선행기술조사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에 위임하고 있다³⁴⁹⁾) 또 다른 대안은 방식심사(formal examination)만 실시하고 선행기술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 전체에서 비용 흐름을 봤을 때, 단순 등록 제도를 도입하면 특허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사법 기관이 특허의 유효성 등과 관련한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만일 소송이 제기되면, 특허의 소유자와 이 특허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간의 이해 조정을 법원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직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특허의 강도(intensity)에 대한 특허권자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출원인과 경쟁자들이 특허의 확실성 부족을 법정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점과 업계가 취약한 특허 때문에 불공정 경쟁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단순 등록 제도는 기술 개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절차가 단순해지면, 일단 부여된 특허에 대항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 대항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발명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의 장점과 상관없이 출원서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당사자가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 그 결과, 강도가 약한 특허의 발급을 용인함으로써 발명을 촉진한다는 특허 제도의 목적 자체가 약화될 수도 있다.

349) www.ipaustralia.gov.au

[사례- 8.6] 실체 심사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 슬로베니아의 사례

슬로베니아 공화국은 1991년 6월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새로 설립된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제도 설립에 중점을 두었다. 슬로베니아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Slovenia)과 함께 채택된 헌법에 의해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1992년, 국내 실체심사 없이도 효과적인 특허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과 함께 새로운 슬로베니아 “산업재산법(Law on Industrial Property)” 이 채택되었다. 이 새로운 법을 기반으로 PCT 국제 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 및 국제 예비 심사 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uthorities)인 다른 나라의 특허청이 제공하는 조사 및 심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관들이 제공하는 보고서는 해당 기술이 특허 만료 기간까지 20년 동안 특허성(patentability)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1993년 7월, 산업재산법(Law on Industrial Property)이 채택된 지 1년 후, 슬로베니아는 EPO와의 최초의 확대 협정(Extension Agreement) (EPO가 허용한 특허의 유효성을 슬로베니아까지 확장하는)에 서명했다. 이는 유럽 특허 제도(European Patent System)가 다른 많은 중유럽 및 발트해 국가로 확대되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시작이었다.

출처: Bojan Pretnar, *Protection of Inventions in Slovenia IIC*, 24, No. 1 (1993)

대안- 심사 결과의 사용 및(또는) 인정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는 출원인이 출원서의 내용을 수정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지정한 다른 국가의 특허청이 특허를 부여한 것과 똑같은 출원서를 작성하면 출원인에게 특허를 부여한다 (수정 실체심사 제도로 알려진). 이 제도를 통해 특정 특허청의 결과를 신뢰함으로써 조사 및 심사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업무를 하는 특허청간의 협력을 통해 특히, 똑같은 출원서를 여러 나라에서 심사하게 되는 경우, 실제심사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나 지역을 제외하고 특허청이 접수하는 출원서의 대다수는 외국인이 신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통계는 깜짝 놀랄 만한 수치를 제공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거의 99퍼센트의 출원서를 제출하고 있다.³⁵⁰⁾ 실제로, 하나의 출원서가 여러 국가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한 나라에서 마련한 출원서의 특허성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다른 나라의 특허청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PCT 설립의 근본 취지이다. 특허청은 다른 나라의 특허청이 마련한 심사 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DNA 배열순서에 대한 특허 출원서가 심사 중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는 단일 특허이지만, 일본 특허청은 똑같은 기본 출원서가 이미 제출되었는지 또는 그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미화 9,100 달러를 들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유럽에서 똑같은 과정을 중복되어야 한다면 매우 낭비적인 일이다. 한 나라의 특허청이 선행기술 조사를 했다면, 다른 나라의 특허청들이 이러한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일본에서 일반적인 특허 출원 비용은 현재 미화 191 달러이기 때문에, 일본 특허청이 만일 특허성 심사만을 위해 미화 9,100 달러를 써야 한다면 비용상 균형이 전혀 맞지 않게 된다.”³⁵¹⁾

지금까지 심사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한 다자간 협정을 맺기 위한 노력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 없었다. 대규모의 특허청들이 가장 어려운 난관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특허법과 기준의 통일, 공평한 업무 분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심사관들 간의 의사소통, 국내 및 지역 사용자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지역별 제도

세계화, 기술의 진보, 기술 및 기업간의 융합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법안조율 및

350) WIPO의 1998년 통계를 기반으로 계산됨.

351) Hisamitsu Arai,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Twentieth Century: The Japanese Experience in Wealth Creation* (Geneva: WIPO, 1999), 60.

특허청 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단일화된 관행을 기반으로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자원의 공유, 비용의 확보, 공통의 특허청과 법정 설립, 심사 데이터베이스 공유, 지역 기관들 내에서 특허 심사의 인정, 더 나아가 국제 특허청 설립 등이 있다. 현재, 지역 협정으로는 안데스 공동체 국가의 지역 통합 협정(Sub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 of the Andean Community Countries),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앙 아메리카 협정(Central Americ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북미 자유무역 조약의 17장(Chapter 17 of the North American Free-Trade Agreement)³⁵²⁾ 등이 있다. 특정 국가간의 지역간 협력을 통해 특허의 취득 과정을 촉진하고 각 개별 국가의 인력과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지역 특허청이 설립되어 왔다. 현재 운영중인 지역별 특허청은 표- 8.7에 나타나 있다.

표-8.7 지역별 특허청

특허청	설립년도	회원국	본부	지식재산권의 종류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³⁵³⁾	1962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15개국	카메룬의 야운디(Yaounde)	산업재산권
아프리카 지역 산업재산권 기구 (African Regional Industrial Property Organization) ³⁵⁴⁾	1976	영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14개국	짐바브웨의 하라레(Harare)	산업재산권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³⁵⁵⁾	1977	20개 유럽 국가	네덜란드 헤이그, 독일의 뮌헨과 베를린	특허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 ³⁵⁶⁾	1994	독립 국가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1개국	러시아 연방 모스크바	특허
걸프 협력 협의회 특허 사무국 (Patent Office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1999	걸프지역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특허

352) WIPO,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WIPO/CEIPI/PI/SB/14, 1999.

353) Hamidou Kon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WIPO/IP/HRE/98/13.Rev.1, 1998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제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역내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 때문에 지역별 특허 시스템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별 지식재산권 제도는 지식자산을 경제 발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에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해결책

현재의 세계 경제 활동의 속도를 따라 잡기 위해 지역별 협력이나 몇몇 국가 간의 다자간 협력이 과연 예측 가능한 미래에 전 세계 170여 개국까지 모두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1970년 6월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 WIPO 회원국이 PCT를 채택했을 때부터 이미 국제 특허 제도의 설립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현재, WIPO 회원국들은 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보 공유가 IT와 통신 분야의 진보로 인해 크게 촉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을 통해 각국은 보다 빠르고 저렴한, 종이 없는(paperless) 방식으로 협력을 증진하고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PCT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PCT 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특히, 경제 및 지식재산권 활동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화되었던 1990년대에 출원서 접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002년 8월 현재, 117개국이 PCT를 채택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완벽한 국제 특허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현재의 PCT 제도를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PCT는 특허 출원서를 접수한 특허청이 사전 심사를 오직 한 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각국 특허청의 업무량을 혁신적으로 줄여 주었다. 또한, PCT를 통해 각국 특허청은 PCT 공식 기관으로 인정한 특허청(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연방, 스페인, 스웨덴, 미국의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EPO))들이 딱 한 번 실시한 선

354) Mzondi Chirambo, The African Regional Industri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 An Example of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WIPO/SR/PRE/00/8&14, 2000

355)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

356) <http://www.eapo.org>

행 기술 조사와 실체 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PCT하에서, 이는 이른바 국제 조사와 국제 예비 심사로 각각 불린다).³⁵⁷⁾ PCT 제도를 통해 출원인은 가능한 경우 국제 조사와 국제 예비 심사가 이루어지는 몇 달간 국내 및 지역 특허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는 제품의 상업화 가능성을 초기에 탐지하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시장의 가능성을 알아본 뒤 사업 잠재력이 낮은 국가에서 PCT 출원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번역 비용과 다양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PCT는 해외 특허출원의 전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시스템을 보다 단일하게 통합시켜 부담을 덜어주게 주게 된다.

하지만, PCT는 법적 효력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현 PCT 하에서, 특허 부여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발명품의 특허성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각국 및 지역 특허 기관에 맡겨진다.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는 권위있는 보고서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이나 지역의 특허 기관은 보충 조사(complementary search)나 심사를 한 번 더 실시해 예비 심사의 결과를 확인한다. PCT 제도 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회원국이 과연 PCT 공식 기관과 이들의 제공하는 심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2001년 10월, WIPO는 국제 특허 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략적 청사진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논의를 시작했다.³⁵⁸⁾ “WIPO 특허 의제(WIPO Patent Agenda)”라고 알려진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장단기적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현재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해 있는 특허청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PCT 개혁과 특허실체법(substantive patent law) 통합 등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노력을 보완 및 강화하게 될 것이다. WIPO 특허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 특허 제도에 대한 회의가(Conference on International Patent System) 2002년 3월 25일~27일 제네바에서 WIPO의 주최로 열렸다.³⁵⁹⁾ 국제 특허 제도가 당면한 주요 이슈와 문제들을 논의하고 제도 사용자들로부터 더 많은 의견과 반응을 듣기 위해 마련된 회의였다. WIPO 사무국은 WIPO 총회(WIPO General Assembly)에서 발표할 보고서에 이 회의의 토론 세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

357) PCT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http://www.wipo.int/pct/en/index.html> 에서 제공한다.

358) www.wipo.int

359) <http://patentagencda.wi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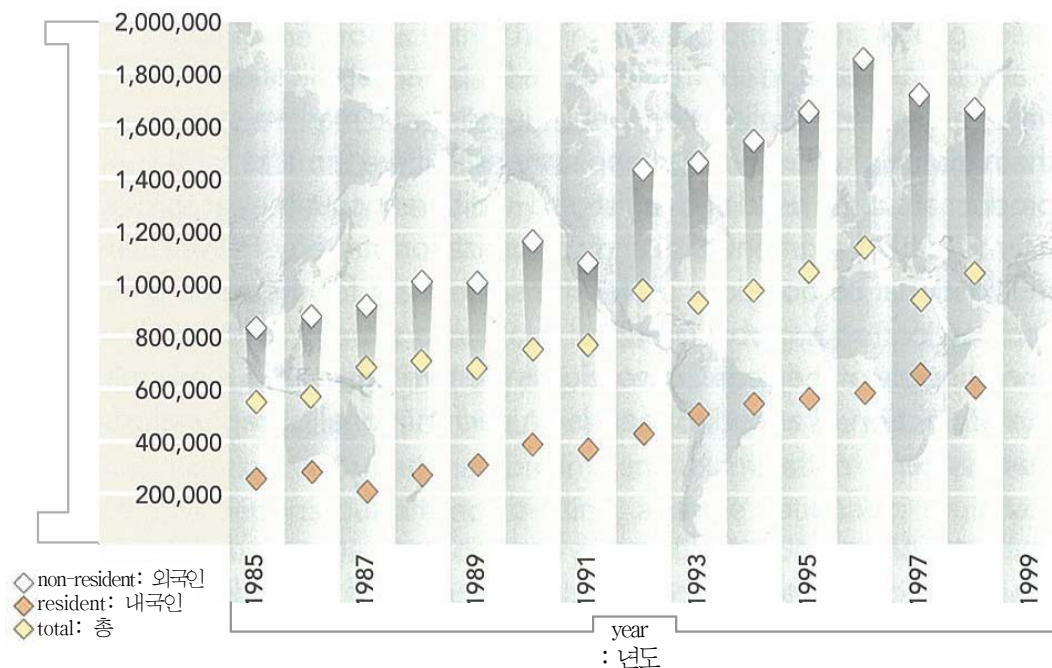
상표

국내에서 세계로

상표와 관련된 통계는 특허 출원과는 대조적으로 전 세계 출원의 대다수가 국내 시장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내국인 출원이다. 기업의 시장 세분화(segmentation) 및 맞춤화(customization) 전략에 따라 동일 제품이지만 나라마다 다른 상표가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등록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동일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동일한 상표를 얻고자 한다.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의 원칙은 상표의 속지주의(territoriality)이다. 즉, 상표의 보호는 각국이나 지역의 상표 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눈부신 기술 발전과 급속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상표의 기능과 목적 역시 확대되어 왔다. 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표의 사용과 등록은 지난 10년 여 동안 크게 증가해 왔다. 시장 통합과 세계화를 통해 국경을 넘어 상표가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시장에서 자사의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외국인 출원은 도표-8.8 참조).

도표- 8.8 전세계 상표 총 출원건수



출처: WIPO

출원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분석

특허 취득 시 보다는 덜 엄격한 심사 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표권 취득 과정에 드는 비용은 특허 취득 비용보다 낮다. 표- 8.9는 전 세계 각국에서 상표 등록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목록을 보여 준다.

표- 8.9 각 국의 상표 등록 비용 (미 달러화 기준)

국가/지역	등록 신청서 접수 및 심사 비용	등록 증명서(certificate) 비용	갱신 비용
알제리아	**68.62	13.71	96.00
아르헨티나	100.20	-	100.20
캐나다	**99.70	132.95	199.40
이탈리아	**71.80	-	47.80
일본	179.90	-	1,293.00
한국	**50.75	164.75	199.80
멕시코	124.15	-	144.80
OHIM*	903.80	1,019.70	2,317.00
싱가폴	175.25	-	143.20
영국	292.90	-	292.90
미국	325.00	-	400.00

* 유럽 상표·디자인청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Trademarks and Designs) of European Union)³⁶⁰⁾

** 단일 클래스(class)에서의 단일 상표를 말함. 2001년 1월 현재 각국의 비용. 환율은 2001년 1월 미 달러화 기준.

등록상표청 운영

상표를 사용이나 등록을 기준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현재 국가가 다양한 상표 제도의 역사적인 발전을 반영하고 있는 상표 등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완벽한 상표 보호는 오직 유효한 등록을 통해서만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상표등

360) OHIM의 업무는 유럽 연합 내에서 상표와 의장을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것이다. 유럽 연합 내의 산업재산에 대한 등록 절차를 수행하며, 산업재산의 등록을 공개하고, 등록된 상표 및 의장이 무효하다는 요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법원과 이를 공유한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oami.eu.int/en/role/brochure/br1en09.htm> 에서 제공한다.

록의 속지성(territoriality) 때문에 각 국가나 지역의 상표 기구의 주요 역할은 상표 등록 제도의 설립과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³⁶¹⁾ 상표 등록을 위한 출원서는 적절한 국내 또는 지역 상표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특허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 요구조건은 일반적으로 2단계로 나뉜다. 먼저, 신청서가 정식으로 마련되었으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심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뒤, 심사는 보다 주관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 제안된 상표의 실체적인 요소 심사에 집중하게 된다. 상표등록요건(상표가 등록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요건들)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표준화 되어 있다. 공공의 이익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요건들과 함께, 특허청은 신청 상표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특허청에 신청된 경력이 있는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 검토하게 된다. 상표간의 이러한 유사성 심사는 그 나라나 지역에서 유효한 상표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특허 심사 보다는 복잡성과 시간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다.

표 - 8.10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와 이와 관련된 비용 내역

시간의 순서에 따른 과정	비용 내역		해결책 제안
	신청	특허청	
(a) 처리 및 예비 심사	변리사 수수료, 규정 준수 확인	예비심사를 위한 자원	전자 출원(e-filing) (데이터 검증 및 형식 검사 (conformity check)),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 통일된 절차(상표법 조약: Trademark Law Treaty)
(b) 조사 및 실체 심사	해당사항 없음	조사 데이터베이스, 심사관의 조사 업무	전자 상표 등록
(c) 등록 및 증명서 발급	변리사의 수수료	상표등록 공보(Trademark Gazette)를 문서로 인쇄 및 전달	심사관들 간의 국제 협력, 결과의 인정
(d) 갱신	수수료 지불	등록 업데이트	인터넷 출판(IPDL)

361) 파리 협약은 당사국이 상표 등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의무 규정을 도입했다.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면, 상표 보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는 초기 보호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증명서가 발급된 국가나 지역에서 10년 정도이다. 상표는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갱신이 가능한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초기 보호 기간과 같다. 법적으로 갱신 과정에 필요한 요건은 갱신 수수료 지급, 활발한 사용의 증거, 갱신 신청서 등이 있다.³⁶²⁾ 이 과정은 특허의 경우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적다.

국제 시스템

상표와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사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다국적, 국제적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상표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왔다. 예를 들어, 경제적 통합과 상품과 서비스의 국가간 자유 이동을 확대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역내 상표 기관을 채택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네룩스 상표청(Benelux Trademark Office)와 유럽 상표·디자인(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Trademark and Designs, OHIM)-European Community trademark office)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기관들이 제공하는 주요 혜택과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의 보편적인 적용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러한 국제 시스템은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해 사업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별도로 상표 등록(및 갱신)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출원인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각 국가나 지역에 별도로 각각 상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WIPO 회원국들은 1994년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TLT)를 채택했다. TLT는 상표 등록 과정의 단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시스템으로는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와 아프리카 지역 산업 기구(African Regional Industrial

362)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Article 46, Trademarks Act (R.S. 1985, c. T-13) of Canada (<http://laws.justice.gc.ca/en/laws/T-13/91316.html>); Article 7, Trademarks Law 32/1988 of Spain (<http://www.oepm.es>); 또는 Sec. 146,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http://www.dti.gov.ph/iac-ipr/IP_Legislations/ra8293.html).

Organization, ARIPO)가 있다. 이들은 회원국 내에서 공통의 절차를 이행하고 법안 시스템을 단일화하는 중앙집중식 등록 시스템을 채택해 협약에 조인한 당사국들에서 통합된 보호 기반의 마련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표를 위한 국제적인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두 개의 국제 협정이 WIPO에 의해 체결되었다. 이른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³⁶³⁾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1891))과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1989))이다 (이 둘을 합쳐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이라고 부른다).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시스템은 마드리드 시스템의 협정 당사국인 국가에 있는 개인과 기업 또는 당사국의 거주민이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다(2002년 2월 현재 당사국은 70여 개국이다).

상표 등록 과정은 각 국의 상표 등록소에 상표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등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출원인은 직접 WIPO에 출원서를 보낼 수 없으며 각 국의 상표 담당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정은 마드리드 시스템 하에서 상표 등록을 위한 필수조건(sine qua non)이다. 일단 이 초기 등록 과정이 끝나면 WIPO가 국제 등록소(International Register)에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 보호가 요청된 모든 국가에 등록을 알리게 된다. 각 국은 기존 권한이 존재한다거나 상표가 자국의 요구조건과 충돌이 되는 경우, 상표 담당 기관을 통해 보호를 거부할(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권리를 갖는다. 지정된 시간제한(12-18개월)내에 거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상표 보호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부여된 상표 보호는 각국의 특허청에 직접 등록된 다른 상표 보호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국제 등록 시 보호의 초기 기간은 10년이다. 정해진 수수료³⁶⁴⁾를 지급하면 매 10년 별로 기간이 갱신될 수 있다.

363) WIP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Objectives, Main Features, Advantages, Publication No. 148 (<http://www.wipo.int/publications/marks/418/418.pdf>).

364) 각 국가의 수수료 표와 목록은 <http://www.wipo.int/madrid/en/index.html>에서 제공한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장점

국제 등록은 상표의 소유주에게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자국의(country of origin)의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위한 출원서를 제출한 뒤,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출원서를 작성해 한 번의 수수료만 내고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의 상표 담당 기관에 여러 개의 언어로 된 출원서를 각각 제출하고 그 때마다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등록 이후의 변화, 즉, 소유주의 이름이나 주소의 변화 또는 소유권의 변화(전체 또는 부분)나 적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목록 제한 등의 변화를 한 번의 절차와 한 번의 수수료 지급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만료일과 갱신을 위한 등록 과정도 한 번만 신경 쓰면 된다.

또한, 마드리드 시스템 하에서의 국제 등록으로 각국 특허청 역시 혜택을 입는다. 형식 요구조건에 맞는지 국제 출원서를 한 번 더 심사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업무를 WIPO의 국제부(International Bureau)가 이미 마쳤기 때문이다. WIPO의 국제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표를 출판한다. 또한, 특허청은 마드리드 시스템 하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WIPO의 국제부가 상표 출원서와 관련해 얻은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이 계약 당사국에게 배정 및 지급된다(표-8.11 참조). 매년 이러한 수수료가 계약 당사국에게 배포된다.³⁶⁵⁾ 2001년 한 해동안, WIPO의 국제부는 접수한 수수료 중 7천 2백만 스위스 프랑(CHF)을 배포했다. 또한, 마드리드 동맹(Madrid Union)이 2년에 한 번 계정을 마감할 때 수익이 발생하면, 계약 당사국에 이익금을 나눠서 지급한다.

365) WIP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Objectives, Main Features, Advantages, 단락 43

표-8.11 마드리드 의정서하에서의 각국의 수수료

계약 당사자	국제 출원과정이나 국제 등록 이후의 지정	갱신
베네룩스	3개 클래스에 189개, 클래스 1개 추가시 17	3개 클래스에 309, 클래스 1개 추가시 55
중국	1개 클래스에 345, 클래스 1개 추가시 172	1개 클래스에 609, 클래스 1개 추가시 345
덴마크	3개 클래스에 487, 클래스 1개 추가시 124	3개 클래스에 487, 클래스 1개 추가시 124
에스토니아	1개 클래스에 291, 클래스 1개 추가시 104	클래스 개수에 상관없이 291
이탈리아	1개 클래스에 112, 클래스 1개 추가시 37	1개 클래스에 75, 클래스 1개 추가시 37
일본	1개 클래스에 1,139, 클래스 1개 추가시 1,075	1개 클래스에 2,005
싱가폴	1개 클래스에 260	1개 클래스에 183
스위스	2개 클래스에 600, 클래스 1개 추가시 50	2개 클래스에 600, 클래스 1개 추가시 50
투르크메니스탄	1개 클래스에 320, 클래스 1개 추가시 160	1개 클래스에 320, 클래스 1개 추가시 160
영국	1개 클래스에 454, 클래스 1개 추가시 126	1개 클래스에 504, 클래스 1개 추가시 126

주: 모든 수치의 기준은 2002년 5월 기준 스위스 프랑.

● 저작권

저작권 제도는 특허와 상표를 다루는 제도보다는 간단하다. 저작권을 누리고 행사하기 위한 형식절차(등록 및 기탁(deposit) 등)가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³⁶⁶⁾에 의거 법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³⁶⁷⁾는 권한과 이권을 확인 및 입증하고 소송이나 침해 과정이 발생할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재정과 투자를 위해 선택사항으로 등록과 기탁 시설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등록에 대한 통계는 얻기 힘들다. 하지만, 미국의 저작권 사무소(Copyright Off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는 저작권 등록에 대해 기록하고

366) 베른 협정 (Berne Convention), Article 5(2)

367) 예를 들어, 인도, 일본, 한국, 미국

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무척 흥미롭다. 등록과 기탁이 일반적으로 선택사항인데도(베른 협약과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에 의거), 기록이 제시하는 통계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저작권 업계의 활동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2000년에 미 저작권 사무소는 515,612 건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³⁶⁸⁾ 1790년대 창립될 당시부터 2000년까지, 미 저작권 사무소에서 29,131,112건의 등록이 이루어졌다(대부분 기탁된 작품이었다).³⁶⁹⁾ 이는 방대하고 다양한 작품들이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점을 나타내며 문화의 역사이자 한 국가 전체의 창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기록이 공개되어 교사, 학자, 학생, 기업인, 변호사 등 국민 누구나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문화 산업을 통해 얻은 가치와 혜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제 어떻게 문화 산업이 경제 발전,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지 등록과 작품 기탁(deposit of works)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된 것 같다. 관리해야 할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 없이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작품의 등록과 기탁을 위한 단순하면서도 비용효율적인 시스템은 현재 저작권 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다. 지방 작품의 저장 및 카탈로그는 작품을 대중을 상대로 상연하기 위한 작품 라이선싱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내 음악가, 작곡가, 음반 회사, 배급업체의 사업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지방 산업이 국가 전체와 더 나아가 지역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것이다.

● 결론

이번 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획득과 유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논의와 주장뿐 아니라 사실과 통계까지도 모두 지식재산권 시스템이 가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향상과 세부 조율을 통해 최대한 사회의 모든 계층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현

368) 미 저작권 사무소(Untied States Copyright Office), 1999, 2000.

369) 미 저작권 사무소(Untied States Copyright Office)와 Renee Coe.가 자료 제공.

재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하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의 세부 조율을 통해 더 많은 혜택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추세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일이 앞으로 추구해야할 주요 목표 하나로 등장했다. 통일에는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의 동질성 유지가 포함되는 데, 이는 회원국 다수가 동의하고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제 협약 등을 통해 국제적인 합의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 당사국이 늘어나는 데 가운데, PCT에서의 전자출원 체제 마련 노력과 PCT를 보다 선진화된 그리고 유연한 국제 특허 시스템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상표 부분에 있어서는 마드리드 시스템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세계적인 상표권 획득과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WIPO는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항상 확실성, 신뢰성, 일관성을 갖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WIPO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과 회원국이 이러한 WIPO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 산업을 진흥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WIPO의 사명은 21세기와 그 이후까지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 산업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을 지원 및 제공하는 것이다.



제9장

지식재산권의 집행

이번 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지식재산권을 무시하는 이유는 많고 다양하다. 탐욕과 필요, 인식의 부족, 파렴치한 범죄의 의도에서 순진한 실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무시의 범위 역시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작품의 복사에서 수 십만개의 불법 복제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의 상업적 범죄 기업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다. 불법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고(심지어, 잠재적 시장을 죽이기도 한다) 범죄활동이 정당한 투자의 회수를 방해할 때, 지식재산권 소유자와 집행 기관의 이익뿐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집행 메커니즘이 개입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구제책이 없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A right without a remedy is no right at all)”라는 전통적인 관습법의 원칙이 지식재산권의 집행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일 집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국제 협정, 협약, 국내법에 반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의해 부여 및 입증되고 신중하게 정의된 권리와 이익이 완전히 무효화된다. 한 사람의 권리를 집행해야 하는 시험을 받을 때가 바로 그 권리의 가치가 가장 잘 나타나는 때이다. 지식재산권 제도의 실질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가치가 시험대에 오를 때, 즉, 이론, 개념, 의도가 충돌하고 현실, 시장, 인간적인 고려 사이의 마찰이 발생할 때 지식재산권 제도의 실효성과 장기적인 잠재력이 가장 잘 나타난다.

이번 장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몇 가지 문제뿐 아니라 이른바, 위조와 불법 복제³⁷⁰⁾라는 또한 가장 흉악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2가지 형태를 다루고자 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범죄를 다룸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단합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 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그로 인해 사회가 겪는 부정적 영향을 일소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의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370) “위조(counterfeiting)”과 “불법 복제(piracy)”라는 용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정의되고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위조”는 의도적인 상표의 침해이며, “불법 복제”는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 및 그와 관련된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이 다른 종류의 지식재산을 포함하도록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위조와 불법복제가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행위라는 점은 확실하다. 위조와 불법복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명백히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문제의 규모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아보기란 어렵다. 위조와 불법복제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압수한 물품은 전체 시장의 오직 일부에만 영향을 줄 뿐이다. 기업, 가정, 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해 위조와 불법 복제의 규모를 확실히 알아내기 힘들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조와 불법 복제의 성격과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정부 간 기구와 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업계 협회 및 비정부 기구들은 각자의 영역 내에서 사실과 통계에 근거해 불법적인 위조 제품 시장이 전 세계 무역의 5 퍼센트 ~ 7 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9.1 참조). 두 가지 예를 들자면,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연간 120,000개의 일자리가, 유럽 연합에서는 100,000 개가 이로 인해 손실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표-9.1 위조 및 불법복제 제품 비율 추산

기 관	추 정 치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전 세계 무역의 약 5%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세계 무역의 5~7%-매출 손실 규모가 연간 2000억~3000억 유로 정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전 세계 무역의 5% 이상

출처: <http://www.interpol.int>; 유럽 지역사회 위원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Combating Counterfeiting and Piracy in the Single Market" (Brussels, 1998): 2; 참조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inptop/indprop/955.htm; OECD, ICC Counterfeiting Intelligence Bureau, "The 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DSTI/IND(97)6/REV1 (Paris, 1998): 5.

특히 불법복제 제품 때문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몇몇 분야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위조와 불법복제가 다음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 단일 시장 (European Single Market)에서 무역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표- 9.2 유럽 단일 시장에서 위조/불법복제

해당 분야	위조/불법 복제 비율
데이터 처리	39%
오디오/비디오	16%
섬유	10-16%
음악	10%
자동차 스페어 부품	5-10%
스포츠 및 여가	5-7%

출처: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intprop/intprop/counterf.htm#2

● 전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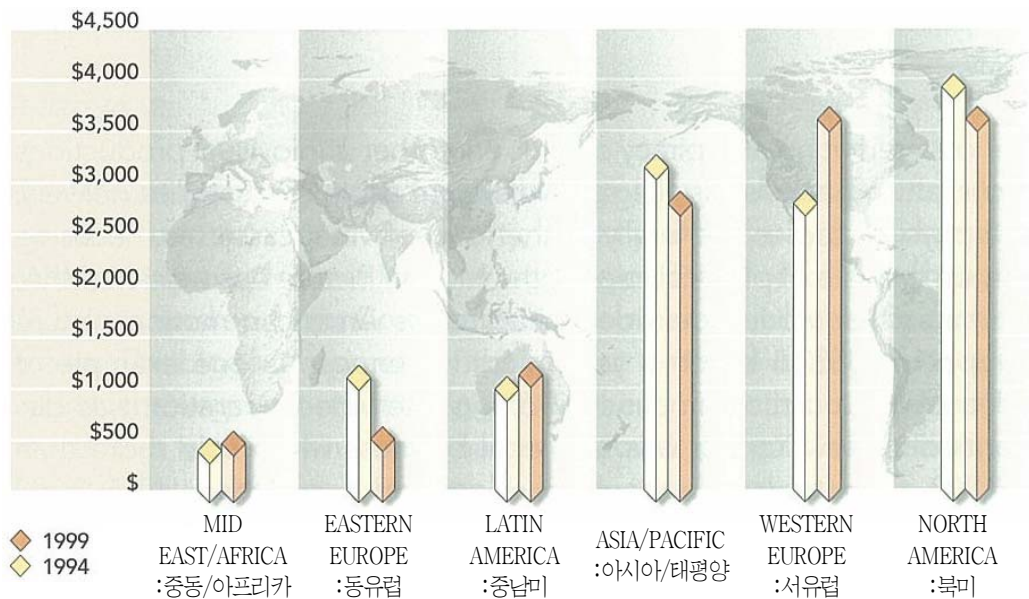
컴퓨터 소프트웨어야말로 모든 제품 중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제품이며, 위조와 불법복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산업이다. 미국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 (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과 소프트웨어 및 정보 산업 협회 (Software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SIIA)는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보고서 (Global Software Piracy Report)에서 매우 가슴 아픈, 하지만 동시에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고 했다. (도표- 9.3 참조)³⁷¹⁾ 이 보고서에 따르면, PC 사무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전 세계 불법 복제율은 놀랄만한 36퍼센트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가 1994년에는 49퍼센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만에 13퍼센트 포인트나 감소한 셈이다.

이러한 감소율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1999년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이 미화 12억 달러³⁷²⁾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유엔의 2000-2001년간의 예산이 미화 25억 4천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³⁷³⁾

371) <http://www.bsa.org>

372) Business Software Alliance and Software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1999 Global Software Piracy Report (May 2000): 2.

도표- 9.3 지역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미 달러화 10억 기준)



출처: 미국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 (Business Software Alliance)과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 협회 (Software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보고서 (Global Software Piracy Report)"(2000년 5월): 3.

음반

음반 업계 또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혁명의 어두운 이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음악이 녹음된 제품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음반을 재생산 (reproduce)하는 것보다 쉽다. IFPI는 음반 불법복제 보고서 2000 (Music Piracy Report 2000)에서 1999년 전 세계에서 불법 복제된 음반을 총 19억 개로 추산하고 있다. CD 불법 복제 개수는 5억 개로 증가했으며, 카세트 테이프는 14억 개 정도가 불법으로 복제되었다. 이 보고서는 CD 리코더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³⁷⁴⁾

373) United Nations Association Staff, Basic Facts About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s, 1998).

37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Music Piracy Report 2000, (London, June 2000): 2.

이러한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은 미화 4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1998년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불법 음반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불법복제 카세트 테이프의 판매가 줄어든 것을 반영한다. 이 보고서는 1999년 전 세계 광 디스크(optical disk) 생산 용량이 28퍼센트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34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는 1999년 크게 증가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의 정확한 수치를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지만,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는 1999년 10억번 이상의 음악 파일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했다.³⁷⁵⁾ 인터넷을 통한 음악 제품의 불법복제는 CD 및 카세트 테이프 위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형태의 문제이다.

영화

영화 및 기타 오디오/비디오 제품에 대한 위조와 불법 복제는 기본적으로 케이블과 위성 방송 송출의 불법 전용과 일반적인 비디오 카세트 형태의 물리적 복제, 이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미국 영화 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MPA)는 물리적 복제품의 판매의 경우 전 세계에서 불법 비디오 복제로 인해 미국의 영화 제작사가 연간 미화 25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96년 6월, 뉴욕에서 한 비디오 불법복제 조직이 검거되었는데, 이 조직은 매주 100,000개의 불법 비디오를 판매해온 범죄 기업으로서 매주 매출액은 미화 500,000 달러에 달했다.³⁷⁶⁾

OECD는 “위조의 경제적 영향(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보고서에서 일부 국가의 경우 비디오 불법 복제율이 거의 100퍼센트에 달한다고 발표했다.³⁷⁷⁾

명품과 패션 의류

일반인들은(그리고 때로 정부도) 명품과 패션 의류 불법 복제를 단순한 장난 정도에 지나지 않는 아주 가벼운 형태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게

375) Ibid.

376) <http://www.mpas.org>

377)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Paris, 1998): 12.

발생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의 이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명품, 특히 패션 의류를 불법으로 위조하는 것은 주로 주요 제조업체들이 위치해 있는 유럽에서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 위조 의류나 상품을 수입하고 다른 나라에서 라벨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위조 라벨은 판매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부착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송 도중 위조 제품을 알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위조 제품이 대량으로 운송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집행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위조품의 주요 출처는 정당한 하청 제조업체 및 시설이다. 이들은 정식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주문받은 양보다 훨씬 많이 제조를 한 뒤 그 여분의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뒷문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잉여 제품이 일종의 회색 시장을 만들어 낸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제조업체가 불법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셈이다.³⁷⁸⁾

스포츠 웨어

1990년대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크게 성장했다. 스포츠는 매우 거대한 비즈니스 시장이다. 동시에 온천과 체력단련 시설의 급격한 성장, 스포츠를 즐기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 다이어트의 확산,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의 인기 등이 결합해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스포츠 의류 불법 복제는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 의류의 가장 큰 시장 분야는 청소년 시장으로서, 유명한 브랜드 회사의 위조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층이 불법 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불법으로 위조된 스포츠 의류 제품은 접근하기가 쉽다. 대부분의 경우, 주요 이벤트 특히, 스포츠나 음악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고객을 찾아 이동하는 위조 제품 판매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 판매상들이 국제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판매상들은 일반적으로 스포츠나 음악 행사에 제품을 소규모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많은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조 제품이 활개를 치는 또 다른 요인은 구매자들 대다수가 단지 브랜드 이름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위조 제품 판매업자들은 쉽게 일반 의류에 위조 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청소년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³⁷⁹⁾

378) Ibid., 13

379) Ibid., 14

향수

향수 제품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소매상점에서 판매되며, 이 소매상들이 시장에서 정식 제품의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향수업계는 위조 향수 제조업자들의 공격에 당면해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이 총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 고객들은 소규모 상점과 길거리 판매상에게서 이른바 할인가격에 위조 향수를 구매한다. 불법 판매상들은 이러한 제품이 가격이 낮은 횡재상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실제 가격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 제품이다.

장난감

장난감 업계는 전통적인 장난감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컴퓨터 장난감 시장으로 나뉜다. 전통 장난감을 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이름과 등록상표가 부착된 채로 판매되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거의 불가능하다. 컴퓨터 게임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닌텐도(Nintendo)의 핸드헬드 게임 베스트셀러인 게임보이(Gameboy) 등 비디오 게임은 방대한 규모로 복제되어 판매되고 있다. 1999년 닌텐도는 손실이 미국에서만 미화8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³⁸⁰⁾

비행기 부품

비행기 부품의 정상제품 시장은 매우 규제가 심하다. 하지만 이러한 비행기 부품업계 역시 위조 비행기 부품이 공급과 배급망을 파고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당하는 실정이다. 위조 비행기 부품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모조 부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행기 사고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미국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³⁸¹⁾ 하지만, 업계와 정부가 협력할 경우 허가받지 않은 불법 부품을 적발, 단속하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1991년에는 52건, 1992년에는 262건, 1994년에는 411건, 1995년에는 317건, 1996년에는 220건 등 불법 비행기 부품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³⁸²⁾

380) Ibid., 15.

381) Ibid., 16.

382) Ibid., 16.

자동차 부품

매장에서 즉시 판매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표준화된 부품이나 여러 다른 메이커나 자동차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단기 사용 제품을 목표로 하는 위조업체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부품에는 보안 장치나 위조 방지 기술이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다. 업계에서는 위조 부품으로 인한 손실이 연간 미화 120억 달러이며, 대다수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³⁸³⁾

의약품

위조 의약품은 아무 의심 없이 약을 구매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과 더불어 공중 보건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다. 위조 의약품 문제는 특히 이 문제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규제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위조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위조 의약품 문제의 주요 요인은 “취약한 의약품 규제 통제 및 집행, 기본적인 의약품의 공급의 부족이나 불안정한 공급, 통제되지 않는 유통망, 정품과 위조 의약품간의 큰 가격차이,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부족, 품질 인증에 대한 인식 부족, 보건 의료 체계의 부패” 등이다.³⁸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중 6퍼센트 정도가 위조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의 70퍼센트 정도가 위조 의약품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³⁸⁵⁾

시계

전 세계 시계 무역의 5퍼센트가 위조품인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국가에서 정당하게 제조된 제품의 판매에 대한 무역 장벽이 높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지식재산권을 집행하는 데 있어 일부 국가들이 당면한 어려움과 일부 지역에서는 위조가 늘 일어나는 일상적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이러한 불법 거래를 퇴치하려는 어떤 노력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³⁸⁶⁾

383) Ibid., 17.

384) Ibid., 18.

385) Ibid., 18.

386) Ibid., 9.

❶ 위조와 불법 복제가 증가하는 이유

새로운 기술의 발전, 특히, 디지털 및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더욱 즐겁고 윤택하게 만드는 놀라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음악, 영화, 문학, 미술 등 문화적 활동을 거의 매일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새로운 의약품과 백신의 개발, 새로운 의학 치료의 발전 덕분에 이제는 질병과 아픔을 퇴치하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고통을 줄이는 놀라운 힘을 가진 의학 기술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 중 일부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다.

제조업이 전 세계 수출의 약 75퍼센트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다.³⁸⁷⁾ 제조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제조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기존의 제품에 가치를 추가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제조업체들은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사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가격이 훨씬 저렴한 불법 복제 제품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들은 자신이 만들어 낸 성공의 희생자이기도 한 셈이다. 때때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분할하고, 다양한 시장 간의 가격 격차를 벌여 놓는다. 각기 다른 나라의 소비자 구매력이 서로 상당한 격차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제품의 가격 정책에 반영된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자국의 시장에서 위조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불법 복제상이 등장하는 것이다. 위조 활동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불법복제 업체들은 유통 채널을 형성해 한 사회에서 경제적, 심지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일부 경제권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불법복제 활동에 의해 유지되기도 한다.

신흥 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놀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 증가를 정품 제조업체가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조 제품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집행 기관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387) Ibid., 27.

몇 가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지식재산권이 있는 제품과 상품의 재생산이 훨씬 쉬워졌으며, 정당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거나 이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제품의 재생산이 촉진되어 왔다. 음악, 영화, 컴퓨터 제품, 문학 제품 등 문화 상품은 주로 새로운 기술에 의해 쉽게 재생산되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

지난 몇 십년간 국제 무역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크게 증가해 왔다.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된 규칙과 규제책 적용, 통신 용량의 증대, 인터넷의 등장, 제조업체의 효율적인 제품 브랜드화 전략, 시장 수요 창출, 이러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품의 생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요 증가와 이를 충족시키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관, 경찰, 사법부 등 전 세계의 집행 메커니즘이 제품과 상품에 대한 전 세계 수요 증가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허점이 생기게 되었다. 위조 업체들은 위조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문제와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조직 범죄의 개입

고수익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는 점 때문에, 조직범죄 집단은 위조와 불법복제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위조와 불법복제로 인한 수익은 때로는 다른 범죄 활동 자금으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일반 국민과 형법 집행 기관은 항상 위조와 불법복제를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조직범죄 단체가 위조와 불법 복제에 활발히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국제 범죄 조직이 위조 및 불법복제된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 거래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고수익이 보장되고 위험이 적은 활동이며, 보상과 위험이 훨씬 큰 다른 범죄 활동의 자금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과 때로는 사법부 및 법 집행 기관들마저 위조와 불법 복제가 경범죄에 불과하며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관과 정부의 단합된 노력이 마침내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변화를 가져왔다. 조직범죄가 위조와 불법복제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와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조직범죄 집

단은 항상 기업 규모의 위조와 불법복제 사업에 개입해 왔다.³⁸⁸⁾ 위조와 불법복제로부터 얻은 수익은 그 후, 다른 범죄 활동에 쓰이게 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연결고리이며, 다음 섹션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로 인해 한 사회가 심각한 장, 단기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 경제적 영향

지식재산권 소유주와 정당한 제조업체

포착하기가 쉽지 않지만 역시 우려할만한 점은 위조와 불법 복제가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다. 위조와 복제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많은 정상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 한 사회가 여러 수준에서 다양한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가장 먼저, 직접적인 판매 매출의 손실은 정당한 제조업체들이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의 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표 9.4는 정당한 제조업체들이 겪고 있는 매출 손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표 - 9.4 일부 분야에서의 매출 손실

업계	직접 판매 손실
의약품	1999년 120억 달러
음악	1999년 41억 달러
컴퓨터 소프트웨어	1999년까지 5년간 590억 달러

출처: <http://www.interpol.int>; IFPI Piracy Report:2; <http://www.bsa.org>.

388) <http://www.cybercrime.gov> 의 예 참조. 몇 가지 예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단속을 통해 미화 105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소프트웨어 및 홀로그램 제품을 압수했는데, 여기에는 총, TNT, 플라스틱 폭발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BKT 갱단의 한 일원이 뉴욕에서 살인죄로 유죄평결을 받았는데, 그는 갱단의 위조 롤렉스(Rolox)와 까르티에(Cartier) 시계를 판매하는 데 갈취와 살인이 사용되었다고 증언했으며, 갱단이 위조 활동을 통해 미화 13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이 돈을 다른 활동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뉴저지에서는 단속을 통해 미화 400,000 달러 상당의 위조 루비통(Louis Vuitton)과 샤넬(Chanel) 핸드백을 압수했는데, 핸드백 바느질 안 쪽에서 헤로인이 발견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민병대 단체는 향수, 수의학 제품, 비디오 영화,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의약품 등 위조 상품의 판매를 통해 활동 자금을 얻고 있다. (<http://www.iacc.org> 참조).

위조 제품은 대부분의 경우 정상 제품보다 품질면에서 떨어진다. 소비자가 아무 의심 없이 위조된 제품을 사게 되는 경우, 제조업체는 단순한 매출상의 손실 뿐 아니라 제조 및 유통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역시 잃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은 미래의 판매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위조 및 불법 복제 제품의 가격은 떨어지는 품질에 비해 가격이 부풀려진 경우가 많다.

국내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

위조와 불법 복제가 발생하는 국가들은 몇 가지 수준에서 유형적, 무형적 손실을 입게 된다. 한 나라에서 위조와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정당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자사에 대한 부정적 명성을 우려해 제조 시설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위조가 불법복제가 발생하는 국가는 결국 FDI를 잃게 되며 일반적으로 FDI와 함께 한 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의 기술과 노하우 역시 잃게 된다. FDI 손실은 그 자체로 외국으로부터의 얻는 수입의 손실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국제 금융 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외국의 제조업체 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진다.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노력과 자원을 집중해 온 국내의 창작자, 발명가, 중소기업들은 때로, 자신들의 제품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팔리게 될 상황을 우려해 모든 노력을 중단하게 된다. 결국, 투자 수익과 미래의 성장 뿐 아니라 지식기반 경제로 향하는 창조적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창조 정신과 에너지가 사라지게 된다.

사회적 영향

위조와 불법 복제의 사회적 영향은 불법 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예술가, 창작자, 기업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한다. 예를 들어, 국내의 음악가, 음악 그룹, 음반 회사, 유통업체들은 음반이나 CD를 내 놓을 수 없다. 정식 제품(지역 및 국내 음악가를 대표하는)이 시장에서 정당한 저작권이 없는 예술작품, 노래, 인쇄 제품 등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는 위조 제품에게 밀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위조 제품은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듯, 음반업계에서 한 국가의 창조성과 문화가 위조와 불법복제로 인해 사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극적인 피해자는 한 나라와 그 국민들이다. 문화 작품과 전통을 적절히 존중하기 않게 되면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 비행기, 자동차 부품 위조는 일반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³⁸⁹⁾ WHO는 전 세계 의약품 판매의 약 6퍼센트 정도를 위조 약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이러한 불법 판매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의 70퍼센트가 위조 의약품이라고 한다.³⁹⁰⁾

위조 의약품 문제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위조 의약품으로 인한 문제는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위조된 파라세타몰(paracetamol) 시럽으로 109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바 있다.³⁹¹⁾ 1981년, 제약 회사 Searle은 약 100만 개의 위조 피임약이 여성들에게 유통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하는 않는 임신과 부정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는 개심술에 사용되는 IABP(Intra-Aortic Balloon Pump)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위조 부품이 있다는 점을 발견한 뒤 미화 7백만 달러 규모의 IABP를 리콜했다. 항생제인 Celor의 위조 제품으로 미국에서는 7개 주에서 어린이들이 귀 감염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일부는 영구적인 귀 손상을 입었다. 멕시코에서는 강력한 피부약인 Retin-A의 위조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비타민 A 크림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³⁹²⁾

항공 및 자동차 위조 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결국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 1989년, 노르웨이 항공기가 추락해 55명이 사망했다. 원인은 기준에 미달하는 위조 볼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1년,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389) WHO는 위조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위조 의약품이란 사기를 목적으로 제품의 정제나 출처에 대한 라벨을 의도적으로 잘못 붙인 의약품이다. 위조는 브랜드 및 일반(generic) 상품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잘못된 성분 뿐 아니라 정확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 실제 효과가 없는 성분을 포함한 제품, 충분한 양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실제 효과가 있는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은 제품, 위조 포장을 한 제품을 말한다.”

390) <http://www.interpol.int>

391) Ibid.

392) <http://www.iacc.org>

Corporation)는 엄마와 어린이가 사망한 한 자동차 사고를 조사했다. 결과는 브레이크 위조 부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브레이크 패드는 나무 칩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1987년의 한 헬리콥터 사고로 기사 한 명이 사망했는데, 그 원인은 위조 클러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 후 조사를 통해 유사한 사고가 전에도 일어났다는 점과 NATO에도 일부 판매되었던 600대 이상의 헬리콥터가 똑같은 위조 부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³⁹³⁾ 이러한 예는 보증제도와 규제 검토를 통해 정품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보호를 위조 제품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위조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위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어야 한다. 범죄자들이 자동차 및 항공 부품과 제품 특히, 위조 의약품을 선량한 일반국민들에게 판매할 때 시민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국제 법률 기반

위조와 불법복제가 현재 많은 관심의 대상이지만 결코 새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1800년대 특정 제품 제조업체, 특히, 도구, 칼, 목화, 실 등 주요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새로 산업화되고 있는 국가에서 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명한 작가들이 책 출판 분야에서 제기했던 것과 유사한 제조업체들의 항의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다루기 위한 국제 협정의 마련과 채택이 이루어졌다.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은 1883년,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은 1886년 채택되었다.

이 두 개의 역사적인 국제 협약을 통해 위조와 불법 복제 제품과 관련해 오늘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일관된 원칙이 마련되었다. 이 두 개의 국제 협약은 국가간의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파리 협약 28 조, 베른 협약 33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회원국도 이러한 구제책을 활용한 적은 없다.

국제적 장치를 통한 이러한 문제 해결책이 우루과이 라운드 (Uruguay Round)에서 최초로 채택되었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Agreement)으로 이어졌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의 3부는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한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

393) Ibid

다. 모든 회원국은 일반 의무 (General Obligations), 민사 및 행정적 절차와 구제책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medies), 임시 조치 (Provisional Measures), 국경 조치와 관련한 특별 조치 (Special Measures Related to Border Measures), 형사적 절차 (Criminal Procedures) 등의 기준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최초로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제품을 압수하며, 범죄 기업과 불법 제품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의 법원, 경찰, 세관 및 기타 행정 기관 등 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다른 수준에서, WTO의 회원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해 무엇보다 다른 회원국과 분쟁이 생길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자국의 불만을 분쟁 해결 메커니즘 (Dispute Settlement Mechanism)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충분한 구속력이 있는 구제책을 제공하는 WTO의 관할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불만을 제기한 회원국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확대를 증진하며 창의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매우 주목할만한 실험이 아닐 수 없다.

디지털 기술과 국제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와 동시에 저작권 및 기타 권리가 있는 작품들이 온라인에서 남용되고 권리 침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1996년, 세계 저작권 업계는 WIPO가 주최한 외교 회의에서 회담을 열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침해 위협에 맞서, WCT와 WPPT를 채택했다. 이 협약들은 실체적 권리 (substantive rights)를 다루고 있다. 또한, 1971년 이후 최초로 저작권의 보호와 집행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규정하고 향상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중전달권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이는 베른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작품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의무 (Obligations Concerning Technological Measure of Protection, OCTMP)이다. OCTMP 규정은 새로운 도구이다. 또한, 이를 자국의 국내법에서 이행해 온 국가들은 새로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공을 사이버공간까지 확대하고 있는 새로운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가능한 조치

몇몇 정부들은 자국의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 수준에서 강화해 앞서

언급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집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을 세관이 압수하는 등의 행정적 집행
- 국가, 보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적 조치에 당사자(moving party)가 되는 형사적 집행
- 지식재산권 소유자나 수탁자 혹은 면허 소유자 등 유효한 권리를 소유한 사람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강제 명령을 요청하는 등 정해진 법적 조치를 이행하는 민사적 집행
- 제품과 서비스 생산업체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침해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집행 (예: 디지털 저작 작품의 암호화)

이러한 조치는 한 나라의 적용가능한 법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 많은 국가에서 특허 침해인 경우, 형사적 집행은 적용할 수 없다). 행정적 조치와 민사적 조치는 일부 국가에서 연계되어 있다. 국가가 어느 정도로 공적 자원을 이용해 개인 당사자의 권리 집행을 지원해야 하는 지 그 정도를 결정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효과적인 집행이야말로 시장 중심의 경제에서 무역을 진흥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Agreement)은 이를 국제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표- 9.5는 이와 관련된 장단점을 보여 주고 있다.

표- 9.5 다양한 집행 조치의 비교

조치	당사자	관련 지식재산권	장점	단점	최신 경향
행정적	세관	상표, 저작권	상대적으로 신속하다	분명한 경우에만 효과적이다	국경 통제에 대한 역내 협력
형사적	경찰	상표, 저작권	효과적, 상대적으로 신속하다	심각한 경우로만 제한된다	교육적 효과를 위한 벌금 인상과 단속 강화
민사적	지식재산권 소유주	모든 지식재산권	이성적인 해결책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지식재산권 특별 법원, 재판외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기술적	지식재산권 작품 생산 업체	저작권, 상표, 특허	실용적이고 매우 빠르다	해킹에 취약하다	워터마킹 (watermarking) 표준화 노력

● 행정적 집행

지식재산권의 행정적 집행은 민사적 또는 형사적 집행을 가시적으로 수행하는 법원과 별개인 정부 기구나 행정 기관에서 한다. 행정적 집행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세관 당국에 의한 집행이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Agreement)이 세관 절차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듯이 세관은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가장 가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1999년 2500만 개의 위조 제품이 유럽연합 국경에서 압수되었다. 2001년이 되자 그 수치는 9500만개로 증가했다. 위조와 불법복제라는 위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EC는 강화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계획과 함께 새로운 지침(Directive)을 제안할 계획이다.³⁹⁴⁾ 중국에서의 상황은 많은 주의가 요망된다. 1998년, 행정 당국은 28,952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다뤘고 4 억개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을 압류했다.³⁹⁵⁾ 2000년 1월, 홍콩 특별행정구역에 있는 세관 공무원이 불법 비디오 디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범죄 기업을 적발했다. 두 개의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400,000 개의 불법 디스크를 압류했다. 1999년, 홍콩 특별행정구역 당국은 1600만 개의 불법 광 디스크를 압수하고 2,701 명을 불법 복제 혐의로 구속했다.³⁹⁶⁾ 홍콩에서 세관당국은 “번개와 터미네이터 (Thunderbolt and Terminator)”라는 작전명의 대규모 불법 복제 단속으로 수 십만개의 CD와 불법 생산 장비를 압류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³⁹⁷⁾

많은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국경에서 위조와 불법복제와 싸울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식재산권 보유자로부터의 긴밀하고도 신속한 협력과 압류할 제품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위조와 불법복제 제품의 압류가 가능하다. 등록 상표 및 잘 알려진 상표의 데이터베이스는 특히 세관 당국의 공무원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사례-9.6 참조)

394) <http://proquest.umi.com>

395) WIPO 문서, WIPO/IPR/KUL/00/3: 4.

396) IP Asia (February 2000): 4.

397) WIPO 문서, WIPO/IP/HKG/98/4(c): 2.

[사례-9.6]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네덜란드와 벨기에 불법복제 단속 기관은 1997년 6월 유럽 위조 방지 네트워크 (Reséau Européen Anti-Contrefcon)를 창설했다. 현재 이 단체는 EC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자원 확보와 활동에 있어 성과를 보이고 있다. REACT는 여러 활동 중에서도, 법 집행, 조사, 불법 복제와 위조를 근절하기 위한 각 국가별 협의체 지원을 위해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 REACT는 750,000개의 잡화, 120,000개의 향수, 460,000개의 의류, 185,000개의 시계를 포함, 총 1,150건의 불법 제품 압류 작전을 지원했다. 10월에 있었던 압류에서는 1,000kg의 위조 의약품을 압수하기도 했다.

출처: <http://www.REACTEU.org>.

병행 수입(Parallel Import)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을 압류하는 데 있어, 만일 해당 국가가 병행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면 병행 수입된 제품과 위조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병행 수입품(회색 시장 제품(gray market good)으로도 알려진)은 정당한 제조업체나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이 없는 제품의 국가간 거래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무역은 일반적으로 수입 국가에서 가격, 품질, 또는 해당 제품의 입수 가능성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발생한다. 원래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제조 및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이들의 수입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병행 수입된 제품은 때로 위조 또는 불법복제된 제품과 구별된다.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병행 수입은 각 지역별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기 위한 제품 유통 노력을 좌절시키는 것과 같다. 유통망이 제품의 체계적인 유통을 증진시키며, 병행 수입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에만 이러한 유통망이 확산되고 보호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과 시민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병행 수입된 제품이 진정상품인 한, 병행 수입은 경쟁을 더욱 촉진시켜 다양성과 상품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제조업체와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회색 시장에서 자신들의 권리

를 집행한다. 이러한 수단에는 보호무역적인 국내법 마련(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체제의 일부로), 공중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규제 등의 규제 장벽 마련, 유통업체 및 판매상과의 배타적 계약, 출처 공개 (disclosure requirement), 경쟁법, 보증과 소비자 권리문제 등이 포함된다.³⁹⁸⁾

이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Agreement) 협상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협정의 6조 소진(Exhaustion)의 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본 협약의 어떤 사항도 지식재산권의 권리 소진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될 수 없다.” 2001년 11월 14일,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은 다음과 명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소진과 관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규정은 MFN과 3조와 4조 내국민 대우 조항 (national treatment provisions of Article 3 and 4)에 의거, 이러한 소진 문제에 대해 이의 없이 각 회원국이 자유롭게 자국의 체제를 마련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만일 병행 수입에 대한 정책이 지식재산권의 소진 이론을 적용해 결정될 경우, WTO 기반에서 병행 수입 문제는 오직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문제는 EC와 북미 자유무역 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등 몇몇 역내 무역 협정이 다루고 있다.). 하지만, 병행 수입에 대한 정책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요인이 아니라, 때로, 무역, 경쟁, 경제와 관련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지식재산권의 소진이나 최초 판매의 원칙 (first sale doctrine) 등 지식재산의 이론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³⁹⁹⁾

398) <http://www.cptech.org>

399) 지식재산권은 원래 그 성격이 국지적이다. 다양한 국제 협약과 협정에 따라 국내의 보호가 외국인까지 확대 되거나 증진된다. 하지만, 각 나라의 규정과 관습이 어떻게 국내의 권리가 외국 관할 지역에서 집행될 것인지 그 방법을 결정한다. 이렇듯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은 최초 판매의 원칙 (first sale doctrine)이다. 이 원칙의 내용은 지식재산권을 대표하는 어떤 물체나 상품이 법적으로 제조되고 판매되면,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이 상품에 대한 통제권이 종료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개념은 국가, 지역, 국제적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기도 하는 권리의 소진(exhaustion) 규칙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정당하게 책이나 자동차, 카메라를 구매하면, 이를 구입한 국가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그 상품을 재판매, 대여, 임대할 수 있다.

● 형사적 집행

지식재산권 침해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는 형사적 집행과 관련된 수단들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형사법은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과 다른 책임 기준을 적용하며, 민사 소송의 경우보다 검찰측이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증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형사 처벌은 민사적 처벌보다 무겁다. 대규모의 기업 형태의 위조와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단순히 민사상 벌금이 부과되어 왔다. 하지만, 감옥에 수감된다는 위협이 현실로 다가올 때, 실질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고, 2000년 1월 1일을 기해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매우 특수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적 기반이 형사적 집행을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많은 조치와 이니셔티브가 국가 및 지역적 수준에서 취해지고 있으며, 여러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조와 불법 복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예 중에서도, 다음의 몇 가지 예는 지식재산권의 형사적 집행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 (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은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근절 노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999년 4월에서 6월까지, 불법 소프트웨어 제품을 압수하기 위해 4,629번의 일제 단속이 실시됐다. 말레이시아 저작권 법 (Malaysian Copyright Act)에 의거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은 엄청난 벌금 뿐 아니라 최대 징역 5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⁴⁰⁰⁾

2000년 12월, 중국 전역에서는 위조 자동차 부품을 찾기 위해 1000명의 감시관들이 파견됐다. 이들은 248개의 소매상을 단속했으며 차축과 브레이크 부품 등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조 자동차 부품 30,000개 이상을 찾아냈다.⁴⁰¹⁾

400) <http://malaysia.cnet.com>

401) <http://proquest.umi.com>

2000년 12월, 홍콩 반부패 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of Hong Kong SAR)의 위원들은 CD 제조에 사용되는 500개의 불법 금형을 압수했다. 이 기계들의 총 가치는 미화 4억 달러로, 영화,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불법 CD제작에 사용되어 왔다.⁴⁰²⁾

2000년 한해 동안, 싱가포르에서는 정부와 경찰의 합동 노력으로 불법 복제와 관련 1,398건의 단속을 하고, 1,455명을 구속하고, 1,559,840개의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압류했다. 이렇게 구속된 사범들 중에는 7개의 범죄조직에 속한 180명도 포함되었다.⁴⁰³⁾ 필리핀에서, 국립 수사국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수사관들은 카테 필러 (CatepillarTM) 위조 트럭 부품을 압수했다.⁴⁰⁴⁾ 인도의 뉴델리에서, 경찰은 작은 상점을 단속해 미화 백만 달러가 넘는 불법 음악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CD를 압수했다. 그 상점의 주인은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⁴⁰⁵⁾

위의 몇 가지 예는 문제의 범위와 함께 불법 복제 근절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종류와 강도의 대처가 필요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의 두 가지 예는 새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 및 이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첫 번째 사례로, Fakegifts.com은 인터넷을 사용해 위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에 위치하고 있으며, 까르띠에 (Cartier)와 롤렉스(Rolex) 시계, 몽블랑(Montblac) 펜, 잘 알려진 핸드백과 벨트 같은 제품의 복사품을 판매했다. 미국의 연방법에 의거 이 사이트의 운영하고 있는 두 명의 경영자는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각 등록상표 침해 건수마다 미화 2백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식재산권 법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법을 적절히 이해하고 집행하는 데 특수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태국은 1997년 중앙 지식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402) Ibid.

403) 출처: Singapore Police Force, Films and Publication Depot., and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2001년 2월 1일.

404) <http://proquest.umi.com>

405) IP Asia, 2000년 2월, 10.

(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을 세웠다. 태국의 지식재산 법원은 지식재산권의 집행 및 보호 기능과 관련해 민사상, 형사상 문제에 있어 모두 독점적인 사법권을 갖고 있다. 이는 모범이 되는 새로운 시도로서, 지정된 판사가 지식재산 법안과 관행에 있어 전문 지식을 취득 및 발전시킬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중재의 사용 및 효과적인 공판전 협의 절차(pre-trial conference procedure)에 중점을 두는 등 법원이 사용자 친화적이고, 비용효율적이며, 신속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⁴⁰⁶⁾ 물론, 이러한 특수 법원이 모든 관할 지역과 법률 체제에 맞는 최상의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다른 국가들이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공한다.

● 민사적 집행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⁴⁰⁷⁾은 회원국이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고, 처음부터 권리 침해를 막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일방적인 침해 제품에 대한 금지 명령, 압류, 파괴와 소송과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는 보상금 등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과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적 집행이 지식재산권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민사적 집행이 위조 상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많은 사례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민사 소송이 크게 증가해 왔다 (사례- 9.7 참조).

[사례- 9.7] 연방 순회 법원 항소심에서 내린 특허관련 평결 최고 금액

Polaroid vs. Eastman Kodak	미화 8억 7300만 달러
Smith International vs. Hughes Tools	미화 2억 4백만 달러
Pfizer vs. International Rectifier	미화 5500만 달러
Shiley, Inc. vs. Bentley Laboratories	미화 4400만 달러

출처: WIPO, document WIPO/IP/MNL/00/7(b):6.

406) WIPO 문서 WIPO/USPTO/IP/CEI/00/5(A), 2000년 9월.

407) TRIPS Agreement, 41~50조.

특허권의 집행은 복잡성, 기간, 비용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호주에서, 20~40개의 특허권 침해 사례가 매년 제기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 이중 약 10퍼센트만이 보통 1~2년 정도가 걸리는 실제 법정까지 간다. 특허 소송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약 미화 53,410 달러에서 267,050 달러의 범위이다.⁴⁰⁸⁾
- 한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은 겨우 3달~4달이 걸리며, 판결에는 변호사 수수료와 비용이 포함된다.
-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은 변호사 선임료를 국가가 규제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이 정해진 최소 수수료보다 낮게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총 침해 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12~18개월 정도이다.
- 멕시코에서, 전형적인 특허 침해 소송은 3~4년 정도 걸리며, 그 비용은 일반적으로 미화 50,000 달러~100,000 달러이다.⁴⁰⁹⁾

특허 침해 사례와 관련한 기술적 복잡성을 해결하고 특허 소송에서 일관된 해석을 제공할 목적으로 일부 국가는 특수 법원 제도를 도입해 특허 관련 소송을 통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각 주의 법원이 판결한 특허 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다루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982년 미국의 연방 순회 항소 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을 설립했다.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주장을 듣기 위한 효과적인 사법 제도는 모든 지식재산권 제도에 필요한 요소이다. 만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사법 제도가 약한 경우, 권리 소유자는 모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약화시키는 국제 재판소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분쟁과 법의 선택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활동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통일을 위

408) <http://www.cnn.com/business/cureencies>

409) <http://www.ladas.com>

해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국제 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이라고 알려진, 상이한 법과 법안의 체계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민사 소송이 한 나라 이상에 있는 당사자나 법원과 관련되어 있을 때 개입하게 된다. 기업의 세계화와 기술적 발전, 통신 기술의 확대로, 보다 많은 국제 소송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

소송 당사자와 이들의 변호사는 모든 국가의 법이 같지 않다는 점을 발견한다. 게다가, 많은 사례에서 법은 너무 상이해 원고가 어느 나라의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렇게 적용가능한 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 법의 원칙을 보다 만족스럽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법 집행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관할지역, 보상금, 적용가능한 법의 선택 같은 문제가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핵심이다.

관할지역과 관련한 하나의 예로, 노벨(Novell)이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가 한 국에 있는 자사의 유통업자이자 계약 당사자인 명제라는 사람을 최근 저작권과 등록 상표 침해로 고소한 사례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모든 불법 행위가 한국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담당할 법원은 미국의 유타 주에 위치해 있었다. 노벨의 사내 불법복제 근절 그룹은 1999년 2,400건 이상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건을 조사했다.⁴¹⁰⁾

현재, 국제 관할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제적 협의도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민사 및 상업적 사안에서 관할권과 외국의 판결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e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을 협상하고 궁극적으로 채택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이니셔티브이다.⁴¹¹⁾ 현재 많은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 활동, 특히, 지식재산권이 보호하고 있는 디지털 작품과 관련해 전자 상거래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410) <http://proquest.uni.com>

411) WIPO는 2001년 1월 국제 사법과 지식재산에 대한 세계 포럼(World Forum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을 주최해 지식재산권 소송의 국제적 관할, 적용 가능한 지식재산권법 선택,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외국의 판결 인정 등 몇 가지 핵심 사안들을 논의했다. Discussion Paper는 <http://www.wipo.int>에서 제공한다.

[사례-9.8]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LOVE IS A WONDERFUL THING)”

2001년 1월 22일, 한 곡의 노래와 관련해서는 최대의 평결이 미국의 한 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내려졌다. 마이클 볼튼(Michael Bolton)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부른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Love Is A Wonderful Thing)”라는 노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곡이 1960년대의 음악 그룹인 아이슬리 브라더스(Isley Brothers)가 작곡한 음악 작품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두 개의 곡 모두 같은 제목을 갖고 있었다. 마이클 볼튼의 노래는 1991년에 인기를 끌었고,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노래는 1966년에 큰 인기를 끌었다. 1994년, 담당 법원의 배심원은 실제 침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 직접 차용한 것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인기곡이 라디오에서 많이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금전적 배상액은 미화 540만 달러였으며, 앞으로 모든 싱글 앨범 수익의 66퍼센트, 싱글이 포함되어 있는 앨범 수익의 28퍼센트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출처: <http://www.law.com>

재판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지식재산권의 행정적 집행을 위해 많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매우 유망한 제도는 재판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다. 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며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분쟁 해결책으로서, ADR은 수많은 법원에서 민사 소송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DR 절차는 의무나 선택사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ADR의 결과 중 중재(arbitration)는 보통 법적 효력이 있지만, 조정(mediation)의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특히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그리고, 특히 유명한 등록 상표 등 상표 분야와 겹치는) ADR의 한 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가 도메인 네임 분쟁에 개입한 사례이다. 인터넷을 위한 최고의 행정 기구 역할을 해 온 인터넷 주소관리 기구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가 마련한 제도 하에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의 기관 중 하나로서, WIPO는 제기된 도메인 네임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인 60 퍼센트 이상의 사건을 다루어 왔다.

ADR의 사용은 민사 소송과 관련한 적체 문제, 지연, 비용 등에 있어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보통 민사 법원을 운영하는 당국이 아닌 한 기관이나 기구에 의해 ADR이 운영된다. ADR은 매우 유망한 제도로서 지식재산권을 집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미래에 다국적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사용을 확대하게 되면 최선의 대안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중재규칙 (Rules for Arbitration) 및 지식재산권 분쟁의 독특한 특성에 맞춘 신속 중재 및 조정, 권고 계약조항 (Recommended Contract Clauses)과 여러 다양한 관할지역에서 수집된 전문적인 중재와 조정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중재조정센터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 기술적 집행

고객의 신뢰 약화뿐 아니라 몇 년간에 걸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위조와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고, 더 포괄적으로는 일반 국민을 위험한 복제품에서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고 배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술적 집행은 지식재산권 집행과정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기술적 집행은 특히, 전자 상거래 분야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WIPO 인터넷 협정 (WIPO Internet Treaties)인 WCT와 WPPT는 최초로 계약 당사자들에게 (Contracting Parties)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사용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빠져 나가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와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 사람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복사할 수 있다(What one man can create, another can copy)”는 속담이 말해 주듯 이 분야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격언은 단순히 제품 자체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기술적 보호 수단에도

적용된다. 개념상 기술적 조치는 위조업자에게 위험이 가중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위조업자들을 발견해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감옥에 수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⁴¹²⁾ 이러한 개념이 기술적 조치의 설계와 배치의 근간이 된다.

기술적 조치가 원래 의도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제품을 보호하는 기술 비용 때문에 제품 가격이 두 배로 올라간다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술적 조치가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거나 고객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예를 들어, 제품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방지한다면 실제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오직 다양한 기술적 조치의 결합을 통해서만이 제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불법 복제업자를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보호하고 자사의 지식재산권과 다른 권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에는 광학 기술, 생명공학, 화학 기술, 전자 기술 등 4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광학 및 전자 기술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빛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광학 기술은 제조업체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왔다. 이 기술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홀로그램이다. 이미지를 반영하는 2차원 또는 3차원 장치로서 때로 이미지에 반영되는 움직임을 이용하기도 한다. 홀로그램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광학 기술로 자리를 잡은 가장 큰 이유는 홀로그램이 복제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전자적인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마그네틱 스트립- 신용카드와 은행 카드를 보호하는 것처럼 암호 형태로 대량의 정보를 저장하며, 이 정보는 적절한 스캐너를 이용해 관독할 수 있다. (2) 스마트 카드- 대량의 정보를 저장한 뒤, 적절한 접근 장치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칩을 내장하고 있는 플라스틱 카드이다. 스마트 카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미래에 각광받는 방식이

412) 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32.

될 것이다. (3) 전자 암호화- 전자적 신호의 과장을 바꾸는 것으로 컴퓨터, CD 플레이어, VCR, DVD 플레이어 등 일반적인 장치로는 관독이 불가능하다. 상품 제조업체와 상품을 정당하게 구매하는 사람들만이 이 암호를 푸는 데 필요한 열쇠를 소유할 수 있다.⁴¹³⁾

● 기관과 이니셔티브

지식재산권의 집행이라는 문제는 사회의 많은 분야와 계층에 연관되어 있다. 정도와 방식은 다를 지라도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지식재산권 집행 문제의 대다수는 위조와 불법 복제이다.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된 많은 기관이 창설되었으며,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관에는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⁴¹⁴⁾와 INTERPOL이 포함된다.⁴¹⁵⁾

특정 업계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업계 및 거래 협회는 일반적으로 비정부 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이다. NGO는 조사 및 통계 수집, 정책 마련, 회의와 관련 회담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 발표, 회원들에 대한 정보 제공, 최첨단 기술 정보의 발전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 등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NGO에는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국제 음반산업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 미국 영화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 MPA),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 국제 위조 금지 위원회 (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IACC) 등이 있다.

413) Ibid., 34.

414) WC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52년 관세 협력 이사회 (Customs Cooperation Council)로 설립되었으며, 세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정부간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1994년 이름을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로 변경했다. 현재 15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WCO는 공동 관세 및 기업 지식재산권 위원회 (Customs/Business IPR Committee)를 주최하는데, 이 회의에서 기업 회원들은 정부와의 직접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고 위조와 불법복제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415) 인터폴(Interpol)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형사/경찰 협력을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179개의 회원국을 가진 국제적 기구이다. 자세한 사항은 www.interpol.int에서 제공한다.

❶ 국제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

몇 개의 국제 이니셔티브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EC는 위조와 불법 복제 근절에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으며, 이러한 EC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EC가 이러한 노력을 전개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단일 시장의 기능과 국제적 위상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포괄적인 목표, 유로라는 단일 화폐의 도입과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많은 종류의 불법 복제 제품, 특히, 고급 패션 및 명품 제품,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등이 담긴 광학 디스크 등이 대부분 EC내에서 제작되고 판매된다는 사실 등이 그 이유에 해당한다.

1986년, EC는 규정 3842/86 (Regulation 3842/86)을 입안함으로써 불법복제 제품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규정의 대부분은 규정 241/1999 (Regulation 241/1999)에 의해 역시 수정된 규정 3295/94 (Regulation 3295/94)에 의해 수정되었다. 규정 3842/86의 목표는 “국제 무역에서 불법 복제 제품의 계속되는 성장을 막기 위한 것”이며, 위조와 불법 복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는 출시, 수출, 재수출 또는 수입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관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 소유자의 동의 없이 병행 수입을 하는 경우 등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98년, EC는 녹색서 (Green Paper), “단일 시장에서의 위조와 불법복제 근절 (Combating Counterfeiting and Piracy in the Single Market)”을 마련하고 배포했다. 방대한 이 보고서는 위조 및 불법 복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접근 방식에서부터 출발해 “해당 문제이거나 지식 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관련 특별권 (Sui Generis Right)의 침해 결과 만들어진 모든 상품, 과정,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그 후, EC는 녹색서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출판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의견과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⁴¹⁶⁾

416) <http://www.europa.eu.int>

●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

불법 복제율의 감소를 설명하는 몇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정당한 상품을 구매하기가 훨씬 쉬워졌으며, 일반 국민들이 복제 소프트웨어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 1994년 이래 업계와 정부간의 협력이 더욱 증진되었다.
- 많은 관할 지역에서 형사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형사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⁴¹⁷⁾

신경제와 현대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완전한 가치를 사회가 과연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이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의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국제 조약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지식재산을 인정하는 문화의 창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려해 봐야 한다. (사례- 9.9 참조)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지식재산권이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긍정적 영향을 알림으로써 그 과정에 연관된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지식재산을 인정하는 문화에서, 정부 관료와 기관은 지식재산권의 사용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가치와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다국적 기업에서 작은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민간 분야는 지식기반 산업과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제공하는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정당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얻는 혜택을 이해한다. 결국, 국내 산업과 경제를 촉진하고 세금 기반이 확대되며 다음 세대에게 법치의 가치를 가르친다. 반면,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다면 경제는 침체되고 쇠락해 갈 것이며, 창의성과 혁신이 사라지고 기업은 FDI, 일관성,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에서는 실제로 지식재산권을 집행할 필요성이 줄거나 사라지며, 기업들은 창의성과 발명이 정신에 중점을 두고 상품과 서비스의 완벽함을 추구하며 시장 점유율, 소비자 신뢰도, 브랜드 자산 증진 및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417) 1999 Global Software Piracy Report, 1-2. <http://www.bsa.org>.

[사례-9.9]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권 정책

싱가폴은 지식재산권을 중요한 국가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식기반 경제로서 발전하는 데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지식 재산을 전략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싱가폴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정책을 채택해 고부가가치의 창조적인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2000년 11월, 법무부(Ministry of Law)는 싱가폴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이 자율적인 준 정부 기관(statutory board)으로 전환되어 싱가폴에서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를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IPOS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최근 출범한 SurfIP (<http://www.surfip.com>)이라는 원스톱 지식재산 포털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포털은 다양한 관할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 기능과 그 외 기술 및 비즈니스 자원을 제공한다.

지식재산권 집행 부분에서 주로 국내에서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범죄 수사단(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의 전문 범죄 부서인 지식재산권 분과(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ranch)이다. 반면,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집행은 관세청(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이 담당하고 있다. 싱가폴은 교육 분야에서 IPOS와 국가과학기술 위원회(National Science & Technology Board)가 주도하는 대국민 교육 캠페인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

출처: Dr. Ng Siew Kua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진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이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서 지식재산권을 집행해야 한다.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집행하려면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집행이란 다층적 개념으로 경찰, 세관, 법원의 힘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정치적 의지와 적절한 입법 기반 및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다면 지식재산권은 집행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국가와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제10장

WIPO의 역할

● 개인에 대한 권리부여

지식기반 경제는 개인의 지식 자본을 그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지식 자산이야말로 창조력과 혁신을 제공해 높은 성장과 역동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 인터넷, 전자 상거래, 모든 글로벌 현상들은 지식 기반 경제를 창출하는 데 있어 개인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야말로 전 세계에 걸쳐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진정한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며 목표의 공유와 지원을 촉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엄청난 양의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전자 상거래,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시대에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창의력과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은 창의력과 혁신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지식재산은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면 결국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시적으로 입증해 보인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창조자와 혁신가, 기업과 회사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경제, 문화, 사회적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유형, 무형의 작품과 발명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러한 그림에서 일찍이 잘 알려져 있으며 불행히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지식재산 기반이 취약한 국가와 지역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국가와 지역에서는 창조자와 발명가 모두 자신의 창조품이나 발명품이 도난을 당할 것이며 결국 정당한 보상이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 지역에서는 새로운 산업, R&D, 기술 이전, 제조시설, FDI를 자국의 경제권으로 도입하거나 유치하지 못할 것이다.

● 지식재산으로 인한 권리 부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제도는 국가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고 육

성한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유통에 있어 투자 및 R&D 관련 활동을 촉진하며, 이보다 중요한 점은 새로 창출된 지식이 확산되어 사회 전체 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새롭고 유용한 지식을 공유하고 이용하는 선순환이 발생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을 가져다준다.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이 약속하는 개인에 대한 권리 부여인 것이다.

WIPO는 프로그램, 예산 배정, 활동, 명시된 목표 등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라는 모델을 지원한다. 간단히 말해, 지식재산 권리 부여는 실제 실현된 모델로서 현재와 미래에 WIPO 전략의 근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 권리 부여 전략의 이행과정에서 WIPO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개인, 정부, 기업, 기타 관련 당사자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들 구성원 모두가 지식재산을 성장, 개발을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와 지식 기반 경제를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활발히 사용하고 지식재산 제도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WIPO는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전 세계적인 지식재산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각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식재산 기반 사회의 구성요소

정치적 의지, 법률적 기반, 필수 기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지식재산 기반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이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발현시키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고 완전하고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 구성 요소들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창의성과 혁신이 사라지고 기업 문화는 활력, 일관성,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 기반 사회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 (1) **정치적 의지.** WIPO 회원국의 정부 지도자들은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모든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특허청, 법원, 문화 기관과 연구 기관 등 핵심이 되는 기관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식재산권이 가져다 주는 경제,

문화, 사회적 발전과 국내 거래 및 외국과의 교역, 국제적 투자, 기술 이전 등 지식재산권의 긍정적 효과를 완전히 인식하게 되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이 지식재산 기반사회의 근간이며, 지도자들이 지식재산을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도구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2) **법률적 기반.**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지식재산권은 한 나라의 국내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법은 국제 지식재산 협약과 협정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의무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파리 협약과 베른 협약 (Paris and Berne Convention),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Agreement)에 부합해야 한다. 국제 지식재산권 업계가 만장일치로 새로운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할 때마다(외교적 회의 등을 통해), PLT, WCT, WPPT 등 새로 채택된 국제적 규범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국내의 법률적 기반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적 기반이 국민, 민간 분야와 업계, 소비자, 정부 등 모든 분야간의 공평한 균형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법률적 기반은 법치가 지식재산 기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3) **필수 기관.** 지식재산권은 이를 다루는 기관을 통해 사회와 연관을 맺게 된다. 이러한 기관에는 정부 (특허청과 보건과 안전, 과세, 소비자 문제, 외교 문제 등을 다루는 기관 등 기타 유관 규제 담당 기관), 법원(판사와 변리사를 포함), 교육 및 연구 기관, 집행 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관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성장이나 무역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결정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필수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발전 및 향상이다. 어떤 기관도 자신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내는 양질의 인적 자원 없이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인적 자원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을 경우 성공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다.

- (4)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시대적, 진화적 단계에서 다른 요소가 일단 구성된 뒤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정부와 기관은 지식재산을 경제 성장의 도구로서 더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국적 기업,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민간 분야는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지식재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연구 기관 및 문화 기구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지식재산 기반사회는 IT와 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분야가 서로 연계되고 거래하며 지식재산제도의 인센티브와 혜택을 염두에 두고 운영된다. 일반 국민은 정당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얻게 되는 이점을 이해하고 정당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킨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전체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경제가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수준에서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창의력과 혁신을 육성하고 촉진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새로 개발되고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끊임없는 흐름이 일상생활을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이고 즐겁게 만든다. 기업들은 상품의 생산과 개발에만 전념하면서 브랜드 자산과 시장 점유율을 키울 수 있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과 아픔을 퇴치하는 데 기여하고 교육적 가능성을 확대하며 전체적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 기반사회인 것이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그렇다면, 지식재산 기반 사회와 관련해 WIPO의 역할은 무엇인가? WIPO는 교육, 세미나, 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구성 요소와 관련해 끊임없이 회원국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 WIPO는 회원국 정부와 함께 정부 관료, 국회의원, 특허청 직원, 사법부 관계자와 변호사, 집행 기관의 공무원, 변리사(IP practitioner), 창조자, 혁신가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교육과 세미나를 주최하고 제공하고 있다. WIPO가 수행하는 업무는 지식재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다룸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며, 사회 모든 계층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에서 새롭고 유익한 기회를 창출하며, 각 국가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 마디로, WIPO의 역할은 WIPO의 사명에 따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WIPO는 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위해 새롭고 강력한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 지식재산권을 취득, 유지, 보호, 및 집행하는 데 있어 각 국가의 제도를 보완하는 데 힘쓸 것이다. 법적, 기술적, 시장의 발전을 계속 따라 잡기 위해서는 법률적 기반을 계속 향상시키고 수정해야 한다. WIPO는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절차의 개선 및 합리화에 노력할 것이며, 각국 국내법의 실체 규정(substantive provision)을 통일할 것이다. PCT와 마드리드 시스템 등 현재의 국제적인 보호 제도를 사용해 단순하고 저렴한, 발명가와 창조자에게 보다 매력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WIPO 내의 최첨단 정보 기술의 활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WIPO는 기구의 활동과 서비스에 전향적이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식의 사고를 도입할 것이다. 현재, 국내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과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실효성을 잃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인터넷의 세계화, 익명성, 기술의 복잡성 때문이다. WIPO는 전자 상거래 및 인터넷과 관련된 지식재산 문제와 이슈에서 앞으로도 리더쉽을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WIPO의 인터넷 조약“(Internet Treaties)”(WCT 및 WPPT)이 2002년에 발효된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접근방식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서 WIPO의 접근 방식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WIPO 중재조정 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가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절차 역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 기반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수 기관에 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정부 공무원, 전문가, 전문가, 지식재산 제도의 사용자 등이 포함된다. 지식재산과 관련해 이

러한 인적 자원 개발 기능은 WIPO의 사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21세기에 WIPO의 역할은 IT의 사용과 배치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프로그램을 통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지해야 할 사항은 PCT 하에서의 출원서의 전자적 제출 계획과 회원국의 특허청이 보다 효율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WIPONET의 배치 계획이다. WIPO는 IT의 사용과 지지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회원국 및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IT를 활용하도록 모든 지원가능한 방안을 동원할 계획이다.

WIPO는 지식재산 제도가 경제, 사회, 문화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된, 측정 가능한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기구의 자원, 서비스,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다. WIPO는 회원국과 모든 후원기구에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목적은 현재에 중요한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번영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약 어

ACDDAM	쿠바 작곡가 협회 (Agencia Cubana de Derecho de Autor Musical)
ACUM	이스라엘 음악 저작권 협회 (Société des auteurs, compositeurs et éditeurs de musique en Israel)
ADR	재판외 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ICRPE	민족 생물학 전인도 협동 연구 프로젝트 (All India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on Ethnobiology)
ADIDS	후천성 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PRA	호주아시아 저작권 협회 (Australasian Performing Right Association)
ARIPO	아프리카 지역 산업재산권 기구 (African Regional Industrial Property Organization)
ASCAP	미국 음악 저작권 협회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ASP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 (application service providers)
ATSIC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나라 주민 협회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Commission)
AUTM	대학기술 관리자 협회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BMI	Broadcast Music Inc.
BSA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 (Business Software Alliance)
BTG	British Technology Group
ccTLD	국가코드 도메인 이름 (country code top-level domain names)
CD	콤팩트 디스크 (compact disc)
CERN	유럽 핵물리학 연구소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CIPR	지식재산권 연맹 (Coali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ISAC	국제 저작권 연맹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COMPASS	싱가폴 작곡자 작가 협회 (Composers & Authors Society of Singapore Ltd.)
COTT	트리니다드 타바고 저작권 기구 (Copyright Organisation of Trinidad and Tobago Ltd.)
CSIR	과학산업 연구 위원회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India))

DFG	독일학술진흥재단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NA	디옥시리보 핵산 (Deoxyribo Nucleic Acid)
DRF	레디 연구소 재단 (Dr. Reddy's Research Foundation)
DSL	디지털 가입자 회선 (digital line subscriber)
DVD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 (digital versatile disc)
EAU	에스토니아 작가 협회 (Easti Autorite Uhing)
EC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ER	수익-지출 비율 (earnings expenditure ratio)
EPC	유럽 특허 협정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O	유럽 특허청 (European Patent Office)
FDI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GAPP	미국일반회계기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DP	국내 총 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EMA	독일 저작자 단체 (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hrungs-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
GNP	국민 총 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gTLD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generic top-level domain names)
HP	휴렛팩커드 (Hewlett Packard Inc.)
IAC	산업 자문 위원회 (Industry Advisory Commission)
IACC	국제 위조금지 위원회 (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mmittee)
IAS	국제 회계 기준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C	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CANN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C	국제 상공 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FPI	국제 음반 산업 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P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IPMD	지식재산 관리부서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division)

IPO	특허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R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인도 저작권 협회 (Indian Performing Rights Society)
ISMH	인도 의료 및 동종 요법 체계 (Indian Systems of Medicine and Homeopathy)
IT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JASRAC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JPO	일본 특허청 (Japanese Patent Office)
KCI	Yayasan Karya Cipta Indonesia
KIPO	대한민국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LDCs	저개발국가 (Least Developed Countries)
M&As	인수 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MFN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MPA	미국 영화 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
MPG	Max-Planck-Institute
MRI	자기 공명 이미지 (magnetic resonance imaging)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GO	비정부 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MPA	미국음악출판협회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RDC	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
OAPI	아프리카 지식재산 기구 (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D	조직 개발 (organizational development)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HIM	유럽 상표·디자인청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TL	기술이전 사무소 (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
PC	개인 컴퓨터 (personal computer)
PCT	특허법 조약 (Patent Law Treaty)
PPP	적극적인 특허 정책 (pro-active patent policies)

R&D	연구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REACT	유럽 위조 방지 네트워크 (Réseau Européen Anti-Contrefcon)
RIAA	미국 음반 산업 협회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OM	읽기 전용 메모리 (read-only memory)
SACEM	음악 저작권 협회 (Société des auteurs, compositeurs et éditeurs de musique)
SAMRO	남아프리카 음악 저작권 기구 (South African Music Rights Organization)
SESAC	유럽 무대예술 작가협회 (The Society of European Stage Authors and Composers)
SIIA	소프트웨어 및 정보 산업 협회 (Software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SMEs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I	디지털 음악 저작권 보호 협의회 (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
TBGRI	열대 식물 가든 연구소 (Tropical Botanical Garden Research Institute)
TK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TKDL	전통지식 디지털 도서관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KRC	전통지식 연구 분류 (Traditional Knowledge Research Classification)
TLOs	기술 이전 센터 (technology licensing offices)
TM	등록상표 (trademark)
TRIP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AW	전미 자동차 노조 (United Auto Workers)
UDRP	통일된 분쟁 해결 방침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UK	영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CTAD	유엔 무역개발 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ICE	유럽 민간부문 사용자 연맹 (Union of Industrial and Employers' Confederations of Europe)

UPOV	식물신품종 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S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PTO	미국 특허 상표청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VCR	비디오 카세트 리코더 (video cassette recorder)
WCO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T	WIPO 저작권 조약 (WIPO Copyright Treaty)
WE	Western Electric
WHO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PPT	WIPO 실연 음반 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T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ZIMRA	짐바브웨 음악권리 협회 (Zimbabwe Music Rights Association)

● 감사의 글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동안 IPO의 비전에 믿음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WIPO 회원국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많은 회원국들이 “경제 성장의 강력한 도구”로서 지식 재산을 육성하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으며 현재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WIPO의 정책자문 위원회(Policy Advisory Commission, PAC)와 산업자문 위원회(Industry Advisory Commission, IAC)의 저명하고 경륜있는 회원들께서 큰 기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많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WIPO의 사무국 직원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원고 검토에 도움을 주신 마셀카르 박사(Dr. Raghunath A. Mashelkar), 그로스맨 씨(Mr. Barry L. Grossman), 커초드 씨(Mr. Francois Curchod)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은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 생각해 볼만한 문제들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책의 목적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함께 생각하고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지식재산- 경제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Intellectual Property- A Power Tool for Economic Growth)”는 아직도 진행 중인 미완의 작품이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공식적인 견해와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 저자에 대해



카밀 이드리스(Kamil Idris)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총재이자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의 사무총장이다.

WIPO에 재직하기 전, 대사직위를 가진 수단 외교관 협회(Sudanese Foreign Service)의 회원이었다. 제네바의 유엔 주재 수단 대표부(Permanent Mission of Sudan to the United Nations Office)에 재직하는 동안 개발도상국 그룹(Group of Developing Countries)의 대변인이자 조정관으로 활동했다.

스위스의 제네바 국제대학원(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f the University of Geneva)에서 국제 법률학 박사과정을 취득했으며, 이집트, 수단, 미국에서 법학, 정치학, 국제학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법대 교수로도 재직한 바 있다.

1992~1996년, 2000년~2001년간 유엔 국제법 협회(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 책자는 지식재산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Kamil Idris WIPO사무총장의 저서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번역한 것입니다.

지식재산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

저 자 : Kamil Idris (WIPO사무총장)

번역·감수 : 특허청 국제협력과장 안재현,
사무관 이선택

전 화 : (042) 481-4114/5114

팩 스 : (042) 472-3459

발행인 : 특허청장 김 종 갑

발행 일 : 2005년 9월

인 쇄 : 금강인쇄정보

전화 : (042)526-0311

이 책은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실용적 지침서이다.

이 책을 통해 비전문가들이 특허, 상표,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이 어떻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는지를 쉽게 이해하기 바란다.

이책은 정보기술혁명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연관되어 있는 발명 및 혁신이 그 중요도와 영향, 속도로 인하여 지식자산을 주목받게 한 과정과, 지식재산이 정부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This publication has been translated and reproduc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the owner of the copyright, on the basis of the original English language version. The Secretariat of WIPO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with regard to the translation or transformation of the publication.

이 책자는 원 저작자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허락하에 영문판을 번역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WIPO 사무국은 이 책자의 번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WIPO 웹사이트
www.wipo.in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PO Box 18
CH-1221 Geneva 20
Switzerland
Telephone : + 41 22 338 91 11

특허청 웹사이트
www.kipo.go.kr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전화 : +82-42-481-4114